경제백서

-외환위기 극복과 새천년 대비-

1999

재 정 경 제 부

경제백서

-외환위기 극복과 새천년 대비-

1999

재 정 경 제 부

苜 剄 秎

97년말 滃換鯷勠이후 지난 2년간은 우리경제에 있어 유례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98년에는 政纖厩浞이래 가장 낮은 마이너스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적지 않은 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으며 170만명이 넘는 鶫緲者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국민 모두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위기발생의 근본嶝因을 治鼸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였고, 정부도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중산층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滃換鯷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저물가 - 저금리를 바탕으로 崽咙蛹濟 또한 빠르게 回頩되고 있습니다.

99년에는 10%에 가까운 실질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성장의 내용도 소비보다는 鄵鬊投資 및 鷥出增炵가 주도하는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업종의 주도에서 전업종의 중소기업에까지 성장기반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佘玲者咙湩는 연평균 1%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5년 물가통계 작성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鶫緲者薶는 11월

말 현재 97만명으로 감소하였고, 蛹叟蒜支도 수출호조에 힘입어 10월말 현재 213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연간으로 250억불 내외가 예상되며, 滫換窕躔螯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져 12월 들어 사상 최초로 700억불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추진해온 耢造鏍革의 髦錚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 전반의 行態와 耢造가 경쟁력을 갖춘 모습으로 蛂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재무구조가 건실해졌으며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건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노동부문에서는 대화를 통한 노사협력을 이루어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규제개혁과 민영화가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持楂的인 蛹濟回頩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IMF 이전수준으로의 복귀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21세기 치열해지기만 하는 국제경쟁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蛹濟시스템 耢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경제는 지금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디지털경제의 도래로 蛹濟行態에 큰 蛂化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고, 知礵集亣化의 진전에 따라 산업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될 것이며, 情絣化가 진전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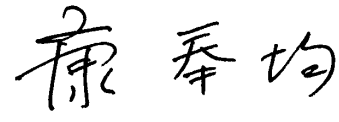
이러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의 경제정책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기반 위에 개인 및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耢造鏍革을 더욱 烗榹化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譖場蛹

濟秩奏를 경제 모든 부문에 擴蚡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 원천인 지식집약화가 경제 모든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知礵纍碰蛹濟의 틀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啤獭的 鴘祉體制」를 실현하며, WTO 뉴라운드 협상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99년판 蛹濟襞岰는 구조조정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98년이후 최근까지의 정책추진상황을 포함시켰습니다. 蛹濟襞岰가 우리경제의 실상과 정책방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의 苜剄에 協助하여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2월

財政蛹濟鼸長 薕



목 차

제1장 1999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999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24 (종합정책과 고광희 사무관)

제2장 1999년의 거시경제 개관

1 세계경제동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연구위원, 경제분석과 이용재 사무관)

1. 개 요 / 30

2. 선진국 경제동향 / 31

(1) 미국 경제 / 31

(2) 일본 경제 / 32

(3) EU 경제 / 34

3. 신흥시장 경제 동향 / 36

(1) 중국 경제 / 36

(2) 아시아 경제 / 37

(3) 중남미 경제 / 38

(4) 러시아 및 동구권 경제 / 39

(Box 1) 신흥시장 금융위기의 배경과 전개과정 / 40

4. 국제금융 · 상품시장 / 41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41

(2) 국제상품시장 동향 / 43

② 국내경제동향(종합정책과 차영환 사무관)

1. 개 황 / 44
2. 경기 및 산업생산 / 46
3. 경제성장 / 47
4. 소 비 / 49
5. 투 자 / 50
6. 수출입 및 경상수지 / 51
7. 물 가 / 54 (물가정책과 이준균 사무관)

③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1. 98년 하반기 이후의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 56

(종합정책과 차영환 사무관)

(1) 대외여건 / 56

(2) 국내여건 / 57

2.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 61

(1) 통화의 신축적 운영과 금리인하 / 61 (금융정책과 김학수 · 김병환 사무관)

(2) 재정적자의 확대 / 65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구윤철 서기관)

④ 부문별 경기진작노력 강화

1. 소비 및 투자촉진 / 73(경제분석과 유광열 서기관)
2.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여건 조성 / 76 (조정2과 변영한 사무관)

(1) 추진배경 / 76

(2) 금융지원 확대 / 77

(3) 세제지원 / 79

(4) 규제완화 / 80
3.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 81 (경제분석과 나주범 사무관)
(1) 경상수지 추이 / 81
(2)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주요 시책 / 82

제3장 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

① 구조조정의 의의 및 기본방향 (정책조정과 유복환 서기관)
1. 4대 구조조정의 의의 / 88
2. 4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90
(1) 금융구조조정 / 90
(2) 기업구조조정 / 91
(3) 노동시장 구조조정 / 92
(4) 공공부문개혁 / 93

② 금융구조조정 (금융정책과 고경모 사무관, 금융감독위원회 김 진 사무관)
1. 의의 및 기본방향 / 95
(1) 금융구조조정의 의의 / 95
(2)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98
2. 금융구조조정 주요 추진실적 / 102
(1) 개 요 / 102
(2) 은행구조조정 / 103
(3) 제2금융권 구조조정 / 106
(4) 공적자금 / 111

(5) 제도의 개선 / 114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 115
(1) 개 관 / 115
(2) 금융구조조정의 세부 평가 / 116
4. 향후 추진과제 / 121
(1) 기본좌표 / 121
(2)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 122
(3) 제도 및 관행의 개선 / 123
(Box 2) 다른 외환위기국가보다 신용경색이 빨리 완화된 이유 / 126

③ 기업구조조정

1. 배경 및 추진방식 / 127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서경국)
(1) 추진 의의 및 배경 / 127
(2) 기본원칙 / 128
(3) 추진방식 / 129
2.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 130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홍 길)
(1) 기업구조조정 주요 추진실적 / 130
(Box 3) 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사례 / 135
(2) 기업구조조정 평가 / 148
3. 향후 과제 / 150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김철웅)
(Box 4) 현행 기업구조조정 방식과 과거 부실기업 정리방식의 차이점 / 157
(Box 5) 워크아웃의 핵심 구성요소 / 158
(Box 6)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배경과 전망 / 160
(Box 7) 구조조정 방식으로서 빅딜의 의의 / 162

(Box 8)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인 / 163

④ 노동시장 개혁 (조정1과 강종석 사무관)

1. 의의 및 기본방향 / 165
2.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 167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167
 (2) 노동기본권 신장 / 175
 (3) 노사정 합의체제의 구축 / 177
3. 향후 과제 / 185
 (1)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속적 제고 / 185
 (2) 노사정 합의체제의 지속 / 186
 (3)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충 / 187
 (4) 신노사문화의 정착 / 187

⑤ 공공부문 및 재정개혁 (기획예산처 김용진 서기관, 국고과 김정운 서기관)

1. 개 요 / 188
2. 공공부문개혁의 추진상황 / 190
 (1) 정부역할 및 기능의 지속적 정비 / 190
 (2)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 혁신 / 196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 199
 (Box 9) 과거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200
 (4) 정부출현 · 위탁기관 경영혁신 / 207
3. 재정개혁의 추진 / 210
 (1) 재정제도 개선 / 210

(2) 국가채무관리 / 221

(Box 10) 국가채무의 개념 / 223

제4장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의 보완

①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금융정책과 고경모 사무관)

1. 제2금융권의 현황과 문제점 / 226
2.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내용 / 229
 (1) 지배구조의 개선 / 229
 (2)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 wall)의 강화 / 230
 (3) 경영의 투명성 제고 / 231
 (4) 경영책임의 강화 / 232
3. 향후 과제 / 233

②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사무관)

1. 순환출자의 억제 / 235
 (1) 순환출자 현황 및 문제점 / 235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추진 / 236
2.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 237 (공정거래위원회 윤 헌 사무관)
 (1) 부당 내부거래 규제의 목적 / 237
 (2) 현행제도 / 238
 (3) 부당 내부거래 조사 추진 실적 / 239
 (4) 향후 추진 방향 / 241

③ 상속 · 증여세 과세강화 (재산세제과 남봉현 사무관)

1. 제도개편의 배경 / 243

2. 제도개편의 내용 / 244

(1)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 244

(2)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245

(3)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 247

(4) 금전의 무상대부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 247

(5) 결손법인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 248

(6)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율 인상 / 248

(7)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 / 248

(8) 재산평가방법의 개선 / 250

(9) 합병시 증여의제 관련 제도의 개선 / 250

제5장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 정책의 구현

①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추진

(조정1과 이승원 사무관)

1. 대책의 추진 필요성 / 254

2. 대책의 성격 및 기본방향 / 256

3. 대책의 내용 / 257

(1)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 257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 259

(3)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사업 / 260

(4) 기타 예산 외 지원사업 / 264
4. 중장기대책의 추진 / 265
(Box 11) 외환위기 이후 실업동향 / 266

② 생산적 복지구축 (조정1과 이승원 사무관)
1. 생산적 복지의 배경과 기본 철학 / 267
(1) 생산적 복지의 추진 배경 / 267
(2)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초 / 270
(Box 12) 생산적 복지의 개념 / 274
2. 생산적 복지의 주요 정책 방향 / 276
(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 276
(2)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 284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287
(4)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 292
(Box 1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 297

③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산업경제과 민경설 사무관)
1. 최근 중소 · 벤처기업 창업동향 / 298
2. 중소 ·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시책 / 300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 300
(2) 창업자금 지원 / 303
(3) 엔젤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 305
(4) 벤처 ·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 및 국제화지원 / 308

④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추진 (조정2과 김성욱 사무관)
1. 추진 배경 / 310
2.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추진 / 312
(1) 기본 방향 / 312
(2) 대책의 주요 내용 / 315
3. 향후 정책방향 / 320

⑤ 소비자권익 강화 (소비자정책과 윤성호 사무관)
1. 소비자정책의 발전과정 / 321
2. 최근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 322
(1)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반 구축 / 322
(2) 소비자 피해구제의 선진화 및 활성화 / 323
(3) 소비자 안전대책의 적극 추진 / 324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 325
(5)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자주적 역량 강화 / 326
3. 향후 정책과제 / 327

제6장 대외개방 및 국제경제변화에의 능동적 적응

①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의 제고
1. 외환시장의 안정 / 330 (외환자금과 김우찬 사무관)
(1) 외환수급 여건변화와 수급조절 대책 / 330
(2) 적정 환율수준 유지 노력 / 332
(3) 외화보유고 확충과 차입비중 축소 / 333

(4) 외채 및 대외채권 동향 / 333

(Box 14) 외국의 민간채권기관과의 외채협상결과 비교 / 335

2. 대외신인도의 제고 / 336 (국제금융과 최용호 사무관)

(1) E-Mail 서비스의 제공 / 336

(2) 코리아 포럼(KOREA FORUN)개최 : (98.9~10) / 337

(3) 외환자유화 추진 / 338

(4) 긴급자금의 조기상환 / 339

(5)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및 대외신인도 회복 / 340

(Box 15) IMF자금의 성격 및 그 운용 / 342

(Box 16) 변동환율제도와 외환자유화 / 343

②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경협총괄과 김광훈 사무관)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 / 345

(1) 세계적 추이 / 345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346

2. 최근 외국인투자 촉진 조치 / 347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 347

(2) 외국인토지 취득 전면 자유화 / 347

(3)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확대 / 348

(4) 외국환거래 자유화 / 348

3. 향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 349

(Box 17) 외자도입과정에서 우리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한다는 비판 / 350

③ 국제경제질서 변화에의 능동적 적응 (금융협력과 신경남 사무관)

1. 개 황 / 351

2.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의 적극 참여 / 352

(1) 개 요 / 352

(2) 주요 논의동향 및 우리 입장 / 353

3. G-20의 발족과 한국보고서 발표 / 355

4. 한·중·일 금융협력 강화 / 357

5. 마닐라 프레임웍, ASEAN+3, APEC 등 국제회의에의 적극 참여 / 358

6. 한·미 및 한·일 투자보장협정(BIT)의 추진 / 360

7.IMF/IBRD 쿼타증액 노력 / 361

제7장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산업경제과 홍두선 사무관)

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

1. 지식기반경제의 의의 / 364

2. 지식기반경제의 형성배경 / 365

3. 지식기반경제 도래의 현실적 의미와 도전 / 367

(Box 18)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는 해외 정책사례 / 369

② 지식기반경제실현을 위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1. 지식기반경제실현을 위한 우리의 여건과 잠재력 / 371

(1) 지식활용과정상의 비효율성 / 371

(2)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 / 374

2.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 376
(1) 지식경제의 정착을 위한 시장질서의 활성화 / 379
(2) 해외지식자산의 적극 유치를 위한 국제화 / 379
(3)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환경의 정비 / 380
3. 지식 · 혁신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 / 381
(1)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 381
(2) 과학기술인프라의 정비와 창의적 연구개발체제의 정착 / 383
(3) 정보화인프라 구축 / 384
(4) 지식집약적 산업구조의 정착 / 384
(5) 지식시장 활성화 / 386
4. 지식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386
(1) 정부 역할의 재정립 / 386
(2) 혁신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정비 방향 / 390

③ 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
1. 개인의 역할 : 지식근로자 / 394
2. 기업의 역할 : 지식경영 / 395
3. 정부의 역할 : 지식정부 / 395

제8장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종합정책과 김철주 서기관)

① 추진경위

② 작업의 개요

1. 의 의 / 401
2. 추진체계 / 403
3. 작업일정 / 404

③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1. 21세기 여건변화 전망 및 시사점 / 405
2.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 406
3.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 408
(Box 19) 뉴 밀레니엄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중장기비전 / 410

부 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일지 / 415
2. 주요 경제 통계 / 453

표 목차

표 2- 1 세계경제의 성장추이 ····· 30
표 2-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32
표 2- 3 EU 경제의 경제성장 전망 ····· 35
표 2- 4 주요 환율 현황 ····· 42
표 2- 5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 45
표 2- 6 산업활동 동향 ····· 47
표 2- 7 경제성장률 추이 ····· 48
표 2- 8 민간소비 및 도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 ····· 49
표 2- 9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 50
표 2-10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 51
표 2-11 수출 증감률 추이 ····· 52
표 2-12 수입 증감률 추이 ····· 53
표 2-13 물가동향 ····· 54
표 2-14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 ····· 56
표 2-15 주요 통화지표 추이 ····· 63
표 2-16 각국의 GDP대비 재정수지 현황 ····· 66
표 2-17 199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 67
표 2-18 1998년 4월이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양론 ····· 68
표 2-19 199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 69
표 2-20 199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 70
표 2-21 199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 71

표 2-22 1998~99년중 경제성장, 재정수지 및 국채발행 규모 ····· 72
표 2-23 최근의 민간소비 추이 ····· 74
표 2-24 최근의 설비투자 추이 ····· 75
표 2-25 토지 및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 77
표 2-26 주택자금 지원 현황 ····· 78
표 2-27 경상수지 추이 ····· 82
표 2-28 외화자금 지원실적 ····· 83
표 3- 1 제조업 부채비율 ····· 88
표 3- 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 102
표 3- 3 공적자금 지원내역 ····· 103
표 3- 4 7개 조건부승인 은행중 5개은행의 구조조정 추진경과 ····· 105
표 3- 5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 110
표 3- 6 공적자금의 조성 · 사용 · 잔액 현황 ····· 113
표 3- 7 금융관련제도 개선현황 ····· 114
표 3- 8 일반은행의 단위요소별 생산성 현황 ····· 120
표 3- 9 업종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ROE)현황 ····· 120
표 3-10 제2금융권의 당기순이익 ····· 120
표 3-11 구조조정의 마무리 계획 ····· 123
표 3-12 은행별 여신관행혁신 추진현황 ····· 124
표 3-13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현황 ····· 133
표 3-14 기업개선계획 확정업체에 대한 채무조정 현황 ····· 134
표 3-15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의 자구계획 및 실적 ····· 136
표 3-16 기업개선작업 대상계열의 계열사 정리현황 ····· 136
표 3-17 기업개선작업 대상외 계열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 137

표 3-18 6~64대계열의 기업개선작업 현황 ····· 138
표 3-19 기타계열 및 중견대기업의 기업개선작업 현황 ····· 139
표 3-20 5대계열의 구조조정계획 ····· 142
표 3-21 1999년 상반기중 5대계열 구조조정 추진현황 ····· 143
표 3-22 5대계열의 부채비율 현황 ····· 144
표 3-2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 146
표 3-24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 147
표 3-25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영현황 ····· 148
표 3-26 노동시장의 유연도와 실업률 ····· 166
표 3-27 1998년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현황 ····· 170
표 3-28 1999년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현황 ····· 171
표 3-29 근로자 파견사업 실적 ····· 174
표 3-30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행현황 ····· 182
표 3-31 경영진단 9개 분야 ····· 191
표 3-32 공기업 민영화 계획 ····· 202
표 3-33 공기업 매각수입 ····· 204
표 3-34 경영혁신 대상 모기업 ····· 205
표 3-35 출연 · 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 ····· 208
표 3-36 기금 통폐합 방안 ····· 211
표 3-37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는 기타기금 ····· 212
표 3-38 국가채무 추이 ····· 221
표 3-39 주요 국가별 국가채무 수준 ····· 222
표 4- 1 5대 대기업의 금융업종 영위회사 현황 ····· 226
표 4- 2 5대 재벌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 ····· 227

표 4- 3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 235
표 4- 4 부당내부거래 조사개요 ····· 240
표 4- 5 5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 240
표 4- 6 6대이하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 241
표 4- 7 공공사업자 내부거래 조사 ····· 241
표 4- 8 금융기관의 계열사 투자 · 대출한도 축소방안 ····· 242
표 4-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245
표 4-10 소득세법 개정사항 ····· 246
표 5- 1 1991년 이후 중산층의 변화 추세 ····· 255
표 5- 2 근로소득 공제한도 상향조정 내역 ····· 257
표 5- 3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258
표 5- 4 근로소득 특별공제한도 상향조정 내역 ····· 258
표 5- 5 봉급생활자의 연간 총 소득세부담 경감효과 ····· 259
표 5- 6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 264
표 5- 7 연도별 중소제조업 경기동향 ····· 298
표 5- 8 중소기업 창업 및 부도동향 ····· 299
표 5- 9 창업보육센터 설립계획 ····· 301
표 5-10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 302
표 5-11 중소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실적 ····· 304
표 5-12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실적 ····· 304
표 5-13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투자현황 ····· 307
표 5-14 수도권 집중현황 ····· 310
표 5-15 수도권 집중도 추이 ····· 311
표 5-16 조세감면을 받은 지방이전기업 현황 ····· 312

표 5-17 수도권 권역별 인구 및 산업집중비율 · 현황 ····· 313
표 5-1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317
표 5-19 전문서비스 분야별 상담 접수현황 ····· 324
표 6- 1 1998년 및 1999년의 외환수급 동향 ····· 331
표 6- 2 환율변동 추이 ····· 332
표 6- 3 외환보유 추이 ····· 333
표 6- 4 총대외지불부담 및 대외채권 현황 ····· 334
표 6- 5 E-mail 통신자 현황 ····· 337
표 6- 6 KOREA FORUM 개최 결과 ····· 338
표 6- 7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세 ····· 345
표 6- 8 우리나라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346
표 6- 9 한국의 경제규모대비 외국인투자 연도별 비교 ····· 349
표 7- 1 경제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 ····· 365
표 7- 2 지식투입지표 현황 비교 ····· 372
표 7- 3 지식성과지표 현황 비교 ····· 373
표 7- 4 우리나라 지식관련지표의 상대지수 ····· 374
표 7- 5 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 ····· 375
표 7- 6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376
표 7- 7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 389
표 7- 8 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별 역할과 책임 ···· 396

그림 목차

그림 2- 1 일본의 GDP 성장률 추이 ····· 33
그림 2- 2 98년이후 금리 추이 ····· 62
그림 3- 1 금융행정체계도 ····· 97
그림 3- 2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 101
그림 3- 3 한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 117
그림 3- 4 한국의 국가신용등급(S&P) ····· 117
그림 3- 5 한국의 국가신용등급(Moody´s) ····· 118
그림 3- 6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 119
그림 3- 7 공적자금의 투입 및 회수내역의 개념도 ····· 125
그림 3- 8 기업개선작업 추진절차 ····· 140
그림 3- 9 고용조정 절차 ····· 169
그림 3-10 근로자 파견제도의 개념도 ····· 173
그림 3-11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개혁 추진체계 ····· 197
그림 5- 1 기업지방이전대책의 기본방향 ····· 314
그림 7-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종합구도 ····· 378

Box 목차

(Box 1) 신흥시장 금융위기의 배경과 전개과정 ····· 40
(Box 2) 다른 외환위기국가보다 신용경색이 빨리 완화된 이유 ···· 126
(Box 3) 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사례 ····· 135
(Box 4) 현행 기업구조조정 방식과 과거 부실기업 정리방식의 ····· 차이점 ····· 157
(Box 5) 워크아웃의 핵심 구성요소 ····· 158
(Box 6)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배경과 전망 ····· 160
(Box 7) 구조조정 방식으로서 빅딜의 의의 ····· 162
(Box 8)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인 ····· 163
(Box 9) 과거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 200
(Box 10) 국가채무의 개념 ····· 223
(Box 11)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동향 ····· 266
(Box 12) 생산적 복지의 개념 ····· 274
(Box 1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 297
(Box 14) 외국의 민간채권기관과의 외채협상결과 비교 ····· 335
(Box 15) IMF자금의 성격 및 그 운용 ····· 342
(Box 16) 변동환율제도와 외환자유화 ····· 343
(Box 17) 외자도입과정에서 우리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한다는 비판 ···· 350
(Box 18)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는 해외 정책사례 ····· 369
(Box 19) 뉴 밀레니엄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중장기비전 ····· 410

1

제1장

1999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1999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외환위기의 극복

지난 2년동안 우리경제는 사상초유의 국가부도위험에 직면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금년 2월에는 실업자가 178만명에 달하는 등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회복과 위기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경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우리 경제는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97년말 한때 39억불에 불과하였던 가용외환보유고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치 등에 힘입어 IMF 차입금(SRF) 135억불을 전액 조기상환하고도 700억불이상으로 확충되었으며,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했던 국가신용등급도 금년초 투자 적격수준으로 회복된 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외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대외개방정책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금년 10월 현재 100억불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금년 9월말에는 총대외채권이 총외채를 상

집필자 : 종합정책과 고광희 사무관

회함에 따라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고, 9월말이후에도 순채권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

실물경제 또한 외환·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여 97년 수준을 거의 회복해 가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에 비할 때, 우리경제의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연초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으나,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 등에 힘입어 금년 경제성장은 작년의 5.8%의 감소세를 훨씬 뛰어넘는 9%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성장의 내용도 초기의 소비중심에서 점차 설비투자·수출증가로 전환되는 등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배율이 12배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온 것은 향후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물가는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이내에서 안정될 전망이며, 경상수지 또한 연간으로는 당초 목표를 상회한 250억불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위기이후 우리경제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실업도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힘입어 11월에는 97만명(실업률 4.4%)으로 축소되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의 성과

더욱이 우리경제가 이룬 성과는 이러한 양적인 지표상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하여 경제운영의 틀을 재정립하였다.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된 참여를 의미하며, 정부규제의 1/2축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기관 인사 및 대출에 개입배제 등으로 개혁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시장경제는 open market system을 의미하며, 대외개방정책, 금융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도 과거와는 다르게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혁에 따르는 고통도 최소화시켰다.

이러한 개혁 추진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경제 각 부문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대규모 공적자금(GDP의 14%인 64조원)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였고, 저금리 기조아래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대기업-직접금융, 중소기업-간접금융」중심의 선진국형 자금흐름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대출관행도 종래 담보·외형 위주에서 신용·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기업부문에서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화되고 수익성위주의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 상장사 순이익이 6.1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 수익성 향상을 통해서 벌써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회계공시의 강화 등 법과 제도의 개편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98년도에 도입된 고용조정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점차 산업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정부부문에서는 조직과 기능의 개편으로 행정규제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으로 경영 비능률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성과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할만큼 괄목할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자만하기에는 이르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는 있으나, 구조개혁이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

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지난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환 위기를 신속히 수습하고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일이었으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소득분배까지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구조개혁만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4차례의 실업대책과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빈곤층을 최대한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1/4분기 이후부터는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분배구조는 더욱 개선되겠지만, 정부는 사회안정 달성 없이는 원만한 경제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생산적 복지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아직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한편, 위기극복과정에서 파생된 과제이외에도 우리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뉴밀레니엄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알맞는 경제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뤄나갈 때, 우리경제는 선진경제로 도약함과 동시에 21세기를 우리의 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2장

1999년의 거시경제 개관

1 세계경제동향*

1. 개 요

세계경제는 97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위기의 발발을 계기로 나타난 성장 둔화세가 98년까지 이어져 9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쳤으나 99년 세계 경제는 98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위기국들의 경기회복과 선진국 경제의 호조로 3.0%의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1 세계경제의 성장추이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1)]
세계경제	2.4	3.7	3.7	4.0	4.2	2.5	3.0
선진국경제	0.8	2.8	2.1	2.3	3.2	2.2	2.8
개도국경제	6.2	6.4	6.0	6.5	5.7	3.3	3.5
체제전환국	-8.5	-8.8	-0.8	0.1	2.2	-0.2	0.8

주: 1) 1999년은 전망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1999.

지역별로는 선진국간 경제성장상의 불균형을 보여 미국은 98년에도 경기 팽창이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었으며, 일본은 98년 적극적인 재정확대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3/4분기에 경기하락의 속도가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연말에 경기침체가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집필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 연구위원 (국제거시금융실장), 경제분석과 이용재 사무관

그러나 99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의 호황이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EU 및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교역 증가율은 아시아 위기의 영향으로 97년의 9.9%에서 98년에는 4.6%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99년도에는 세계경제의 호조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98년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던 EU지역의 고실업 문제가 99년 들어 경기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는 98년에 주요 통화에 대한 약세 기조를 보였으나, 99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의 지속으로 강세를 시현하였다. 유가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확산 등으로 98년 40% 이상 하락했으나, 99년들어 3월 OPEC의 감산결정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 선진국 경제 동향

(1) 미국 경제

미국 경제는 91년 이후 8년째 지속되었던 성장세가 98년에 이어 99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미국의 실질GDP증가율은 전년에 이어 4.3%를 기록했으며, 9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3.7%, 1.9%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가 저물가 - 저실업률 기조하에서 장기호황을 지속한 것은 대체로 ① 재정적자 축소 및 선제적인 통화정책의 실시 ②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대외개방 확대 ③ 80년 중반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효율성 증대 ④ 첨단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산업의 급성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으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무역수지적자가 99년 상반기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1,496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상대적인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국제자본 유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내 민간저축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를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2-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

	1997	1998	1998 2/4	1998 3/4	1998 4/4	1999 1/4	1999 2/4	1999 3/4
실질GDP	4.5	4.3	2.1	3.8	5.9	3.7	1.9	5.5
개인소비지출	3.7	4.9	6.1	3.9	4.6	6.5	5.1	4.6
비주택고정투자	10.7	12.7	12.1	0.0	15.3	7.8	7.0	13.3
정부소비지출	2.3	1.7	6.0	1.3	2.9	5.1	1.3	4.2
GDP디플레이터	1.7	1.2	1.1	1.4	0.9	2.0	1.3	1.1

주: 1999년 10월 개정된 국민소득생산계정(NIPA)을 이용 · 산정한 경제지표임.
자료: 미 상무부

향후 성장둔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서비스 포함)는 98년 1,643억 달러에 달하여 97년의 1,047억 달러보다 57%가 증가하였으며 99년 상반기에도 적자규모가 1,181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편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26.4%의 급등세를 보여왔던 미국의 주가는 99년 3월 이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다우존스 지수는 1만 포인트를 돌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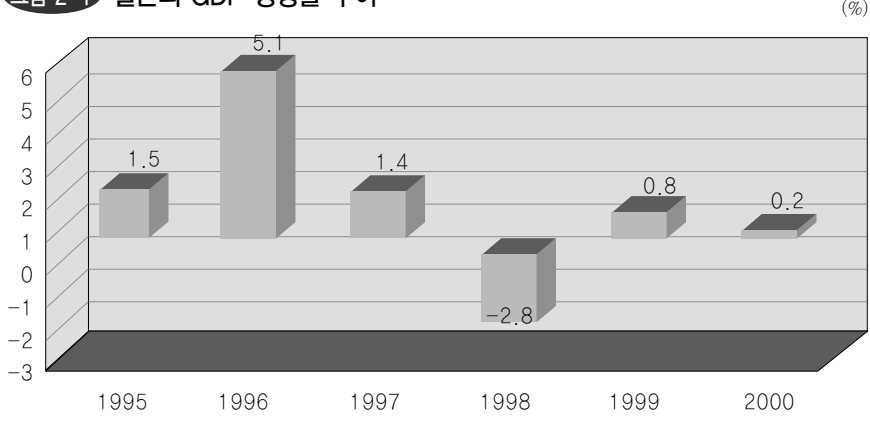
(2) 일본 경제

일본 경제에 그치는 등 91~98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보였으며 97년에는 23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0.7%)을 기록하였다. 98년에는 -2.9%로 전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99년 상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그 동안의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은 ① 금융자생력의 취약과 금융개혁의 지체 ② 성급한 긴축재정에 의한 내수위축과 디플레 발생 ③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실패와 노동의 고용경직성 등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98년 말부터 금융권 구조개혁,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확대(금리인하),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회복의 장애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98년 10월 금융안정화 관련 법안 성립 이후 주요 15개 은행에 99년 3월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형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의 조기 해결과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99년 2월이후 통화공급량 확

그림 2-1 일본의 GDP 성장률 추이



주: 1999~2000년도는 전망치임.

대를 통해 단기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유도해 나갔다. 또한, 총리직속기관으로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하여 과잉설비, 고용의 조기 해소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금리하락으로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 유입되어 99년 5월초 닛케이 주가지수는 14개월만에 1만 7,000포인트를 상회하였고, 등락을 거듭하던 엔화의 대미환율도 98년 10월 이후 99년 상반기까지 120엔대 전후에서 비교적 안정되었다.

전반적으로 99년 들어 전년도의 두 차례(4월과 11월)에 걸친 긴급경제대책에 의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자들의 일본 진출쇄도, 아시아 경제의 조기회복등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9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1.5%, 1.0%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서서히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EU 경제

96년 이후 활성화된 EU 경제는 98년에 2.7%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8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금융불안의 여파로 EU의 성장은 둔화세로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99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1)]

98년 여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중남미지역에서의 금융위기 발발로 EU의 惱개도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98년 4/4분기 이후에는 EU 경제의 기반

1) EU 회원국 15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15개국임.

인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9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5%와 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민간소비와 고정투자의 역할이 컸는데, 98년 4/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7%와 0.4% 증가에 그쳤던 민간소비와 고정투자는 99년 1/4분기에는 0.7%와 1.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표 2-3 EU 경제의 경제성장 전망

(%)

	1998	1999	2000
Deutsche Bank	2.7	2.1	3.1
IMF	2.7	2.0	2.7
OECD	2.7	2.1	2.8
DRI	2.6	1.9	2.6
WEFA	2.8	2.0	2.8

자료: Deutsche Bank, Economic & Financial Outlook, October 19, 19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1999.
OECD,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Edition, November 1999.
DRI,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d, 4th Quarter 1999.

이처럼 유로권 경제가 성장둔화에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유로권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99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독일, 프랑스와 여타 회원국간 경기순환 격차도 좁혀지는 등 단일통화권 경제의 탄력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98년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2.2%, 3.4% 성장함).

3. 신흥시장 경제 동향

(1) 중국 경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8년에 7.8%를 기록하였고 99년에 들어서는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8.3%, 7.1%를 기록하였다. 최근의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은 중국 정부가 소비 부진, 실업률 증가, 사회보장제도 축소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사업 등 정부부문의 투자를 증대한 데 기인하고 있다.

수출부문은 98년에 이어 99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상반기, 전년동기대비 4.6% 감소)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논란이 많은 인민폐 평가절하[2] 대신 수출증진책으로 수출품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물가수준은 기업의 과잉생산과 민간소비 위축에 의한 공산품 가격 하락 등 디플레이션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8년 -0.8%, 99년 상반기에 -1.8%를 기록하였다.

한편 경기위축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이 증가하여 98년 도시실업률은 공식적으로 3.5% 정도에 불과하나 정리해고 인원을 포함하면 8%(약 1,500만명)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도 감소하여 98년에는 전년 대비 0.8% 증가한 456억 달러에 그쳤으며, 99년 상반기에는 85.7억달러로 9.2% 감소하였다. 한편 99년 11월 중국은 미국과의 WTO 가입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중국의 무역 투자장벽과 업종별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인민폐를 평가절하 하지 않는 이유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WTO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환율안정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아시아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평가절하의 수출증대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2) 아시아 경제

98년 동남아 경제는 경제위기 발생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인 -6.8%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9년 2/4분기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대외 경제여건의 호조로 동남아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동남아 주요국은 99년 당초 예산보다 높은 2~5%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1.5%의 경제성장을 보인 싱가포르는 견실한 경제구조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99년에는 5%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을 겪은 태국과 정치·사회적 혼란이 병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을 바탕으로 각각 98년 -7%, -6.3%, -13.2%에서 99년에는 3%, 4%, 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 활발한 FDI 유입 등으로 90년대 초반이후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나, 98년에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여파에 따라 경기침체기를 겪었다.[3] 그러나 99년에는 이들 국가들의 ASEAN 가입에 따른 성장파급효과, 주변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 농작물 작황 호조 등으로 98년보다 다소 높은 3.8~5.5%의 성장세를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7년 미얀마와 라오스의 ASEAN 가입에 이어 99년 4월 캄보디아가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동남아 10개국은 67년 ASEAN 출범 이후 32년만에 하나의 동남아를 이루게 되었다.

3) 인도차이나 국가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1998년에 각각 4.0%, 4.0%, 0%, 4.0%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3) 중남미 경제

98년 중남미는 아시아 경제위기, 세계경제 침체, 역내 주요국들의 긴축정책 실시 및 경제위기 발생가능성 고조, 투자위축, 기상이변 등으로 97년의 5.2%보다 크게 위축된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99년 경제성장률은 연균 브라질 경제위기에 이은 연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확산과 정치적 불안정성 및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경제는 98년 0.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나, 99년 3월 IMF와의 제2차 합의를 기점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제고에 힘입어 인플레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브라질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고 있다. 99년 들어 농목축 및 광업 생산 증가에 따라 1/4분기와 2/4분기에 1.2%, 0.9%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는 98년에 4.8%라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했으나 신흥시장 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의 침체속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99년 상반기에는 미국경제의 호황과 적극적인 채무구조조정, 금융개혁 단행 등 경제기초여건개선을 바탕으로 2.5% 성장을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98년 경제성장률은 브라질 위기의 영향으로 97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4.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다. 99년에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외채누증 우려에 대한 여파로 상반기에 4%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를 보였다.

(4) 러시아 및 동구권 경제

러시아 경제는 98년 실질GDP성장률 -4.8%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99년에는 루블화의 가치하락과 국제시장에서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감소세가 차츰 둔화되는 양상(99년 상반기 -0.7%)을 보였다.

98년 8월 금융·외환위기의 발발로 물가상승률은 98년에 84%에 이어99년 3/4분기까지 31%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환율은 금융위기 직전 6.2루블이었으나 99년 4월에는 25루블을 상회하였다.

수출입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급등으로 수입감소세가 두드러져 무역수지가 확대되었다.

또한 러시아 금융위기는 98년 말부터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인근 CIS지역으로 전염되어 이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불안을 초래하였다.

98년 동구의 경제성장은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제위기 영향으로 2.4%로 나타났으나 99년에는 이보다 낮은 1.6% 전후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8월 러시아 경제위기와 99년 3월말 코소보(Kosovo) 사태는 동구경제의 이분화를 촉진하였다.

즉,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개혁선도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발틱국가들이나 개혁후발국인 발칸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중·동구 개혁선도국들도 국내수요 둔화와 EU의 경기둔화, 그리고 코소보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의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Box 1 신흥시장 금융위기의 배경과 전개과정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 95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제 기초여건이 악화된 상황하에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되어 금융시장 불안 지속

- 97년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의 대거 이탈과 이로 인한 루블화 가치절하 압력증대로 외환위기 상황전개
- 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와 더불어 대내외 부채에 대한 부분적인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채권시장의 정지 등 긴급조치 발동

⇒ 이러한 조치는 즉각 환율의 급등과 금융권의 마비를 초래하였고 전체 경제활동이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브라질 금융위기〉

■ 브라질은 재정적자(GDP의 8% 상회) 및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선노력이 실패하고 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신흥시장 혼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급격한 외자유출을 겪어왔음

- 99년 1월 6일 미나스제라이스 주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상환 중지를 선언
- 이는 20%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헤알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켜 급격한 외자유출로 이어짐
 - 이에 브라질 정부는 1월 13일 전격적인 헤알화 평가절하 단행
 - 1월 14일 추가적인 평가절하 우려로 하루만에 18억달러의 외자유출

⇒ 결국 브라질정부는 1월 15일 헤알화의 방어를 포기하고 사실상 변동환율제를 채택.

* 브라질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정운영의 취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있었음

4. 국제금융·상품시장

(1) 국제금융시장 동향

98년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99년에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우선 미국 장기금리(TB 30년만기)는 8월의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99년에는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데 따라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본 장기금리(JGB 10년만기)는 98년 3/4분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 기간중의 상승요인은 무디스榜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및 일본 정부의 국채발행 계획에 따른 공급물량 우려 등 99년에는 2월 이후 실시된 제로금리정책에 따라 1%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면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유로금리(독일 국채수익률 기준)도 98년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연말에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말 상승은 미국의 금리인하와 이에 따른 선진국들의 금리인하 동조, 그리고 G7의 국제금융위기 탈피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10.30) 등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의 혼조세가 다소 진정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99년에는 미국금리와의 동조현상이 뚜렷했으며, 2/4분기 이후 경기회복 및 물가불안에 대한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미 달러화는 98년 상반기에 엔화 및 마르크화에 비해 강세를 보였으나 러시아 모리토리엄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다. 99년 상반기에는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미 달러화는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가시화에 대한 자본이동에 따라 약세로 반전되었다.

일본 엔(緤화)는 9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본경제의 경제기초여건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에 따라 강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99년들어 미·일간의 금리차이 및 경제력 격차에 따라 다시 약세로 반전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일본경제에 대한 기대 및 외국인의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다시 강세로 반전되었다.

표 2-4 주요 환율 현황

구 분	1998	1999				
		1/4	2/4	3/4	4/4	
					Morgan	WEFA
엔(緤)/달러	130.8	116.6	120.8	113.5	108.0	121.7
달러/유로	1.16	1.12	1.06	1.05	1.09	1.12

주 : 1) 기간평균 환율
2) 유로화의 98년 환율은 연말의 1유로당 1,1667달러임.
자료 : DRI. World Makets Report, 각호.
J.P. Morgan, World Financial Markets, Fourth Quarter 1999.
J.P. Morgan, Global Markets Outlood and Stategy, Sep. 1999.
WEFA, World Economic Outlook, Third Quarter 1999.

99년 1월에 출범한 유로화는 상반기에 약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하였다. 유로화는 도입초기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7월중 한때 1.0달러/유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만큼 예상외의 약세를 지속하였다. 유로화의 약세는 미국경제에 비교되는 부진한 유로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기조 유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확산 및 물가불안 예방을 위한 통화정책의 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유로화 강세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 국제상품시장 동향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국제 곡물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옥수수, 소맥, 대두, 쌀 등 주요 곡물의 양호한 작물성장 조건으로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구소련, 중남미 등지로 확산되면서 곡물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9년 곡물가격은 90년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99년 7월 옥수수가격은 부셀당 203.3센티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소맥의 가격도 동월 부셀당 263.8센티로 1월 대비 4% 하락하였다.

국제 비철금속가격은 97년 하반기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대폭적인 수요감축과 비철금속 생산업들의 증산으로 인한 공급과잉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99년초까지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나, 99년 3월 들어서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99년 비철금속가격은 90년대 들어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나, 3월이후 상승세로 반전된 결과, 7월 현재 동(銅) 가격은 2월대비 17% 상승한 톤당 1,609달러, 알루미늄의 가격은 2월대비 18% 상승한 톤당 1,384달러를 각각 기록하였다.

국제유가는 97년 후반부터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확산과 97년말 OPEC의 98년 생산상한선 10% 확대 등을 계기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98년말에는 연초에 비해 40% 이상 폭락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99년 3월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추가감산 결정을 계기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그 결과 99년 8월 현재 최저수준을 기록한 지난 2월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98년말 한때 한자리수대에 머물던 브렌트유는 8월 현재 20억달러를 넘어섬으로 2월 대비 약 2배 상승하였다.

2 국내경제동향*

1. 개 황

98년중 우리경제는 97년말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신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실시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도 4/4분기이후 점차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급격히 위축되어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7.3% 감소하였으며 생산자제품출하도 7.1%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급감하여 제2차 석유파동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5.8%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실업률도 크게 늘어나 연간 6.8%를 기록했다. 물가도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연초 높은 환율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7.5% 상승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의 급감 등으로 사상최대인 40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가용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본지원 및 외국환평형채권의 발행 등으로 12월말 485억달러로 늘어났다.

99년에 들어서는 98년 하반기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저금리와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실업대책 등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의 운용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이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

* 집필자 : 종합정책과 차영환 사무관

제성장률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1/4~3/4분기중 9.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물가도 매우 안정되어 소비자 물가가 1~11월중 0.8% 상승하는데 그쳐 65년이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도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6월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어 1~10월중 21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12.3일 현재 701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회복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과 대외개방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과 신축적인 재정정책에 기인한다. 구조개혁노력으로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되면서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기업 및 소비자들의 경기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금리인하, 그리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침체된 수요를 회복하도록 하였다.

표 2-5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1997	1998	1999.1/4	2/4	3/4
경제성장률(실질GDP, %)	5.0	-5.8	4.5	9.9	12.3
- 민간소비(%)	3.5	-9.6	6.2	9.1	10.3
- 건설투자(%)	2.3	-10.2	-13.7	-8.5	-10.0
- 설비투자(%)	-8.7	-38.5	12.9	37.2	48.0
경상수지(억달러)	-81.7	405.6	61.9	63.8	66.4
- 수출(통관, 억달러)	1361.6	1323.1	302.6	357.8	351.5
증가율(%)	5.0	-2.8	-6.1	2.6	15.3
- 수입(통관, 억달러)	1446.2	932.8	255.7	287.4	297.1
증가율(%)	-3.8	-35.5	8.1	22.1	38.4
소비자물가상승률(%)	4.5	7.5	0.7	0.6	0.7
가용외환보유고(억달러)	88.7	485.1	544.5	604.3	654.8

2. 경기 및 산업생산

98년 산업생산은 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7.3% 감소했다.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기타 운송장비를 제외하고 화학제품, 사무용회계기구,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내수위축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음식료품,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등 경공업제품도 내수 부진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생산자제품출하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를 제외한 전 산업이 감소하여 98년중 7.1%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공업이 21.5% 감소했고 제조업은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7.2% 감소했으며, 전기·가스업도 1.7% 감소했다.

한편 제조업가동률은 98년 평균 68.1%로 전년에 비해 10.9%p. 하락했다. 그러나 98년 8월 산업생산지수(95=100)가 97.7을 기록하고, 생산자출하도 100.0을 기록하여 연중 최저치를 나타낸 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이후의 경기회복세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98년 9월이후 전월대비 산업생산, 생산자출하 등 산업활동 관련 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99년에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0월중 산업생산은 반도체, 사무회계용기계,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과 중공업의 대다수 업종에서 수출과 내수가 증가한 가운데 21.8%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출하도 수출용과 내수용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76.8%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재고는 98년 17.3% 감소한후 99년 10월말 5.7% 감소하여 재고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표 2-6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1997	1998	1999			
			1/4	2/4	3/4	10월
산업생산	5.3	△7.3	12.5	22.7	26.8	30.6
(중공업)	9.3	△4.8	16.6	27.5	31.9	34.7
(경공업)	△6.3	△16.0	△0.1	9.5	12.0	18.4
출하	6.8	△7.1	14.1	24.4	27.7	33.2
(내수용)	1.2	△23.0	8.8	20.6	26.1	28.0
(수출용)	22.2	28.5	21.9	29.7	29.7	39.5
재고(기말)	5.2	△17.3	△18.5	△16.7	△9.8	△5.7
제조업평균가동률	79.0	68.1	71.3	76.8	79.5	78.5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

3. 경제성장

98년중 국내총생산(GDP)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성장률 둔화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5.8%의 감소를 기록하여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4~3/4분기중에는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4/4분기중에는 내수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감소세가 축소되었다.

99년 들어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4분기중 4.5% 성장

한데 이어 2/4분기에 9.9%의 3/4분기에 12.3% 성장하여 1/3~3/4분기 중 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내총생산 절대규모면에서도 외환위기전인 97년 동기수준을 넘어섰다.

계절조정후 전분기대비 성장률을 보면 1/4분기중 4.1% 성장하고, 2/4분기에는 3.9%, 3/4분기에는 3.0% 성장을 하고 있어 점차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요인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성장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7 경제성장률 추이 (95년 가격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997	1998	1999			
			1/4	2/4	3/4	1/4~3/4
○국내총생산(GDP)	5.0	△5.8	4.5	9.9	12.3	9.0
(계절조정후 전기대비)	-	-	4.1	3.9	3.0	-
-최종소비	3.2	△8.2	5.0	7.3	8.4	6.9
민간소비	3.5	△9.6	6.2	9.1	10.3	8.5
정부소비	1.5	△0.1	△1.7	△2.3	△1.3	△1.7
-총자본형성	△7.5	△38.6	22.6	30.3	35.1	29.8
총고정자본형성	△2.2	△21.1	△4.3	4.9	6.9	2.8
건설투자	2.3	△10.2	△13.7	△8.5	△10.0	△10.5
설비투자	△8.7	△38.5	12.9	37.2	48.0	32.3
재고증감(조원)	△4.2	△28.0	△4.4	△3.7	△3.2	△11.3
-재화 및 서비스	21.4	13.3	10.3	15.1	22.2	15.9
-재화 및 서비스	3.2	△22.0	27.0	26.9	32.0	28.6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1998, 1999.1/2,2/4.3/4분기 각호

4. 소 비

98년중 소비는 실업률 상승, 임금 하락, 자산가치 하락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9.6% 감소하여 GD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99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임금소득과 주가의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승용차, 휴대전화, PC, 가구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1/4~3/4분기중 8.5% 증가하고 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소비의 빠른 회복은 98년 침체에 따른 반등적 성격(pent-up demand)도 있으나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소비회복관련 정책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의 완화, 경제성장 회복에 따른 소득증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Wealth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8 민간소비 및 도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

(%)

	1997	1998	1999			
			1/4	2/4	3/4	10월
민간소비	3.5	△9.6	6.2	9.1	10.3	-
(내구재)	0.6	△33.9	28.9	42.8	55.3	-
(준내구재)	△3.8	△26.4	△6.6	7.9	11.9	-
(비내구재)	2.6	△8.9	5.6	4.6	4.6	-
(서비스)	6.6	0.0	5.2	6.3	7.7	-
도소매판매	3.2	△12.7	6.0	10.8	16.8	15.7
내수용소비재출하	△1.8	△21.4	13.1	17.1	23.8	26.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5. 투 자

98년중 설비투자는 고금리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신용경색,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계류,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38.5% 감소하였다. 99년 들어 설비투자는 98년 하반기이후의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경기회복과 세계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운수장비와 기계류투자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1/4분기중 12.9% 증가로 전환한데 이어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어 1/4~3/4분기중 32.2% 증가했으며 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표 2-9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95년 가격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997	1998	1999			
			1/4	2/4	3/4	10월
설비투자	△8.7	△38.5	12.9	37.2	48.0	-
(기계류)	△7.3	△35.3	3.8	32.3	37.3	-
(운수장비)	△13.5	△50.0	49.7	66.0	96.5	-
국내기계수주	3.3	△30.5	16.9	38.5	22.1	24.2
기계류수입	△22.8	△52.9	7.9	20.2	45.5	58.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투자는 98년중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건물건설 투자가 대폭 감소하고 사회간접시설 등 토목투자도 감소하여 10.2% 감소했다. 98년에 들어서도 건설투자는 지난 해 건축허가면적의 55.0%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상반기중 재정의 조기 지출에 따른 토목투

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물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어 1/4~3/4분기중 10.5% 감소했다. 2/4분기이후 건축허가 면적과 건설수주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점차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0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95년 가격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997	1998	1999			
			1/4	2/4	3/4	10월
건설투자	2.3	10.2	△13.7	△8.5	△10.0	-
(건물건설)	△3.3	△13.9	△30.3	△29.7	△26.5	-
(기타건설)	△10.2	△5.8	27.9	16.6	7.3	-
건설허가면적	△0.4	△55.0	△45.8	22.4	76.6	277.7
국내건설수주	5.4	△42.5	△45.3	27.5	13.4	33.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편 재고투자는 98년중 28조원이 감소하여 전체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마이너스 5.6%에 달하였다. 99년 1/4~3/4분기중에도 재고투자는 11.2조원이 감소하여 아직도 재고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6. 수출입 및 경상수지

수출(통관기준)은 98년중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동아시아의 경기침체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2.8% 감소한 1,323억달러를 기록하여 58년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수출물량은 16.9% 증가했으며 수출단가는 16.9% 하락했다.

99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이 하반기이후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엔/달러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자동차,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1~4월중에는 전년도 금모으기 금수출(약 22억달러)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5월에 증가로 전환한 후 6월이후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1~11월중 7.5% 증가하였다. 수출물량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이 크게 증가하여 1~10월중 13.5% 증가하였으며 수출단가는 하반기이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반도체단가의 안정 등으로 하락세가 둔화되어 1~10월중 8.5%하락에 그쳤다.

표 2-11 수출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억달러, %)

	1997	1998	1999				
			1/4	2/4	3/4	10월	11월
수출금액(통관기준)	1,361.6	1,323.1	302.6	357.8	351.5	134.4	142.6
(증가율)	5.0	△2.8	△6.1	2.6	15.3	26.4	22.2
(물량증가율)	24.9	16.9	5.1	13.1	22.3	-	-
(단가증가율)	△15.9	△16.9	△10.7	△9.2	△5.7	-	-
중화학제품증가율	4.4	△2.2	3.4	6.5	23.0	29.9	-
반도체	14.3	△2.4	13.4	12.3	13.5	13.6	-
철 강	16.4	11.8	△16.5	△16.6	△0.7	4.8	-
승용차	4.6	△5.4	7.7	16.5	52.4	△9.7	-
기계류및정밀기기	8.1	△1.2	12.2	16.0	16.3	17.6	-
경공업제품증가율	3.3	△3.7	△20.1	△5.4	△6.7	10.5	-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수입(통관기준)은 98년중 극심한 내수침체와 수입단가 급락의 영향으로 35.5% 감소한 93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물량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21.0% 감소하였으며 수입단가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원유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18.4% 하락했다. 수출단가와 수입단가

가 모두 하락했으나 수입단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교역조건은 95년이후 지속적인 악화추세에서 소폭 개선되었다.

99년에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수증가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증가, 원유산유국의 감산합의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1~11월중 28.0% 증가했다. 용도별로 자본재 수입은 수출 및 설비투자회복으로 전기·전자부품 및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자재 수입은 99년 초까지 수요부진과 가격안정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2/4분기이후 유가 급등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소비재 수입도 내수경기 회복과 지난해 극심한 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10월중 수입물량은 29.6% 증가했으며 수입단가는 5.6% 하락했다.

표 2-12 수입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1/4	2/4	3/4	10월	11월
수입금액(통관기준)	1446.2	932.8	255.7	287.4	297.1	113.5	117.4
(증가율)	△3.8	△35.5	8.1	22.1	38.4	48.4	41.0
(물량증가율)	1.5	△21.0	23.4	29.0	36.8	-	-
(단가증가율)	△5.3	△18.4	△12.3	△5.3	1.2	-	-
소비재증가율	△1.9	△39.5	26.7	18.1	4.3	14.3	-
원자재증가율	1.2	△34.3	△4.2	17.3	38.4	53.6	-
자본재증가율	△10.1	△35.5	20.0	29.7	51.5	53.1	-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경상수지는 98년중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416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낸 데 힘입어 406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99년 1~10월중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었고 경기회복에 따라 서비스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흑자규모가 213억불로 축소되었다.

7. 물 가*

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5% 상승하여 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장 큰 요인은 외환위기로 환율이 큰 폭으로 절하된 데 기인한다. 수입의존도가 큰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교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도 연쇄적으로 상승하였다. 더욱이 기상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

표 2-13 물가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997	1998	1999			
			1/4	2/4	3/4	1월~11월
소비자물가	4.5	7.5	0.7	0.6	0.7	0.8
· 농축수산물	3.8	6.1	9.2	8.2	5.7	7.4
· 공업제품	4.3	11.2	△0.9	0.0	1.2	0.4
· 공공요금	5.1	9.5	3.3	1.9	1.1	2.1
· 집 세	3.2	0.6	△3.2	△4.4	△4.7	△4.1
· 개인서비스	5.3	5.3	△1.2	△1.5	△0.8	△1.1
생산자물가	3.9	12.2	△3.5	△3.3	△1.9	△2.3

* 집필자 : 물가정책과 이준균 사무관

축수산물도 여름철 수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98년중 생산자물가도 환율절하 영향으로 연평균 12.2% 상승하였다.

99년중 소비자물가는 유례없는 안정세를 보였다. 99년 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쳐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및 공공요금 부문이 상승하였고, 집세와 개인서비스요금 부문은 하락하였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1월~11월중 전년동기대비 7.4% 상승하여 금년도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것은 환율, 임금 등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나타나지 않은데 기인한다.

환율은 98년 1398.9원/$에서 99년 1월~11월기간중 1194.1원/$로 큰 폭으로 절상되면서 수입물가는 1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3.6%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큰 공산품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석유류는 OPEC의 산유량 감축 영향으로 국제원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환율절상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명목임금은 지난해 임금하락에 대한 반등과 경기회복영향으로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하였으나, 이는 주로 생산성향상과 밀접한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상승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1. 98년 하반기이후의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1) 대외여건

브라질의 금융위기 사태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정책공조를 통해 안정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은 97년이후의 불안한 모습에서 점차 안정되어 갔다.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정책공조 차원에서 인하되었던 국제금리가 세계경제 회복의 진전으로 점차 상승되고 있으며 각국의 환율의 불안정도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98년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지

표 2-14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

(%)

	1998			1999			
	3/4	4/4	연간	1/4	2/4	3/4	연간(전망)
· 미국	3.8	5.9	4.3	3.7	1.9	5.5	3.9
· 태국	-13.6	-5.8	-10.0	0.8	3.5	8.2	4.5
· 말레이시아	-10.9	-10.3	-7.5	-1.3	4.1	12.0	6.8
· 인도네시아	-16.1	-17.7	-13.2	-9.4	1.8	0.5	0.0
· 싱가포르	-1.9	-1.1	0.3	0.6	6.7	6.7	5.3

자료 : S&P(1999.11)

* 집필자 : 종합정책과 차영환 사무관

속하고 EU경제도 유로화 출범이후 성장둔화를 경험하였으나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본은 98년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 감소를 보였으나 99년에 들어 완만한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등 장기적 불황에서 완만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회복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99년에 들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다소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98년 하반기이후에는 점차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2) 국내여건

98년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 되면서 11월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월이후 상승세를 보여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여전히 극심한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통화정책의 저금리기조의 전환과 환율의 하향안정추세,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완화등에 기인하여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설비투자도 극히 부진한 상태하에서 금리하락 및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 그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건설투자는 건축허가면적의 대폭적인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건물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수출은 2/4분기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강세 및 선진

국의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자본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상수지는 수입급감의 영향으로 매월 20~30억달러이상의 흑자세가 지속되어 연간 40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수출단가의 하락보다 수입단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95년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 및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실업률이 7%수준을 유지하여 연간 6.8%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임금은 2/4분기중 1.2% 하락한데 이어 3/4분기에도 8.1% 하락하여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4/4분기에는 0.4% 하락에 그쳐 연간 2.5%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초 환율상승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5%대까지 상승했다가 3월이후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안정, 국내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전월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시장도 하반기 들어 안정되기 시작하여 1월중 평균 28.4%에 이르던 콜금리가 8월에는 9%대로 하락하여 한자리수로 진입한 뒤 12월에는 6%대로 낮아졌고 회사채금리도 1월에 평균 23.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10월에는 10%로 낮아졌고 12월에는 8%대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 1/4분기 3.6% 감소한데 이어 2/4분기, 3/4분기에도 각각 7.2%, 7.1% 감소하였고 4/4분기에도 5.3% 감소하여 연간 5.8% 감소하였으나 계절조정후 전기대비로 보면 1/4~3/4분기까지는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4/4분기에는 1.9% 성장으로 전환되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98년 하반기에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안정되고, 저물가-저금리기조를 바탕으로 실업대책 등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

되면서 3/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9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98년 하반기이후의 저금리-저물가기조를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은 98년 11월 상승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4분기 12.5%, 2/4분기 22.7%, 3/4분기 26.7%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8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수도 주가상승, 임금상승과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1/4분기에 증가세로 반전된 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98년의 건축허가면적의 대폭적인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4분기이후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미국경제의 호조 지속과 아시아 및 EU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6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입도 경기회복 및 환율하락 등에 따라 자본재와 원자재, 소비재가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수입증가와 외채이자 지급, 서비스수지의 적자 전환등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10월 현재 213억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회복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영향으로 2월 이후 실업율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10월에는 실업률이 4.6%로 낮아졌으며 임금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에 힘입어 대기업을 중심을 증가하여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의 영향 등으로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0.8%상승에 그쳐 98년 하반기이후의 물가안정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은 98년 하반기이후의 신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은행의 대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화량은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과 경기의 급속한 회복을 반영하여 본원통화 및 M2 증가율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유동성을 나타내는 M3 증가율이 연초의 13~1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9월에는 9%대로 낮아지고 있다. 금리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용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3/4분기중에는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회사채를 중심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우그룹에 대한 Workout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콜금리는 3월이후 월평균 4%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채 금리는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10월중 월평균 10%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8~9%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를 바탕으로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4.5% 성장하여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2/4분기 9.9%, 3/4분기 12.3% 성장률을 기록하여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 절대수준면에서도 3/4분기중 97년 동기수준을 앞지르고 있어 외환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계절조정후 전기대비 증가율을 보면 1/4분기중 4.1% 성장한 후 2/4분기 3.9%, 3/4분기 3.0% 성장하여 전년도 급감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99년중 우리경제는 98년 4/4분기이후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잠재성장 경로로 복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1) 통화의 신축적 운영과 금리인하*

98년중 우리 경제는 전년말 발생한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연초 이래 상당기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하에 외화유동성 확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뒤이어 실물경제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위기상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IMF이후 정부는 환율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기조는 98년의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99년의 경기회복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변경[1]하여 98년말에는 종전에 12%수준이던 콜금리를 30%수준까지 인상하였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고금리 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부도증가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환율이 다소 안정되고 외환사정이 개선되어 감에 따라 4월이후부터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 금리를 조심스럽게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98.7월에는 콜금리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3년만기 회사채도 98.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수로 하락하였다.

집필자 : 금융정책과 김학수, 김병환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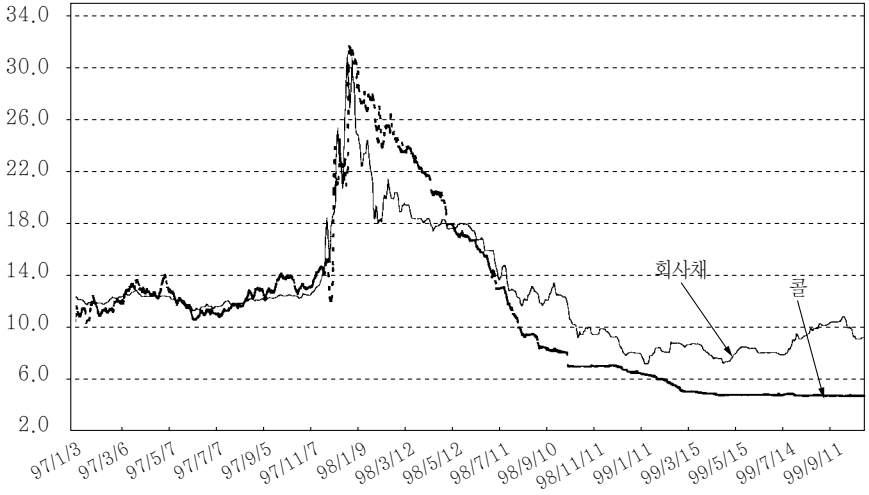
1) IMF의 고금리 정책은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한 외자유입, 저축증대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물가안정을 통한 통화의 대외가치 안정, 차입비용 상승을 통한 외환투기 억제 등의 경로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99년 들어서도 이러한 금리정책 기조는 지속되었다. 99.4월부터 콜금리가 4%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장기금리도 한자리수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에도 기인하겠으나,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차입위주의 경영패턴이 점차 수익위주의 경영으로 전환되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99.7.19일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우가 발행한 채권을 많이 보유한 투신사가 부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투신사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채권을 시장에 팔게 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채권금리 상승)하였다.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우문제를 처리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2)]

그림 2-2 1998년이후 금리 추이

(%)



2) 7.25일, 8.26일, 9.14일, 10.4일, 11.4일에 걸쳐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으며, 11.4일 대우 워크아웃, 투신사 경영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상당히 해소되었다.

『11월 대란설』등이 제기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팽배하였으나 11월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장기금리는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신사에서의 자금이탈이 계속됨에 따라 상승압력이 지속되었다.

한편, 98년이후 통화는 금융권간 자금이동의 확대로 통화총량지표간의 증가율 괴리현상이 뚜렷해 지는 특징을 보였다. 먼저 97.12월중 21.1%에 달하였던 M2 증가율(평잔기준)은 98년초이래 하락세를 보여 4월중 13.1%까지 낮아졌으나 5월부터는 금전신탁의 일부가 은행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12월중에는 21.5%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은행의 전체 예수금을 포괄하는 MCT+(MCT+표지어음매출+환매조건부채권매도+금융채)는 증가율이 전년 12월의 18.5%에서 98년 12월 0(蹋)%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금전신탁의 상당부분이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으로 이동한 데다 은행이 자금사정 호조로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고금리 단기시장성 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을 억제한 데에 크게 기인하였다. 한편 제2금융권 예수금까지 포괄하는 가장 광의의 지표인 총유동성(M3)은 은행대출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회사채 및 CP 매입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로 증가율이 12월 평잔기준으로 전년의 15.9%에서 12.4%로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표 2-15 주요 통화지표 추이 (전년동기비 평잔 증가율)

(%)

	1995	1996	1997	1998	1999	
					6월	9월
M2	13.7	17.8	21.1	21.5	27.1	26.6
MCT	22.0	18.6	14.7	2.6	5.9	10.3
MCT+	..	..	18.5	0.0	2.9	7.9
M3	18.8	17.1	15.9	12.4	12.7	9.6

통화정책은 있어서는 물가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되었다. 연중 본원통화는 IMF와 합의한 한도내에서 공급되었으며 M3 증가율(평잔기준)은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 외에 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3월 및 9월에 각각 1조원 및 2조원 증액하여 7조 6천억원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총액한도 대출금리 인하 및 배정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에 대한 수출입금융의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외화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종래 국채 및 정부보증채로 한정되어 있던 RP 거래 대상증권에 통화안정증권을 추가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인 현금보유인허율을 상향조정하여 은행의 자금 및 수지부담을 완화하고 여신금지부문 및 담보취득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금융기관 여신운용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통화정책 운용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99년 들어서는 통화는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99년중 M3 증가율 목표는 경제성장률, 물가전망, 통화유통속도의 예상 하락률 등을 고려하여 13~14%로 설정하였으며 분기별로는 연간목표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였다. 99년 상반기까지는 투신사로의 자금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99. 4월 총유동성(M_3) 증가율이 14%를 상회하였으나, 대우·투신사 문제로 인해 투신사에 대한 환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중 유동자금이 은행 저축성 예금 및 단기수신으로 유입되면서 M_3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하락한 반면 MCT 증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재정적자의 확대*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는 97년의 5.0% 성장에서 98년 1/4분기중에는 경제성장률이 △3.6%라는 급격한 경기위축 상황에 진입하게 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급속한 신용경색 · 소비위축에 따라 기업부도가 증가되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으며, 이는 다시 소비감소 · 기업부도 확산 · 실업자 양산 · 경기위축의 악순환을 유발하였다. 이에 따라, 98년 2/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7.2%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9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 기업 · 노동 ·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재정에서도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다.

재정은 98년 2차례의 추경예산 편성과 99년 본 예산 1차례 편성 및 추경예산 2차례 편성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 이자비용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였고, 구조조정과정의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 해소를 위해 실업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으며,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체력 유지(급격한 성장 저하방지 등)를 위하여 경기부양적인 지원을 확충하였다. 또한 금융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중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등을 강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정은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97년 0.03% 흑자 상황에서 98년에는 △3.2%(결산기준), 99년에는 △4.0%로 재정여건이 크게

* 집필자 :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구윤철 서기관

나빠졌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98년 4/4분기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99년 1/4분기에는 4.5%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고, 2/4분기 9.9%, 3/4분기에는 12.3% 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실업률은 97년 12월 3.1%에서 99년 2월에는 8.6%로 높아지다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99년 11월말 현재 실업률은 4.4%로 98년 1월 실업률(4.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어 왔다. 90년대 들어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 외국이 GDP의 △3%~△5%의 적자 상태에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1%~1% 내외의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건전 재정이 바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표 2-16 각국의 GDP대비 재정수지 현황

(%)

	1990	1992	1994	1996
미 국	△3.7	△4.7	△3.0	△1.5
영 국	0.37	△4.2	△5.2	△5.3(1995)
프랑스	△2.3	△4.4	△5.4	△5.4
한 국	△0.9	△0.7	0.5	0.3

98년 3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및 적자재정의 시작

9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98년 당초예산은 재정수지가 약 1조의 흑자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97년 12월 발생된 외환위기로 인하여, 98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실업자 보호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98년 3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IMF는 긴축재정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폭적인 재정적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우리도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상황을 맞이하여 재정적자의 확대에 미온적인 면이 있었다.

따라서, 98년 3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조기 안정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비용(3.6조원)만 추가 세출 증가로 반영되었고, 실업대책 등의 세출증가는 타 부문 세출삭감, 세입증대 등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재정적자의 확대를 최소화하였다. 이에따라, 금융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이자비용 3.6조원만 적자로 되어 제1차 추경이후의 재정적자는 당초 0.3% 흑자에서 △0.8%로 소폭 악화되었다.

표 2-17 199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조원)

재 원 소 요		재 원 대 책	
○ 세입감소	6.8	○ 교통세 등 세수증대	4.3
○ 금융구조조정 지원	3.6	○ 세출삭감	8.1
○ 환차 등 증액소요	2.0	• 인건비 삭감 (1.3)	
		• 행정경비 절감 (0.5)	
		• 사업비 삭감 (6.3)	
계	12.4	계	12.4

그러나, 제1회 추경이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98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3.6%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98년 2월 5.9%, 3월에는 6.4%로 확대됨에 따라 98년 4월이후 일부 언론 및 학자들을 중심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가 않았다.

IMF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긴축·통화긴축을 통한 고금리 정책으로 외환

유입을 촉진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주장해 왔으나,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자 98년 5월 22일 체결한 의향서에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1.75%까지 확대하는데 동의하였다.

98년 6월들어 적자재정에 대한 찬반 논의는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98년 예상 경제성장률이 제1회 추경시의 전망치인 플러스 1% 성장에서 IMF는 마이너스 5%, OECD는 마이너스 4.5% 등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되었고, 실업률도 제1회 추경편성 당시의 예상(130만명, 6%)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50만명, 7%)되어 추가 실업대책이 필요하였다.

표 2-18 1998년 4월이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양론

(조원)

구 분	주 요 내 용
재정적자 확대론	○ 차질없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 ○ 재정투자 확대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 ○ 금융위기를 겪었던 선진국도 재정적자를 확대
재정적자 신중론	○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치만 높여 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 ○ 신용경색기에는 재정을 팽창해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약 ○ 재정적자 폭이 한번 커지면 단기간내에 감축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재정적자 가능성

98년 7월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에 따라, 7월 들어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마이너스 5%까지 확대하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1.7조원[1]에 이르는 대규모 국채 발행 및 한은잉여금 등을 사용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에 4,500억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에 5,000억원, 중소기업·수출 및 구조조정 지원에 1조 8,850억원, 고용창출을 위한 SOC 투자에 1조 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275억원, 수해 복구지원에 9,2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9 199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조원)

재 원 소 요		재 원 대 책	
○ 세입감소	8.3	○ 한은잉여금 등 세수증대	2.6
○ 세출증액	6.7	○ 세출조정	0.7
		○ 국채발행	11.7
계	15.0	계	15.0

98년 9월 99년 본 예산 편성

정부는 98년 9월, 9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5.1%로 유지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는 98년 제2차 추경시의 11.7조원보다 1.8조원이나 늘어난 13.5조원으로 확대되었다.

99년 예산의 주요특징은 재정이 경제구조조정 및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국

1) 1998년 국채발행 실적치는 9.7조원임.

방·교육부문의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였다. 금융구조조정 이자지원으로 6.9조원,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에 12.2조원, 중소기업·수출 및 외국인투자 지원에 4.0조원,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 보호에 7.7조원 등을 중점 지원하였고, 농어촌· 교육·국방분야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하였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출연·보조기관 및 교육훈련 기관 통·폐합과 보조금 정비로 재정지원을 축소하였고 행정경비도 10% 줄였다.

99년 4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98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반면 98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금융·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감축이 대폭 늘어나 99년 2월 실업자는 178만명, 실업률은 8.6%로 사상 최대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사회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업대책을 대폭 확대하고, 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99년 4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중소·벤쳐기업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1조 2,152억원을 지원하고,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등 단기 일자리 제공에 9,726억원, 직업

표 2-20 199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조원)

재 원 소 요		재 원 대 책	
○ 실업대책	2.6	○ 국채이자 등 세출감액	2.0
○ 어업인 지원	0.2	○ 세입증액	0.8
계	2.8	계	2.8

훈련 확대 등에 950억원, 사회안전망 확충에 2,722억원, 어업구조조정 및 어업인 지원에 2,000억원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99년 당초예산의 △5.1%에서 △5.2%로 다소 확대되었다.

99년 8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적자재정의 축소

99년 들어 1/4분기 GDP 성장률이 4.5%로 98년 4/4분기의 마이너스 5.3% 성장에서 급속히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2/4분기에도 9.9%, 3/4분기 12.3%의 높은 경기회복을 지속함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감소(평균 6.7% 감소)가 큰 중산층(9.6% 감소)과 서민층(17.2% 감소)의 고통을 다소라도 들어주기 위하여 초과 세입의 일부는 재정적자 축소에 사용하고, 일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제2회 추경예산을 99년 8월 편성하였다. 중산층 및 서민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2,790억원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자녀 교육비·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5,155억원, 농어민 및 노인·장애인 지원에 954억원, 생활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지원에 3,579억원, 재해복구 및 항구 재해대책을 위하여 1조 4,90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 1999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

(조원)

재 원 소 요		재 원 대 책	
○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0.9	○ 국세증가	0.4
○ 지방재정교부금 지원	0.3	○ 세외수입 증가	2.9
○ 재해복구 및 항구대책 지원	1.5	○ 국채발행 감소	◁0.6
계	2.7	계	2.7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제1회 추경때의 △5.2%에서 △4.0%로 크게 줄어들고, 국채발행 규모도 당초 13.5조원보다 0.6조원이나 줄어든 12.9조원으로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한 것이 〈표 2-23〉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98년 상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과 함께 성장전망이 긍정적(Positive)으로 수정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2-22 1998~99년중 경제성장, 재정수지 및 국채발행 규모

(조원)

	1998			1999		
	당초예산	1회추경 (3월)	2회추경 (7월)	당초예산	1회추경 (4월)	2회추경 (8월)
성장전망[1]	6.5	1.0	△5내외	2내외	2내외	6~7
재정수지[2]	0.3	△0.8	△5.0	△5.1	△5.2	△4.0
국채발행[3]	0	0	11.7조	13.5조	13.5조	12.9조

주 : 1) 예산편성 당시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2) GDP 대비 비율
3)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우리경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등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우리경제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주력할 때라고 보고, 99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2000년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규모를 각각 △3.5%, 11.5조원[2]으로 축소하였으며, 2004년 경부터는 당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1999.12.18일 국회에서 최종 11.0조원으로 결정

4 부문별 경기진작노력 강화

1. 소비 및 투자촉진*

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는 소비 및 투자의 극심한 위축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98년중 국내총생산(GDP)은 5.8%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는 9.6% 감소하였다. 소비변화를 설명하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나 라이프싸이클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득의 변화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에 따라 소비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으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는 소득변동이하로 소비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98년의 소비위축은 이러한 경제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생각건대 소비의 극심한 부진은 주식시장 침체(98. 6월중에 280대까지 하락), 신용경색 확산에 따른 자금이용 곤란, 경기침체의 지속 및 구조조정에 빠른 불확실성이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급랭시키고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년 하반기이후 건전한 소비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가계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계대출금리의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 금융을 구매자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등 선진국에 비하여 부진했던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촉진정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99년

* 집필자 : 경제분석과 유광열 서기관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민간소비의 회복에는 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의 제거, 저금리정책 및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도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98년중 이연되었던 소비(pent-up demand)가 현재화되면서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비내구재 소비도 뒤따라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99년 1/4~3/4분기중 민간소비는 8.5% 성장하여 지난해의 위축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며 산업생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소매판매는 외환위기이전(97년 9월) 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

표 2-23 최근의 민간소비 추이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1/4	2/4	3/4	1999. 1/4~3/4
GDP	5.0	△5.8	4.5	9.9	12.3	9.0
민간소비	3.5	△9.6	6.2	9.1	10.3	8.5
내 구 재	0.6	△33.9	28.9	42.8	55.3	42.3
비내구재	2.6	△8.9	5.6	4.6	4.6	4.9

한편 설비투자는 98년중 전년대비 38.5%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금리와 신용경색, 중소기업의 부도확산 및 경기회복 불투명 등 경기적 요인(Cyclical factor)에 기인한 점도 있으나 그동안 수익성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과잉투자를 해 왔던 점,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차입에 의한 투자를 했던 점 등 우리기업의 투자행태상 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99년중에도 연장 실시하고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를 도입하는 한편 미국 수출입은행(EXIM) 및 일본수출입은행(JEXIM)의 도입자금을 설비투자재원으로 책정하

는 등 투자촉진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과 빠른 경기회복으로 99년 1/4~3/4분기중 설비투자(국민계정기준)는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하여 98년 3/4분기중 저점을 통과한 후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분기대비 증가율로 보더라도 1/4분기 30%대, 2/4분기 5%대, 3/4분기에는 7%대에 이르러 93년의 경기회복기 평균인 8.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중 운수장비가 설비투자회복을 주도하였으나, 2/4분기 및 3/4분기 들어서는 기계류투자도 크게 살아나고 있다.

표 2-24 최근의 설비투자 추이 (전년동기대비)

(%)

	1997	1998	1999. 1/4	2/4	3/4	1/4~3/4
• 설비투자	△8.7	△38.5	12.9	37.2	48.0	32.2
-기계류	△7.3	△35.3	3.8	32.3	37.3	24.3
(일반기계)	△14.0	△43.2	4.4	37.2	31.5	23.1
(전기전자)	12.0	△13.4	11.8	31.2	47.7	33.4
• 통신기기	32.5	1.9	26.9	37.3	57.1	45.0
-운수장비	△13.6	△50.0	49.7	66.0	96.5	69.8
(자동차)	△8.5	△48.1	50.6	53.2	77.4	60.3

설비투자의 구성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설비투자의 약 20~30%를 점유하고 있는 운수장비투자(자동차, 트럭, 선박, 항공기 등)는 98년중 무려 50% 감소하여 9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후 99년에는 98년중에 신용경색,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이월되었던 기업의 구매수요가 현재화되면서 V자형의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마치 지난 해 이연되었던 내구재 소비가 올들어 빠르게 현재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99년 1/4~3/4분기 운수장비 투자규모는 97년 같은 기간의 75% 수준에 불과하여 아직 회복여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계류투자는 99.1/4분기 이후 플러스(3.8%)로 반전된후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등 기계류 전반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 자료는 없으나 최근 내수 및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섬유 등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산능력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금속공작기계 등 일반기계가 크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류투자중 주목할 부문은 통신기기투자이다. 우리 경제가 심한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았던 작년에도 통신기기투자는 오히려 1.9% 증가하였다.

따라서 통신기기분야는 올해에 운수장비분야에서 보여지는 기술적 반등(technical rebound)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99년 1/4~3/4분기중 통신단말기 디지털화에 따른 이동전화 업계의 신규투자, 인터넷 수요급증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교체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99.1/4~3/4분기 기계류 투자규모는 97년 같은 기간의 78.5%수준에 이르고 있다.

2.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여건 조성*

(1) 추진배경

외환위기이후 신용경색과 기업부도 등으로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토지와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마비상태에 이르는 등 부동산경

* 집필자 : 조정2과 변영한 사무관

기가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과도한 부동산경기 침체는 내수경기의 위축을 심화시켜 자산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지연시킴으로써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금융·세제지원 확대, 규제완화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표 2-25 토지 및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

	1997	1998	1998. 1/4	1998. 2/4	1998. 3/4	1998. 4/4
토지가격	0.31	△13.6	△1.27	△9.49	△3.12	△0.20
주택가격	2.0	△12.4	△4.7	△6.6	△0.8	△0.8
전세가격	0.8	△18.4	△7.4	△11.3	0.3	△1.1

주 : 전년동기 대비
자료 :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 조사」

(2)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와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으로 크게 감소한 주택구매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중도금대출 지원 등 수요자 금융을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들이 소액의 자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도입하였고, 기업들이 유휴 부동산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지원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주택금융을 확충하기 위하여 98년에는 중도금 대출지원,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등 총 8조 9,9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7조 5,962억원을

지원하였고 99년에도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30% 늘어난 총 11조 7,192억원을 조성하여 99.10월말 현재 6조 7,901억원을 지원 하였다(표 2-26 참조).

둘째, 주택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98년 7월에 IBRD

표 2-26 주택자금 지원 현황 (99. 10. 31 현재)

(조원)

구 분	1998		1999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총 계	8조 9,900	7조 5,962	11조 7,192	6조 7,901
○중도금 대출지원	6조 6,500	6조 440	7조 7,000	4조 6,530
-국민주택기금	4조 5,000	3조 8,317	4조 5,000	1조 971
-민간금융기관	2조 1,500	2조 2,123	3조 2,000	3조 5,559
○미분양 주택 해소자금	1조 4,000	1조 1,770	1조 3,400	1,311
-주택업체지원(주은)	9,000	1조 1,601	1조 500	1,307
-임대사업자 구입자금(주은)	2,000	17	100	4
-미분양주택 매입(주공)	3,000	152	2,800	-
○중형임대주택 건설자금(기금)	3,000	401	8,000	6,586
○전세반환자금(기금)	3,000	1,554	1,500	344
○재개발사업자금(기금)	1,000	552	3,000	353
○중소주택업체 운전자금(기은)	1,000	526	470	708
○인수촉진자금(기금)	800	189	600	1,863
○임대중도금 상환기간 연장(기금)	600	530	1,200	672
○1999년도 신설(기금)			12,022	9,534
-국민임대			832	439
-중형분양주택자금			5,200	1,640
-재건축사업자금	-	-	1,440	-
-다세대 · 다가구주택			2,450	99
-근로자주택			2,100	7,356

주 :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주은은 주택은행, 기은은 기업은행임.
자료 : 건설교통부

차관 2억달러를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융자한데 이어 99년에도 재정에서 동 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여력을 추가로 6조원 확대하였다.

셋째,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직접 매각하거나 증권화하여 대출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금융을 확충하고 서민입장에서는 소액의 자금으로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98.12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였고, 금년 10월에는 민관합작 형태의 대형 중개기관인 「한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넷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시중에서 토지매수자를 찾지 못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에서 직접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토록 하였다.

토지공사는 이미 97년말부터 1조원 범위내에서 기업토지를 토지채권을 주고 매입하고 있었으나, 채권금리(연리 5%)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낮아 매입실적이 268억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권금리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그 규모도 3.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매입함으로써, 기업들은 자금난이 완화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금융기관들도 기업들이 토지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BIS비율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3) 세제지원

세제지원은 실업난을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축주택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98.5.22 ~ 99.6.30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 평형에 대해 5년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25.7평이하는 99.12.31까지 연장함)하고, 25.7평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50% 감면하였으며, 18평초과 25.7평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였다.

또한 98.5.22~99.12.31 기간중 25.7평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분 40%를 18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이와함께 99.1.1~99.12.31 기간중 취득한 주택(기존주택 포함)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종전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하였다.

그밖에도 99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을 종전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 일률적으로 인하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18평초과 25.7평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였으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1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4) 규제완화

80년대말에 발생한 전국적인 땅값폭등과 투기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 · 개발부담금 등 토지공개념 제도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참여를 늘리며 각종 주택관련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침체된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난해 9월, 12월 각각 폐지하였고, 개발부담금도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를 중지함과 아울러

2000년이후에는 부과율도 현행 50%에서 25%로 대폭 인하하였다.

또한 97.12월 토지거래 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한데 이어 99.2월에는 토지거래 신고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강원도 일부 폐광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하였다.

이와함께 외자도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시장의 개방폭도 대폭 확대하였다.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을 전면허용하고 그동안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토지임대업과 토지개발공급업 등도 98.5월에 개방하였다. 그리고 과거 주택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택관련 규제도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에 의해 주택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난 3월 폐지하여 앞으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영주택에 대하여 99.1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데 이어 99.4월에는 재당첨 제한(종전 2년), 무주택 우선공급, 청약배수제(20배수) 등을 폐지하였다.

3.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1) 경상수지 추이

정부는 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위기의 완전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총력적인 수출증대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 및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감소등의 영향

* 집필자 : 경제분석과 나주범 사무관

으로 97년에 △82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던 경상수지가 98년에 406억달러의 흑자를 보였으며 99년에도 1~10월중 21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2-27 경상수지 추이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1~10
경상수지	△85	△230	△82	406	213
-상품수지	△44	△150	△32	416	247
-서비스수지	△30	△62	△32	6	△9.4
-소득수지	△13	△18	△25	50	△39.6
-경상이전수지	2	△0.5	7	34	15.2

(2)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주요 시책

98년에 추진한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한 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를 신설하였으며 98년중 2회 개최하였다. 동 대책회의에서는 수출입동향을 점검하고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수출입금융 지원을 확대하였다.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98.4월 IBRD자금 10억달러 및 98.8월 외환보유고 20억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미국 수출입은행 자금 20억달러를 확보하여 자본재수입에 지원하였다. 수출보증재원으로 ADB자금 10억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총액대출한도를 3조원 증액하였다. 수출입은행의 외화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를 확보하였으며 중기수출환어음매입을 위해 외환보유고 3억달러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설비 수출금융지원으로 56,872억원을 지원하였다. 특별수출보험의 보증기능도 강화하였다.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20조원에서 31조원으로 증액

하였으며 수출보험기금에 2,000억원을 추가출연하였다. L/C수취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전액 보증하고, D/A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토록 하였다. 대기업의 수입L/C개설자금에 대한 특별신용보증기한도 98년말까지 연장하고 D/A수출환어음을 특별신용보증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는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56회에 걸쳐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국별 수출유망품목 2,050개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하였으며 419백만달러의 수출계약실적을 거두었다. 무역전시장등 무역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대치동 무역전시장을 완공하고 ASEM 컨벤션센타 및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무역전문인력을 5,700여명 양성하였다. 또한 무역마찰이 예상되거나 산업협력가능성이 큰 중남미, 동남아, EU, 북미등 5개지역에 민관합동으로 산업협력단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외환위기의 완전극복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해외차입보다는 외국인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대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M&A을 전면 허용하였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42개에서 20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KOTRA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표 2-28 외화자금 지원실적

(억달러)

	1998말	1999.5	1999.6	1999.7	1999. 8
잔액기준	34.6	44.6	40.6	38.6	36.0
실적기준	51.0	91.5	96.6	99.9	104.2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를 마련하였다. 조세감면대상에 첨단산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국세감면기간을 연장하였다. 공단부지가격 인하를 위해 임대료 감면기준 및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였다.

99년에 추진한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입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53억달러의 외화자금을 활용하여 99.8월말 현재 104억달러(실적기준)를 지원하였다. 무역금융도 98년말 33,957억원에서 99.8월말 현재 52,259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입자금 지원은 98년 7조 1천억원에서 99년 10조 3천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재원을 98.12 현재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중고품 수입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 수출승인의 사후관리폐지등 수출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전년도 연간 환급액 1억원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수출용 금형등에 외국인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성능실험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다.

연불수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고위험국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여신운용이 가능토록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고위험국(37개국)에 대해 종래에는 국별여신한도 전체에 대하여 협조융자 조달의무를 부과(10%)하고 리스크프리미엄을 50% 할증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별여신한도의 50%범위내에서는 협조융자 조달의무를 폐지하고 리스크프리미엄 할증도 폐지하였다. 고채무 저소득국(41개국, HIPCs)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국별 탕감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원을 개시토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국별여신한도 초과, 초고위험국(41개국) 및 고채무저소득국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즉 산업설비수출협의회 및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서 그 지원여부 및 지원조건을 최종결정토록 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등 선진형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에 대해서는 필요시 국별 여신한도에서 제외토록 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연불금융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부채비율 부담완화를 위해 구매자신용을 적극 취급토록 하였다. 외환가득율 50%미만시 외화소요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융자비율제한(국내공급분의 50%범위내 지원)을 폐지하고 중소규모 거래(5,000만달러 이하)에 대해서 개도국소재 우량상업금융기관을 지급보증 적격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기울였다. KOTRA의 외국인투자 지원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협정의 추진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대인신인도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외환시장의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환·이자율 변동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수출보험법개정을 추진하고 1,000여개 내수중소기업이 수출개미군단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99.10 현재 1,510개의 수출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였다. 수출지원센터에서는 마케팅, 금융, 수출보험, 보증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이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여 99.8 현재 432백만달러를 지원하였다.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에니메이션등 신상품개발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3

제3장

구조조정의 본격적 추진

1 구조조정의 의의 및 기본방향

1. 4대 구조조정의 의의*

구조개혁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30년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뼈아픈 인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97년말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배태되어온 구조적 문제점을 제거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금융·기업·정부·노동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고도성장과정에서 기업부문은 부채 의존적 경영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누적되었으며 규모가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農猖奉妨)'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외부차입에 의한 무모한 사업확장을 지속 하였다.

표 3-1 제조업 부채비율

(%)

미국(96)	일본(96)	대만(95)	한국(97)
153.5	193.2	85.7	396.3

재벌은 수익성보다는 외형 불리기에 치중하였고 독과점 체제 심화로 자원배분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 되었다. 또한 그룹의 계열사들이 상호채무보증 등

집필자 : 정책조정과 유복환 서기관

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계열사가 부실화되면 우량계열사까지 동반부실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기업 지배주주는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출자 등을 통해 다수기업을 지배해 왔으나 법적지위와 책임이 분명하지 않는 등 투명하지 않은 기업경영도 기업부실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부문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입각한 대출보다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신용배급기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 익숙해져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성에 대한 분석능력도 취약 하였다.

또한 책임경영제도도 정착되지 못하여 기업의 규모와 좋은 평판, 정치 등 외부영향력에 따라 여신을 결정하는 관행이 지속 되었다. 따라서 유동성 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급속한 금융시장 개방과 자율화를 맞아 이에 상응하는 자체준비와 대응전략이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차질없는 구조개혁의 추진은 첫째 우리경제의 시스템과 행동양식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합치시킴으로써 외환위기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둘째, 향후 20~30년간의 경제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시장경제원리가 확립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4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1) 금융구조조정

정부는 97년말 이후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한국은행법 등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여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였고 금융기관 합병·인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시정 및 퇴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정비하였다.

지금까지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개혁을 위한 큰 얼개를 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금융개혁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골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과거처럼 담보가치나 기업의 성가를 중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신용조사 능력을 갖추고, 특히 경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system이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립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국내법규 및 국제기준(Gobal Standard)과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였다. 부실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을 엄격하게 판정하여 자의적인 처리를 방지하고, 회생불가능한 기관은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을 위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정상화하였다.

둘째, 공적자금 지원시 이해관계자의 엄격한 손실분담(loss sharing)과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및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소프트웨어부문의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체제의 강화를 통해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였다.

즉 신용평가에 기초한 신용대출관행의 정착에 노력하고 금융규제 철폐, 중요 감독기준의 법령화,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경제형으로 개편하였다.

(2) 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 과거 과잉중복투자로 누적된 그간의 부실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변모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기업개혁은 98.1월 재계와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인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핵심역량의 집중, ⑤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에 따라 추진 하였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금융개혁을 토대로 금융기관은 채권자로서 기업구조조정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주력 하였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기간에 걸친 정책으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크게 5대계열, 6~64대계열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은 그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능력이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별로

그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구조조정 추진전략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5대계열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신용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그룹간 자율에 의한 사업구조조정(일명 "빅딜")을 추진하는 한편 5대계열과 채권금융기관간에 자율협의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중심으로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는 5대그룹의 문제는 단기적인 현금흐름상의 문제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경쟁력회복이 관건이었으므로 당사자간의 자율협상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방식인 기업개선작업 추진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6~64대계열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현금흐름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부도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여야 하는 점을 중시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주요한 구조조정 추진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의 경우 자체 구조조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다수인 점도 감안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발생이후 많은 부도기업 발생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으며, 자체 구조조정 능력이 취약하고 채권금융기관 수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금융기관 차원에서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3) 노동시장 구조조정

정부는 원활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임금, 고용량 등 노동시장의 변수들이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

장의 관련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병행 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노사정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방식으로 수행하여 사회안정을 도모 하였다. 즉 98년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므로 99년 5월에는 노사정위원회를 법제화 하였다.

(4) 공공부문개혁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새 천년에 대비하기 위해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중앙·지방정부, 산하기관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하였다. 그동안 2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재설정 하였다.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인 국민을 지향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을 두었다.

한편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하여 99년 10월말 현재, 12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외화수입 46억불을 포함, 총 6.6조원의 매각수입(재정수입 3.3조원)을 올렸고, 2000년까지 4만 1천명(정원의 25%) 인력감축 계획 중 3만 2천명 감축을 완료 하였다. 또한 경영공시제, 연봉제, 사장경영계약제 도입 등 경영시스템을 책임·성과 위주로 탈바꿈 하였다.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경영혁신도 추진하여출연연구기관 분야별로 5개 연합이사회를 설치하여 부처와의 소속관계를 해소하고 성과급·연봉

제 등을 도입 하였다. 비연구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의 경우도 폐지·통폐합 대상 19개 기관 중 13개, 민영화·민간위탁 대상 28건 중 8건을 완료 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생산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99.1)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으며, 기금을 75개에서 55개로 대폭 정비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 하였다.

2 금융구조조정*

1. 의의 및 기본방향

(1) 금융구조조정의 의의

97년 들어 우리 정부는 금융부문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OECD 가입이후 국내 제도와 선진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한편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발족된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자율적인 금융개혁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IMF 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서 자율적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금융개혁대신 차관을 제공한 국제기구들이 요구하는 보다 강도높은 구조개혁프로그램을 단시간내에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97년말 한국경제가 직면하게 된 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말할 수 있다. 우선 단기간내에 외환위기로부터 출발된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산업을 경쟁력있게 만들고 금융시장을 안정된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이었다.

단기간내에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정도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하에 공개하고 부실규모가 커서 회생가

* 집필자 : 금융정책과 고경모 사무관, 금융감독위원회 김 진 사무관

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한편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증자 등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게 되었다.

한편 두 번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면서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팽배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인식을 제거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부실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퇴출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여 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은 단기간내에 부실을 정리하는 노력외에 금융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과거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탈바꿈시켜 나가는 등 결코 쉽지않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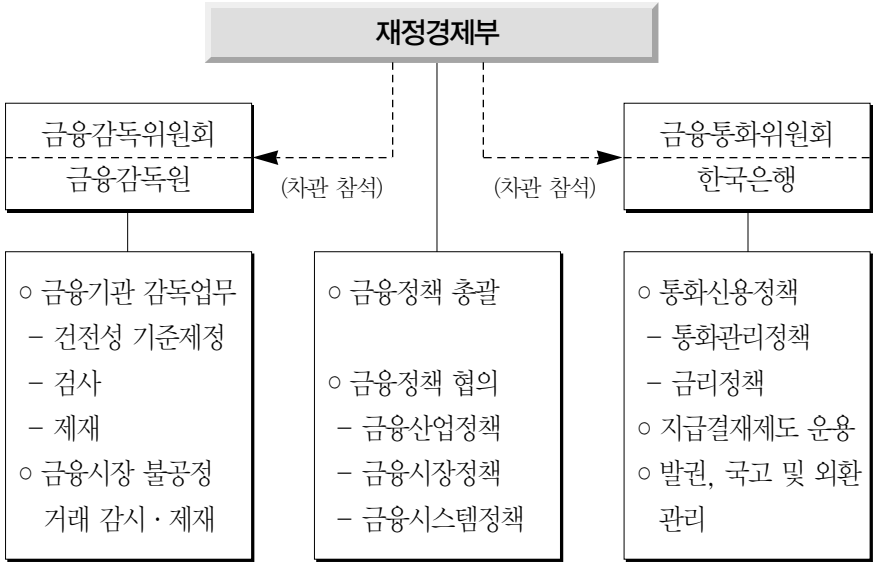
추진체계의 정비

현행 금융행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에 의거하여 98년 4월부터 재정경제부 · 금융감독위원회 · 한국은행으로 분장되어 수행되는 삼각정립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관련 법률의 제 · 개정을 통하여 금융산업, 금융시장, 금융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금융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8년 4월에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는 99년 1월이후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판정 및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를 전담하고 금융감독규정의 제 · 개정을 통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감독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종전 은행감독원이 분리된 후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림 3-1 금융행정체계도



한편 99년 5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업무중 일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에 일부 권한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의 권한사항이었던 금융기관의 설립 · 합병 · 전환 및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취소권한과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수출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권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요구권 등의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금융감독에 관련된 법령의 제 · 개정시 금융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한편 98년 9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및 금융관련법령에 적기시정조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합병 · 전환에 관한 제반

절차를 단축시키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97년말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고 예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액보장을 실시하였으나, 예금전액보장에 따른 금융기관의 고금리수신 유치경쟁 등 부작용의 발생으로 2001년부터는 부분예금보장제도로 바뀔 예정이며, 98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8년 8월부터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의 경우 원금만 보장되며 은행 및 증권회사가 98년 7월 25일 이후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과 98년 8월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국민적 합의하에 조성하였다. 98년 5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추정하여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32.5조원, 금융기관의 증자 및 예금대지급 등을 위해 31.5조원 등 총 64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하였다. 이에따라 97년말 이미 받은 국회의 승인에 이어 98년 9월 채권발행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추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자금의 소요는 이후 부실채권 매입소요는 줄어든 반면 증자·예금대지급소요는 늘어남에 따라 99년 6월 부실채권의 채권발행한도 12조원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5조원, 예금보험기금은 43.5조원의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동의를 변경하게 되었다.

(2)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

정부가 98년들어 강도높게 추진한 금융부문의 개혁은 부실금융기관의 퇴

출과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만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독체제를 강화하여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목표의 하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및 IMF · IBRD등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원칙을 정립하였다.

정부가 정립한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원칙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둘째, 공적자금 지원시 엄격한 손실분담원칙을 적용하고, 셋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97년부터 계속된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는 97년말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여신의 축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시 부실회되는 등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이 형성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외에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에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감독권의 관용(regulatory forbearance)을 배제하여 신속하게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상화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지원은 자본시장의 침체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가 98년 GDP의 14%에 달하는 64

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계약이전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통해 부실금융기관간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해 나가고자 하였다.

공적자금 지원시 엄격한 손실분담원칙의 적용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엄격한 퇴출기준 적용, 자구노력 등 확실한 손실분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에 대한 자본금감소를 통해 재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인력과 조직의 감축으로 도모하며, 일정기간내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해 나가야만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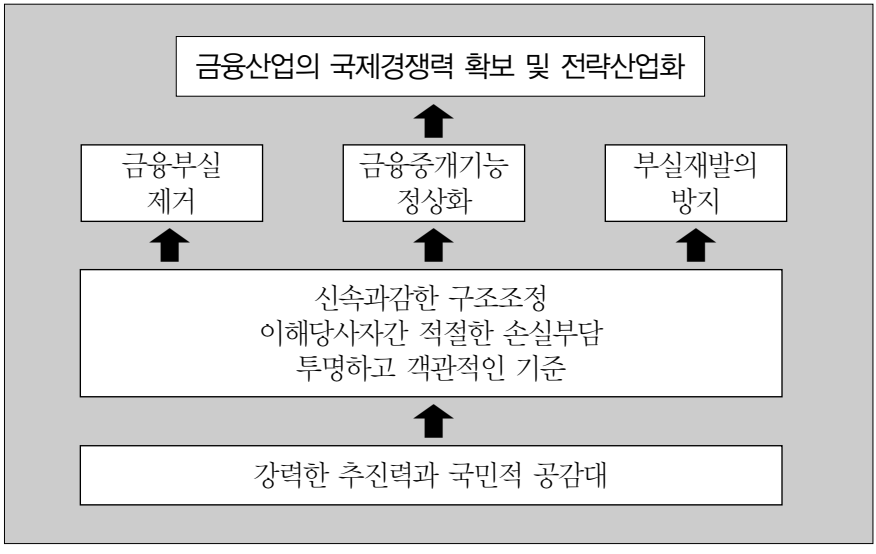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의 준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의 준수는 구조조정의 목표 못지않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았다.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라 관련당사자의 이해를 얻고

자금지원등에 따른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본의 충실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의 엄격한 실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판정하고, 자본충실도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토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그 이행가능성 및 이행될 경우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의 결정을 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리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금융구조조정 주요 추진실적

(1) 개 요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은 업종 전반의 부실화정도와, 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종금사, 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327개(99 11말 현재)의 금융기관을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합리화 등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여 최소한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조성된 공적자금은 총 64조원 규모에 달하며 99. 10말 현재 55.5조원을 지원하였다.

표 3-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개)

구 분	1997.12말(A)	정리(B)	1999.11말(A-B)
은 행	33	10	23
종 금	30	20	10
리 스	25	5	20
증 권	36	6	30
보 험	50	5	45
투 신	31	6	25
금 고	231	54	177
신 협	1,666	221	1,445
계	2,102	327	1,775

표 3-3 공적자금 지원내역 (97.11~99.10)

(조원)

구 분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예금대지급	합 계
지원실적	은행	17.2	24.5	41.7
	제2금융권	3.2	10.6	13.8
	계	20.4	35.1	55.5
잔여재원		0.1	8.4	8.5
총 계*		20.5	43.5	64.0

206회 임시국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으로 12조원의 채권발행한도 이관 (8.12 국회의결)

(2) 은행구조조정

정부는 과도한 수신경쟁과 누적된 부실채권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간다는 방침아래 구조조정 대상은행을 선정하고 부실은행을 정리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전에 한보, 기아 부도 등에 따라 이미 재무구조가 악화된 제일·서울은행에 대하여는 98년 1월 감자 및 은행당 1.5조원의 정부출자를 통해 유동성위기를 넘긴 후 해외매각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의 경우 99년 7월 예금보험공사의 4.2조원 출자포함 순공적자금을 5.7조원 투입하였고, 해외매각을 위해 회계법인의 재무실사를 거쳐 98년 12월 New Bridge Capital과 투자의향서(MOU)를 교환하였다. 이어 99년 9월 투자약정서(TOI)를 체결함으로써 해외매각을 마무리지었는바, 이과정에서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하여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별도로 5%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어, 향후 상당액의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높

일 수 있었으며 국가신인도의 향상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울은행의 경우 99년 2월 HSBC와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매각조건에 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99년 8월 매각협상 종결을 공식 발표하였다. 서울은행에 투입된 순공적자금의 규모는 99년 9월 예금보험공사의 3.3조원 출자 포함 총 4.8조원이며 향후 서울은행의 경영진을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적으로 선정하여 경영을 담당케 하고 정부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해외매각을 통해 처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97년말 기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은행에 대하여는 98.4.30까지 2000년 6월말 기준 BIS비율 8%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동계획은 회계법인의 심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거쳤으며,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정상화가능성이 희박한 5개은행을 계약이전(P&A) 결정조치(99.6.29)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7개은행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건부승인을 하였다. 퇴출된 5개은행은 대동, 동남, 동화, 충청, 경기은행이었는바, 이들 은행은 자기자본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계획이 실현된다 하여도 BIS비율의 목표수준에는 크게 미달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5개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각각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계약이전하고 영업정지후 인가취소를 결정하였다.

조건부승인 조치를 내린 7개은행은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은행이었다. 이중 상업·한일은행은 98년 9월까지 1.7조원이 투입되어 4.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고 이후 증자를 위해 3.3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리하여 99년 1월 합병, 한빛은행으로 재탄생하였으며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조

흥, 충북, 외환, 평화, 강원은행의 구조조정 경과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7개 조건부승인 은행중 5개은행의 구조조정 추진경과

은 행	일 자	주 요 내 용
조흥·충북	1998.9.15 1999.2.2 1999.5.4	·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 충북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합병명령)부과 · 조흥·충북은행 합병완료
조흥·강원	1998.9.15 1998.11.27 1999.9.15	·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 조흥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부과 · 조흥은행과 강원은행·현대종금간 합병완료
외 환	1998.7.28 1998.9.15 1999.4.21	· 외자유치(코메르츠은행 3,500억원) ·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 1조 220억원 증자(수출입은행 3,360억원, 코메르츠 2,600억원, 임직원 1,000억원, 일반투자자 3,260억원)
평 화	1998.9.15 1998.10.21 1998.10-'99.5 1999.4.2 1999.5.18	·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 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으로 감자(2,730억원 1,000억원) · 2차에 걸쳐 2,000억원 증자 · 예보, 연내 유상증자를 전제로 출자(2,200억원) · 평화은행 자체 유상증자(800억원) 완료

한편 97년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8%를 초과한 12개은행에 대하여는 99년 8월말 완료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후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들 은행들은 자율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99년 1월 5일에,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은 99년 1월 6일에 각각 합병등기를 마쳤으며, 제주은행은 98년 11월~99년 3월까지 감자후 95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98년 12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진 대폭

교체, 유상증자등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 조치를 하였다. 99년 6월 양은행은 각각 1,500억원씩의 자체 유상증자를 완료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들 은행에 대하여는 총 1.8조원이 투입되어 2.9조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되었으며 0.3조원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졌다.

(3)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정부의 기본방침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책임하에 증자를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는 금융기관은 즉시 정리하도록 하며, 금융권별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단계별 경영개선조치를 함께 병행하는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97년말 총 2069개에 달하던 비은행 금융기관중 99.11 현재까지 317개사가 정리(15.3%)되었다.

종합금융회사

먼저 종합금융회사는 97년 초부터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부실여신의 증가가 신용위험의 증대와 대외신인도 하락과 맞물리면서 국내 자금시장의 결정적 교란요인으로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30개 전종금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98년 8월까지

16개사[1]가 인가취소 되었다.

또한 한외종금은 외환은행과 합병(99년 1월)하였고 현대종금은 강원은행과의 합병(99년 2월)을 통해 업종전환을 이루었다. 기타 유동성 악화로 예금지급 불능에 빠진 대한종금이 영업정지조치를 거쳐 인가취소(99년 6월)되었으며 LG종금은 LG증권과 합병을 통하여 증권사로 전환하였다. 한편 종금사 구조조정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을 설립하였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 되었으나, 잔류 10개 종금사에 대하여서도 기준 BIS비율을 매분기 점검하고 미달시 적기시정조치의 부과등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르르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종금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리 스

리스사는 IMF이전 영업중이던 25개사중 거래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동반부실화로 21개 리스사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2]를 안고 있었다. 대주주인 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 증자, 후순위채 발행등을 통하여 산업, 한일등 8개사가 경영정상화 되었고 채무재조정에 의해 개발, 경인 2개사가 정상화되었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중앙 5개 리스사는 98년 7월 설립한 가교리스사로 자산양도후 청산하였다. 99년 10월 현재 남은 10개사에 대하여 사적화의등을 통한 채무재조정과 제3자 매각등을 통한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 경영계획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1998년 2월~7월까지 인가취소된 14개 종금사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신한, 쌍용, 청솔, 항도, 한화, 한솔, 대구, 삼양, 제일)와 대주주 부도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추가적으로 1998년 8월에 인가취소된 2개종금사(새한, 한길) 포함.

2) 21개사 자산부족 규모 : △ 2조 1,328억원

증권 · 투신

한편 증권사는 97년 말 총 36개사가 영업중이었는데 기업부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채보증 대지급이 늘어나고, 또한 증시침체에 기인한 영업손실의 확대로 재무상황이 매우 취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면 먼저 부도발생한 동서, 고려 2개사가 98년 6월에 허가취소 되었고 나머지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및 재산 · 채무비율 조사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결과 장은, 동방페레그린 2개사가 99년 3월~4월에 허가취소 되었다.

투신사는 판매와 운용의 겸업 여부에 따라 기존투신사(8)와 신설운용사(23)로 구분된다. 이중 기존투신사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경영정상화를 우선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을 징구(98년 8월)하고 연계차입금 축소 등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였다.[3] 이 과정에서 신세기투신이 인가취소되었으며 한남투신은 신탁계약을 국민투신에 이전하였다. 투신운용사의 경우 대주주가 자율적으로 정리의사를 밝힌 회사에 대해 자체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동방페레그린, 동서, 고려, 보람, 으뜸 5개사가 자진 폐업 및 해산(98년 8월~12월)되었다.

또한 투신사 자산운용에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상임이사제 도입, 투자신탁 설명서등 공시제도의 개선, 수익증권 판매, 광고, 선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3) 구체적인 내용은 보유증권 매각, 관리비 절감 등을 추진함으로써 차입금을 축소해나가고 2000년 3월까지 기존사는 연계차입금의 50%를, 지방사는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하는 것을 포함.

보 험

98년 6월 총 50개의 보험사중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명보험회사와 4개 손해보험회사등 22개사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정부는 회계법인의 실사와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4개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여 계약이전조치(98년 8월)를 내렸고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7개사에 이행계획서, 9개사에 대하여는 이행각서를 제출받았다. 한편 99년에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6개 부실생보사와 부실이 확인된 대한생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6개 부실생보사의 경우 국내외 투자자에게 합병방식등을 통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4] 대한생명은 공개매각을 통한 자본충실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적절한 인수자가 없어 우선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99년 8월)하게 되었다. 이후 99년 9월에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기존 주식을 전액 소각한 뒤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증보험사는 한국·대한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98년 11월)하여 경영정상화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기존 부실이 너무 커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므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99년 6월)하여 기존주식을 전액 소각하고 1조 2,500억원의 예금보험공사 출자 및 주주보험사등의 자금지원등 외부자금지원에 의한 경영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지역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는 97년말 231개사가 영업중이었다. 그러나 기업부도발생

4) 이중 국민생명은 뉴욕생명등과 매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99년 7월)함.

및 실물경제위축에 기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경영부실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건전성을 제고하되 부실금고는 조기정리하여 부실증가에 따른 공적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후 부실금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98년 9월에 가교금고인 한아름금고를 설치하였다. 99년 10월말 현재 구조조정 결과를 보면 제3자매각 10개사, 합병 11개사, 가교금고로의 이전 33개사등 총 54개사가 정리되었고, 적기시정조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상 부실신협 처리제도에 의거하여 합병 53개사, 파산 97개사, 해산 60개사, 기타 1개사등 총 211개 신용협동조합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경영지도 및 자율합병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3-5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99년 9월말 현재)

구 분	주 요 내 용
종 금 사	· 1998.8까지 16개사 인가취소 조치 · 1999.1~99.2 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2개사 업종전환 · 1999.4 대한종금 영업정지조치후 인가취소
리 스 사	· 1998.5 25개 리스사 자산/부채 실사 · 가교리스사로 자산양도(98.12말까지)후 청산(5개사)
증권사·투신사	· 고려, 동서(이상 98.6), 장은, 동방페레그린증권(이상 99.3~4) 허가취소 · 2개투신사 인가취소(신세기, 97.12) 및 신탁계약이전조치(한남, 98.8)
보 험 사	· 1998.8 경영개선조치에 의거, 4개사 퇴출 및 9개사 이행각서 제출 · 1998.9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 1998.11 대한·한국보증보험 합병, 1999.6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 결정
지 역 금융기관	· 금고는 1999.9말까지 3자매각(7), 합병(10), 가교금고 이전(26)으로 43개 정리 · 신협은 1999.9말까지 합병(49),파산(80),해산(59),자체해산(1)으로 189개 정리

(4) 공적자금

공적자금의 필요성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스스로가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은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금융기관 자체의 재원확충이 곤란한 상황에서 외자도입에도 한계가 있었기에, 최대한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되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가급적 일반국민이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liquidity)을 공급하고 정부는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무이자융자로 지원하고 채권의 원금상환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다.[5] 조성된 자금은 총 64조원 규모였으며 이는 98년 GDP대비 14.2%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부채가 낮은 수준이었고, 외국의 경우에도 스페인 16.8%, 핀란드 8%, 미국 6.0% 등,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5~15%내외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공적자금의 지원원칙

공적자금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보호대상이거나 부실화될 경우 경제전반에 심각한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5)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기에 금융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 조기에 안정되고 전체부담이 최소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자금지원규모를 결정할 경우에는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한 엄격한 자산부채실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관련 경제주체들로 공적자금의 지원에 대응하여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관련 경제주체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방안은 감자를 통해 기존 주주들이 손실을 공유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교체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게 하거나 추가충당금 적립 및 자체유상증자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

특히 공적자금지원중 증자지원의 경우에는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합병등에 따른 시너지효과 극대화 및 선도금융기관의 출현 유도 등을 목표로 엄격한 조건하에 증자지원을 하되,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지원현황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재원으로서 정부보증부 채권발행규모를 총 64조원(최초 예금보험기금채권 31.5조원, 그리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5조원)[6] 으로 책정하였다. 조성된 공적자금은 먼저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매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재무구조를 충실화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조기에 정리하되, 예금대지급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공적자금은 99.10까지 총 55.5조원이 사용되었다. 먼저 원칙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여신중, 매입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성업공사가 부실채권매입에

6) 단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여유자금이 충분한데 반하여 예금보험기금은 자금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999년 8월 국회의결로 12조원의 채권발행한도를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가능액은 43.5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가능액은 20.5조원으로 조정되었다.

20.4조원을 투입하여 55.9조원 규모를 매입한 것을 비롯,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금융기관으로 대상이 국한된 증자지원에 16.6조원을, 그리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대지급에 18.4조원을 투입하였다. 향후 정부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수요발생에 대하여 잔여재원 8.5조원과 부실채권매각에 따른 회수자금[7]을 이용하여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표 3-6 공적자금의 조성 · 사용 · 잔액 현황 (97년 11월~99년 10월)

(조원)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합 계
	매입액	매입대금			
확보재원		20.5	43.5		64.0
일반은행계	41.22	14.71	16.51	8.04	39.25
특수은행계	5.78	2.47	0.00	0.00	2.47
비은행계	8.89	3.22	0.12	10.41	13.75
총 계	55.89	20.40	16.63	18.44	55.47
잔여재원		0.10	8.43		8.53

공적자금의 실제 부담규모와 향후 회수방안

향후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정부는 성업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등을 자산담보부증권(ABS)등을 활용하여 매각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증자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경영목표 이행여부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차후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 자금 역

7) 1999년 10말 현재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투입자금 20.4조원중 10.7조원을 부실채권등 매각, 해제 · 환매 · 자진변제등을 통하여 회수

시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추궁 및 파산재단 배당에의 적극적인 참여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신속하면서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회수함으로써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5) 제도의 개선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표 3-7 금융관련제도 개선현황

구 분	내 용
예금보장제도개선	·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기관에 대한 변별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원리금 보장을 축소
여신건전성분류및 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강화	· 국제기준에 맞추어 3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 · 요주의 여신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1%에서 2%로 강화 · 차주의 미래 재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분류법을 준비기간을 거쳐 99년 결산시부터 시행할예정
적기시정조치제도	· 자본충실도를 기준으로 불건전 금융기관을 3단계로 분류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등 단계별 조치시행 ※ 은행,종금사는 BIS비율,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지표
경영평가제도 (CAMEL) 개선	·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평가체제를 확립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을 부과
시가평가제 도입	·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채권시가평가제를 98년 11월에 도입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실시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공시제도 강화	· 경영공시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하고 공시항목도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확대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 종합위험한도관리제도를 은행별로 도입·운용하고 단기자산(3월이내)을 단기부채(3월이내)의 70% 이상 유지토록 규제

야 한다.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전체적으로 건전성감독이 대폭 강화되었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축소·폐지되었다.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1) 개 관

금융구조조정의 대상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걸치도록 광범위하다는 점, 그리고 추진작업 자체가 단시일내에 일회성의 개혁으로 마무리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는 긍적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솔직하게 시인한 점과 충분한 재정부담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성한 점, 그리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점 등이 대내외신인도를 크게 회복시킨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그간의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하드웨어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상당부분 도려내고,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를 크게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그간의 금융구조조정은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킨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불합리한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은행의 퇴출 등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낡은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장규율과 자기책임원칙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정립되었고, 예금자보호 및 금융감독체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어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금융기관 스스로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행태와 여신관행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만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중개기능을 복원했으며, 금융기관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과 금융기관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감독을 통해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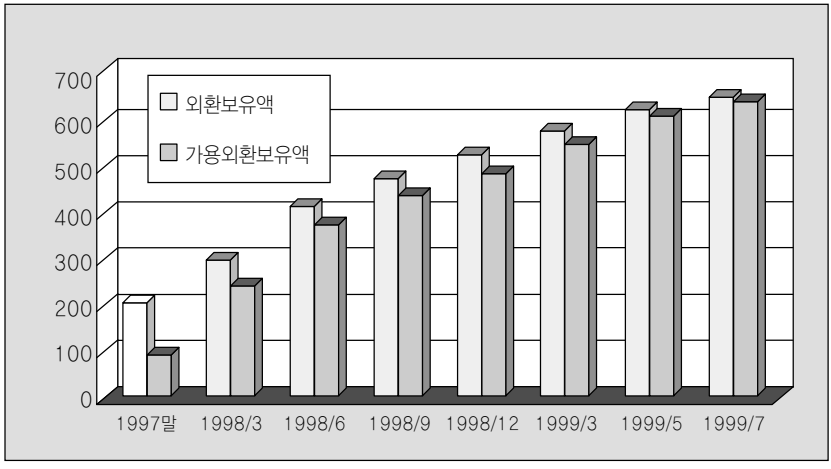
(2) 금융구조조정의 세부 평가

외환위기의 수습과 실물경제의 회복

가용외환보유고가 97년말의 88.7억불에서 99년 8월 기준 652.8억불로 대폭 확충되었다. 아울러 경상수지의 흑자기조와 금리인하등으로 원화환율 역시 99년 9월 현재 1200원대에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총대외지불부담중 단기외채비중이 97년말 44%에서 97년 7월말 24.4%로 감소하는 등 외채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환위기의 수습은 실업률의 하향조정과 GDP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져 실물경제 회복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3 한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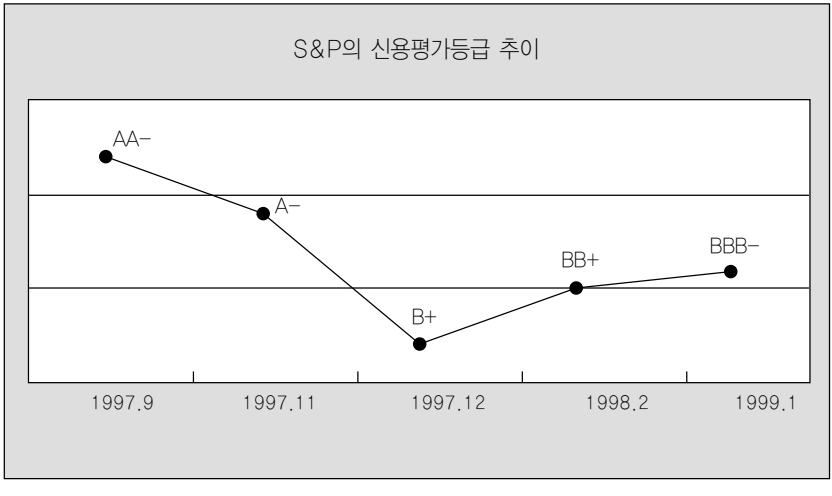
(달러)



대외신인도의 회복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Moody's와 S&P는 99년1/4분기 이후 한국의

그림 3-4 한국의 국가신용등급(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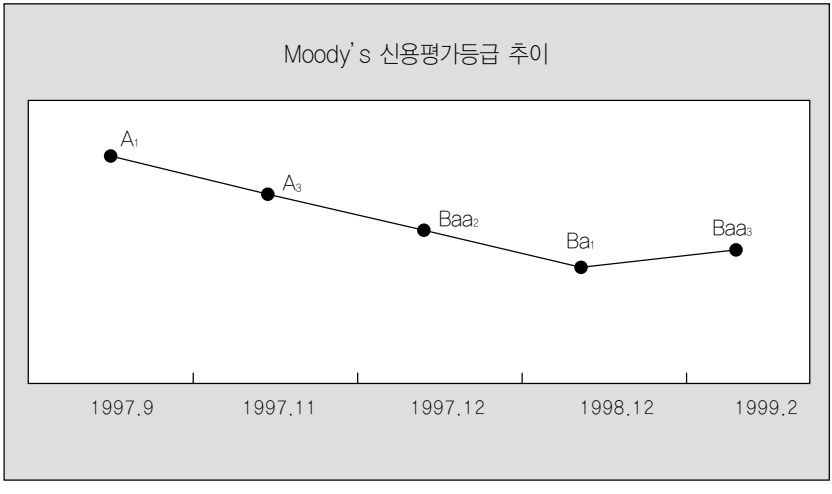


신용평가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자유치노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은 투자부적격인 상태를 벗어난 것이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장할 만한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OECD회원국에 걸맞는 국가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금융중개기능의 회복 및 효율성제고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회생비용이 과다한 95개의 금융기관[8]을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촉구함과 아울러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었다.

그림 3-5 한국의 국가신용등급(Moody's)



또한 성업공사에 의한 부실채권의 매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감축노력을 통하여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이 99년 6월말 현재 11.3%로 축소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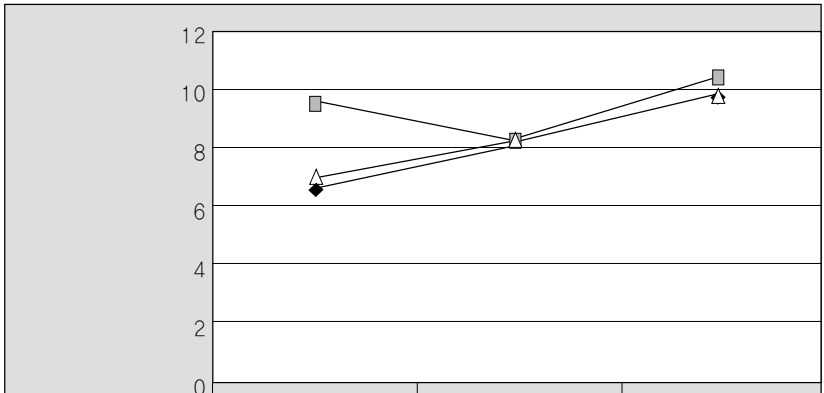
8) 신협은 1,666개중 189개를 정리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금융기능이 정상화되어감에 따라 이자율이 안정을 되찾았고, 금융기관의 자본금확충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이어져 기업의 부도율이 97년 12월 2.09%에서 99년 7월 현재 0.11%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3-6 일반은행 BIS비율 추이

(%)



	1997/12	1998/12	1999/6
시중은행	6.66	8.22	9.79
지방은행	9.6	8.31	10.4
일은평균	7.04	8.23	9.84

한편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 99년 상반기중 18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이 98년 상반기 6조 8,376억원 적자에서 4,424억원 흑자로 전환하였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경비절감노력도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 자산대비 총경비율이 0.76%(98년 상반기)에서 0.60%(99년 상반기)로 축소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최종경영성과인 1인당 및 점포당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반전했으며 자기자본당기순이익률(ROE)도 종금 및 생보사의 경우 감소하였으나 일반은행 및 증권, 투신사의 경우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8 일반은행의 단위요소별 생산성 현황

(백만원)

구 분		1998. 상반기	1999. 상반기	증 감
1인당	영업이익	△71	13	84(흑자전환)
	경상이익	△73	14	87(〃)
	당기순이익	△74	6	80(〃)
점포당	영업이익	△1,244	197	1,441(〃)
	경상이익	△1,271	206	1,477(〃)
	당기순이익	△1,294	89	1,383(〃)

표 3-9 업종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률(ROE) 현황

(%, %P)

	1998. 상반기	1999. 상반기	증감(%p)
일 반 은 행	△49.2	3.6	52.8
종 금[1]	△11.6	△19.0	△7.4
증 권[2]	△16.4	24.5	41.0
투 신	2.7	65.2	62.5
생 보[1]	△70.1	△137.8	△67.7

1) 3월말 기준 2) 1998년 4월~6월 및 1999년 4월~6월 기간중 수치임

표 3-10 제2금융권의 당기순이익

(억원)

	종 금	증 권	투 신	생 보
1998. 8(A)	△8,177[1]	△7,630	△1,106	△5,080
1998. 8(B)	4,249[2]	27,911	4,976	△40,216
B-A	12,426	35,541	6,082	△35,136

1) 1998년 3월말 기준 2)1999년 6월말 기준

손실분담원칙의 확립과 금융관행의 개선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임직원-고객등 이해관계자가 책임분담을 지

게 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추궁까지도 불사함에 따라, 99년 8월말 현재 131개 공적자금 투입기관중 112개 기관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되어 위법·부당행위자 650명(임원 284명, 직원 366명)에 문책조치를 내리고 불법행위자 423명(임원 198명, 직원 225명)에 대해 형사고지를 조치하였다. 대마불사라는 믿음에 대해 5개 부실은행 퇴출이라는 사건은 소비자의식을 고위험·고수익 수익상품의 선호에서 내실·안정성위주 상품의 선호로 변화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기관간 차별화의 진전과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산업의 자발적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공공성 중심에서 상업성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수익성·효율성의 제고가 경영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대두하게 되었고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체제에서 탈피하여 연봉제의 도입등 성과 위주의 인사체제가 정립되어 가는 추세로 변화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역시 외국인 임원의 영입과 비상임이사의 선임 확대등 점차 분산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4. 향후 추진과제

(1) 기본좌표

금융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는 부실요인의 제거등 하드웨어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금융기관 경영의 선진화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구조개혁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을 신

속하게 마무리짓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진적인 제도운영의 틀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게 구축해 나감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지배구조, 위험관리기법, 조직문화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는 한편 해외채권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개별기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 등과의 협조하에 우리나라 경제상황 및 구조조정 추진상황, 개별기업의 경쟁력 및 부채상환능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외신인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

정부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일은행의 매각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는 한편 서울은행의 경영진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선정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이와 함께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은행, 증권등이 공동출자하는 형식으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을 포함, 총 3조원 규모를 투입,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에 따른 BIS비율 하락우려에 대처하여 국내외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유도해 나가면서, 정부 출자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부과된 경영목표 미이행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표 3-11 구조조정의 마무리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은 행	제일 · 서울은행	· 제일은행은 New Bridge사와의 매각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울은행은 HSBC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후 경영진을 위탁선정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계획
	정부출자 은행	· 정부출자은행에 대하여는 대주주로서 은행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경영목표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비은행	보험	· 대한생명의 경영진을 조기선정하여 경영정상화 ·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추진토록 조치
	종금사	· 정상영업중인 11개 종금사에 대하여 BIS비율 달성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이에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투신 · 증권	· 한국투신 ·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3조원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
	리스	· 추가 구조조정 요인이 발생한 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추진되도록 유도

(3) 제도 및 관행의 개선

금융기관의 경영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의 뼈를 깎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기관은 내부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성과급, 계약직 등 능력을 중시하는 개방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제2금융기관에 대한 전횡적 지배체제를 개

선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사외이사의 확대 및 기능강화를 추진[9]하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10]하는 한편 보험·투신사의 법령준수여부 및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고객재산이 대주주 및 계열그룹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운영·전용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투신사 및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를 강화[11]한 것도 제2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금융기관이 여신관행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연대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신용평가에 기초한 신용대출관행의 정착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표 3-12 은행별 여신관행혁신 추진현황(99년 8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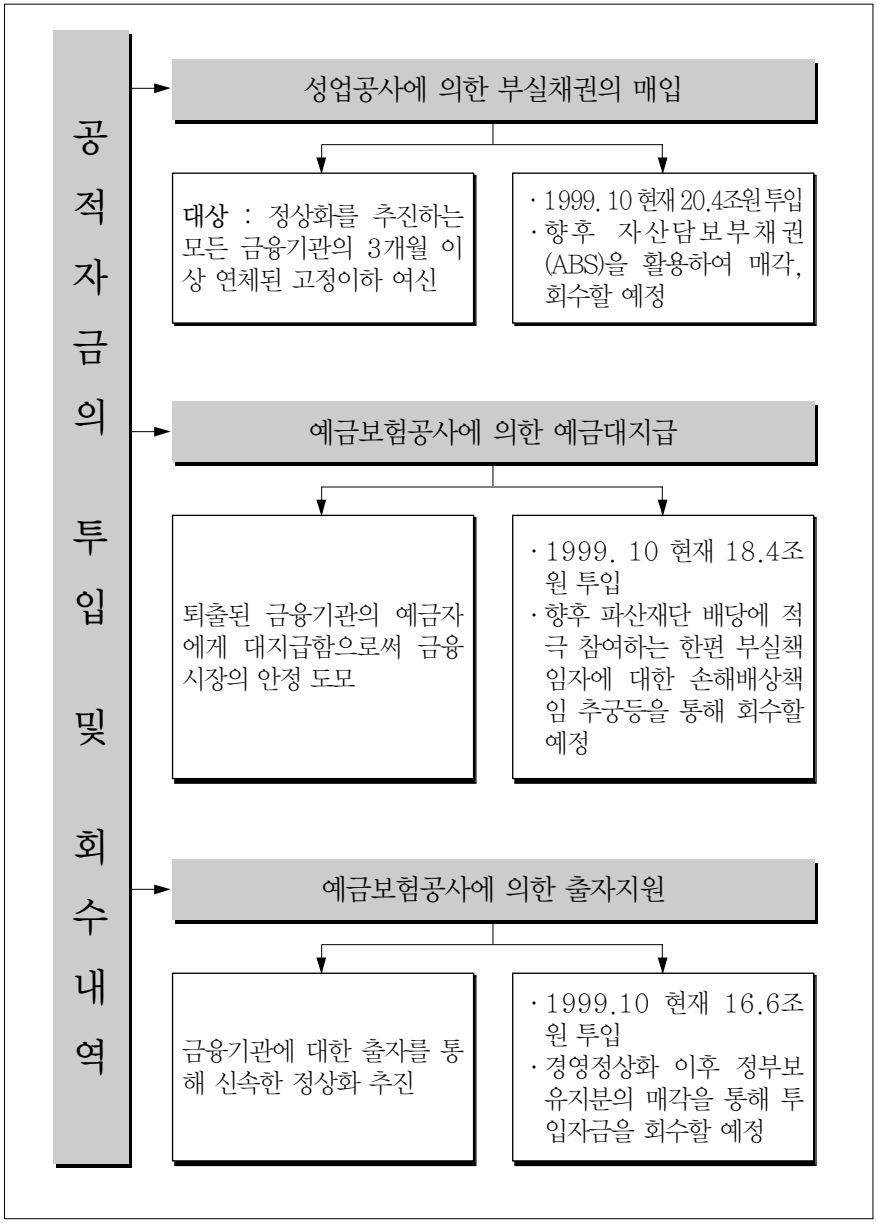
구 분	신용평가등급제	총신용한도제도 (Credit Line)	여신 전문직군화	여신 의사결정 체제 투명화	여신감리제도 (Loan Review)
추진현황	12개은행 도입·시행중	11개은행 도입·시행중	6개은행 도입·시행중	18개은행 도입·시행중	19개은행 도입·시행중

기타은행은 1999년 9월이후 도입추진중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이에 적합한 대손충당금 적립제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종합리스크 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 각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기관 경영위험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해 정부는 금리·주가·환율등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蠟BIS자기자본비율 도입방안을 99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9) 최저 사외이사수는 3인이고 종전 1/4이상에서 1/2이상으로 확대·의무화.
10)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감사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것이다.
11) 투신사의 경우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보험사는 총자산의 3%에서 2%로 하향조정

그림 3-7 공적자금의 투입 및 회수내역의 개념도



Box 2 다른 외환위기국가보다 신용경색이 빨리 완화된 이유

■ 신용경색은 일반적으로 공급부문의 애로로 인하여 신용공급이 균형수준보다 작은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

• 98년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14조원 감소하고 은행대출금리도 상승하는 등 공급부문에서의 뚜렷한 신용경색(credit crunch) 현상을 보여주었음

○ 특히 98년중의 고금리는 기업부도와 신용위험을 증가시키고, 금융감독의 강화는 은행이 BIS비율 충족을 위하여 여신을 회수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현상

■ 우리 경제가 다른 외환위기국가보다 신용경색을 빨리 극복하게 된 원인은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데 기인

첫째, 적극적인 차관자금 도입 및 외채 만기연장 등을 통하여 외환유동성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을 확립

둘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98년말에는 사상 최저수준인 한자리수로 안정시켰음

셋째, 회생가능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연말에는 거의 모든 은행의 BIS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음

넷째,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97년 12조원이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공급을 98년에는 총 33조원으로 확대하였음

⇒ 이러한 노력으로 신용경색은 98년말부터 점차 해소되어 99년 9월까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17조원 증가하는 등 신용경색은 완전히 해소되었음.

3 기업구조조정

1. 배경 및 추진방식*

(1) 추진의의 및 배경

98년 4월 금감위가 발족한후 기업구조조정 정책방향을 수립하던 당시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 등으로 시급한 구조조정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기업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채권이 부실화되어 금융기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외에도 금융구조조정과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고려한다면 기업구조조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자율협상을 통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해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인 상호신뢰도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이해당사자간 자율협상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은 그 규모가 크고, 계열기업군의 경우에는 순환출자 등으로 지배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각 계열사가 상호지급보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조속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과거 8.3조치나 산업합리화조치때와 같이 정부가 개입할 경우 비효율성과 특

* 집필자 :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서경국 책임조사담당

혜시비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부의 기본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2) 기본원칙

정부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IBRD 및 영란은행의 기업개선작업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외국의 구조조정사례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첫번째 원칙은 기업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98.1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5대재벌 총수간에 합의된 기업구조개혁 5대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할 경우 특혜시비와 비효율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세번째 원칙은 이해관계자간에 적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부실발생에 의한 손실을 이해당사자가 부실발생의 책임여하에 따라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다.

네번째 원칙은 기업개선작업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회생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바로 기업개선작업이며, 기업회생을 위해 양자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

기관과 기업의 적절한 손실분담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추진방식

정부는 이와같은 기본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런던식 추진방식(London approach)을 채택하였다.

런던식 추진방식은 해당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율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데서 유래한 방식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 등으로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므로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런던식 추진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영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그간의 경험과 금융기관간 신뢰성 부족 등으로 그들 스스로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와 상호 신뢰를 축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에서와 같은 금융기관간 신사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도 영국과 같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자율적인 조정·중재기구의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근거하여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이 기구는 기업개선작업 추진 등 기업구조조정의 실질적인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1) 기업구조조정 주요 추진실적

정부는 98년 상반기중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조기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시장참가자들의 신용위험이 높아 고금리가 지속되고, 각종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각 은행의 "기업부실판정위원회"가 정상적인 금리수준에서도 회생이 불투명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토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수단 마련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각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였다. 즉, 기존의 기업여신 사후관리 조직과는 별도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전담하는 "기업개선작업팀(workout team)"을 은행장 직속하에 설치(98.6.20)토록 하고, 5대 계열에 대하여는 별도의 "5대계열 여신전담팀"을 주채권은행내에 구성(98.7.2)토록 지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은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아울러 기업개선작업이 보다 확실

* 집필자 :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홍 길 책임조사담당

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력증원, 우수인력 확충, 담당 직원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기업개선작업 추진 전담조직을 대폭 보강토록 하였다(98.8.27).

기업구조조정 협약 체결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부실기업의 처리에 있어서 법정관리 또는 화의와 같은 법적 절차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이러한 절차는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므로 시간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운영의 탄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기업회생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자율협의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개선작업이 도입되었다. 이는 당사자간 자율의사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98년 6월 25일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는 은행,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여신전문기관 등 금융권을 대부분 포괄하는 210개 국내금융기관이 가입하였으며, 협약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재제조항을 마련하여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외부자문그룹 선정

국내금융기관은 그 동안 자율 의사에 따라 주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일천하였으므로 기업개선작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지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의 기업개선작업을

전문적·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외부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선정하여 6대 시중은행과 자문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외부자문그룹은 Schroders, ING Barings 등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 회계법인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의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하여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선진적인 기업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외자도입 지원방안에 대한 조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부자문그룹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의 기술지원자금(Technical Assistance Loan)중 33백만달러를 배정하였다.

기업개선작업 본격 추진

기업개선작업은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부도에 이를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산업합리화조치 등과 같이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산매각, 비핵심 사업부문의 매각·합병 및 외자유치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일부 경우에는 주주들도 감자를 통해 적정 손실을 분담한다.

그 동안 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된 내용을 보면 98년 7월 6일 고합계열 소속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을 시작으로 99년 8월말 현재 17개 주채무계열(대우계열 12개사 포함) 소속기업 54개 및 38개 중견대기업 등 총 93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중 99년 8월말 현재 주채무계열 소속 41개사와 38개 중견대기업 등 79개 업체에 대

한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개선작업은 대상기업의 신청이나 채권금융기관의 선정으로 시작되며, 통상 3개월~6개월간의 기간내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의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된다. 그러나 거평계열 3개 업체 및 고합계열 4개 업체 등 9개 업체의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중재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었다.

한편, 통일계열 4개 업체 및 아남전자의 경우에는 각각 지배주주의 자구의지가 미흡하고,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기업개선작업 부적격대상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외에도 경기화학 및 달재화학은 대주주가 손실분담을 회피한 결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부적격 처리되었다. 반면에 한창화학의 경우에는 외자유치를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조기에 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하였다.

표 3-13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현황 (98년 8월말 현재)

(개사)

구 분	선 정	탈 락	졸 업	현 재	
					계획확정
주채무계열	59	5	-	54	41
중견대기업	42	2	1*	39	38
계	101	7	1	93	79

* 한창화학(1999.6.16)

자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채무조정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실사를 통해 향후 기업개선작업 대상기간 동안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기업이 부담가능한 채무규모를 산정하여 금융비용이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기존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조정의 수단으로는 금리감면 및 이자면제가 주로 이용되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기업에 대한 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99년 6월말 현재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현황을 보면 금리감면 및 이자면제 대상채권액이 27.4조원으로 총채권액 33.6조원의 81.6%를 차지하고, 3.5조원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지원 등으로 2.0조원의 신규여신을 지원키로 하였다.

표 3-14 기업개선계획 확정업체에 대한 채무조정 현황 (98년 6월말 현재) (조원)

구 분	채무조정					신규여신
	금리감면	이자면제	출자전환	기 타	계	
금 액 (구성비)	21.9 (65.2)	5.5 (16.4)	3.5 (10.4)	2.7 (8.0)	33.6 (100.0)	2.0

자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한편, 채권단은 자기이익의 보전차원에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하여 부실경영의 재연을 막고 기업개선계획의 충실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한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채권단 주도로 최고경영진을 교체하여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Box 3 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사례

① 전문경영인이 투입되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
- 동아건설 : 최원석 회장이 완전히 손을 떼고 고병우회장으로 교체
- 동국무역 : 창업주가 물러나고 채권단이 창업주의 2세(백문현)와 공동대표로 전문경영인(남윤우)을 선임

② 모그룹으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독자생존을 추구하는 사례
- 쌍용건설 : 모기업인 쌍용양회가 그룹차원에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조건으로 모그룹에서 분리
- 동양물산기업 : 기업자체의 재무상태는 건전하나 모그룹(벽산)에 대한 빚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채권단이 빚보증을 면제해 주자 모그룹에서 완전히 분리
- (주)제철화학 : 모그룹(거평)에서 분리되어 제3자 매각 추진중

③ 구경영진이 대폭적인 감자를 통해 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례
- (주)진도 : 15개 계열사중 12개를 정리한다는 계획아래 8개 계열사 정리
- 남선알미늄 : 98년중 부동산 564억원(회사 총자산 1,989억원) 매각

기업개선계획 추진업체의 자구노력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과 더불어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산매각 및 외자유치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통해 조속한 기업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99년 6월말 현재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75개업체는 총 9.8조원의 자구계획중 2.7조원의 자구노력을 이행하여 전체 계획대비 27.5% 실현하였다.

표 3-15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의 자구계획 및 실적 (99년 6월말 현재) (억원, %)

구 분	자산매각	외자유치*	계열사 정 리	경영개선	기타**	계
계 획 (구성비)	4.8 (49.0)	1.8 (18.4)	1.2 (12.2)	0.8 (8.2)	1.2 (12.2)	9.8 (100.0)
실 적 (이행률)	0.6 (12.5)	0.9 (50.0)	0.0 (5.9)	0.3 (37.5)	0.8 (66.6)	2.7 (27.5)

* 자산, 계열사 등 해외 매각 ** 유상증자,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료 : 주관은행

기업개선작업 대상외 기업의 정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대기업들은 그 동안 차입위주의 방만한 경영과 비핵심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가 현재와 같은 경쟁력 저하 및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주력업종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계열은 비핵심 기업의 매각을 통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타 계열사에 합병하거나 청산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채무계열 및 기타계열은 총 349개 소속 계열사중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과 존속기업을 제외한 249개사(71.3%)를

표 3-16 기업개선작업 대상계열의 계열사 정리현황 (99년 6월말 현재) (개, %)

구 분	계열사 수(A)	W/O* (B)	존속 (C)	정리 방침# (A-B-C)				
				매 각	청 산	합 병	법정관리	계
주채무계열	248	38	12	82(35)	48(18)	47(25)	21(-)	198(78)
기타계열**	101	33	17	24(11)	21(6)	2(-)	4(-)	51(17)
계	349	71	29	106(46)	69(24)	49(25)	25(-)	249(95)

* W/O(Workout) 업체 수 ** 계열을 구성하지 않는 중견대기업(4개) 제외
()내는 정리 완료된 계열사 수, 매각에는 계열분리, 법정관리에는 화의 포함.
자료 : 주관은행

매각, 합병, 청산 등으로 정리할 예정이며, 99년 6월말 현재 95개사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여 38.1%의 진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개선작업 대상외 계열의 구조조정 추진

98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6대~64대 계열중 16개 계열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통일·해태 등 3개 계열은 법정관리 등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두산·금호·효성·한솔 등 나머지 40개 계열은 계열사 매각·합병·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에서 제외된 기아·한보 등 15개 계열은 법정관리 또는 화의 등에 의해 기업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표 3-17 기업개선작업 대상외 계열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구 분	그 룹 명
기업개선작업 추진	쌍용, 고합, 동아건설, 아남산업, 신호, 갑을, 동국무역, 거평, 우방, 벽산, 진도, 신원, 강원산업, 세풍, 신동방, 대구 백화점 등 16개 개열
법정관리 등	한일, 통일, 해태 등 3개 계열
자체 구조조정	두산, 금호, 효성, 한솔, 대상 등 40개 계열
계	59개 계열
기 부도발생	기아, 한보, 삼미, 한신공영, 대농, 뉴코아, 수산중공업, 한라, 청구, 진로, 나산, 극동건설, 두레, 보성, 화승 등 15개 계열

: 1998년 1월 이후 부도발생

표 3-18 6~64대계열의 기업개선작업 현황 (99년 8월말 현재)

-총 17개 계열, 47개 업체 (대우계열 제외)

은행명	계 열 명	대 상 기 업	대상선정	Plan확정
조 흥	거 평*	거평화학, 거평제철화학 거평시그네틱스	98.7.16	98.10.14
	세 풍	세풍, 세풍종합건설	98.7.18	98.10.17
	강원산업	강원산업, 삼표상사, 삼표산업 삼표강원중공업	98.7.18	98.11.12
	아 남	아남반도체, 아남전자**, 아남환경	98.10.24	99.3.17
	쌍 용	쌍용건설, 남광토건	98.11.3	99.3.2
한 빛	고 합*	고합, 고려석유화학, 고려종합화학 고합물산	98.7.6	98.10.21
	갑 을	갑을, 갑을방적	98.7.14	98.10.17
	벽 산	벽산건설, 벽산, 동양물산기업	98.8.6	98.11.26
	신 동 방	신동방, 해표, 해표푸드서비스, 코코스	99.3.25	99.8.26
제 일	신 호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판	98.7.9	98.10.24
	통 일**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일신석재 한국티타늄공업	98.7.20	부 적 격
	동국무역	동국무역, 동국방직, 동국합섬	98.10.17	99.2.13
서 울	진 도	진도, 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	98.7.14	98.11.6
	우 방	우방	98.7.16	98.11.16
	동아건설	동아건설	98.8.21	98.9.11
외 환	신 원	신원, 신원제이엠씨, 신원유통	98.7.18	98.10.28
대 구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 대백쇼핑	98.9.1	98.11.27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결정
**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부적격 판정
자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표 3-19 기타계열 및 중견대기업의 기업개선작업 현황 (99년 8월말 현재)

-총 10개 계열 28개 업체, 13개 중견기업

은행명	계 열 명	대 상 기 업	대상선정	Plan확정
조 흥	동화면세점	유진관광, 동화면제점, 동화투자개발	98.8.18	99.9.20
	동방	동방, 동방T&C, 동방금속공업	98.9.15	98.12.30
	충남방적	충남방적, 충방	98.11.4	99.1.28
한 빛	신 우	신우, 신우산업개발, 신우텔레콤	98.11.11	98.12.23
	—	피어리스	98.8.17	98.10.27
	—	제텍스	98.10.28	98.12.28
	—	성창기업	98.10.16	98.12.23
제 일	맥슨전자	맥슨전자 일동제약*	98.7.31 98.9.9	99.1.23
서 울	미주실업	미주실업,미주철강,미주금속,미주제강	98.12.24	99.4.19
외 환		영창악기	98.9.19	98.12.16
	신송식품	신송식품, 신송산업	98.12.30	99.3.29
신 한	—	한국컴퓨터	98.8.29	98.11.17
부 산	한창	한창, 부일이동통신*, 한창제지, 트레드클럽, 한창화학	98.8.24 98.9.03	99.1.23
	—	세신	98.9.14	98.12.4
	—	고려산업	99.3.26	99.6.24
경 남	—	무학	98.10.10	99.1.9
산 업	경기화학**	경기화학공업, 달재화학	98.9.12	부 적 격
	—	삼일공사	98.9.09	98.12.4
	—	남선알미늄	98.9.11	99.1.5
	—	대경특수강	98.9.14	98.12.10
주 택	동보건설	동보건설, 동보산업개발	98.10.1	98.12.29
대 구	—	서한	98.11.9	99.2.3
	—	화성산업	98.11.17	99.2.9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부적격 판정

자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그림 3-8 기업개선작업 추진절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통보

- ㅇ 기업개선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주채권은행간 협의 및 검토후 소집통보
- ㅇ 통보 즉시 채권행사유예 시작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 ㅇ 3/4이상의 찬성시 기업개선작업 진행
- ㅇ 채권행사유예기간은 최장 6개월

↓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 마련 · 확정

- ㅇ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 ㅇ 부채조정과 자구계획, 지배주주 손실분담방안 등을 포함한 5년 내외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 ㅇ 채권금융기관간 협상*및 채권단-당해기업 협상을 통해 확정

*자율합의 실패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

기업개선약정서(MOU) 체결

- ㅇ 이행의무와 미이행시의 제재조치(경영권 박탈, 기업개선작업 중단 등) 등을 담은 약정체결로 본격적인 기업개선작업 개시

↓

사후관리

- ㅇ 경영관리단 파견, 보고체계 구축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의한 경영감시

5대계열 구조조정 추진

5대계열은 신용도가 비교적 높고, 유동성도 풍부하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각 계열은 채권금융기관과 자율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핵심사업부문에 대한 기업역량 집중과 대규모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재계 자율에 의한 대기업간 사업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5대계열의 경우에도 64대 계열과 마찬가지로 98년 2월~4월중에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98년 12월에 기존 약정의 내용 및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수정·체결하였다. 아울러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의 공동 간담회를 통해 성실한 구조조정 실천에 합의하고, 주요 추진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수정재무구조개선약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열사 수를 98년 12월 현재 253개에서 99년말까지 130개로 대폭 감축하여 주력업종 중심으로 계열구조를 개편하고, 비주력 계열사 및 사업부문 매각 등의 자구노력과 증자를 통하여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적극 해소하고,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선임을 확대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계의 이러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이 당초 제시한 일정대로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은 월별로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자구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금리 부과, 신규여신 중단, 기존여신 회수 등의 단계별 재제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표 3-20 5대계열의 구조조정계획 (98년 12월 현재)

(개)

계 열 명	주 력 업 종	계 열 사 수	
		1998년말	1999년말
현 대	자동차, 건설,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	63	30
삼 성	전자, 금융, 무역/서비스	65	40
대 우	자동차, 중공업, 무역/건설, 금융/서비스	41	10
L G	화학/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	53	30
S K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	42	20

자료 : 주채권은행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채권은행이 각 계열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제대로 점검·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5대계열 구조조정 실적

99년 상반기까지 5대계열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을 보면 부채비율 감축, 외자유치, 상호지보 해소, 분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하였다. 다만, 계열사 정리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정리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계열분리를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 5대계열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추진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대우계열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추진성과가 부진하고 유동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확실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98년 8월 불가피하게 12개 주요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3-21 1999년 상반기중 5대계열 구조조정 추진현황

구 분	계획		1999. 상반기중 이행실적(C)	목표대비 이행율(C/B, %)
	1999년(A)	상반기(B)		
부채비율(%)	198.3	335.7	302.2	—
자구노력(조원)	48.8	14.7	17.3	117.7
외자유치(억달러)	147	24	27	113.4
상호지보해소(조원)	4.3	2.1	3.4	164.0
분사화(건)	203	109	301	276.1
지배구조개선(명)*	159	159	167	105.0
계열사 정리(개사)	111	62	61	98.4

* 계열주 이사선임, 사외이사 선임, 사외감사 선임
자료 : 주채권은행

5대계열의 부채비율 감축

그 동안 우리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여타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수익성이 낮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허약한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무한경쟁의 세계경제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재계는 공감하였으며, 이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다.

99년 상반기중 5대계열의 부채비율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은 5.4조원의 부채를 감축하여 99년 6월말 현재 부채비율을 192.5%로 축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감축목표를 달성하였다. LG계열과 SK계열도 각각 1조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하여 각각 246.5% 및 227.3%의 부채비율을 시현하였다. 한편, 현대계열은 기아차 인수 등에 따라 부채규모가 3.4

조원 증가하였으나 유상증자(5.9조원) 등에 힘입어 부채비율은 340.8%로서 98년말(449%)에 비해 108%p나 하락하였다. 반면, 대우계열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 따라 부채규모가 1.9조원 증가한 결과 99년 6월말 부채비율이 588.2%에 달해 98년말의 526.5%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3-22 5대계열의 부채비율 현황 (99년 6월말 현재)

(조원, %, %P)

구 분		현 대*	대 우	삼 성	L G	S K
부 채	1998년말(A)	61.5	59.9	44.7	36.4	22.5
	1999.6월말(B)	64.9	61.8	39.3	35.2	21.4
	증감(B-A)	3.4	1.9	△5.4	△1.2	△1.1
부 채 비 율	1998년말(A)	449.3	526.5	275.7	341.0	354.9
	1999.6월말(B)	340.8	588.2	192.5	246.5	227.3
	증감(B-A)	△108.5	61.7	△83.2	△94.5	△127.6

현대의 경우 기아인수에 따른 부채증가 7.5조원 감안시 기존 계열사의 부채는 4.1조원 감소

자료 : 주채권은행

5대계열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중 하나인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관행은 차입위주의 기업경영을 가능케 한 요소로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 제고를 저해하고, 타 계열사의 연쇄도산발생에 대한 우려로 부실기업의 퇴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후진적 기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하나로 상호지급보증 해소를 설정하고, 98년 4월부터 30대 계열의 신규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98년 9월말 현재 5대계열 계열사간 채무보증 21.4조원중 98년 4/4분기중 15.1조원을 해소한 데 이어 99년 상반기중에도 3.4조원을 해소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기관이 포괄근보증, 중복·과다보증 등을 조기 해소토록 지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건전한 여신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5대계열의 대규모사업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80년대에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중공업 및 석유화학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어 왔다. 즉 재벌들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경쟁의식에 치우친 결과 과잉투자가 초래되었으며, 이는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적자 누적과 계열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었다. 또한 투자재원을 차입에 의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각 계열이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9개 사업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재계는 98년 9월에 자율적 논의를 거쳐 과잉설비 분야의 구조조정 대안으로 자동차, 전자를 제외한 7개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중복투자설비의 통합, 상호사업교환 및 사업이전 등의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정유부문에서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의 정유부문 인수를 완료(99.6.30)하였으며, 반도체부문에서는 현대전자가 LG반도체 인수를 완료(99.7.7)하였다. 또한 철도차량부문은 현대·대우·한진

*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전자

이 통합법인 설립을 완료(99.7.1)하여 사실상 타결되었다. 이외에 석유화학 및 항공기부문은 외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선박용엔진 및 발전설비 부문도 대부분 마무리 상태에 있다.

한편, 기존의 7개 부문 이외에 98년 12월부터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사업맞교환이 추진되어 왔으나 삼성자동차 운영에 따른 손실분담에 대해 관련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관리를 통해 삼성자동차의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운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경제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난 해소와 연쇄부도 방지에 역점을 둔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설치(98.5.9)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조건부지원 및 기타 등 3단계로 분류하여 우선지원 및 조건부지원 기업에 대하여 업체별 금융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규자금지원, 여신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였다.

표 3-23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98년 7월~99년 6월)

(조원)

구 분	대상업체수 (개)	자금지원 실적			
		만기연장	신규지원	금리우대등	계
우 선 지 원	14,811	7.8	10.4	12.2	30.4
조건부지원	21,110	11.5	11.3	12.5	35.3
계	35,921	19.3	21.7	24.7	65.7

금리우대, 출자전환, 중장기대출전환 포함.
자료 : 주관은행

99년 6월말 현재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총 38,014개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14,811개(39.0%), 조건부지원 21,110개(55.5%), 기타 2,093개(5.5%)기업으로 분류하고, 98년 7월~99년 6월 기간중 신규자금지원 21.7조원, 여신만기연장 19.3조원 등 총 65.7조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거래은행이 은행 퇴직직원 등 금융분야 경력자를 "중소기업지원 전담역"으로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들 전담역은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에 소속되어 기업구조조정기금 활용, 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기업의 자금·회계관리 업무 보좌 및 조언, 여신만기 연장 및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업규모가 크고 거래금융기관이 다수인 532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 추진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이중 141개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조건부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신규자금 지원시 부채비율감축·자산 매각·증자 등의 특약을 체결한 후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표 3-24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99년 6월말 현재)

(개사)

기업개선작업			조건검토 및 특약체결			
검토대상	선정대상	협의완료	조건부 지원기업	검토대상	특약체결	협의중
532	277	141	21,110	20,212	4,800	15,412

자료 : 주관은행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영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부채기금(1개), 통합기금(3개) 등 4개 기업구조조정기금(1.6조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잔존단기부채를 장기부채(2~3년)로 전환하거나 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투자대상으로는 수출비중이 큰 기업, 첨단산업기업 및 벤처기업, 금융기관 퇴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기업 등이며 5대계열 계열사 및 정부투자기관은 제외된다.

표 3-25 기업구조조정기금 운영현황 (99년 6월말 현재)

(억원, %)

구 분	기금규모	운용현황[3] 투자업체수	집행실적(집행률)
부채기금[1]			
· 서울부채조정기금	6,000	10개업체	3,345(55.8)
통합기금[2]			
· 한강구조조정기금	3,333	22개업체	2,158(64.7)
· 무궁화구조조정기금	3,333	14개업체	1,977(59.3)
· 아리랑구조조정기금	3,334	20개업체	2,530(75.9)
계	16,000	61개업체[3]	10,010(62.6)

주 : 1)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2) 부채조정 및 주식인수
3) 각 기금 공통투자로 인한 중복업체수 제외
자료 : 주관은행

(2) 기업구조조정 평가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채권금융기관과의 자율협의를 통해 마련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 만연하였던 불안심리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5대계열의 경우 7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으로 각 계열이 수익성보다 경쟁의식에 기반한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각자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면 중복·과잉투자 문제 해소 및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수정 체결을 통해 각 계열이 구조조정 추진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제시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이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벌칙금리 부과 및 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 추진의 기본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99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감안할 때 대우를 제외한 4대계열은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6대~64대계열중 16개 계열 및 중견대기업이 추진중인 기업개선작업은 경제위기 이후 극심하였던 신용위험과 연쇄부도위험을 조속히 차단하고, 기업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우리 경제가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상호 이해 및 신뢰가 부족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추진경험이 일천하였던 우리의 기업문화에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율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기업 자체의 조기회생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확보되므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윈-윈 게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대우계열의 기업개선작업 추진시 관련당사자

들이 신속히 합의를 도출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많은 계열사와 방만한 경영으로 특징지워졌던 재벌들이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비핵심 계열사 및 경쟁력이 낮은 계열사를 매각, 합병, 청산 등의 형태로 정리하고 핵심기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지원 및 조건부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여신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기업구조정기금 설립 및 중소기업 전문역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회생을 지원한 결과 산업기반의 붕괴와 고용여건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3. 향후 과제*

재계와 정부는 98년 1월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대원칙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1년 반동안 많은 부문에 걸쳐 합의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재계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였고, 중복·과잉설비투자 해소 등을 위해 8개 업종

* 집필자 :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김철웅 책임조사담당

에 대한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은 경제여건이 바뀌면 기업경영이 다시 악화되고 위축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영방식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국민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여년 고도성장과정에서 재벌그룹이 성장과 수출,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는 적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화된 무한경쟁시대에서 더 이상 방만한 선단식 경영이나 차입에 의존하여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영방식으로는 세계 유수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기업집단이 방만한 선단식 경영방식을 종식하고 투명한 협력구조하에서 각 계열기업이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핵심분야에 전념하는 것만이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튼튼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의 구조개혁이야말로 외환위기요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21세기에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관건임을 인식하고 대기업 구조개혁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5대원칙이 명실공히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구조개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개선,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억제와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그리고 변칙상속·증여의 방지 등 재벌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조기 완결

지난해 이후 추진되어온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과거로부터 누적된 적폐의 해소, 즉 과거로부터의 탈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앞으로의 기업구조조정 과제는 다가올 21세기의 시대의 조류를 올바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디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부실을 완전하게, 투명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수면위로 떠오른 대우그룹 구조조정문제를 시장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대우그룹 자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빚어진 금융시장 불안요인 및 우리경제내의 불확실성 문제 등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하여 주주,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합리적인 손실분담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기업개선계획(workout plan)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출자전환, 금리감면, 채권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회사의 금융비용을 대폭 경감시켜 기업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업은 자산매각, 외자유치, 경영합리화 추진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대우그룹 계열사중 경쟁력있는 기업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제3매각 방식을 통하여 독립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한편, 부채비율 200% 감축문제는 과거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누적

된 부실을 털어내면서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역량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또한 이는 해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바, 이의 달성여부는 우리 경제 및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명시된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예정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은 이행상황을 월별로 점검·독려할 것이며, 경제여건 변화로 일부 목표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도 각 그룹의 이행상황을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점검·지도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재벌그룹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증가시켜 가공의 자본 증가로 실질적인 부채감축이나 자본유입 없이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나 내년 결합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순환출자로 인한 부채비율 감축효과는 모두 상쇄되게 된다.

따라서 재벌그룹이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 있는 자산매각, 외자유치, 계열분리, 분사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부채비율 감축이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98년초 폐지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설치

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상당부분의 기업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및 직접적인 경영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과의 기업개선약정에 의거하여 시장에서 동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금운영의 고정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을 매입 또는 위탁형태로 넘겨 받아 국제적인 구조조정 전문가가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CRV)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세계은행의 무상공여자금을 활용하여 우리 환경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기구 운영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기구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기업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며, 시장내에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양적 팽창에 치중한 결과 세계적 규모의 기업은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에 맞는 경영소프트웨어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책임경영을 위한 견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사외이사 추천에 있어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변칙상속·증여를

통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하고, 변칙상속과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재벌그룹의 투신·보험 등 제2금융권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되고 은행에 비해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운용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wall)을 설치하여 거래고객 및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한 분기별 사업보고서제도 도입 및 투신사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실경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 억제를 통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다.

핵심사업부문의 위주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이 보유한 각종 자원과 비전, 전략적 적합성에 근거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생존가능성 및 성장성을 감안할 때 최대한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 핵심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구조조정이 과거의 과잉·중복투자부분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핵심주력업종 위주로의 사업구조의 재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듯이 어떤 재벌도 다산업, 다업종에 걸친 40~50개 기업을 모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과거의 성장중심형 전략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내재가치와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행의 재벌구조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핵심역량사업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며 점차 자생력 있는 독립기업의 연합체적인 성격인 지주회사제도, 네트워크형 조직구조 또는, 전략적인 제휴 등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적으로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부문 전반에서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Box 4 현행 기업구조조정 방식과 과거 부실기업 정리방식의 차이점

■ 현행 기업구조조정방식은 과거 부실기업 정리방식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첫째, 과거에는 정부가 정리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특혜금융 등 구체적인 지원시책까지 결정하였으나

- 현재는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부채조정과 사업구조조정을 포함한 기업개선방안(workout plan)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개별기업 문제에는 간여하지 않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금융시장 안정 등 시장관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 둘째, 과거 부실기업 정리방식은 유사업종의 인수업체를 먼저 정하고 인수기업이 실사를 통해 인수조건을 결정하였으나

- 현행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방식은 국내외 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기업이 정상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하고, 기업 특성에 맞게 매각 · 합병 · 사업분리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수립
- 특히, 제3자 매각의 경우 국내외 원매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인수과정에서의 특혜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

■ 셋째, 과거 부실기업 정리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리금 탕감, 장기저리대출(seed money)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 현행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해당 기업의 미래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하여 부실이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정상화를 도모
- 또한 부채조정 수단도 원금탕감이 아니라 출자전환이나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활용하여 향후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주식가치 상승을 통해 손실을 회수할 수 있는 win-win 방식을 채택

Box 5 워크아웃의 핵심 구성요소

■ 99. 6월 210개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합의로 도입된 기업개선작업(workout)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게 됨.

• 금년 9월말 현재 대우 12개 계열사를 포함, 64대 그룹중 17개 그룹의 54개사와 중견대기업 39개사 등 총 93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중

■ 기업개선작업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Standstill)상태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부채조정(debt rescheduling), 신규자금지원(new liquidity injection), 대상기업의 자구노력(business restructuring)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것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겨난 손실은 주주는 물론 경영진, 종업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stake holder)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임.

• 일종의 사적화의인 기업개선작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생가능성도 낮은 법정관리·화의 등 법적 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효율적

• 또한 퇴출해야 할 기업을 정부나 금융기관이 밀실합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명을 단순히 연명시켜주는 구제금융(bail-out)과 달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회생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 기업개선작업 추진방식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발달하였으며, 우리의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대상 기업간 자율협상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재역할을 맡도록 한 런던식 기업개선작업(London Approach)를 채택

• 기업규모가 작고, 단순한 경영지배구조를 가진 스웨덴·헝가리 등은 정부개입방식(centralized approach), 미국·폴란드 등 대상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시장감시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는 민간자율방식(decentralized approach)을 채용

■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손실 최소화의 원칙(적격대상 선정의 원칙)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의 회복이 가능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이므로 도산에 직면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는 안되며,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조치는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 유지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부도유예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됨.

② 공평성의 원칙(손실부담의 원칙)

• 국내외 전문회계기관의 실사결과에 따라 주주, 채권자,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 간에 공평한 손실분담.

–기존 주주의 경우 감자,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보유채권액에 따른 손실분담, 기업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경우 기존 지분의 감자 및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통해 손실부담.

③ 신속성의 원칙(비용 최소화의 원칙)

• 기업개선계획은 신중한 결정을 요한다 하더라도 합의가 지연될수록 대상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고, 외부전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

Box 6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배경과 전망*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은 축소경영에 나선 여타그룹과 달리 세계경영을 기치로 투자확대와 밀어내기식 수출, 이로부터 창출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행태 지속

- 이에 따라 98년중 그룹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특히 그룹매출의 창구역할을 하는 (주)대우의 매출은 54% 증가
- 그러나 이와 같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급증에 따라 현금흐름은 오히려 크게 악화되어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운전자금 부족상태는 지속

■ 이러한 자금부족을 자구노력 보다는 금융차입을 통해 해소해왔으나,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사채·CP에 의존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높은 금융비용, 수익성 저하, 신용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더욱 더 비싼 금리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

- 그 결과 영업이익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금융비용이 97년에 비해 2배(3조원 → 6조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로 반전
- 특히, 98년 하반기 들어 대우 CP는 他그룹에 비해 3~5%p 높은 10~11%의 높은 금리조건이 부과

■ 이와 같이 부실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우그룹은 98년초 이래 GM과의 자동차 지분매각협상 등을 시도했을 뿐 이렇다 할 결실없이 여타 그룹보다 구조조정이 1년 이상 지연

- 그러나 이러한 대우그룹의 무리한 차입경영은 98년 7월 및 10월에 걸쳐 도입된 CP 및 회사채 보유한도규제제도에 의해 일단 제동

* 집필자 :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권순찬 책임조사담당

■ CP 및 회사채 한도규제로 차입금 증대를 통한 확대경영이 어려워지자 대우는 98년말부터 구조조정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정부도 대우 구조조정 가속화를 독려

- 이에 따라 대우는 삼성과의 자동차 · 전자부문 맞교환을 빅딜대상에 포함키로 삼성측과 합의(98.12.7)하고, 자동차 · 중공업 · 무역/건설 · 금융/서비스등 4개 업종을 핵심업종으로 하여 계열사를 대폭 축소(41개→10개)하는 내용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주채권은행과 체결(98.12.28)
- 그러나, 99년 상반기 대우그룹의 자구이행실적은 전체 계획(13.6조원)의 4.3%에 그쳤고, 그 결과 대우의 구조조정 이행 가능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급속히 저하되어 대우는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봉착

■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우는 계열사와 김우중 회장의 보유자산(10조원 상당)을 담보로 내놓고 채권금융기관에 그 처분권까지 위임하는 구조조정 가속화방안을 발표 (99.7.19)

- 이를 토대로 주채권은행과 (주)대우 무역부문,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전 계열사의 연내 매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99.8.16)하였으나 유동성 악화상황은 지속
- 결국 대우는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기업개선작업절차를 개시한다는 「8.16 특별약정」에 의거하여 12개 주력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신청(99.8.26)
- 99.11.4 현재 12개 기업개선작업 대상계열사중 6개사에 대해서는 기업개선계획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6개사에 대한 계획도 조만간 확정되고 회사측의 자구계획이 반영된 기업개선약정이 모두 체결될 것임.

Box 7 구조조정 방식으로서 빅딜의 의의*

■ 98년 1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 총수간 합의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5대 기본과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 80년대 이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 온 중화학분야 등에 있어서의 과잉·중복투자와 일부 과오투자가 큰 걸림돌로 작용

－이들 분야는 경제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은 기업간 중복·과잉투자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잉투자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채무과다상태로 이어져

－관련기업들은 독자적 생존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의한 지원에 의존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태였음.

■ 이와 같은 중복·과잉 투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 관련 설비를 해체 또는 감축시키고 종사인력을 감원시키는 것이겠으나,

• 관련업종의 생산설비들이 비교적 최신설비이므로 이를 폐기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고용축소에 따른 충격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사업구조조정, 소위 빅딜을 이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그룹간 사업의 교환 뿐 아니라 인수·합병, 사업·양수도, 콘소시움방식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한 후

• 관련 기업간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구체적 추진방법을 정하여 빅딜을 추진

* 빅딜 추진과정에서 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종전의 중화학 투자조정이나 산업합리화조치 등의 경우와 달리 정부의 판단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계가 자율적 협의로 조정해 온 것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공동적인 이해를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는데 있어 귀중한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집필자 :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권영종 책임조사담당

Box 8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인

■ 경제여건 변화와 새로운 경제성장동인의 필요성

• 그동안 정부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압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소수의 재벌기업과 특정산업에 경제역량을 집중

•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우리경제는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에 의존

• 그러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지식경쟁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이러한 성장전략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실정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20세기	21세기
주요생산요소	자본, 노동	지식, 기술, 정보
생산방식	소품종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경영구조	조직 중심	네트워크 중심

■ 향후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인

• 선단식 경영체제로 우리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재벌기업은 계열기업들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여 세계일류기업화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을 계속 주도

* 핵심역량 집중으로 주력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이를 다시 R&D투자 등에 활용하는 선순환 투자구조로 전환

• 기술과 지식이 축적된 소수정예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또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2010년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전체 GNP의 56%에 달할 전망

〈중소 · 벤처기업의 발전전망〉

(제조업, %)

	1996	1998	2003	2010
부가가치	47.2	49.0	54.0	56.0
고용	69.2	66.5	71.6	72.0

* 종업원 약 400명의 야후(YAHOO)의 시장가치가 종업원 60만명인 GM의 1/2에 달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중소 ·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 문화 · 관광산업 등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설비투자의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존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을 병행

–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투자, 선진 기술 · 인력도 적극 유치하여 우리 경제에 활용토록 함.

4 노동시장 개혁*

1. 의의 및 기본방향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이 중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노동부문 구조조정 역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혁 및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으로 인하여 이제 한번 고용되면 은퇴할 때까지 해고없이 고용될 수 있다는 「평생직장」의 관념은 점차 희박하여 지고, 노동공급자는 스스로의 직업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신축적 고용체제로 변화되는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의 제변수들이 시장의 힘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각 경제주체간에 구조개혁의 고통과 성과를 공정하게 분담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노사정 합의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 집필자 : 조정1과 강종석 사무관

외국자본의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 고용규모,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 제변수들이 신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직적 노동시장에서는 해고는 적을 지 모르지만 기업경쟁력은 계속하여 저하되고,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데 임금은 하락하지 않는 경직적 임금체계에서는 당장의 임금삭감은 없을 지 모르지만 역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기업자체의 몰락을 유발하여 근로자 전체의 실직을 가져온다. 그러나,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시장내부에서의 고용이동이 비효율적 부문에서 효율적 부문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장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의 실업률이 더 낮은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26 노동시장의 유연도와 실업률 (98)

(%)

	유 연	비교적 유연		경 직	
국 가	미국	영국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실업률	4.5	6.2	7.5	9.3	11.8

자료 : OECD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구조개혁 과정은 단기적으로 실업의 급증 등 사회적 긴장과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조직과 기능의 정비를 주내용으로 하는 다른 부문의 개혁과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제도 및 의식개혁에 관한 사안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개혁의 불가피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조개혁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체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도 경제상황이 악화된다거나 커다란 사회구조 개혁이 요구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의 추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이념이 전형적으로 구체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추진경과

97년 3월의 노동법개정으로 정리해고 규정이 입법화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측면에서 다양한 근로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98년 들어 외환위기 상황을 맞게되자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정리해고제를 정비하고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98년 2월 6일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에 관한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고용조정

제 시행 및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에 노사정간에 합의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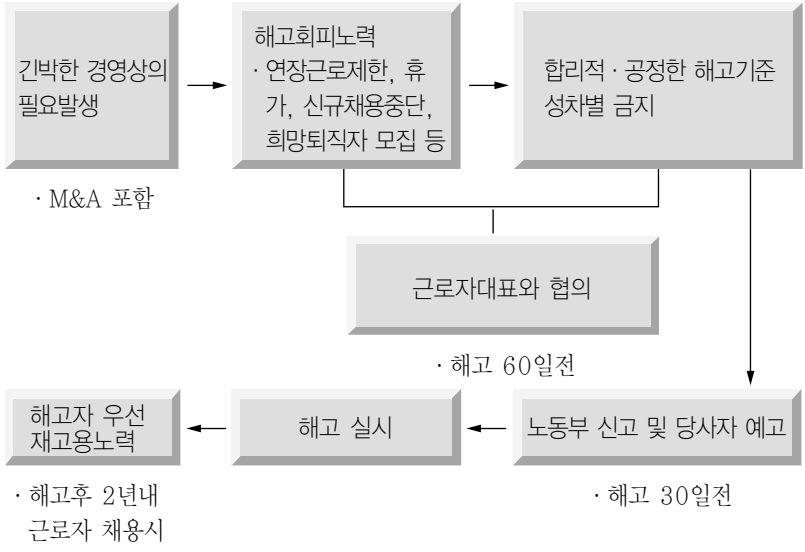
고용조정제의 시행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98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인 「고용조정제」가 새롭게 정비되어 98년 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고용조정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고용조정)조항」으로, 동 조항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고용조정과 관련된 법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고용조정제의 개정내용

기업의 인수·합병(M&A)시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으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그러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협의절차를 구체화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고 60일전 사전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가 된다.

그림 3-9 고용조정 절차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기에 앞서 상당기간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연장근로 등의 축소, 배치전환, 사외파견,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해고 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기본적으로 각 사업체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러한 해고자 선정기준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한편, 사용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신고제 도입은 사전에 노동부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간 협의를 지원하고, 해고자에 대한 직업안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경영상 해고를 한 후 2년내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고용조정에 대한 국제비교

정리해고에 대한 각국의 제도는 정리해고가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미형과 해고를 제한하는 유럽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해고가 자유로운 영미는 실업율이 낮고 해고가 까다로운 유럽은 높은 실업율을 시현하고 있는 데, 이는 해고가 어려우면 기업체 입장에서 노동비용이 증가하여 신규고용을 꺼리는 데 기인한다.

고용조정제 시행실적 및 평가

98년 2월 20일 고용조정제 시행 이후 98년도 중 근로기준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경영상 해고계획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업체수는 총 111개소, 해고예정인원은 13,736명으로 신고되었고, 이 중 실제로 해고된 인원은 4,980명, 사직처리된 인원도 5,203명에 이르렀다. 업종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1개소, 13,736명 중 제조업이 75개소,

표 3-27 1998년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현황

(개소, 명)

구 분	계	50인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업 체 수	111	20	29	47	9	6
해고예정인원	13,736	365	1,026	2,458	1,089	8,798
·해 고	4,980	145	630	1,132	164	2,909
·협 의 중	–	–	–	–	–	
·철 회	3,553	51	170	462	279	2,591
·사 직 처 리	5,203	169	226	864	646	3,298

자료 : 노동부, 1998년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현황

9,670명이 신고되어 업체수 기준으로는 67.6%, 인원수 기준으로는 70.4%를 차지하고 있다.

99년에는 10월말까지 경영상 해고계획을 신고한 업체수는 총 38개소, 해고예정인원은 4,012명으로 신고되었고, 이 중 실제로 해고된 인원은 1,221명, 사직처리된 인원은 680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가동율이 제고되어 고용조정 계획이 크게 줄어들었고, 98년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사업장이 많았던 까닭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8개소, 4,012명 중 제조업이 17개소, 1,803명이 신고되어 업체수 기준으로는 44.7%, 인원수 기준으로는 44.9%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신고비중이 낮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8 1999년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현황

(개소, 명)

구 분	계	50인미만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업 체 수	38	15	9	7	3	4
해고예정인원	4,012	386	368	570	445	2,243
· 해 고	1,221	164	165	401	383	108
· 협 의 중	88	-	27	61	-	-
· 철 회	2,023	87	154	37	37	1,708
· 사직처리	680	135	22	71	25	427

자료: 노동부, 1999년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현황

고용조정제 실시실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영상 해고계획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라 99년에 신고된 해고예정인원 4,012명 중 과반수 이상인 2,023명이 해고계획이 철회되었다. 이는 아직 고용조정제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산업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고 있으나, 사직처리 대비 해고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점차 고용조정제에 대한 노사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근로자파견제도란 새로운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파견업체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활용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80년대 중반이후 파견근로가 취업형태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이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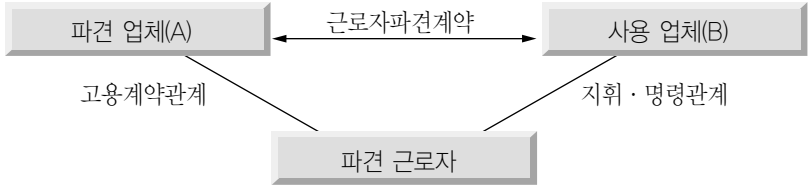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98년 2월 20일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98년 7월 1일 동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게 되었다.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취업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일시적 인력수요에 근로자파견제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조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경영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준다.

근로자파견제가 활성화되면 단기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취업이 용이하게 되고, 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난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에 현장훈련 경험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취업에도 도움을 준다.

그림 3-10 근로자 파견제도의 개념도



근로자파견제의 내용

근로자파견제의 대상업무가 너무 확대될 경우 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대상업무를 제한하여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도안사의 업무 등 26개 업무에 근로자파견업이 허용하였고,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과 협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근로자 파견기간에 대하여는 26개 업무는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의 합의로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임금 ·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근로자파견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였

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근로자파견제 활용실적 및 평가

99년 6월 30일 현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체는 1,095개소이며, 이중 근로자를 실제 파견하고 있는 사업체는 784개소, 사용사업체수는 4,701개소, 파견근로자수는 46,407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파견근로자 비중을 분석하여 보면, 전체 취업자 20,604,000명 중 파견근로자는 46,407명으로서 0.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99년 3월말에 비하여 99년 6월말에는 실제 파견사업체수는 7.6%, 파견근로자수는 3.9% 증가한 추세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파견근로 실적이 점증하고 있다.

표 3-29 근로자 파견사업 실적

(개소, 명)

구 분	신고 사업체	실제 파견 사업체	사용 사업체	파견근로자
1999. 1/4말	968	728	4,187	44,665
1999. 2/4말	1,095	784	4,701	46,407
증 감 률	13.1%	7.7%	12.3%	3.9%

자료 : 노동부, 1999 근로자 파견사업현황

실제 근로자파견 사업체 784개 사업체 중 50인 미만을 파견하고 있는 사업체는 583개소로 74.4%를 차지하였으며, 50인이상 100인미만은 100개소로 12.8%, 100인이상 299미만은 77개소로 9.8%, 300인 이상은 24개소로 3.1%를 차지하여 근로자파견이 아직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파견대상 업무도 비서, 타자원, 자동차운전원, 건물청소원, 전화외판원, 조리사 등 단순기능직 위주로 파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직의 파견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파견근로자의 증가 특히, 전문직종의 활성화는 개별 사업장단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 관용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근로자파견제의 이점을 활용하는 관행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도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등 근로자파견제의 활용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더불어 전통적 가치인 노동기본권의 신장도 병행되어야 구조조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시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교원노조 합법화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크게 신장되게 되었다.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97년 3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사정 대타협시 노조의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토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8년 4월 30일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허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98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초기업단위노조 및 연합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자 하는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위한 별도기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99년 4월 국민회의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노사정 대타협시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추진을 합의하였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98년 10월 31일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합의하였다. 동 합의내용에 따르면, 입법체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장하기로 하였고, 조직체계는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단체교섭사항은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기로 하였다.

동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99년 1월 29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인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교원노조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99년 6월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기 타

노사정 대타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마련하되, 노동조합 결성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98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

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12월 시행령이 제정되어 9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하되,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은 경제난 극복상황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추이 등 제반여건을 보아가면서 결정될 것이다.

한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 2월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조항은 근로기준 일반원칙, 근로계약, 임금지급, 휴게·휴일, 재해보상, 벌칙규정 등이며,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의 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노사정 합의체제의 구축

노사정 합의체제 구축의 의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구조개혁 과정은 경제주체간 고통의 분담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심각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합의체제 안에서 각 개혁과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상호이해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노사정 협력체제하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가 국제적으로도 대화를 통해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동계의 지속적인 참여를 설득하여 노사정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상설화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천도장이 되고 있다. 특히, 국가위기상황에서 구조개혁과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을 거친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연혁

98년 1월 15일 당선자 자문기구로 출범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98년 2월 9일 고용조정법 정비방안,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등 90개 추진과제에 관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98년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년 6월 3일에 제2기 노사정위원가 발족하였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일시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인정 합의,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교원노조 결성권 보장방안 합의, 의료보험 통합방안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부문구조정특별위원회는 29차례 회의를 통하여 6건의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사간 갈등 완화에 기여하였고,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는 22차례 회의를 통하여 91개 사업장을 심의하여 21개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외에 상당수 분규사업장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는 22차례 회의를 통하여 5개 퇴출은행 직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대책 마련, 고용조정과 관련한 노사분규 해결을 지원하였다. 한편, 98년 12월 31일 민주노총은 교원

노조 법제화 지연을 이유로 불참선언을 하였고 99년 4월 9일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시까지 조건부 탈퇴결정을 하게 되어 노사정위원회는 그 활동이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99년 9월 1일 새로이 출범하였다.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합의기구로서 그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 21세기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안정과 생산적 복지 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금년 5월 제정·공포되었다. 위원구성에 있어서 정당대표 위원은 배제하였고,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으며, 2기 위원회에서 각급 위원회가 너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2개의 소위원회(노사관계소위, 경제사회소위)를 두도록 하였다.

성실한 합의 및 합의사항 이행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정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활동현황

제3기 노사정위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소위』와 『노사관계소위』의 2개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우선 논의과제와 중요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사회소위에서는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보완방안』등 4개 우선과제를, 『고용·복지·성장에 관한 사회협약』등 15개 중요과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노사관계소위에서는 『단체협약의 이행촉진 방안』등 7개 우선과제를,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사항』등 7개 중요과제를 채택하여 논의하고 있다.

상무위원회는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본위원회는 노동정책,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현황

노사정 합의사항의 착실한 이행여부는 참여주체들간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이유로 비록 법리적·현실적 어려움으로 완화된 형태로 반영되었지만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당시에 합의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98년 2월 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타결하였다. 99년 6월말 현재 동 합의사항 90건 중 완료된 건은 55건(일부완료 10건 포함)이고, 추진중인 건은 33건이며, 아직 미이행된 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노사정위원회 이행점검반에서 평가하고 있다. 추진중인 과제는 대부분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노사정의 노력사항을 제시하는 선언적·지속적 과제들로서 사실상 추진가능한 사항은 대부분 이행된 상태이다. 특히, 교원노조 합법화, 의보통합 등 10년 안팎의 국가적인 누적과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법제화함으로써 위상강화 및 신뢰구

축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전직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및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는 비록 합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각 이행주체들은 합의사항 이행에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사항 도출시에도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

노사정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심하였던 98년초에 국민의 기대속에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출범하여 산적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하여 대타협을 도출하여 새로운 노사협력의 장을 여는 등 나름대로 사회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사정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상설화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 되었으며,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불참이 계속되고 있고 노사정간 신뢰의 축적 또한 충분치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하여 과도한 기대와 정부 및 경영계의 지나친 우려는 원활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진정한 신뢰회복을 통한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은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계속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다.

표 3-30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행현황 (99년 6월말 현재)

□ 완 료(45)

구 분	합 의 사 항
정 부 (44)	(1)*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2) 사외이사 도입 의무화 (3) 소수주주 권한 강화 (4) 기업회계 기준 명료화·국제화 (5) 기업공시제도 개선 (7) 대규모기업집단간 신규 상호 채무보증 금지 (8) 과다차입금 이자 손비부인 (9) 대규모 기업집단 여신관리 기능강화 (10)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여건 조성 (12) 대규모기업 지배주주 경영책임 강화 (19) '98 소비자물가 9%수준으로 안정 (21) 물가에 대한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23) 소비자물가 통계 작성에 시민단체 참여 등 (27)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완화 (28) 실업급여 최저 지급기간 연장 (29) 실업급여 특별연장제도 도입 (30) 5인이상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 (31) 임시·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32)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34) 실직자 이직후 직장의보혜택 부여 (37) 직업소개사업 규제완화 (38) 실업자 직업훈련체제 구축 (39)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지원 (40)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충 (42) 벤처·중소기업 창업 지원 (43)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추진 (47) 외국 인력 규모 단계적 축소 (49) 고용대책 재원 5조원 확보 (50) 고용 보험요율 인상, 추가재원확보 (54)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 노사대표 참여 확대 (55)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5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59)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60) 선원의 임금채권보장 법제화 (61) 5인 미만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 (71) 교원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74) 노동행정업무 일부 지자체 이관 (75) 노조의 재정자립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76) 고용조정제도 정비 (77)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 (78) 구속노동자 석방·사면 (88) 구속노동자 석방·사면 (89) 금융실명제 관련 징계 구제 조치 (90) 노사정위원회 법적 상설기구화
정치권 (1)	(87) 경제청문회 개최

합의사항 일련번호

□ 일부완료(10)

구 분	합 의 사 항
정 부 (8)	(15) 기업의 특정업종 전문화 여건조성 (22)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한 감시강화 및 매점매석행위 엄격 단속 (33) 저소득 장기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36) 전국적 취업정보망 구축 (70)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 (72) 98년 중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73)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 인정 및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기간 6개월로 연장 (78) 수출금융조기정상화 대책 추진
노 · 사 (2)	(41) 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및 교육 · 훈련에 적극 참여(사용자) (44)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조정 등 해고회피 노력(노 · 사)

□ 추진중(33)

구 분	합 의 사 항
정 부 (18)	(18) 물가안정 (20) 공공요금 인상 억제 (25) IMF 협의과정에 노사의 의사 반영 (26) 노사정 위원회 요청시 물가관련자료 보고 (46)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고용안정 방안 강구 (51) 사회복지 예산 단계적 확대 (52)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방안 강구 (53) 4대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 강화 (57) 토지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제 개선 (58) 근로소득세제 등 세제개편 검토 (62) 노사 불법행위 엄정대처 (64) 노사의 자율교섭 보장 (65) 임금체계 개선 위한 세제지원 (67) 예산편성지침, 민영화 등 정책수립시 공공부문 노사대표의 의견 수렴 (68) 택시사업 완전월급제 실시 (82) 사교육비 절감대책 마련·시행 (83) 정부조직 통폐합 등 (84) 행정규제 완화 등 (85)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
노·사 (15)	▶ 노사공동과제 (4) (63) 노사의 임금·단체교섭 성실참여 및 긴밀협력 (66) "노사협력지원센터"를 구성, 노사협력 촉진 (80)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 (81) 건전한 소비생활 및 근로의욕의 고취에 노력 ▶ 기업추진과제 (10) (6) 근로자 참여증진, 우리사주제 민주적 운영보장 (11)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13) 지배주주의 책임 명확화, 경영진 책임 강화 (14) 기업지배구조 개선 (16) 핵심주력부문 설정, 비주력사업 정리, 중복사업 교환추진 (17)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구축 (24) 기업은 물가상승 억제에 기여 (35) 경영상 퇴직근로자에 대한 편의제공 (45) 해고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79) 수출경쟁력 제고 ▶노동조합 추진과제 (1) (69)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 미이행(2)

구 분	합 의 사 항
정 부 (1)	(48) 98년중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제도 마련 ⇒ 정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연수추업제를 도입하였으나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이의제기에 따라 '미이행' 으로 평가
정치권 (1)	(49) 부패방지법 ·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 선거법 · 정당법 등의 전향적 개정 ⇒ 정치권에서 논의되고는 있으나 추진된 것이 없음.

3. 향후 과제

(1)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속적 제고

고용조정제의 정비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관행으로 원만하게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은 고용조정을 구조조정의 우선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이해와

납득을 전제로 한 최후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 역시 생산성 향상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기업경쟁력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불가피한 고용조정은 감내하여야만 한다.

한편,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제도를 더욱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합리적인 고용조정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파견제의 대상업무를 확대하여 정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위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위하여는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획일적 고용형태를 지양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산업수요에 맞게 정착되도록 제반제도를 마련하고 그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2) 노사정 합의체제의 지속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그 위상이 제고되었고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므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도 논의하는 등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의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는 서로의 신뢰의 구축이 필수요건인 만큼 각 참여주체들은 신뢰의 축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하여는 민주노총 자신의 인식전환과 함께 여타 참여주체들의 여건조성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

(3) 사회안전망의 지속적 확충

노동시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증가,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가는 한편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경제가 잠재성장율 수준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흡수력 둔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저실업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4) 신노사문화의 정착

기업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경쟁의 시대에 노사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노사간의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어 온 부정적 노사관행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고통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관계,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투명한 관계, 장기적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신노사문화」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노사분쟁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한 자율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한 중재자로 대처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제도를 선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5 공공부문 및 재정개혁*

1. 개 요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쉴새없이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개혁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구조개혁 분야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 지적되어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정부 산하단체·기관들의 조직축소와 인력감축,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크기를 줄이는 한편 그동안 유지되어온 틀과 껍데기를 수술하여 「작은 정부」를 만드는 작업이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와 껍데기를 바꾸는 외과적 수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직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창의와 경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공직사회에 심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운영되는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일이다. 정부산하기관 경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 연봉·성과급제의 확산, 개방형 임용제와 책임운영기관제의 도입, 성과주의예산의 도입 등 인사·조직운영·예산회계제도 개선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집필자 : 기획예산처(국고과) 김용진 서기관, 김정운 서기관

정부개혁은 단순히 그 틀과 시스템을 바꾸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그 조직구성원들의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킬 때에만 그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항상 자기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자기혁신형 공직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공공부문 개혁의 세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작업이 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여 왔다면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도록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공직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9년 5월의 제2차 정부개편을 계기로 정부의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눌러왔던 외환위기를 훌륭히 극복해내고 새로운 천년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극복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합심을 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재정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부도와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무너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그나마 국가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재정은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실업 ·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기여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외환위기의 극복은 「국가채무의 축소」와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개혁과제를 재정에 안겨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재정지출규모의 억제와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부개혁과제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 공공부문개혁의 추진상황

(1) 정부역할 및 기능의 지속적 정비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은 98년 11월초부터 99년 2월말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全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크게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진단과정에는 총 19개 민간전문기관의 인력 130여명이 참여하였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전체 중앙부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진단을 민간전문가에 의뢰한 것은 처음 있는 시도로서 향후 정부개혁작업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의 추진배경으로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 변화를 원하는 강한 사회적 요구를 들 수 있다. 특히, IMF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역할로 과감하게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경영진단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서 실제 정부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 다른 추진배경으로는 98년 2월에 추진되었던 1차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들 수 있다. 1차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기구·인력의 축소 위주로 이루어져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구의 모습이나 인력의 변화보다는 정부내부를 움직여 가는 운영시스템인데 기존 정부조직개편은 지나치게 외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

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진단에서는 조직내부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98년 2월에 있었던 1차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은 중앙정부 17부·2처·4위원회·16청을 기능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2~4개씩 8개 분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범대상기관을 선정하여 1개 분야로 진행되었다〈표3-31〉.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처음 4개 자치단체를 진단하기로 하였으나, 대표성의 확보를 위하여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4개 자치단체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표 3-31 경영진단 9개 분야

구 분	부처·위원회/청·자치단체
외교·안보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 병무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 검찰청, 경찰청, 공보실
교육·문화	교육부, 문화관광부 / 문화재관리국
사회·복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정·금융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업·기술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S O C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철도청, 해양경찰청
농림·환경	농림부, 환경부 /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1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 서울시 강남구
지방자치2	인천광역시 및 남구, 수원시 팔달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영진단의 내용은 크게 공통과제와 개별과제로 구분되는데 공통과제에는 개별기관의 기능을 상향식(bottom-up)으로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한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직위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작성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고객헌장을 만드는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개별과제는 정부 내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로서 군수품의 합리적 조달체계 구축, 개방형 임용확대에 따른 계약직 관리제도와 성과관리를 위한 공무원 평가제도, 교원 평가제도 구축방안, 실업대책을 비롯한 효율적인 복지제도 구축, 평가지표의 활용방안(기관별 성과관리를 위한 Incentive System 구축방안 포함), 중소기업 지원체계 평가와 재설계, 정부혁신의 법제화·제도화 방안, 고객헌장제도 구축방안, 자치단체 효율성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다.

정부가 처음 추진한 경영진단은 그 시도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외부에 공개되어 업무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부문은 공공성과 보안성 때문에 자료와 업무내용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어져 있었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국민들은 복잡한 법령과 기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중요한 기능들이 외부전문가의 시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분석되고 공개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이번 경영진단이 공무원사회에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단은 정부도 변화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했으며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진단팀에 소개하고 조직전체의 목표와 임무를 진단하게 되었으며, 업무와 성과를 연계시킴으로써 업무에 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4개월간 행해진 민간의 시각에 의한 진단을 통해

서 정부에 고객개념이 본격 도입되었고, 민간 컨설팅의 방법론과 기법들이 정부 조직에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영진단은 진단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정보를 생산하였다. 이 방대한 자료들은 향후 지속적인 정부개혁작업에 초석이 될 것이며, 관련학계와 전문가들에게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정부개편

국민의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구성·운영되었던 정부조직개편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던 제1차 정부조직개편은 당초에 마련되었던 정부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완료되었다. 때문에 정부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4개월동안 중앙부처(17부 2처 4위원회 16청)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이 실시되었으며,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99년 3월에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제2차 정부개편방안)」이 마련되었다.

제2차 정부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이 국장급 이상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개방형임용제」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관공서에서 받는 행정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기준·내용·제공절차·시정 및 보상절차 등을 미리 공표하고 실현을 약속하

는 「고객헌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밖에도 「국민권리구제절차」의 획기적 개선과 「부패방지제도의 강화」, 「인사·예산의 자율성 제고」, 「성과관리제도 도입」,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보기술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조직은 47차례나 개편되었으나 단순히 부처를 떼었다 부쳤다 하는 식의 기구 중심적 개편에 치중했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부처의 미션이 어떻게 달라져야하고 그에 따라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부개편은 기능 중심적 개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민간 경영진단기관의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폐지하고, 정부기능 중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기능은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민간이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기능은 민간에 위탁(outsourcing)하거나 민영화(privatization)하도록 했으며, 기관장이 자율·책임운영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적 성격의 기관은 책임운영기관화(Agency)하도록 하였다.

교육자치제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관련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7개 부처 23개 기능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적극적으로 외부위탁하거나 민영화하도록 하였는데, 철도청이 2001년까지 민영화되고 부산과 인천항의 항만관리 운영기능이 항만공사화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각종 청사의 시설관리기능, 전산개발 기능 등 21개의 업무가 외부위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부가 수행중인 집행기능에 대하여는 기관장을 공모하고 경영성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인사·보수·조직관리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17개 부처 25개 기관이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부터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의 기관을 시범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8개 부처 14개 기능의 소관을 조정하고, 관련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는바, 제1·2차 정부개편을 통하여 중앙정부 일반공무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26천명의 공무원 정원이 2001년까지 감축되게 되었다.

경영진단이 주로 운영시스템 혁신과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부 정부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였다. 우선 차관급의 국정홍보처가 신설되었는데, 그 동안 국무총리 산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내외 국정홍보기능을 종합화·체계화하여 홍보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국정의 내용을 상세히 그리고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심의·의결과 고위공무원(1~3급)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바, 국장급 이상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에 발맞추어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내각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상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 구성되지 않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여 내각이 책임지고 당면 경제현안에 대해 수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예산에 관한 지침과 편성작업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하였다.

(2)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 혁신

그 동안 계속된 정부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개혁의 성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의 정부개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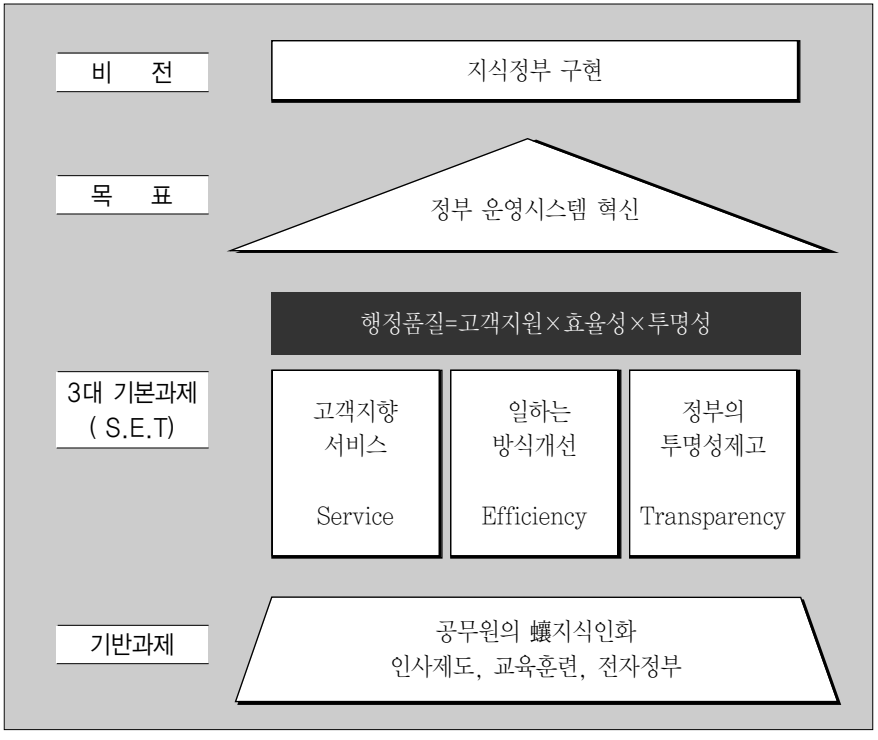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사회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이러한 변화를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 3-11)과 같이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계획은 크게 기반과제로서 「공무원의 신지식인화」를 통한 인적 기반의 강화와 3대 기본과제로서 「고객지향의 대국민서비스 개선」,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정부운영의 투명성 제고」등의 네 가지 분야의 과제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고객지향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알려주고 서비스수준이 미흡할 경우에 보상을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99년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원하는 생활과 밀접한 위생 · 환경 · 건축 · 세무 등 주요 대민부서에 대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제기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고충처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시간 및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반으로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 행정의 투명성, 일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하는 「행정품질지수」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보고 · 결재 · 회의의 간소화이다. 행정연구원의 조사(99년 8월)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64%가 업무량의 과중을 호소하고 있고 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량의 3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그림 3-11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개혁 추진체계



중앙부처의 경우 평균 결재단계가 4.4단계로서 단순결재에도 2.5일이 소요되고, 보고서의 건당 매수도 민간의 4배에 이르는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무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의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중인 「보고서 · 회의 비용명시제도」를 확대실시하는 등 민간에서 시행중인 각종 능율제고기법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업무진단팀을 구성하여 정부 부처의 일하는 방식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고, 결재단계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조직 및 인사관리제도를 혁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내외의 지식정보 축적 및 공유 ·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과,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시 정부 내부조직과 민간공급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는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 및 비효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부는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큰 효과를 얻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전 행정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성과와 비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성과 및 비용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무원의 신지식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서는 인사제도의 혁신과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전자정부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제도에 연봉제와 성과급제도가 도입되었으며,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미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공직사회에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개방적인 인사제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무

원채용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간 및 행정기관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인사평가를 다양화하는 등 종합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양한 21세기형 전문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훈련제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공기업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8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를 합하여 150개를 상회하고, 금융관련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108개에 이른다. 108개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13개와 그들의 자회사 30개, 정부출자기관 13개와 그들의 자회사 52개이다. 이들 공기업의 총 정원은 98년 3월말 기준으로 21만 3천여명이며, 98년도 예산은 정부예산보다 훨씬 많은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동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인이 없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비효율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98년 초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는 공기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중이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하여 공기업으로 존속해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직 및 인력감축, 외

부위탁을 강도 높게 추진중이다.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도 사실이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ox 9 참조〉.

Box 9 과거 민영화 추진 성과 및 평가

■ **60~70년대** : 조선공사, 해운공사, 대한항공, 한국기계 등 항공, 제조, 운수분야의 11개사 추진

■ **80년대 초반** :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추진

■ **87년** :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등 우량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주방식으로 대규모 주식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 미흡

■ **93년** : 주인 있는 경영전환에 중점을 두어 58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 문제 등으로 실패

■ **96~97년** :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특별법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아 진정한 민영화에 실패

〈과거 민영화 추진 실패 원인〉

- 대기업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문제로 추진이 제약
- 증권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주식매각 한계
- 이해관계자 및 해당 공기업의 강력한 저항
-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과 추진체제 미흡
-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리더십 부족

9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은 외환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하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하겠다.

98년에 확정된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르면 26개 모기업(금융관련 공기업 제외)중에서 11개 기관이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민영화 대상 11개 모기업 중에서 즉시 민영화가 가능한 5개 기관은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확정하였고, 기관의 특성과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정하였다.

먼저,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주)는 즉시 민영화 준비에 착수하여 98~99년중 민영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하였다〈표 3-32 참조〉.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및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는 매각 또는 청산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통·폐합 하거나 모기업에 흡수되도록 하였다. 또한, 모기업의 인사문제 해소 등 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자회사는 매각 또는 모기업에 통합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75개 자회사(언론기관 자회사 제외) 중 67개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민영화계획 발표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우선 한국종합화학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98년 9월 30일 3,000억원에 농협으로 매각되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국정교과서(주)가 447억원에 대한교과서로 매각되어 모기업 기준으로는 민영화 1호를 기록했다. 12월 11일에는 포항제철의 정부 및 산은 지분 5.8%가 뉴욕증권시장에서 해외 DR로 매각되어 3.5억불의 매각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발표 이후 최초의 지분 매각 성공이라는 점과 공기업 매각에 의한 대규모 외자 유치

표 3-32 공기업 민영화 계획 (98년 7월 3일에 발표된 당초계획)

대 상	추 진 방 안
한국전기통신공사	• 경쟁체제 확립시까지 단계적 민영화 - 신주 10%내외를 세계적 통신사업자에 매각하여 전략적 제휴 - 직상장후 해외공모, 우리사주 등 국내매각
담배인삼공사	• 2000년까지 정부지분 및 은행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우리사주 우선 매각) • 홍삼사업은 98년 자산실사후 분리 •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
포항종합제철(주)	•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한도로 내외국인에게 매각 • 외국인투자한도 폐지 및 2001년말 동일인소유한도 폐지
한국전력공사	•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부터 조기 민영화 - 정부지분 5% 및 국내외 발전설비 일부 매각
한국중공업	• 지분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우리사주제 도입
한국가스공사	• 증자후 단계적 민영화 - 2000년까지 국내외 기업 및 일반에게 증자지분 매각
한국종합화학(주)	•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자산매각후 청산 - 남해화학은 1차로 농협과 수의계약 추진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정부지분, 자사주 등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
국정교과서(주)	• 민영화를 통하여 민간 출판업계의 활성화에 기여 - 3년간 현행 가격, 공급량 유지 조건으로 경쟁입찰매각
대한송유관공사	• 자회사인 한국송유관(주)과의 통합 후 2000년에 정부지분 매각 (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천, 안양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분리 매각후 2001년에 51%이상 지분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99년 1월 21일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93억원에 (주)미래와사람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2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

기업 민영화 추진 의지를 잘 나타내 주는 사례이다. 또한 99년 3월 26일 한국전력의 정부 지분 5%를 뉴욕증권시장에서 해외 DR로 매각되어 7.5억불의 매각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기업 해외 주식 발행 사상 최대규모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98년 12월 23일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되어 민영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94년 정부지분 매각시 주식을 취득한 소액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 99년 5월 26일 한국통신은 뉴욕증시에 해외 DR을 발행하여 24.9억불의 매각수입을 확보하였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기업 중 최대규모의 신규상장으로, 해외투자자로부터 한국경제 및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99년 7월 14일 포항제철의 산은 지분 8%가 뉴욕증시에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당 최고가로 매각되어 총 10.1억불의 외화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 극복의 신호가 되었으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담배인삼공사의 국내증시 공모 상장을 통해 총 9,583억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스공사 역시 국내증시 공모 상장을 통해 1,976억원의 재정수입을 포함하여 총 9,880억원의 매각수입을 달성한 바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총 52.1억불의 외화수입을 확보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직접 기여하였으며, 총 3조 5,000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실업대책 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표 3-35 참조〉.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기업의 헐값매각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주가 대비 총 7,200억원 규모의 해외 프리미엄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표 3-33 공기업 매각수입

(억원)

		재정수입	기타수입	계
1998	국정교과서	213	247	460
	포항제철	2,181	1,943	4,124
	한국전력		2,863	2,863
	자회사		1,000	1,000
	소계	2,394	6,053	8,447
1999	종합기술금융	93	24	117
	한국전력	9,045	2,386	11,431
	한국통신	13,391	15,623	29,014
	포항제철		11,702	11,702
	담배인삼공사	7,982	1,601	9,583
	가스공사	1,976	7,904	9,880
	자회사		9,124	9,124
	소계	32,487	48,364	80,851
	계	34,881	54,417	89,298

공기업 경영혁신

민영화되지 않는 공기업과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4〉는 경영혁신 대상 모 기업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공기업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표 3-34 경영혁신 대상 모기업

단계적 민영화 공기업(6개)	존치되는 공기업(13개)	
• 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조폐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 한국관광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전력공사	• 농어촌진흥공사	• 한국토지공사
• 한국가스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도로공사
• 대한송유관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한석탄공사	• 한국감정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2001년 이후로 공기업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단계이다.

2000년말까지 공기업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인력감축 등 다운 사이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공기업의 효율성의 향상에 치중할 계획이다. 2001년 이후에는 1단계에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책임경영체제의 기반구축이 완료된 공기업부터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실적평가제도 및 사장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공기업의 성과가 임·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98년 8월에 수립된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따르면 2001년까지 경영혁신 대상 19개 모기업 정원(98년 3월기준)의 25%에 해당되는 약 3만6천명(자회사 포함 4만1천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98년부터 99년까지 인력조정 실적은 3만2천명으로 99년까지 계획인력 3만1천명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이는 2000년까지 감축계획인 4만1천명의 78%에 해당한다. 19개 모기업의 경우 99년에 1만4천명이 감축되어, 전 기관이 인력조정 목표를 달성하였다. 자회사의 경우 98년부터 99년까지 인

력조정 실적은 4,617명으로 계획인력 4,638명 대비 99.5%를 달성하였다. 조직개편의 경우도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말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 경영혁신 결과 98년~99년 6월까지의 예산절감액은 1.2조원에 이르며, 향후 5년간 6.5조원(매년 1.3조원)의 경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자회사 정리는 크게 자회사의 매각 즉 민영화와 자회사의 통폐합으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다. 98년 9월에 한국종합화학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농협에 매각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주)청열, 한국통신카드 등 총 8개의 자회사가 민영화되었다. 모기업에 통·폐합된 자회사는 총 8개이다. 98년 5월에 ICO 투자관리가 모기업인 한국통신에 통합되었고, 그 이후 7개의 자회사가 모기업에 통합되거나 청산절차를 밟았다.

외부위탁(Outsourcing)을 통한 사업조정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경우 배달·창고 업무, 조합향료 제조업무의 외부위탁이 완료되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비축창고 관리운영 업무, 해외홍보 업무 등을 외부 위탁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해외·국내전시업무, 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 시설관리업무를 외부위탁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선탄, 송탄, 굴진 작업을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취수장, 가압장 운영, 통행료 징수업무, 도로 유지보수 업무를 중심으로 외부위탁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외적인 성과이외에 운영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내적인 성과도 있었다. 99년 2월 5일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이사제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장선임제도를 도입하고 사장 경영계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장임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하였다. 또한 공기업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제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실적평가 등 주요 경영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

경영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공기업 고객헌장제를 도입하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였다. 투명성은 국민에게 기업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공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공기업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국민의 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자율·책임경영을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기업은 지식·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경영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투하자본의 기회비용을 감안한 진정한 경영성과 측정으로 성과위주의 자발적인 효율성 제고노력 촉진을 위해 경제적 부가가치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4)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정부는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이어 98년 5월부터 133개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은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 등을 편의상 통칭한 것으로서 보통 정부산하단체라고 부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일부 비효율적인 경영과 서비스 개선 미흡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각 기관의 업무를 핵심업무로 전문화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을 통

해 민간수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회환경의 변화로 존립필요성이 감소한 기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폐지 또는 통합하여 과다한 산하단체의 수를 축소한다.

둘째, 민간경영이 더욱 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한다.

셋째,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한다.

네째,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된 국민·기업·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조세적 성격의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을 폐지 또는 인하한다.

다섯째,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고, 경상비를 삭감한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확정된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표 3-35〉와 같다.

표 3-35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

- **폐지 또는 통폐합** :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등 19개 기관
-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 공항주차관리(주),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등 28건
-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제도개선** : 방송광고 경쟁체제도입 등 18건
-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준조세 정비** : ASEM 회비 폐지, 도로교통안전협회분담금 인하 등 16건
- **조직 및 인력감축, 경상비 삭감** : 전체 대상기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대상 19개 기관중 98년에 13개 기관을 완료하고, 99년말까지 추가로 3개 기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민영화·민간위탁은 98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청소·주차장관리 민간위탁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99년말까지 17건을 추진하고 있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안보 상록호텔, 한국문화진흥(주)의 뉴서울골프장,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전열병합발전소 등이 99년도의 주요 민영화·민간위탁 대상이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각종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민간부문의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거나,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98년도에는 승강기 안전검사에 대한 경쟁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하여 경영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99년에도 공무원연금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을 국회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효율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각종 회비·수수료 등 준조세적 성격의 국민부담을 경감하으로써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98년도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등 10건의 준조세를 정비하여 9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99년에는 약 1,200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약 37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경영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99년 중에는 각종 경기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 무역협회비 및 소방안전협회비의 의무납부제도 폐지(임의가입 전환) 등 3건의 준조세 정비를 추진하여, 2000년부터 매년 약 500억원의 국민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기관에 대하여 99년 예산에서 98년 대비 인건비·경상비의 20% 내외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인력은 전체 63,000여명중 2001년까지 총 16,000여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중 9,900여명을 98년도에 감축 완료하였다.

한편, 정부는 "개혁은 계획마련보다 실천이 주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경영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경영혁신방안이 확정된 98년 8월 이후 각 부처로부터 월 2회 세부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확인·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면 확인·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98년 12월과 99년 7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경영혁신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일부 기관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3. 재정개혁의 추진

(1) 재정제도 개선

기금정비

기금제도 개선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자재정 관리에 기여하고 국민부담이 경감되도록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정부는 예산과의 차별성, 유사중복성, 목적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통폐합하는 한편, 기타기금을 최소화하고 존치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관리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제도개선방안을 99년 6월 29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기금수는 현재의 75개에서 55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기금정비방안을 요약하면 〈표 3-36〉과 같다.

한편, 그동안 국무회의심의나 국회보고없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타기금이 대폭 정비된다. 기금정비방안에 따라 존치되는 기타기금

표 3-36 기금 통폐합 방안

(억원)

구 분		부처명	기금명	1999운용규모	기금정비방안
기금 폐지 (11)	목적 달성 등 (4)	재경부	국민투자기금	654	→ 2003년 폐지 · 청산
			재형저축장려기금*	453	→ 2000년 폐지
		산자부	염안정기금*	102	→ 2001년 폐지
		건교부	교통안전기금	417	→ 사업조정, 자체추진
	예산 흡수 (7)	교육부	한국장학기금*	293	→ 일반회계 지원
		외교부	재외동포기금*	4	→ 일반회계 지원
		교육부	과학교육기금	70	→ 일반회계 지원
		노동부	기능장려기금*	185	→ 일반회계 지원
			진폐기금	211	→ 에너지사업특별회계
		문화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	→ 일반회계 사업
		산림청	임업진흥기금	45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민간 자금화 (3)		문화부	방송문화진흥기금*	9	→ 방송문화진흥회 자산화
		교육부	국립대병원기금*	-	→ 병원의 자체자금화
		행자부	새마을국민기금*	693	→ 새마을중앙협의회 자금화
통합 (10→4)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172,898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관리기금	268,066	
		보훈처	보훈기금	1,751	→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6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2,156	→ 과학진흥기금(가칭)
			과학재단기금*	375	
			과학기술문화기금*	-	
		농림부	종자기금	334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8,720	
			인삼산업진흥기금*	165	

주 : 표시는 현재 기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재원의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이나 정부출연에 의하여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10개 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기타기금과 통합으로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는 기타기금을 포함할 경우 줄어드는 기타기금은 총 22개로서 현재 38개의 기타기금은 16개만 남게된다.

표 3-37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는 기타기금

(억원)

부처명	기 금 명	1999운용규모	국민부담비율*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기금	7,789	98%
산자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12	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1,839	100%
행자부	공무원연금기금	84,051	100%
농림부	축산발전기금	8,585	80%
교육부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28,796	100%
	사학진흥기금	1,333	100%
보훈처	참전군인등지원기금	53	100%
중기청	중소기업창업및육성지원기금	34,383	100%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금	1,199	100%

주 : 조성재원 중 정부출연 및 법정부담금 비율

사실상 정부는 거의 매년 기금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결여되어 그 동안의 기금개선작업이 단편적이거나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행사에 그치곤 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어 기금은 한번 설치되면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원의 조성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금제도 개선방안은 기금관리기관이나 기금의 혁신이 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기금정책이나 운용방향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를 신설하였다.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기금정책심의회는 기금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금운용방향, 부담금의 신설·폐지·일몰심사와 기금운용의 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토록 하여 기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관리기관의 경영이나 기금운용실적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매년 기금정책심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기금운용의 전과정이 체계화되어 기금제도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정부는 물류난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SOC 확충 등 공공 건설사업에 매년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건설사업비 까지 포함할 경우, 그 투자규모는 연간 약 40조원 수준으로 GDP의 8%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공공 건설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공 건설사업의 부실공사·담합입찰·불법 하도급 등으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는 부정적인 면만을 떠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공사의 품질도 확보할 수 있도록 98년부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98.9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을 새로 도입하고, 예산을 건설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반영토록 하는 등의 공공사업 효율화 기본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9.1월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였다.

99.3월에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건설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크게 다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공 건설사업은 사전 준비가 된 사업만 지원하고 시작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산요구 및 반영은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발주 → 공사」의 단계를 준수하여 前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공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내재된 비효율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정부는 2002년까지 공공건설 비용을 20%(약 10조원) 절감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그 동안 상당수의 공공 건설사업은 장기종합계획 등에 기초한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 등에 기초하여 시행되기보다는 부처의 졸속한 계획, 사업확대 목적 또는 정치적 배려 등에 의하여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노선 · 차종 · 일부 노선 지하화 여부 등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조기 착수함으로써 결국 3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5.8조원에서 18.4조원으로 3배이상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신규사업이 추진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신규 공공 건설사업은 철저한 사전 조사·검토를 거쳐 준비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9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의 필요성,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타 부문과의 연계성 검토 등에 중점을 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주무부처·예산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관문을 통과한 사업은 기술적 검토 등 세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타당성여부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시간가치·평가기간 등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여 조사기관별 타당성조사 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고 타당성조사의 비교 가능성·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가 종료되면 다시 관계부처·민간전문가·예산당국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검증하게 된다.

셋째, 설계단계에서는 적정한 설계비를 반영하고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및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제한·손해배상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또한, 그동안 설계가 기술적 측면에 치우쳐 경제성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를 도입하여 공법·자재 선정의 적정성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다. 설계시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시 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이상 증가하면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할 때 공사비이외에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LCC: Life Cycle Cost)검토를 의무화하였다.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SOC에 대한 부족한 투자재원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SOC 건설 사업에 도입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98년말까지 45개 사업이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10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자사업의 적정수익률 제고, 국제 기준에 맞는 민자유치제도 마련 등 그 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8년12월 민자유치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이러한 개편에 맞추어 법 이름도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로 그 동안에는 엄밀한 합리적 · 객관적 분석을 통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보다는, 중요한 사업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 경우 신청전에 민간투자지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경제적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사업추진방식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하였다. 그 동안 민자유치 사업은 당해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1종 시설은 BTO(Build- Transfer-Own-Operate, 건설-기부채납-운영) 방식으로 추

진되는 반면 2종 시설은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추진되었다. 그러나 영국,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널리 추진되고 있는 BOT(Build- Own-Transfer, 건설-소유·운영-기부 채납) 방식이 인정되지 않아 외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우리의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1·2종 시설 구분을 전면 폐지하고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BTO, BOO, BOT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 동안 민자유치 사업 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는 총사업비, 수익률, 시설 사용 기간, 사용료 등 사업 시행 조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통일된 추진이 어려웠고, 이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 연구원 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한 One-Step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분석, 외국인 투자상담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Infra-Fund)를 설립하였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성패는 적절한 대상사업(Project) 선정과 원활한 금융(Finance)지원 여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과 동남아 국가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재원조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SOC시설 사업에 출자·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면 SOC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활성화되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종래부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자 사업 법인의 해산 방지, 사용료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 대부 이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수익(수요량×사용료)의

90%까지(민간제안사업의 경우 80%) 보장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종전에는 민자사업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간의 실시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만 민간사업자에게 인정되던 매수 청구권을 법률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절한 위험분담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 · 민간 · 대주주(금융기관)간 적절한 위험(risk)분담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민간이 책임져야할 공사비 등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인정하여 정부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SOC시설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즉, 앞으로는 협약체결단계에서 공사비, 운영비 등을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면,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만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의 창의와 효율에 의해 건설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공사비가 절감됐을 경우 그 기간만큼 시설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절감분을 사업자의 초과수익으로 인정하여 민간창의와 효율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30대 중점관리사업 점검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편성이 투입위주로 이루어지고 투입된 재원의 효과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국책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9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점검은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동일한 재

원으로 보다 높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처음 실시된 98년도 30대 중점관리사업점검은 99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인 98년 4~5월중 추진되었다. 먼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민의 관심도,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중소기업 자금지원,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등 30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수요자·외부전문가 등 총 232명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수요자 의견청취, 자료조사 등을 통해 개별 사업별로 투자의 우선순위 및 제도개선 여부 등을 점검·평가하였다.

99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30대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민자유치 대상 항만건설, 경지정리 등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반영을 유보 또는 축소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등 일부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산하 2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여 총 정원 1,733명의 28.7%인 497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절감 및 자산매각수입, 신축교육원 규모축소 등을 통해 총 1,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읍·면·동에 위임된 지방병무행정 업무를 폐지하여 약 3,500명의 병무지원인력 감축 및 연간 약 241억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거두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99년에도 지난 3월 계속비제도 개선, 문화·관광산업 기반조성,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양곡관리제도 개선 등 3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4~6월에는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수요자·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개별 사업별로 투자의 우선순위 및 제도개선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99. 10월에 2000년 예산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재정제도 개선

정부는 예산편성방식을 개혁하여 예산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대폭 확대하였다. 예산요구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결과와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지사간담회와 시도지사 협의회를 예산편성 절차로 정례화하였다. SOC·주택·교육·농림수산·사회복지·중소기업·문화예술·여성분야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계대표로 구성된 예산자문회의의 운영, 예산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된 개선사항은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라살림 대화방』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각부처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기본사업비와 총액편성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집행과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비제도와 이월제도, 수입대체경비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예산절약에 대해 성과금을 개인당 2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98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98년도에는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예산절약에 대한 상여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98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9개부처에서 126억원을 절약하여 43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99년도 상반기에도

8개부처에서 323억원을 절약하여 42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되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사회에 예산집행 관련 창의와 경쟁이 촉진되고 재정지출 효율화로 국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들 과제 외에도 특별회계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제도 및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등 예산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국가채무 관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경우, 98년말 71.4조원이고 지방정부채무 포함시에는 87.7조원(GDP의 19.5%)이 된다. 99년말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채무가 91.1조원(GDP의 18.8%) 수준이고,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108.7조원(GDP의 22.4%)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채무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보면, 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표 3-38 국가채무 추이

(조원)

	1996	1997	1998	1999전망
중앙정부 채무 (대GDP비율)	36.8 (8.8%)	50.5 (11.1%)	71.4 (15.9%)	91.1 (18.8%)
지방정부채무 (대GDP비율)	12.9 (3.1%)	15.1 (3.3%)	16.2 (3.6%)	17.6 (3.6%)
합 계 (대GDP비율)	49.7 (12.0%)	65.6 (14.4%)	87.6 (19.5%)	108.7 (22.4%)

국가채무가 GDP의 19.5% 수준인데 비하여 OECD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평균은 GDP의 약 70%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외국은 대부분 순채무국가인데 비하여 우리는 채무부다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지나치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3-39 주요 국가별 국가채무 수준 (98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OECD 평균
국가채무/GDP(%)	19.5	97.3	66.5	63.1	56.7	69.5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1999.6., 지방정부채무 포함.

하지만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에 드는 이자비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새천년 준비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존재하고, 외국의 예를 볼 때 일단 늘어나기 시작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는 쉽게 감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2000년부터 정상적인 안정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정부는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증가율(5%)을 경상성장률(8%)보다 낮게 유지하고, 2000년도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도 99년도 당초계획 13조 5천억원보다 2조원이 줄어든 11조 5천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경영혁신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기금정비 · 성과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힘쓰는 한편 음성 ·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투명하

고 공평한 세정관리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적자의 엄정한 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조기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해나가기 위해 연차별 재정적자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조세감면을 현행 수준이하로 줄이는 한편 국가채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Box 10 국가채무의 개념

■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IMF가 권고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IMF GFS Manual상 국가채무

국가채무 통계는 중앙정부 채무 또는 일반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 등으로 작성

국가가 직접 상환 및 이자부담을 지는 채무만 포함

국가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통화당국의 채무,국가채무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무 등

⇨ 국가채무에서 제외

■ 우리나라 국가채무규모는 99년말 현재 총 108.7조원(GDP의 22.4%)

- 중앙정부채무 91.1조원과 지방정부채무 17.6조원을 합친 규모
- 정부의 재정활동이 아닌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의 채무와 공기업의 채무, 정부가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정부가 빌리지 않았고, 원리금 상환의무도 직접 지지 않기 때문

* 참고로 99년말 현재 한국은행의 IMF 차입은 7.2조원, 정부의 채무보증은 83.0조원으로 예상

참고로,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채무보증규모도 크게 늘어나, 98년말 72조원에서 99년말에는 8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금융기관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금융구조조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중, 금융기관의 외채만기에 대한 지급보증은 지난 98년 4월 총 218억불의 단기외채를 최장 3년까지 만기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그동안 상환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상환되고 있고 지난 10월 8일에는 87.5억불이 조기상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담없이 2001년 상반기까지는 전액 금융기관의 외채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채권의 경우, 64조원의 발행계획중 99년 10월말 현재 55.5조원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나, 매입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의 국내외 매각 및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정부출자주식의 매각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제4장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의 보완

1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1. 제2금융권의 현황과 문제점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재벌의 진출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4-1 5대 대기업의 금융업종 영위회사 현황

(개)

순위	기업집단	계열사 중 금융업종 영위회사
1	현 대 (13)	현대증권, 현대해상,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신운용,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현대투자자문, 현대파이낸스, 현대선물, 현대기술투자, 강원상호신용금고, 강원은행, 기아포드할부금융
2	삼 성 (8)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캐피탈, 삼성신용카드, 삼성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운용, 삼성투자신탁증권
3	대 우 (6)	대우증권,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대우선물, 대우창업투자, 대우투자자문, 대우캐피탈
4	L G (8)	부민상호신용금고, LG선물, LG캐피탈, LG종금, LG증권, LG창업투자, LG투신운용, LG화재
5	S K (4)	SK생명, SK증권, SK캐피탈, SK투신운용
계	39	

자료 : 금융감독원

집필자 : 금융정책과 고경모 사무관

이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과 달리 소유제한이 없고, 주식·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였다.

표 4-2 5대 재벌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

(%)

구 분	96.3	97.3	98.3	99.3
투신사·수익증권	5.8	6.2	23.7	31.6
생보사 보험료	30.0	30.5	33.4	36.4
제2금융권 수신	17.6	18.6	29.6	34.0

자료: 김세진(1999.6.25)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경영워크숍 발표자료

이처럼 재벌이 제2금융권을 계열회사로 소유한 상황에서 이를 과도하게 지배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장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총 이사수의 1/4(최소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나, 비상장금융기관(생보사·투신사)인 경우에는 선임의무가 없어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지배구조마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이사회 및 감사를 장악하여 경영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수주주나 사외이사 등에 의한 경영감시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다.

또한, 각 금융권별로 자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 계열기업 및 동일인·동일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제 등을 운용중이나 수탁고 및 총자산의 증가에 따라 비율규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타계열 소속기업간 맞인수 등 교차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외에는 특별한 규제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측면에서의 한계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압도적 위치를 점

하고 있는 재벌들은 그 동안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 차입에 의존한 과도한 사업확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재벌의 문제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재벌그룹들은 증권·투신권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및 자본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시중자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부실계열사 등에 자금을 부당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개혁을 지연시키고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불안정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재벌들의 금융지배를 시급히 차단하고 금융의 실물부문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틀과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선진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나 계열그룹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 등과 자금거래를 하는 투신, 보험, 종금, 증권 등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개선방안은 크게 보아 "지배구조의 개선, 대주주등에 대한 차단벽 강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책임의 강화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내용

(1) 지배구조의 개선

우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이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도입대상 금융기관은 사외이사 도입으로 과중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총자산 및 수탁고기준 2조원이상 금융기관으로 조정하였다.

99년 6월말 기준으로 종금사 전체(11개사), 증권사는 종합증권업으로서 총자산 2조원이상 회사(전체 32개사중 8개사), 투신사는 수탁고 2조원이상 회사(전체 24개사중 19개사), 보험사는 총자산 2조원이상 회사(전체 45개사중 10개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제가 의무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을 회피하고자 등기이사 수를 줄이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 사외이사수는 3인이상으로 하고,이사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상법이 개정되어 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면 사외이사제 도입대상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절대대주주가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 상장기업보다 자본금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

여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기업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1/2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총주식수의 0.01%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0.005%만 확보하면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제도로서 법령 준수여부 감시 및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상법상의 감사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법률에서는 도입근거만 마련하고 하위규정에서 업무범위 등 세부내용을 규정할 것이다.

(2)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 wall)의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한 차단벽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회사(관련계열)도 동일계열 투자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할 예정이다. 현행 동일계열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주식의 비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판매를 집중하여 대행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주주나 계열사등도 투자 및 여신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총자산 및 수탁고의 증가에 따라 그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도 하향 조정할 것이다. 앞으로 투신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신사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의 경우에는 현재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고, 보험사 자기계열 투·융

자한도는 각각 총자산의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기로 하였다.[1)]

이와 함께 은행에서 시행중인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를 보험사에도 도입하여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자산운용에 대한 제도개선외에 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감위·공정위 등에 의한 감시 강화 및 위반시 의결권 행사 금지, 조기원상회복명령,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과 같은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경영의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일반 고객 및 투자자에 의한 적절한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99회계년도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차질없이 도입되도록 하고, 앞으로 금감위를 통해 철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상장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분기별 사업보고서

1) 자기계열 투융자한도 축소의 논거
보험사 : 보험자산의 운용수익은 그 대부분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주와 연관된 "자기자본"보다 계약자와 연관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특히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자산의 2%수준은 생보사 자기자본의 총자산대비 비중(2~3%수준)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대출·투자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투신사 : 현행 5대계열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보유비율(6%내외)과 5대 계열 기업의 시가총액 평균치(7.7%)를 감안할 때 투신사의 펀드운용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며, 추가 인하여부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를 비상장장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001.1.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투자설명서" 및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내실화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정보*의 질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고객등은 자기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했는지 여부와 했다면 그 비중, 관련계열 유가증권 투자비중, 신용등급별 투자실적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경영책임의 강화

이와함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지배주주, 이사 등)에 대하여 재산파악 및 손해배상책임 추궁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나 금감위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의 제공을 건교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해산 및 파산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 등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부실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영업확장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등 부실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3. 향후 과제

정부는 98.9월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해당 금융관련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99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시행령의 정비가 완료되면 2000년부터는 개선된 지배구조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는 크게 향상되고 그간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기인했던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과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문제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했다고 해도 행정적·사회적 감시장치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산업자본이 소유한 금융기관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도 경영의 우수성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정도가 높아질수록 부당내부거래의 유혹과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종전 은행과 증권의 분리원칙을 완화하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도모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변화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배구조의 개선추이를 보아가며 재벌등 대주주의 지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되, 지배에 따른 문제점이 사실상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한 소유지분의 제한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제시된 재벌 구조개혁을 위한 3대 보완 원칙중 하나가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이다. 과거 정부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에 의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25%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하 "출자총액제한제도"라 한다)를 운용해 왔다. 98년 2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하고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동 제도를 폐지한 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계열사에 대한 자금·자산등의 지원을 통해 독립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다양화·은밀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대기업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3대 보완원칙중 하나인 것이다.

집필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김윤수사무관

1. 순환출자의 억제

(1) 순환출자 현황 및 문제점

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목적의 계열사 출자[1]보다는 편법적인 부채비율 감축이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 제도 폐지이후 99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98년 4월의 17조7천억원에 비해 무려 12조2천억원이 증가한 29조9천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러한 출자증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8조8천억원) 등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10조9천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도 전년도의 44.5%에 비해 50.5%로 대폭 상승하였다.

표 4-3 대규모기업집단 내부지분율 현황

(%)

	1995.4	1996.4	1997.4	1998.4	1999.4
내부지분율(합계)	43.3	44.1	43.0	44.5	50.5
• 동일인	4.9	4.8	3.7	3.1	2.0
• 특수관계인	5.6	5.5	4.8	4.8	3.4
• 계열사	32.8	33.8	34.5	36.6	45.2

이와 같은 계열사간 순환출자의 증가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한 연결고리가 형성됨으로써 일부 계열사의

1) : 제도 폐지이후 적대적 M&A 방어 목적으로 계열사 출자가 이용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경영의 폐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될 뿐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가공자본에 의한 순환출자를 통해 각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2] 시킴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재무구조 개선 추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실 계열사 지원 목적의 순환출자의 증가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저해되는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계열확장의 억제 및 부실기업 정리등을 통한 핵심역량에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추진

정부는 이와 같은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작년에 폐지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순환출자의 효율적 억제를 위해서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순환출자의 간접억제 유도 방안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8.25 정재계 간담회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동제도의 시행시기 및 예외인정 범위 등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순환출자 억제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되, 기업의 건전한

2) : 예컨대 우량기업인 A라는 회사가 증가를 통해 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후 동 자금을 계열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계속하여 C사→D사로 연결되는 유사증자에 참여할 경우 1,000억원의 자금만으로 다수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투자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제도의 도입시기는 2001년 4월 1일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로 하되, 해소시한 1년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다. 아울러 순환출자의 폐해는 억제하되, 현재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 해소를 전제로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98년 이후 2001년 3월까지 행해지는 출자로서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신설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기존사업부문을 물적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법인중 외국인지분이 30%이상이면서 국내 동일인측과 동등지분이상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외자유치법인의 경영투명성이 보장되고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폐해 발생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2.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1)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목적

부당내부거래는 자금사정이 좋은 계열사의 지원을 받은 회사가 그 지원을 통하여 자기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지배적 지

* 집필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윤헌 사무관

위를 유지 · 강화하거나,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을 억제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한편, 재벌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은 경쟁회사에 대한 계열사 지원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져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선단식경영의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지원주체인 우량기업의 자원이 부실기업 지원에 분산되어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약화시키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조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기업과 독립기업간의 공정경쟁 저해 요인을 제거하며 대규모기업집단의 핵심역량위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 현행제도

부당한 지원행위를 수단에 따라 구분하면, 상품 · 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와 자금 · 자산 · 인력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96년까지는 상품 · 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만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으로 규제하고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직접적인 자금 · 자산 · 인력 지원행위는 규제하지 못하였으나, 96년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자금 · 자산 · 인력"의 부당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97년 4월에 동조항이 발효되고 동년 7월에 부당내부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는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기준"상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부당염매, 부당고가 매입)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99년 2월에는 그동안 실시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자금, 자산, 인력을 통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범위 이내에서의 지원은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부당내부거래 조사추진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98년 5월~99년 7월 기간동안 30대 대규모기업집단 및 공공사업자에 대하여 5회의 자금·자산·인력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였다.

1~5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하여 3차의 조사를 실시하여 178,517억원의 지원성거래규모 및 5,290억원의 지원금액을 적발하여 1,7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4-4 부당내부거래 조사개요

구 분	조사기업집단	조사기간	조사인원	대상업체수
1차	현대, 삼성, 대우, LG, SK	1998.5.8 ~6.20(44일)	5개반 42명	18
2차	현대, 삼성, 대우, LG, SK	1998.6.29 ~7.24(26일)	5개반 58명	40
6대이하	동양, 한화, 한진, 동부, 한솔	1998.10.19 ~12.2(45일)	5개반 50명	25
공공사업자	한전, 한국통신, 가스공사, 농유공,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지역난방공사	1999.3.2 ~3.31(30일)	4개반 38명	8
3차	현대, 삼성, 대우, LG, SK	1999. 5. 6 ~7.3(59일)	5개반 50명	31

표 4-5 5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개, 억원)

구 분	합 계	현 대	삼 성	대 우	L G	S K
1차조사						
지원주체(객체)	80(35)	35(11)	7(9)	6(7)	20(6)	12(2)
지원성거래규모	40,263	7,706	7,200	4,229	10,573	10,555
순지원액	2,244	344	238	4,474	398	790
과징금	704	226	103	89	102	184
2차조사						
지원주체(객체)	30(18)	13(7)	2(3)	11(3)	1(1)	3(4)
지원성거래규모	14,927	3,485	2,000	415	682	8,345
순지원액	546	288	72	84	65	37
과징금	209	92	30	45	22	20
3차조사						
지원주체(객체)	53(38)	19(13)	8(7)	7(10)	10(7)	9(1)
지원성거래규모	123,327	40,934	3,997	54,301	10,980	13,115
순지원액	2,500	935	566	858	122	19
과징금	794	242	349	135	56	12
합 계						
지원성거래규모	178,517	52,125	13,197	58,945	22,235	32,015
순지원액	5,290	1,567	876	1,416	585	846
과징금	1,707	560	482	269	180	216

또한, 6~30대 기업집단중 내부거래규모가 큰 5개 기업집단을 선정 조사하여 24,837억원의 지원성거래규모 및 693억원의 지원금액을 적발하여 1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내부거래규모가 큰 8개 공기업도 선정 조사하여 3,933억원의 지원성거래규모 및 254억원의 지원금액을 적발하여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표 4-6 6대이하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개, 억원)

구 분	합 계	동 양	한 화	한 진	동 부	한 솔
지원주체(객체)	35(45)	10(15)	6(6)	10(12)	2(4)	7(8)
지원성거래규모	24,837	10,204	3,670	5,613	2,345	3,004
순지원액	693	228	229	163	27	45
과징금	142	67	33	17	14	11

6대이하 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삼성생명보험(주)의 한솔제지(주)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별도로 과징금(35.6억) 부과

표 4-7 공공사업자 내부거래 조사

(개, 억원)

구 분	합 계	한국전력	통신공사	유통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지역난방
지원주체(객체)	13(18)	2(3)	2(3)	2(2)	3(2)	1(4)	1(1)	1(2)	1(1)
지원성거래규모	3,933	1,354	1,276	118	371	586	66	129	33
순지원액	254	137	31	4	19	42	2	16	3
과징금	35	13	7	-	7	5	1	1	1

(4) 향후 추진방향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는 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보완 및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10대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표 4-8 금융기관의 계열사 투자·대출한도 축소방안

(개, 억원)

구 분	현 재	개 선 안
보험사의 대출·투자한도 (보험업법)	총자산의 각 3%	총자산의 각 2%
투자신탁 펀드자금의 투자한도 (증권투자신탁업법)	각 신탁자산의 10%	각 신탁재산의 7%

또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의 사전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한편,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엄중한 시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기업집단내 우량기업의 자원이 한계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핵심역량 중심의 기업구조 개편을 촉진함과 아울러,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실태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3 상속 · 증여세 과세강화*

1. 제도개편의 배경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의 형평성, 상속·증여세 기능의 취약 등 분배기능은 미흡하였다. 특히 최근 IMF위기를 맞아 중산층이 엷어지고 서민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상속세 운영면에서는 납세인원이 연간 3,400명(98년)에 불과하고 세수도 국세의 1% (6,800억원, 98년)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아직도 외국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 과세자비율 : 한국(98) 1%, 일본(95) 5.5%, 미국(95) 3.6%
* 세 수 비 중 : 일본(95) 4.7%, 미국(94) 1.8%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축적한 부를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여 소외계층이 더욱 확대되고,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꺾어 사회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는 이를 위하여 상속·증여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나 최근에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적으로 큰 세부담없이 많은 재산과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집필자 : 재산세과 남봉현 사무관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잘못된 부의 세습관행을 시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근로·기업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제도개편의 내용

97년에는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유형과 다른 새로운 증여의제 유형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바로 과세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98년에는 법에 열거된 거래유형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곧바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번에 정부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5%P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번 세율 및 과세구간 조정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효과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이 6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표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과세구간	세 율	과세구간	세 율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40%	10억원 초과~30억원이하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과 비교하여 세부담에 변화가 없지만 70억원인 경우에는 현행보다 5천만원이 증가(4%증가)하고, 100억원인 경우에는 약 2억 8천만원(11%증가)의 세금이 증가되게 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5년에서 포탈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상속인·피상속인 및 증여자·수증자로 확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인별로 평생 전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관련 제도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탈루행위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상속·증여세의 보완세제로서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와 과세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이를 확대하였다.

우선 지분율 5% 이상 보유자로만 되어 있는 대주주를 지분율 3%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분율 3%이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 훨씬 고액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일반주주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자도 대주주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을 기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제도는 3

표 4-10 소득세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 과세대상자 : 지분율 5%이상 대주주 - 과세거래 : 3년간 1%이상 거래 - 과세방식 : 20%의 양도소득세 과세	- 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이상 대주주 -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과세 - 1년미만 보유 : 누진세율(20~40%)로 과세 - 1년이상 보유 : 20%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상장주식은 20%, 비상장 주식은 10%

년간 1% 이상 양도할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현행과 같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20%,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다.

(3)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지금까지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할 수 없어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대주주(특수관계인도 포함)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당초 증여가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상장 이외의 요인에 의한 기업의 실질적 가치증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보완하였다.

(4) 금전의 무상대부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자녀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전대부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세대상을 1년내 1억원 이상 대부하는 경우로 하였고, 정상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정하였다. 1억원 미만으로 수회에 걸쳐 대부하는 경우에도 1년내 합산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여 조세회피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5) 결손법인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2년 이상 결손법인·휴폐업 중인 법인에 부모 등이 재산의 증여, 채무의 면제·변제·인수, 재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을 통하여 이익을 준 경우 자녀 등이 얻은 주가상승이익에 대하여 자녀 등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율 인상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는 10% 할증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주식을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할증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20%,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30%로 하였다.

(7)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보유를 통하여 사실상 지주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기업집단의 형성을 지원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현재 동일회사 주식 5% 초과보유시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동 가산세는 단 1회에 한하여 액면가의 20%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처분할 때까지 10년동안 시가기준으로 매년 부과토록 변경함으로써 동일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이 되도록 하여 계열사 주식의 처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회사 주식 5% 보유제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내에서는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의 보완역할을 하게하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회사 주식보유 제한외에 계열사 주식보유한도 30%를 설정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30%의 주식보유 한도는 공익법인의 자산이 특정그룹의 계열사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특정그룹의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면 공익법인도 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자산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출연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당해 공익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여 출연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총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관련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의 사후관리제도도 강화하여 현재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70%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출연재산을 매각할 경우 3년이내에 80%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사용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2년마다 세무사,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8) 재산평가방법의 개선

현재 일반건물에 대한 평가는 지방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 반영율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는 상업용 건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였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고 있으나 미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평가기준일 이후의 급격한 가격 등락이 있을 경우 이전의 가격만으로 평가할 경우 불합리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비상장주식은 현재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평균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보완하였다.

(9) 합병시 증여의제 관련 제도의 개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대주주가 얻은 합병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합병차익이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였으며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간의 합병시 합병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 동일업종에

서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 동일업종으로 확대하여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당해 평가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대가와 평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제5장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의 구현

1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추진*

1. 대책의 추진 필요성

중산층 및 서민의 개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OECD에서는 중산층을 소득의 중간값(median)을 기준으로 중간값의 50%~150% 사이의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중산층의 개념을 사용할 때 OECD의 기준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한편 서민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일단 정의하고자 한다.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였으나 특히 실업 증가와 중소기업의 도산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심하였다.

90년 69.16%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략 68%~70%를 유지하여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여 98년 3/4분기에 64.06%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중산층 비율 감소는 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이 컸던 중산층 및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경제회복의 과실이 중산층 및 서민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하여 99년 6

* 집필자 : 조정1과 이승원 사무관

월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는 중산층 및 서민생활이 안정될 때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표 5-1 1991년 이후 중산층의 변화 추세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천원, 전년동기대비, %)

기 간	중간값 소득	증감률	중간소득계층 비중	50%소득	150%소득
1991	1004.9	23.8	69.8	502.4	1507.3
1992	1186.8	18.1	70.6	593.4	1780.2
1993	1295.3	9.1	70.5	647.6	1942.9
1994	1483.4	14.5	70.0	741.7	2225.1
1995	1673.4	12.8	69.6	836.7	2510.1
1996	1886.6	12.7	68.0	943.3	2830.0
1997 1/4	2014.2	9.6	66.4	1007.1	3021.3
2/4	1972.8	9.7	69.8	896.4	2959.2
3/4	2146.6	6.4	68.3	1073.3	3219.9
4/4	1969.0	3.8	69.5	984.5	2953.6
1998 1/4	1921.4	△4.6	65.1	960.7	2882.1
2/4	1780.9	△9.7	66.8	890.4	2671.3
3/4	1755.2	△18.2	64.1	877.6	2632.8
4/4	1841.4	△6.5	66.7	920.7	2762.1
1999 1/4	1853.4	△3.5	63.9	926.7	2780.1
2/4	1808.0	1.5	66.4	904.0	2712.0

자료 : 통계청

2. 대책의 성격 및 기본방향

정부는 튼튼한 중산층의 육성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중소·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가되,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위기극복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사회안정을 통하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대책」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와 중산·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증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되, 중산층이하 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봉급생활자에만 적용되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세부담 경감조치에 따른 총 근로소득 경감액은 99년에 약 1.4조원정도로 추정되는 바,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액 5조원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세출분야에서는 약 1.1조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즉, 서민생활에 주택문제가 가장 긴요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충에 5천억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계형 창업을 위한 자금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2,000억원 확충하여 보증지원토록 하였으며, 재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원하고(1,000억원), 기타 서민층의 부담이 큰 교육비 및 노인·장애인·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3. 대책의 내용

(1)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

우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소득규모(근로소득공제한도)를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고소득근로계층으로 갈수록 경감비율을 낮게 하여 중산층 및 서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하였다(소득세법 개정사항).

표 5-2 근로소득 공제한도 상향조정 내역

당 초	개 선 안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급여액 500만원까지 : 전액
• 500만원 초과 급여액 : 30%	• 500만원~1,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급여액 : 10%
* 년간 900만원 한도	* 년간 1,200만원 한도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경감토록 하였다. 이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 외에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현재에도 총 급여액의 10% 정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 초과사용금액에 대하여서만 공제혜택을 받도록 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표 5-3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현 행	개 선 안
〈신 설〉	• 신용카드 사용액이 년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

근로소득 특별공제한도를 인상하였다(소득세법개정사항). 우선, 의료비의 경우 현행 의료비 공제 한도액은 90년에 조정된 수준으로서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의 실제 지출액에 크게 미달하므로 2배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필요경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납입보험료 수준에 미달하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도 유아교육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대학 학자금의 현실수준을 감안하여 확대하였다.

또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봉급생활자가 주택차입

표 5-4 근로소득 특별공제한도 상향조정 내역

구 분	개 선 내 용
• 의 료 비 공 제	- 년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공제한도 인상 · 년 1백만원 → 2백만원
• 보 험 료 공 제	-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인상 · 년 50만원 → 70만원
• 교 육 비 공 제	- 유치원 · 영유아보육시설 : 년 70만원 → 100만원 대학교 : 년 230만원 → 300만원
• 주택자금공제	- 한도인상 : 년 72만원 → 180만원

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월 저축액 50만원까지 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월소득 167만원에서 250만원까지의 중산층으로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기업이익으로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성과급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노사정 합의사항).

표 5-5 봉급생활자의 연간 총 소득세부담 경감효과

구 분	1999년 세부담 경감액
• 근로소득공제	△9,000억원
• 신용카드 사용공제	△750억원 (2000년 △2,000억원)
• 특별공제 (보험료공제한도 인상) (교육비공제한도 인상) (의료비공제한도 인상) (주택구입차입금공제)	△ 3,800억원 (△ 900억원) (△1,100억원) (△1,200억원) (△ 600억원)
• 근로자우대저축	△ 550억원
계	△14,100억원 (2000년 경감액 포함시 △16,100억원)

주민세 포함시 총 세부담 경감액 : 연간 17,735억원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75%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면제토록 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또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수도권 이외 지방대도시의 경우 기술집약형 창업요건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전용단지 입주요건을 폐지하였다. 또한, 감면 적용시점도 종래 「창업일」기준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시점으로 개선하여 수혜기간을 연장하였다.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토록 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99.6.30→99.12.31)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토록 하였다.

유휴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현재 중고설비 구입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로 인상토록 하였으며 유휴 생산설비 거래가 법원의 경매, 성업공사의 공매, 사업양수도 등 공장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하였다(98.8.25~99년말까지 한시 적용). 또한, 구조조정차원에서 과잉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설비 잔존가액의 일정비율(3%)을 금년말까지 세액공제토록 하였다.

(3)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사업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창업지원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천억원을 정부에서 출연하여 창업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천억원의 추가 출연으로 약 4조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게 되었다(1인당 보증한도 : 최고 1억원).

취업난에 처해 있는 연구 및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6개소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개소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이들 「지역기술센터」는 대학의 연구성과, 특허기술 등의 창업에 필요한 경영 및 마켓팅 등 S/W측면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기업이 50개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200개로 확대하기 위해 15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신기술창업보육센터」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 유망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S/W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0개 지역에 S/W 진흥구역을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 등 정보인프라를 조성토록 하였다. 이를 위한 소요자금 1천억원 중 국고에서 400억원을 지원하고 600억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저소득 여성가장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지도를 시행하는 데 국고 100억원을 지원하였다.

서민층의 부담이 큰 자녀교육비, 의료비, 주택비 지원

서민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장차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종래의 52천명에서 200천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졸업후 5년 내에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던 것을 7년 내에 상환토록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농어촌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대상을 종래의 8,650명에서 15천명으로 확대하고, 원금 상환기간도 종래는 졸업후 1년거치 대여기간의 2배 기간내 상환하던 것을 졸업 후 7년 이내 균분상환토록 하였다(군복무기간 3년 거치).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소득 초중고생 15만명에 대하여 특기 및 적성교육 활동비로 국고 38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다.

현재 고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가 급식시설 설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고 62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143개 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역중학교 2개씩을 선정하여 중학교 급식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5세 자녀 23천명에 대한 유치원 학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99년에 보험료를 26.1%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의료보험 재정이 취약하므로 재정에서 추가로 1천억원의 지역의료보험을 지원토록 하였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융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세자금 융자한도도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5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융자토록 하였다.

농어민에 대한 1.1조원의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농어민의 과다한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축협 자금 1.1조원을 동원하여 고금리자금(12% 이상)을 1천만원 이상 빌려 쓴 농어가에 대하여 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하였다.

장기실직자, 체불근로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지원

99년 4월 현재 약 24만명으로 추산되는 장기실직자(1년 이상)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1/3(대기업은 1/4)을 지원하는「장기실업자 취업장려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저리(8.5%)의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200억원을 지원하였다.

생계가 어려운(월 소득 1백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등을 저리(8.5%)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고에서 1백억원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토록 하였다.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181개인 경로식당을 854개소를 늘리기로 하고 국고에서 38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중고생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재가복지센타 확대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28억원을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종래의 108천명 규모에서 123천명 규모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토록 하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사업 지원

중산층·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정보화 시설 구입을 지원(30억원)하도록 하였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거점시설 건설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하였다.

(4) 기타 예산 외 지원사업

중산층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제도를 개선토록 하였다. 즉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을 종래 7년에서 99년 3년, 2000년 1년으로 단축토록 하였다.

표 5-6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억원)

	예산소요	비 고
(1) 중산층 기반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2,790	
• 신용보증기금확충	2,000	· 최대4조원 보증효과
• 신기술보유인력 창업지원	140	· TIC 6→ 20개소
• 신기술창업보육센타 입주자 확대	150	· 50 → 200개기업
• 정보통신S/W벤처기업 창업지원	400	· 20개지역
• 여성기업 창업지원	100	· 여성창업상담 등
(2) 서민생활 부담완화	7,155	
■ 자녀교육비 지원	1,155	
• 학자금 융자확대	99	· 215천명(이차보전)
• 지방교육재정지원	1,000	
– 특기 · 적성교육활동	380	· 150천명
–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620	· 144개지역, 286개교
• 저소득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56	· 23천명, 6개월
■ 지역의료보험 지원	1,000	
■ 근로자주택 및 전세자금 확대	5,000	· 재특지원
(3) 농어민 저리 특별경영자금 지원	358	· 총 1.1조원
(4) 장기체불근로자 등 지원	250	
•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50	
• 생계곤란 저소득근로자 융자	100	
(5)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95	
(6)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정보화 지원	100	· POS구입, 물류시설건립등
계	10,748	

IMF외환위기로 많은 사람이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을 선 많은 중산층 서민이 고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천만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증인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였다.

4. 중장기대책의 추진

동 대책 중 예산사업은 99년 제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제상의 조치로는 99.8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99.6월 대책은 경제가 급속한 회복속도를 보임에 따라 IMF외환 위기이후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중산·서민층도 경제회복의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짧은 기간내에 마련한 단기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Box 11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동향*

■ IMF외환위기 이후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부도가 급증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최근 지속적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

• 위기 이후 99년 2월 실업자수 178만명, 실업률 8.6%까지 실업상황이 악화됨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	1999. 10	1999. 11
				1/4	2/4	3/4	4/4			
실업자수	420	426	556	1,179	1,481	1,597	1,587	1,781	1,021	971
실 업 률	2.0	2.0	2.6	5.6	6.1	7.5	7.6	8.6	4.6	4.4

■ IMF이후 실업률 급증의 특징

• 88년이후 2%대의 저실업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98년에서 99년 상반기까지 5~8%대의 실업률 기록

• 신규채용 감소, 기업도산,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 급증

• 위기초기에는 일용직근로자의 실업증가율이 컸으나, 갈수록 상용근로자의 실업이 커짐

• 직업별 취업자수를 비교하면 사무직, 기능 · 기계조작 · 단순노무직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컸고, 농림어업직은 위기초기에는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취업자수가 늘었으나 98년말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며, 전문 · 기술 · 행정관리직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증가세를 유지

• 연령별 취업자수는 15~29세의 감소폭이 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짐

■ 최근의 실업동향

•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및 공공근로사업, 창업 활성화 등 적극적 실업대책에 따라 취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함

–특히, 99년 8월이후 실업감소의 정도가 급격히 나타남

(%)

	1999.6	1999.7	1999.8	1999.9	1999.10	1999.11
실 업 률 (계절조정)	6.2 (6.4)	6.2 (6.4)	5.7 (5.9)	4.8 (5.2)	4.6 (5.0)	4.4 (4.7)

집필자 : 조정1과 강종석 사무관

2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신년사에서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정이념이자 새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8.15경축사 직후 후속조치로서 각 부처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생산적 복지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생산적 복지의 배경과 기본 철학

(1) 생산적 복지의 추진 배경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

한국은 60년대 이래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하에 양적 성장 위주의 불균형

* 집필자 : 조정1과 이승원 사무관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호 또한 시혜적 관점에서 최소수준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적인 사회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과 중소기업의 도산, 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서민층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우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부문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회복되었고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상황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되었고, 빈곤인구는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3~4%대의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6월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중산층 기반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대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선진국 복지개혁의 발전적 수용

근대적인 복지제도가 가장 발달했던 유럽사회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0년대 만성적인 저성장과 재정적자 구조로 인하여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기존 복지정책의 개혁으로 최근 '제3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제3의 길'은 복지의 적극적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이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제3의 길'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민간참여의 활력 부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3의 길'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제3의 길'은 국가의 복지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복지의존층의 규모가 감소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국가의 과잉 개입에 의한 비효율성에서 찾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복지와 시장기능과의 균형을 제시한다.

반면 생산적 복지는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2)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초

복지와 인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31조 이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별적 사회권들을 제시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여 「시혜적 조치로서의 사회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추구하고자 한다.

시민권적 복지의 이념은 잔여적 사회급여가 아니라 제도적 사회보장의 근거를 제시하며,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구빈시책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복지제도와 정책을 요구한다.

시장경제의 논리에만 의존할 때 빈곤은 개인의 나태나 불성실의 결과로 치부된다. 그러나 시민권적 복지는 빈곤의 퇴치를 사회공동체의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를 국가에 요구한다.

복지와 노동권

생산적 복지는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통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적 행복과 만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에게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의 추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의 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생산적 복지는 인권과 기본권의 실현에서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를 중심으로 완성된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소극적 복지를 뛰어넘어,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 이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란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념이 된다.

노동을 통한 복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기개발의 완성'을 지향한다. 노동이란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개발과 완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삶의 일부를 이룬다. 노동을 통한 복지는, 국가의 재분배정책에만 의존해온 기존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적 · 철학적 기초가 된다.

복지와 사회적 연대

생산적 복지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참여형 복지체제'를 통해 구현된다. 이를 위해 인권, 노동권의 정신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란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과 보호를 뒷받침하는 사회구성원리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어 왔다.

전근대사회에서는 동족집단이나 촌락공동체, 종교조직 등을 중심으로, 동정이나 구호(繻護)와 같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는 자본주의 근대화와 함께 자립과 자율의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약화되었다.

이는 근대성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지나친 개인의 자유와 경쟁의 강조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 공공부문의 소관영역으로 치부됨으로써 시민사회내에 존재해왔던 사회적 유대감이 사실상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최근 공동체주의와 공생적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도 향약, 두레, 구휼 등 사회적 연대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거의 파괴되고 말았으며,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체제가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다행히 민주화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 각종 시민단체와 NGO, 지역사회운동, 종교단체들의 사회활동, 자원봉사운동 등은 공생적 시민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상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복지체계는 '자립'과 함께 '상호연대'의 원칙이 공존하는 체계이며, 이는 시민사회에 내재하는 사회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함으로써 자생적 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적 복지의 최종적 완성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연대를 토대로 기존 복지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중심 복지체계는 정부와 시민사회, 나아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복지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정부는 NGO 등 민간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의료·탁아·빈민층 보호 등 공공서비스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는 파트너쉽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정부·시민사회·기업 3자 간의 이러한 파트너쉽은 공공재의 공급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인 사회적 약자층에게 의미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자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관계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단순히 병렬적 관계에서 하나가 첨부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두 가지 국정이념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먼저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사회·경제적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된 폐쇄형 체제였다. 그 결과 분배의 정의와 복지는 등한시되었다.

생산적 복지는 권위주의하에서 무시되어왔던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심화·발전시키려는 적극적 시도이다.

시장경제의 확립은 과거 관치경제, 정경유착, 재벌 독점 등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이다. 시장경제의 확립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확립이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와 구성원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치유를 통해 사회통합을 유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산적 복지는 정치적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경제 원리간에 나타날 수 있는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고, 지속적 경제발전과 안정적 민주주의 확립을 조화롭게 병행 발전시킴으로써 '새천년 선진한국'의 기틀을 다지는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영역이다.

Box 12 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

생산적 복지를 구성하는 세가지 축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분배체계 마련

–생산적 복지는 과거 왜곡되었던 시장의 분배기능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이념을 기초로 함.

- 일할 기회의 공평한 제공, 일한 만큼의 공평한 보상 및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차별 금지

–대다수 국민은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보유

■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 시장경쟁에서 실패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빈곤과 소외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의 보장

–빈곤, 질병, 교육기회 결핍 등으로 초래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줌

–노인, 장애인,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필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확충

■ 자활 · 자립을 위한 사회적 투자

• 취약계층의 자립 · 자활을 지원

–재분배 정책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자립 · 자활 의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일방적 시혜에 그친다면, 복지수혜자를 소외시키고 국가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즉,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 · 일방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층이 사회적 소외와 빈곤구조로 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의미를 지님

• 항구적 인간개발 추구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 훈련을 통해 일할 능력과 의욕을 제고

2. 생산적 복지의 주요 정책 방향

(1)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지금까지 빈곤에 대한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상당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생활의 전반적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저소득계층에게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되는 양상이 지속되어왔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빈곤층이 늘어나고, 노숙자가 생겨나며, 결식의 고통을 겪는 아동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의 대표적 빈곤정책인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듯 저소득층 보호대책으로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활을 통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생활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배경으로 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담긴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시책으로부터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의식주, 교육, 의료를 포함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된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는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의 생계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와 연계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컨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동시에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공공근로 사업처럼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 이처럼 급여의 제공과 함께 노동시장 참여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은 자립의욕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① 국민연금 확대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정부는 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전국민연금 시대가 개막되었다. 도시지역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부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야기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예상보다 많은 수의 납부예외자 문제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선 자영자 소득 파악의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파악을 중심으로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처음 적용범위가 확대된 시점에 비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며,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 확대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쟁점으로 등장한 문제는 약 480만명의 납부예외자 문제이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 및 퇴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신고한 근로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만큼 연금수급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불완전 취업계층의 근로기회가 위축되었고 경제회복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납부예외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의 사각지대로부터 끌어내어 국민연금의 우산하에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조직을 개편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②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장

의료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비교적 일찍 도입되어,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양적인 면에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낮은 급여수준, 높은 본인부담률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어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보험 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률이 전체 진료비

의 59%에 이르며, 이 중 외래 진료의 경우 66%, 입원진료의 경우 4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종합적인 의료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체 국민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보장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질병발생시 질높은 의료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급여체계를 전환해 나갈 것이다.

즉, 현행「저보험료 · 저급여」체계에서「적정보험료 · 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다.

한편,「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의료보험 통합작업이 의료보장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은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적정급여의 기틀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실업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보호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과 함께 근로자와 실직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안정적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프로그램으로 도입 ·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그 적용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98년 10월부터는 전사업장에 확대되면서 실업에 대한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 및 취업서비스의 양적,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전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도와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임시·시간제 근로자까지 고용보험의 지원이 확대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대장 등 기초자료가 부실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고용서비스를 위한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일용근로자는 노동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장이 특정하지 않고, 고용기간이 짧아 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하고 수요자에게 적합한 사업과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수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④ 모든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

상의 확대 및 사회보장적 기능을 시급히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의 확충을 위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험급여 수준도 최고 및 최저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와 소득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작업현장으로 복귀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스템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산재전문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직업재활의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사후적 보상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므로 안전진단·안전교육 등 산업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⑤ 사회보험 운영효율화 및 수급자 중심 서비스 체계확립

최근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동일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도 제도별로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이나 가입자의 편의성이 모두 낮은 실정이다. 특히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이 제도별로 상이하고, 자격관리와 징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능 중복의 소지가 있으며, 제도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징수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사

회보장심의위원회는 4대보험 통합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4대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효율성 향상,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의 원칙하에 구체적인 관리운영조직의 형태와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통합 ·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사회문제의 성격이 복잡 · 다양화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 노인 · 아동 · 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공적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던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나갈 계획이다.

노인들의 재취업 증진을 위해 노인취업알선센타, 노인공동작업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려고 한다.

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일반 재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지원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

급대상도 넓힐 계획이다. 이와함께 2000년부터 장애범주를 만성신장 심장질환, 만성중증정신질환 및 자폐증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보호 지원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며 특히, 장애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건전하게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동에게 최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를 내실화하고 생계보호와 학업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99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 보육사업을 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만5세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기반조성을 위해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인문고 자녀까지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여성복지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지역간 계층간 균형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 여성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상 살펴본 대상자별 사회복지 서비스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생산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

일자리 창출과 인간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① 일자리 창출과 취업의 촉진

정부는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여 2002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을 4%대로 안정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창업인프라 확충,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구직자에게 알맞은 취업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개발토록 하는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업관련 D/B의 통합 및 연계작업을 진척시켜 장기실업자·고령자·청소년·여성 등 실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고용·실업대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구인·구직정보, 직업전망, 직업훈련, 노동시장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보(LMI)시스템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직업안정기관과 고용 서비스 인력 등 직업안정망을 단계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확충하여 고용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②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앞으로 직업훈련의 기본방향은 지식기반산업 등의 인력수요에 대응한 인

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인력양성체제를 마련하고, 직업훈련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소득 취업과 연계되도록 훈련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공공훈련기관을 지식기반 제조업 같은 기간산업분야 및 시장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부문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으로 특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훈련을 육성하고, 실업자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체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고, "훈련과정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훈련정책 수립·시행단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훈련이수자 정보전산화와 취업실태 파악 등 직업훈련의 성과분석도 체계화할 것이다. 그리고 훈련비 차등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체제를 조성하여 우수훈련시설을 육성하고, 나아가 인력개발투자를 촉진하는 과학적인 틀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개발인증제도와 인적자원회계지표 도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도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산업 및 전문·공통사무 서비스분야 관련 자격을 신설하고 검정기준, 방법 등을 이 분야의 민간자격과 상호연계하며, 민간 및 사내자격제도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③ 공평한 훈련기회의 제공과 개인의 자율적 훈련 확대

직업훈련체제를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에서 사회적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저학력·저기능 실업자,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공평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지식근로자가 능력개발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

이 누리게 되는 지식·기술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 증가세에 있는 장기실업자와 청소년 등을 위하여 밀착직업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공공근로 및 임금보조적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히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현재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사업주가 시행할 경우 그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최종수요자는 근로자이므로 개인근로자가 필요할 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 대부 및 수강장려금의 지원 확대, 그리고 훈련휴가제 도입방안 등을 조속히 검토하여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여건상 체계적인 훈련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훈련을 활성화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며 현장훈련, 원격화상훈련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 향상

한때 세계최장이라는 지적을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최근 10여년간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재충전 기회의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사정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실근로시간'

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근로조건 관련 제도적 보호조치들 가운데는 일부 비현실적이거나,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권리와 교섭력의 향상에 발맞추어 이러한 비현실적인 보호조치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노사와 협의하여 그 개선을 모색한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더욱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계층은 비정규직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아직 법적 근로기준이나 사회보험상의 제도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체계 등의 미비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세중소사업체의 상당수가 임금지급 근거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고 특히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기록조차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조사결과를 볼 때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 실업급여,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고용정책의 손길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기회균등과 평생교육의 지향하는 열린 교육

생산적 복지의 근본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와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생동안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규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무상지원과 장기저리융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2000년부터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학의존도가 높은 유아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유아 수업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도탈락자, 비진학자, 학습부진아 등 기존의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결손집단과 장애아를 위한 학교설립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충하여 교육복지의 수준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규교육의 정상화에 주력하여 사교육의 수요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부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미 99년 8월에 기존 사회교육법을 대체한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제 등록, 원격가상대학 설치, 사내대학 학위 인정 등의 다양한 관련제도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대학 진학기회를 놓쳤거나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성인들을 위해 기업체에 근무한 후 다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경제적인 자활과 사회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인교육종합기본계획」 및 「노인교육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의 확충은 단순히 고용불안만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책수립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사회적 노동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생산적 복지 이념에 입각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는 국민 누구나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새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 마련

① 단편적 건강관리체계를 평생건강관리체계로 전환

현재의 치료중심적이고 단편적인 건강관리체계를 예방과 건강증진, 지속적 건강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위험 요인을 낮추는 한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고유한 활력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②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구축

정부는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공급체계를 정비하는 이외에, 만성질환과

노인인구의 급증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재가(在家) 보건의료서비스, 지역사회 보건사업, 호스피스, 재활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적 의료서비스와 달리 이러한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에는 국가가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 서비스의 특성상 민간부문이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가지기 어렵고,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만으로는 사회 전체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의 대상이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하다.

문화복지공간의 확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문화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은 더 이상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위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을 문화적 감성으로 순화하고 치유함과 동시에,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먼저 문화와 여가 생활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과 참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등의 기본적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전 국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참여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각 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활동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생활과 쾌적한 여가생활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각종 스포츠교실·동호인클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족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국 관광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전국의 관광자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자연을 경제활동의 이용대상이자 수단으로만 여겨왔던 이제까지의 산업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외면하여 왔고, 자연의 생명에너지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자연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의 심화된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명과 문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도 크나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받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오염방지와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을 오염발생 자체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는 사전적인 환경오염예방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정비, 자율환경관리체제의 도입,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향후의 국토계획과 경제개발의 방향을 사전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전 의사결정수단으로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문제와 유해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청정생산체계의 구축, 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발전 등을 친환경적인 생산·소비체제의 정착을 위한 핵심요소로 추진할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디자인과 관리, 유해원료의 대체, 생산공정의 개체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환경규제준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청정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환경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지식 집약적인 21세기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중소환경벤처기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및 상품의 환경성 등에 대한 국내외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적 생산·소비 활동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4)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복지재정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그 절대규모가 작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취약성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정책의 집행과정에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어 왔으며, 정

부의 복지정책 추진의 의지가 높지 않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민간부문에 의해 사회보험의 기여금 형태로 조성되는 재원도 근래 4대 사회보험의 제도화 추진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GDP대비 15%정도에 그침으로써 선진국의 30%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정부부담 증가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복지재정을 단기간에 대폭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는 주어진 재정규모내에서 정책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율의 단계적 조정과 과세기반의 점진적 확대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를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편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확대가 저소득층이나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 나갈 것이다.

형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① 과표현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정부는 그 동안 조세를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소득종류간 및 계층간 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일부 고소득층은 부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일삼아 적정한 세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부의 불균형과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얻지 못하였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만연하고 영수증 주고받기 및 장부기록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과세의 기반이 취약하고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의 과표양성화율은 95%에 육박하나 일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5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일부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의 세부담을 성실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전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조세부담에 있어서 능력원칙에 의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현금대신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영자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 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단순히 경감시켜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의 과표를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궁극적으로 형평과세의 기반을 확충하자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었다. 앞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복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의 소비지출수준에서 현금사용분을 신용카드로 전환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는 원래 장부기록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이들 과세유형에 속하는 대상이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약 60%나 차지하면서도 세수비중은 1.7%에 불과하며, 상당수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적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하여 과세유형의 전환에 따라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며,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할 것이다.

② 세정과 세제개혁을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정부는 IMF 경제위기이후 나타난 부의 양극화현상을 해결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세정과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여 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기법을 과학화하고 객관화 시켜 세정에 대한 엄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세무조사의 실효성도 확보할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세율체계 및 과세구간의 조정을 통해 고액 재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의 방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과세시효(15년)가 경과한 후에도 추적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누진세율(20~40%)로 과세하는 한편, 상장시세 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보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품목 중에서 도입 당시와는 달리 이미 소비가 보편화된 품목을 과감하게 제외하여 현실화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정보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집중시켜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형평과세 및 세정과학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재시행하고자 한다.

• Box 1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

■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었는 바, 이는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한 상태에서 우선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추진에 매진했던 결과로 불가피한 것이었음

■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한때 악화되었던 각종 소득분배 지표가 최근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Gini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도에는 0.283이었다가 금년 1/4분기에 0.333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4분기에는 0.311, 3/4분기에는 0.310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중산·서민층의 소득점유비 역시 금년 1/4분기 58.7%의 저점에서 2/4분기에는 60.4%, 3/4분기에는 61.0%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

	1996	1997	1998	1999.1/4	1999.2/4	1999.3/4
– 소득점유비(%)[1]						
· 상위20%[2]	37.9	37.2	39.8	41.3	39.5	39.0
· 중산층 포함 중위 60%	53.9	54.5	52.8	51.6	53.0	53.6
· 하위 20%	8.2	8.3	7.4	7.1	7.5	7.4
– 소득배율[3]	4.63	4.49	5.41	5.85	5.24	5.29
– 소득불평등도 (GINI계수)[4]	0.291	0.283	0.316	0.333	0.311	0.310

1)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2) 상위 20%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상위 20%소득 비중/하위 20% 소득 비중 4) 0≤지니계수≤1, 높을수록 불평등

집필자 : 조정1과 강종석 사무관

3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1. 최근 중소 · 벤처기업 창업동향

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경기의 급속한 위축은 한보 · 기아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게는 한층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98년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9%나 감소하였고, 평균가동률은 61.6%수준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금리와 환율의 급등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설비투자도 전년대비 63.6%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따라 98년중 부도업체수는 22,828개에 달해 사상 최고수준이었고, 창업은 전년대비 8.5%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5-7 연도별 중소제조업 경기동향

	1996	1997	1998	전년대비(%)
생산지수	103.3	101.9	72.4	△29.0
평균가동률(%)	84.8	83.6	61.6	△26.3
설비투자(억원)	64,810	50,087	18,223	△63.6

자료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집필자 : 산업경제과 민경설 사무관

그러나, 98년말부터는 우리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의 경영여건도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우선, 중소제조업의 생산은 98년말부터 감소폭이 둔화되다가 99.5월부터는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평균가동률은 98.12월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는 99.3월부터 IMF이전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도 99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리안정과 수요회복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99년중에 전년대비 3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여건의 호조에 따라 99.1~9월중 신설법인대 부도법인의 비율이 7대도시 기준으로 12배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5-8 중소기업 창업 및 부도동향 (7대 도시)

(개, 배)

	1997	1998	1999				
			1/4	2/4	3/4	계	전년동기대비
신설법인	21,057	19,277	6,688	7,161	7,677	21,526	55.5%
부도법인	6,132	7,538	662	596	524	1,782	△72.8%
창업배율	3.4	2.6	10.1	12.0	14.7	12.1	

자료 : 한국은행

2. 중소 ·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시책

98~99년도는 IMF이후 많은 기업들의 도산으로 대량실업의 발생과 함께 산업저변의 약화가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되었다. 이에 대응한 정부의 중소 · 벤처기업 정책방향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근간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는 최근의 지식 · 정보산업화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대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작업장 제공, 경영 · 기술 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이다.

창업보육센터 설립은 정부가 창업 · 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92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99년말까지는 전국에 142개를, 2000년까지는 222개를 설립하여 창업희망자들에게 체계적인 보육기회를 확대 · 제공할 계획이다.

표 5-9 창업보육센터 설립계획

(개)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계획)	2000년말(계획)
창업보육센터수	12	30	162	222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화 공간여건, 즉 입주위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 제반여건이 좋은 도심에 벤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빌딩 등을 "벤처기업 집적시설(Venture Building)"로 지정하고 설치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집적시설내에는 컨설팅기관, 창업보육센터, 금융기관 등도 입주토록 함으로써 입주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one-roof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테크노마트, 송파벤처타운, 송도미디어밸리 등 전국 56개의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1,26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99년중 50개, 2002년까지 100개의 빌딩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도심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2,000개 벤처기업에게 사업화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넷 구축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등 벤처창업 및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화하고 창업준비자와 투자자 및 정부가 사이버공간상에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넷(Venture-net)"을 99.6월 구축하였다.

이 벤처넷은 개통이후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10월말 현재 하루 1천건 이상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6.29일 "Yahoo Korea"에 의해서 「금주의 추천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부에서는 "코스닥(KOSDAQ)시장"을 중소·벤처기업의 유용한 직접금융 조달경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본금 증자, 인력증원, 전산능력 확충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자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등록 유치활동, 벤처기업 및 대기업의 등록여건 완화 등을 통한 코스닥시장의 규모확충과 각종 세제혜택을 통한 투자여건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주식시장의 침체기에 추진된 이러한 각종 활성화시책에 힘입어 98.10월중에 61포인트까지 하락한 코스닥 종합지수는 99.11.8일에는 211.7포인트를 달성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10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

1998.1	코스닥내에 벤처기업 전용시장(벤처기업부) 개설
1998.6	전담사장제 도입 및 코스닥위원회 설치
1998.8	코스닥증권(주) 자본금 증자 : 50억원 → 210억원
1999.5	전국 6대도시 순회 "코스닥설명회" 개최
1999.6	등록요건을 다양화하여 기업의 선택범위 확대
1999.8	코스닥 등록기업의 50% 손금산입 혜택 부여

대학 · 연구소의 실험실 벤처창업 활성화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사업화로 연결시켜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계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수 ·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교수와 연구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실험실 공장등록을 허용하며, 법인창업시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하여 기반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99.6월에는 제1회 실험실 창업경영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한 실험실 창업로드쇼도 개최중에 있다.

(2) 창업자금 지원

중소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

98년중 IBRD 차관자금 4,000억원을 활용해 추진된 중소 · 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사업의 지속을 위해 99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7,500억원을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자금으로 조성하였다.

이 자금은 98년도와 같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이내의 중소 · 벤처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의한 융자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융자지원, 그리고 우수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자금이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자금지원을 보다 효율화하고,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지원업

체도 D/B화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 할 계획이다.

표 5-11 중소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실적(99.10)

(억원)

	추천 결정		실제 대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기술신보	542	744	500	621
중진공	1,486	3,433	792	1,549
창투사	34	2,650	33	2,330
합 계	2,062	6,827	1,325	4,500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이라면 주로 구멍가게, 음식점, 세탁소 등 종업원 5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로서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소기업자들을 일컫는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중산 · 서민층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99.2월부터 전국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99.4월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창업활성화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5-12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실적(99.10월말)

(억원)

지원센터 추천		실제 대출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622	4,676	9,453	1,948

자료 : 중소기업청

이 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창업 · 경영상담을 통해 자금지원 필요성

이 인정된 경우 센터에서 취급은행에 자금지원을 추천하면 은행의 채권확보 절차를 거쳐 대출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지원

모험적 특성이 큰 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융자보다는 투자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국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을 설립하였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500억원의 재정자금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1,000억원 규모로 99.11월 설립되었는데, 국내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및 민간벤처캐피탈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은 공동출자자인 미국의 SSgA, 싱가폴의 Vertex, 이스라엘의 Yozma, 홍콩의 ADCM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펀드 운영경험이 풍부한 대표적인 투자회사들로서 우리 민간 벤처캐피탈에 선진경험을 접목시키고, 국내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엔젤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엔젤 투자기반 구축

"엔젤(Angel)"이란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개인투자자들로 대개 벤처기업 유경험자나, 벤처관련 전

문가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엔젤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직접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시책도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엔젤의 투자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99.7월말 현재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엔젤은 약 2,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엔젤들의 자율모임인 엔젤클럽은 전국에 13개가 결성되어 약 187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엔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는 엔젤이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있고,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주식 매각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앞으로 그 지원대상 및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고, 다양한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회사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기 위하여 창투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조합이다.

99.7월말 현재 창투사는 75개이고, 이들의 전체 자본금은 1조 1,385억원이다. 그리고, 창투조합은 109개가 설립·운영중이고, 전체 조합결성금액은 9,316억원이다.

이들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1조 1천억원 수준이며, 그중 주식·전환사채 등을 통한 투자금액은 전체의 68%인 7,400억원이다.

표 5-13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투자현황

(억원, %)

	1998년말	비 중	1999. 7월말	비 중
총지원금액	10,408	100	10,907	100
-투자금액	6,695	64.3	7,449	68.3
(주식)	(4,849)	(46.5)	(5,659)	(51.9)
(전환사채)	(1,731)	(16.6)	(1,585)	(14.5)
(약정투자)	(124)	(1.2)	(205)	(1.9)
- 융자	3,713	35.5	3,458	31.7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만 포함(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외).
자료 : 중소기업청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사치·유흥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 투자를 허용(99.1월)하였으며, 영화 등 문화산업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방식을 도입(99.3월)하였고, 창투조합 최소 설립금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99.5월)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개인 및 기관투자가 등의 벤처투자촉진과 투자가 보호를 위해 창투조합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작업중이다.

그리고,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투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99.6월)하였고, 98년 IBRD 차관자금중 1,356억원을 창투사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창업지원자금중 2,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벤처 ·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 및 국제화지원

벤처기업제품 홍보지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광고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KBS, MBC, SBS 등과 공동으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 전국대회"를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99.10월 무역협회에서 개최하여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고, 서울시 ·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방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국제화 추진

우리나라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국제화수준은 실리콘밸리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40여개에 불과하고, 미국 나스닥(NASDAQ)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전무할 정도로 주로 내수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벤처기업들이 선진 벤처네트워크 체제속에 참여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무한한 국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벤처넷」에 실리콘밸리의 현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 투자펀드에 외국투자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99년 실리콘밸리에 「한국소프트웨어인큐베이터」(주식회사)를 설립을 유도하고, 2000년에는 중기청에서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및 정보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벤처기업인(경영자, 전문인력 등)의 실리콘밸리 파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생 등 젊은 벤처기업가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해외기술연수, 인력파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추진*

1. 추진 배경

60년대이후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은 그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전략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불균형을 초래하여 왔다. 지역간 불균형은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이 낳은 국토공간적 결과로서, 현재 국토공간상의 가장 주된 불균형은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5-14 수도권 집중현황 (1997말)

구 분	전국(A)	수도권(B)	집중도(B/A)
면 적(㎢)	99,711	11,802	11.8
인 구(천명)	46,885	21,365	45.6
지역 생산(10억)	432,195	197,567	45.7
제조업체수(개)*	97,144	53,884	55.5
금융기관 예금(10억)**	246,310	162,302	65.9
대 학 교(개)	156	66	42.3
의료기관(개)	16,594	8,139	49.0

제조업은 1996말 기준, 금융은 1999년 1월 예금은행 기준
주요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 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집필자:조정2과 김성욱 사무관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주거, 교통, 환경 등에 있어 과밀·혼잡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는 대도시과밀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98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은 전국 평균 92.4%에 훨씬 미달하는 82.2%이며, 서울의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지출 또한 56.9만원으로 전국평균 49.8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차량평균속도가 80년에는 시속 30.8㎞ 였으나 89년에는 18.7㎞, 98년에는 12.98㎞로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 97년 기준으로 연간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수도권지역 평균은 15만 8천톤으로 전국평균 7만 5천톤의 2배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둘째, 국가 주요기능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력과 산업기반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즉, 비수도권지역은 국토면적의 88.2%를 차지하나 인구는 54.4%, 지역생산(GRP)은 54.3%, 제조업체수는 44.5%에 불과하여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올해들어 실물경기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수도권의 산업생산은 상반기중 평균 24.5%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평균 11.7% 증가에 그쳐 경기회복세가 아직 지방경제에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도권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작으로 1·2차에 걸친 수도권정비계획을 추진

표 5-15 수도권 집중도 추이

(%)

	1980	1985	1990	1997
수도권 인구	35.5	40.1	42.8	45.6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P)*	-	42.6	46.7	45.7
수도권 제조업체수	43.8	54.8	58.0	55.5**

1985년부터 통계작성 시작
제조업체수는1996말 기준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도권집중 현상은 90년대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규제중심적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되,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2.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추진

(1) 기본 방향

지금까지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표 5-16 조세감면을 받은 지방이전기업 현황

(개)

	1996	1997	1998
본사이전	3	1	-
공장이전	148	142	101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또한 지원시책이 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이 부족하여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점도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제, 금융, 인프라, 생활여건조성등을 일괄하여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제도(Comprehensive Incentive Package : CIP)를 구축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기업 및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 이전과 병행하여 대학 및 금융기관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 지역중에서도 기업체 및 인구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으로 하여 기업이전에 따른 과밀해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17 수도권 권역별 인구 및 산업집중비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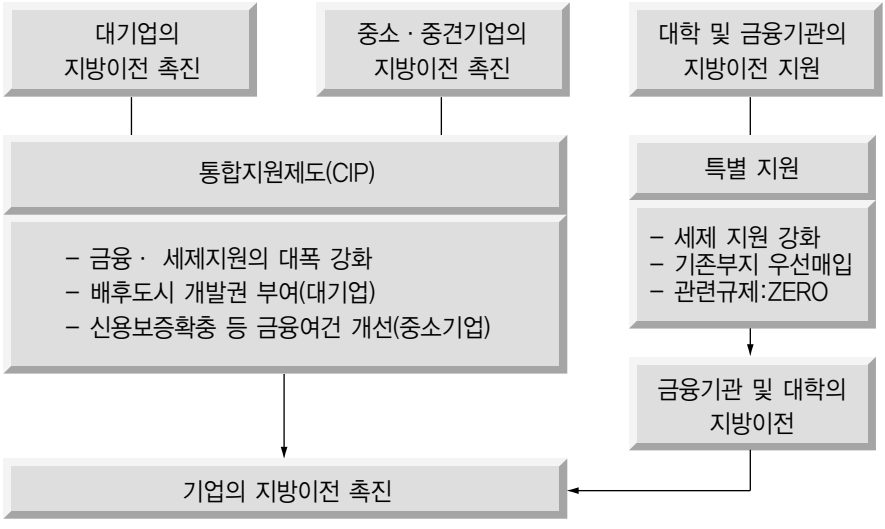
	수도권 전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제조업체	55.5(100)	32.0(57.7)	19.4(35.0)	4.1(7.3)
인 구	45.6(100)	39.7(87.1)	4.5(9.8)	1.4(3.1)
면 적	11.8(100)	2.1(17.9)	5.8(49.4)	3.9(32.7)

둘째, 입지대상지역으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되, 공장의 경우 지방광역시지역으로의 이전시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셋째, 대상기업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신설기업의 이전등 제도시행에 따른 비효율등을 방지하였다.

끝으로, 본 제도는 2002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여 이번 대책에 따른 기업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 기업지방이전대책의 기본방향



(2) 대책의 주요 내용

금융지원의 확대

이전을 위한 신규부지 매입에서부터 이전후 기업활동자금까지 기업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우선,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소재 본사사옥, 공장등을 토지공사등을 통해 매입토록 하여 이전소요비용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기업부동산 매입기금」(가칭)을 공사에 설치하되, 초기 기금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하고,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키로 하였다. 한편,이전후 종전부지는 공사가 저밀도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공사가 매입하지 못한 종전부지에 대해서는 공장용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업은행에 정부출자등을 통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지원자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정부출자분 1,000억원을 포함한 3,000억원은 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며, 나머지 7,000억원은 산업은행의 기존재원을 활용하여 이전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산업기반기금 재원(연간 약 4,0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하되,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동일인 한도(20억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지방이전기업을 우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방이전기업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이전기업을 신용보증기관의 특별보증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장기 · 저리로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력이 부족하여 지방이전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금융지원조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여건 개선시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먼저,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즉, 근거법 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조성과 결손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수단을 마련하고 지역신보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신보 보증서의 유용성을 높이고(현재 100%인 BIS기준자산위험 가중치를 인하), 대출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연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지방은행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양호하고 보증운용의 건전성이 높은 지방은행에 대해서 소액보증서(1억원 이내)를 직접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다.

세제지원의 확대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첫째, 이전 공장의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며, 최저한세(대기업:15%,중소기업:12%)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전후

5년동안은 기업활동에 따른 법인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본사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총법인세중 본사해당분(법인세총액×본사 인원급여액/급여총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이전공장의 경우와 같이 감면토록 하였다.

둘째,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토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이전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즉, 기존 수도권소재본사 및 공장매각시 그 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토록 하여 기존 공장등의 매각에 따른 조세부담이 기업이전에 애로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표 5-1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 행	대 책 안
[이전 단계]		
• 양도차익에 대한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감면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및 감면
– 특별부가세 (양도소득세)	· 대지·건물취득시: 과세이연	· 대지·건물취득시: 과세이연
	· 기계·장치취득시: 50% 감면	· 과세이연 받지 못한 부분 : 50% 감면
– 법인세	–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변경없음
•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취득 가액의 10%를 세액공제	• 법인세 감면과 중복 배제
•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 변경없음
[이전후 단계]		
• 법인세(소득세)	•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이전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 (대기업:15%, 중소기업:12%)	•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지원없음	•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감면

대기업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지방의 경우 주택, 학교, 병원 등 생활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근로자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것이 기업의 지방이전의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군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생활여건을 기업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 하기로 하였다.

우선, 개발권의 부여대상은 기업이전시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을 고려하여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체로 하고, 대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도 동반이전하거나 동종 중소·중견기업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전기업의 총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배후도시 개발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발권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전지역의 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개발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이전기업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전기업이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중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이전기업이 개발하는 배후도시의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주변SOC 시설 건설에 대해 공공개발에 준하여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였다.

넷째, 배후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이전기업이 아파트단지 및 쇼핑센타 등 상가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 및 병원도 설립할 수 있도

록 허용하며 설립에 따른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 또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조치에 의해 배후도시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 특히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되고 지방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 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도시의 개발로 인해 고용확대, 새로운 상권개발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유도

금융기관 본점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통합지원제도 대상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법인세등을 감면토록 하였다. 또한 본사사옥등의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존부지를 토지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신규부지 확보등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기자재 확충등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이전대학을 우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통합지원제도(CIP)등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성 · 운영토록 하였다. 종합지원센터는 이전 승인과 함께 관련법령에 따른 인 · 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지원 알선, 세제지원 안내, 입지선정, 행정절차 처리, 이전후 사후관리 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3. 향후 정책방향

이번 대책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시 정부가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번 대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지방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정보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역별 특성대학을 육성하는 등 지방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소비자권익 강화*

1. 소비자정책의 발전과정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경제성장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정책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단지 일부 민간단체에 의해 불량상품 추방을 위한 불매운동, 국산품애용운동과 같은 소극적 활동만이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로 고도화되고 소득수준과 함께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입장에서 각종 소비자문제를 겪고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욕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80년에는 소비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부문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80년 12월 제5공화국 헌법에 소비자보호운동을 국민의 적극적 권리로서 보장하게 되었다.

87년에는 소비자정책의 집행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소비자피해구제, 정보제공 및 안전, 거래개선 등의 영역에서 본격적인 소비자시책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 정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1), '할부거래에 관한

* 집필자 : 소비자정책과 윤성호 사무관

법률'(91)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련의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96년에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12월 3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소비자정책은 더 한층 강화되었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분야별로 획기적인 제도개선들이 추진되었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 20여년 이상 논의만 되어왔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 법제들의 제정작업이 본격화되었다.

2. 최근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1)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반 구축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의 소비자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확대시켜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각종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대표를 참여시켜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98.4월)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소비자 안전', '거래개선')를 구성(99.1월)·운영하였다.

(2) 소비자 피해구제의 선진화 및 활성화

우선 지난 20여년간 논의만 되어 오면서 본격적인 입법추진이 없었던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법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안을 마련하였다.

동 시안에 대해 98년 11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99년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였다. 동 법안은 99년 11월 의원입법(추미애 의원외 104인 발의)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자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등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결함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권리구제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물책임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수입상품으로 발생한 국내 소비자피해는 보호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품의 안전성 제고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로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99년 4월부터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금융·법률·의료등 전문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원이 분쟁조정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금융, 보험, 증권, 의

표 5-19 전문서비스 분야별 상담 접수현황(99.4.6~10.31)

구 분	금 융				증권	보 험				법무	의료	계
	은행 비은행	신용 카드	기타	소계		생보	손보	기타	소계			
건수	2,921	3,602	505	7,028	781	1,546	2,069	1,301	4,916	3,098	4,337	20,160

료, 법무등 5개 분야)를 추가로 설치운영 하였다.

세번째로 99년에 2차에 걸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품목별·업종별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공연업과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품권법 폐지에 따라 기존의 상품권 관련 피해보상기준을 보완하여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차량 인도후 1개월 이내에 원동기(엔진)나 동력전달장치에 2회이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환·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소비자 안전대책의 적극 추진

소비자들의 안전 제고를 위해 우선 정부는 위해정보 수집·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8년 6월 위해정보 보고 대상기관을 확대·정비(137개 기관 → 157개 기관)하는 한편 위해정보 수집활동 및 분석·평가기능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두번째로 위해 제품으로 인한 광범위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콜(Recall)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99년 4월에 소비자보호법상의 일반적 리콜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여 리콜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기용

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99년 8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2000년 7월 시행)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존의 수거·파기명령 이외에 교환·환불·수리 등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아울러 품목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위해물품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하였다.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우선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전자거래에서의 분쟁조정방안, 사이버몰의 표시기준, 피해보상방안 등을 규정한 전자거래기본법령을 제정·시행(99년 7월)하였으며,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권고안 작성에 적극 참여하였다.

두번째로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9년 6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99년 6월)하여 중요정보 공개제, 광고실증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제 등을 도입하였다.

세번째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노력과 함께 업종별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예 : 99.3월 여행업 표준약관)하였다.

(5)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자주적 역량 강화

소비자들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99년 4월부터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에게 가격등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의 기초가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도 개선도 추진하였다. 권장소비자가격의 경우 경쟁제한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실제판매가격과 괴리된 고가표시로 소비자 선택을 오도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의 우려가 큰 TV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99년 9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시켰다. 또한 가격에서 중량·길이와 같은 단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햄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에서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책들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시행(99년 8월)하였다. 이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신력이 제고되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 향후 정책과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한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제조물책임법등 선진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되면서 국내 소비자보호는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랫동안 생산자 중심의 경제체제가 고착화되어 있던 관계로 아직까지 모든 제도와 관행, 의식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도 일천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아울러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방식이 속속 등장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자문제들도 계속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소비자 권익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선진화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도입·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소비자들의 가치관·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제6장

대외개방 및 국제경제 변화에의 능동적 적응

1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의 제고*

1. 외환시장의 안정*

(1) 외환수급 여건변화와 수급조절 대책

98~99년간의 외환수급 여건은 ① 외환공급 우위, 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③ 적극적인 외자유치, ④ 외채 조기상환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먼저, 97년 11월 외환부족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한국경제는 98년에 들어서 오히려 외환초과공급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는 경기 하강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406억달러)를 기록한데 주로 기인한다. 외환의 초과공급분중 일부는 외환보유고로 흡수되었으며 일부는 원화가치 안정으로 나타났다.

99년의 경우도 수출회복과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외환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99년은 특히 대규모 외자유치가 많았는데 한국통신은 DR발행으로 25억달러의 외환을 조달하였고, LG전자는 16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외국인 원화증권투자도 활발하여 98년 1/4분기의 경우 무려 40억 달러가 유입되기도 하였다.

99. 4월에는 큰 폭의 외환공급물량 증가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우려됨

* 집필자 : 외화자금과 김우찬 사무관

에 따라 외환수급 조절방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① 은행들의 외화충당금 적립, ② 성업공사의 부실외화채권 조기인수, ③ 공기업들의 해외차입 자제, ④ 한국통신 DR 발행물량의 외환시장 중립적 처리 등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크게 해소되었다.

한편, 98~99년에는 외환위기 당시 받았던 지원자금들에 대한 상환도 활발하였다. 금융기관들의 경우 98년초 정부지급보증하에 중장기로 만기연장된 단기외채(217억달러)중 1년물(38억달러) 전액과 2년물중 일부(4억달러)를 99. 4. 7일 상환하였고, 99. 10. 8일에는 2000년 및 200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88억달러를 조기상환하여 잔액은 현재 9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외환위기 때 지원받은 IMF SRF[1] 자금을 99. 9월부로 전액상환(135억달러) 하였다.

표 6-1 1998년 및 1999년의 외환수급 동향

(억달러)

	1998					199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0월
1. 경상수지	109	111	98	87	406	62	63	66	21	213
상품수지	97	115	106	99	416	68	81	72	27	247
서비스수지	6	2	△2	0	6	△1	△5	△3	0	△9
소득수지	△7	△13	△11	△20	△50	△10	△17	△7	△6	△40
경상이전수지	13	8	5	8	34	6	4	5	△1	15
2. 자본수지	△17	24	△30	△9	△33	10	△6	△45	△7	△47
직접투자	△3	3	5	1	6	6	10	19	△3	32
간접투자	40	△11	△9	7	28	28	38	△8	7	65
(외국인증권투자)	40	△8	2	15	48	21	11	△27	6	11
민간 장·단기차입	△67	△32	△67	△39	△205	△31	△31	12	△39	△89
공적자금	71	20	10	△5	96	△16	△17	△47	2	△78
기타*	△58	44	30	27	43	22	△7	△21	27	22
3. 준비자산증감	94	113	55	48	310	63	46	27	7	146
(외환보유고)	242	370	434	485	-	545	604	655	662	-
4. 오차및누락	1	△22	△13	△30	△63	△9	△11	5	△8	△20

기타 : 금융기관 및 기업 해외자산, 무역금융 등 /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1) SRF(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 외환위기 당시 IMF의 통상적인 지원한도를 넘어 긴급히 지원했던 자금

(2) 적정 환율수준 유지노력

지난 경제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경상수지적자 심화로 대외균형을 상실한데 있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채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상수지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환율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기초경제여건, 외환의 수요와 공급, 엔화 등 주요 통화가치 등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기반이 취약하고 외환거래자유화로 외자유출입 가능성이 증가 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에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이를 적절히 완화(smoothing out)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고 확충, 대외채무 상환, 대외자산의 질 건전화 등 다각적인 외환시장 안정노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은 98년 하반기중에는 대체로 1,300원 내외 수준에서 움직였으며 99년 상반기중에는 1,200원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였으며 12월들어 대우사태가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1,13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표 6-2 환율변동 추이

	1998.6	9	12	1999.3	6	9	11
원/달러	1,385.2	1,373.6	1,207.8	1,224.7	1,155.9	1,218.7	1,157.5
엔/달러	142.2	134.1	114.6	120.5	121.0	107.1	102.7
원/100엔	973.8	1,023.9	1,053.4	1,015.9	954.9	1,137.1	1,126.1

(3) 외환보유고 확충과 차입비중 축소

97년말 89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용 기준)는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12월 3일 현재 701.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i)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지속[2] ii) 외환위기시 금융기관에 지원했던 자금의 꾸준한 회수 iii)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인한 외자유입[3]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상대적으로 고금리자금인 IMF의 SRF(135억달러) 자금을 9개월여 앞당겨 전액상환한 바 있다.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확충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외환시장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의 발판이 되었다.

표 6-3 외환보유* 추이

(억달러)

1997년말	1998년말	1999.3월말	6월말	9월말	11월말	12월 3
88.7	485.1	544.5	604.3	654.8	696.8	701.4

가용외환보유고 기준

(4) 외채 및 대외채권 동향

99년 10월말 현재 IMF 합의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총대외지불부담(External Liabilities) 규모는 1,361억달러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9월 1,805억달러에 비해 444억달러가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의 외채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 IBRD, ADB 등으로부터

2) 1998년중 406억달러, 1999.1~10월중 213억달러의 경상흑자 시현
3) 외국인 증권투자 및 직접투자 : 1998년중 100억달러, 1999.1~10월중 135억달러

표 6-4 총대외지불부담 및 대외채권 현황

(억달러)

	1997년 9월 (A)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 10월(P) (B)	증감액 (B-A)
총대외지불부담	1,805	1,592	1,487	1,361	△444
●단기외채 (단기비중, %)	982 (54.4)	636 (39.9)	307 (20.6)	377 (27.7)	△605 (△26.7)
Ⅰ. 공공부문	62	223	365	282	220
Ⅱ. 금융부문	1,271	899	710	605	△666
Ⅲ. 민간부문	472	471	412	474	2
총대외채권	1,133	1,052	1,285	1,398	265
순대외지불부담	672	540	202	△38	△710

자금을 도입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외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옴에 따라 97년 9월말 1,271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은 472억달러에서 474억달러로 같은 기간동안 2억달러 증가하였다.

한편, 단기외채의 비중은 97년 9월 54.4%에서 99년 10월말 현재 27.7%로 줄어 외채구조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대외채권은 1,398억달러로 97년 9월의 1,133억달러에 비해 265억달러 증가함으로써 순외채는 99년 9월말 현재 △4억달러를 기록하여 정부수립이후 사실상 최초로 순채권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99년 10월말 현재는 △38억불을 기록하였다.

향후에도 외채는 금융기관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계속 감소될 것이 확실하며 대외채권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을 배경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순채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Box 14 외국의 민간채권기관과의 외채협상결과 비교(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 **공통점** : 외환위기 발생후 IMF등의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적 자금지원에 이어 외국 민간금융기관과의 외채협상이 타결된 후 외환유동성 문제가 해소

■ **차이점** : 협상의 차주·대주 및 협상대상인 외채성격 등에 따라 외채협상 결과가 상이

· 3개국 주요 외채협상내용 비교

	우리나라(1998)	인도네시아(1998)	멕시코(1990)
협상명	뉴욕합의	프랑크푸르트합의	브래디플랜
대상채무	Bank Loan	Bank Loan, FRN	Bank Loan
규모	218억불	26억불*	480억불
채무자	은행·종금사	은행등 금융기관	정부
채권자	외국상업은행	외국상업은행	외국상업은행
협상내용	정부지급보증에 의한 단기외채의 중장기 만기연장(1~3년) 금리:L+2.25~2.75%	중앙은행 지급보증에 의한 만기연장(1~4년) 금리:L+2.75~3.5%	IMF, 세계은행등의 지급보증하에 브래디 본드로 외채를 교환 -원금의 35%를 경감한 만기 30년 채권 또는 이자경감 30년 채권으로 교환
소요기간	3개월	4개월	8개월

* 당초 대상채무가 92억불로 추정됐으나 실사후 약 30억불 수준으로 축소

· 기업외채 구조조정 사례

- 멕시코(83년) : 중앙은행 산하 환위험부담 신탁기금(FICORCA)설립하여 약 2000개 기업의 125억불 외채를 정부보증환율로 환산하여 자국통화(peso)채무로 전환 (4년거치포함 8년만기)
- 인도네시아(98년) : 중앙은행 산하 채무구조조정공사(INDRA)를 설립, 기업외채를 보증환율로 환산하여 자국통화(루피아) 채무로 교환 (3년 거치포함 8년만기)키로 했으나, 아직 성과가 없음.

2. 대외신인도의 제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97년말 이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투기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다.(Moody's Ba1, S&P B+, Fitch IBCA B-). 또한 98년 4월 발행된 10년 만기 외평채의 스프레드는 최고 1000bp(98년8월말)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원인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한국경제의 투명성을 높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1) E-Mail 서비스의 제공

98년 7월 재경부는 외국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우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투자자들과 E-mail 통신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E-mail 서비스는 그동안 즉시 공개치 않았던 경제정보의 즉시 공개를 추진함과 동시에,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서 쌍방향(Two-Way) 통신을 추구하여 한차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Mail서비스는 외국투자자, 외국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국제기구등의 한국 또는 아시아 담당자들에게 경제통계와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어서 경제상황 및 정부정책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여 대외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 시작 때는 300여명 수준이나 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계속적으로 대상을 확

* 집필자 : 국제금융과 최용호 사무관

대하여 최근에는 900여명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E-Mail 서비스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표 6-5 E-mail 통신자 현황

(명)

	투자은행	연기금	국제기구	상업은행	외신기자	신용평가	연구소	기타	계
1998.7	114	108	41	21	21	18	14	8	345
1999.6	206	334	98	137	9	28	6	67	885

⑵ 코리아 포럼(KOREA FORUM) 개최 : (98. 9~10)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성과를 국제투자가에게 정확히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차입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9월말부터 세계 11개 주요 금융.산업도시에서 한국경제에 관한 대외홍보(KOREA FORUM)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문별 홍보수요를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정부는 동행사를 통해 국민정부 출범 6개월간의 실적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 행사기간중에 정부는 Group Presentation 11회(참석자수 : 1,185), 개별면담(One-on-one Meeting) 76회를 가졌다(총 87회 회의).

표 6-6 Korea Forum* 개최 결과

Group Presentation			One-on-one Meeting
지 역	회 수	참석자수	
동 경	1회	100명	5회
싱가폴	1회	120명	6회
미 국	5회	465명	41회
캐나다	-	-	4회
런 던	1회	150명	8회
파 리	1회	80명	-
프랑크푸르트	1회	70명	2회
홍 콩	1회	200명	10회
계	11회	1,185명	76회

Forum은 9월 29일 일본 동경에서 Forum개최를 시작으로 홍콩, 런던, 프랑크프루트, 보스턴, 워싱턴, 뉴욕, LA 등 세계 8개국 17개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재경부 등 관계기관의 고위 정책담당자와 전문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포럼에는 Financial investor들 외에도 다수의 기업관계자들도 참가하였다.

(3) 외환자유화 추진

정부는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외자유입의 확대를 도모하고 대외신뢰도의 제고를 추진하였다. 우선 97년 12월에는 3년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 해외차입 제한을 철폐(12.16)한데 이어 모든 장단기 국·공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폐지(12.30)하는 등 주식·채권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추진하였다. 이어 98년 2월에는 CP,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을 발표하여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외자유입 촉진과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과 경쟁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부

분 개혁의 일환으로 9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환율은 기초경제여건, 외환시장 수급, 주요 통화가치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사전규제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외거래 활성화와 유사시 규제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하여 외환시장 육성을 도모하였다.

이에따라 자본거래의 원칙을 「원칙규제 · 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 · 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였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도 99년 3월 제정되었으며,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은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외환자유화는 단기간의 외자도입 확대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우리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우리의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 경제가 21C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고비용.저효율의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개방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대외신뢰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었다.

⑷ 긴급자금의 조기상환

정부의 개혁노력 및 경제회복으로 외환시장의 안정기반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IMF 긴급보완금융(SRF) 자금 28억달러를 98년 12월 30일 상환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99년 상반기에 58억달러를 상환하

였다.[6] 또한 98년 정부보증하에 중장기(1~3년)로 만기연장된 218억달러의 금융기관 단기외채중 1년만기분(38억달러)이 99년 4월로 상환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정상 상환하였으며 수출입은행등 3개 금융기관은 만기 미도래분 4.2억달러를 조기상환하였고, 99년 10월 조기상환 가능시점에서는 86억달러를 조기상환하여 잔액은 94억불 수준으로 축소되었다.[7]

⑸ 국가신용등급의 상승 및 대외신인도 회복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힘입어 99년초 부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기 시작했다. 99년 1월 19일 Fitch IBCA가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여 투자적격으로 회복시키자, 1월 25일에는 S&P가 역시 BBB-로 투자적격을 부여했고, Moody's는 2월 12일에 Ba1에서 Baa3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99년 상반기 동안 계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과 경제회복이 급속히 이루어지자 Fitch IBCA는 99년 6월 BBB-에서 BBB로 1등급 추가로 상향조정을 하였다.

99년 7월부터 시작된 대우부실의 표면화와 투자신탁회사들의 문제가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었으나 정부의 투명한 정보제공, 조기대응, 적극적인 시장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순조롭게 해결될 전망을 보이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99년 11월 추가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S&P가 11월 11일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단계 상향조정하였

6) IMF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중 1999년 9월까지 총 135억달러의 긴급보완금융(SRF)자금은 조기상환계획에 따라 100% 상환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IMF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대기성 차관(SBA)자금(75억달러)만 남게 되었다.

7) 2000년 4월 만기도래분 : 39억불, 2001년 4월 만기도래분 : 약 55억불 환율은 1999.10.15 기준임

고, Moody's도 99년 8월 22일 긍정적 신용관찰대상으로 지정이후 12월 16일 신용등급을 Baa2로 상향조정하였다.

외환부문의 안정과 경제회복으로 외환.금융위기시의 대외신인도 하락에서는 벗어났으나,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완성할 수 있느냐가 신용등급의 추가 상향조정의 관건이라는 판단하에 정확한 구조조정 성과의 전달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Moody's

종 전	1997.11.28	12.11	12.21	1999.2.12	1999.12.16
A1	A3	Baa2	Ba1	Baa3	Baa2

□ S&P

종 전	1997.10.24	11.25	12.11	12.23	1998.2.17	1999.1.25	11.11
AA-	A+	A-	BBB-	B+	BB+	BBB-	BBB

□ Fitch IBCA

종 전	1997.11.18	11.26	12.11	12.23	1998.2.2	1999.1.19	6.24
AA-	A+	A	BBB-	B-	BB+	BBB-	BBB

Box 15 IMF 자금의 성격 및 그 운용

■ IMF는 국제수지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이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국제수지 조절용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며,

• 자금지원시 지원받은 국가가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의 운영과 구조조정의 시행등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에 IMF로부터 총 210억불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고금리와 재정긴축등 IMF의 처방을 채택하였음.

• 이러한 고금리와 재정긴축은 비단 IMF의 주문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는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달러당 2000원까지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실시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음.

■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기로한 자금은 대기성차관 75억불과 보완준비금융 135억불 두가지 종류로 구분됨.

• 대기성차관은 IMF의 정규신용제도로서 자금도입 3년후 2년간 8회 균등상환하며 적용이자율은 SDR이자율(변동금리)+수수료로 현재 4%를 약간 초과하는 저금리의 자금

• 보완준비금융은 인출 1년후에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대기성차관금리보다 3%이상 높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자금

–당시 우리나라는 IMF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신용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의 자금을 긴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IMF는 보완준비금융이라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외환사정이 개선되는 대로 신속히 갚으라는 취지에서 그 금리를 다소 높게 책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안정과 외환보유고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한 IMF자금을 전액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데 사용하였음.

• Box 16 변동환율제도와 외환자유화 •

■ 97년말 외환위기이후 우리는 시장평균환율제도(기준환율 ±2.25%범위내 환율변동 가능)를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

• 이는 환율이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여, 97년과 같이 원화의 고평가로 인한 위기발생을 방지하고자 추진

■ 그러나 이러한 자유변동환율제도 아래서는 시장평균환율제도때와 달리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됨.

•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이동과 같은 외부의 충격이 있는 경우에,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금리변동으로 충격을 흡수하게 되나 변동환율에서는 환율변동으로 충격흡수하게 됨.

97년 10월 고정환율제인 홍콩은 단기금리를 200%까지 상승시키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했으나, 변동환율제인 일본은 엔화를 98년 8월 148엔에서 99년초에는 109엔까지 변동시키면서 충격을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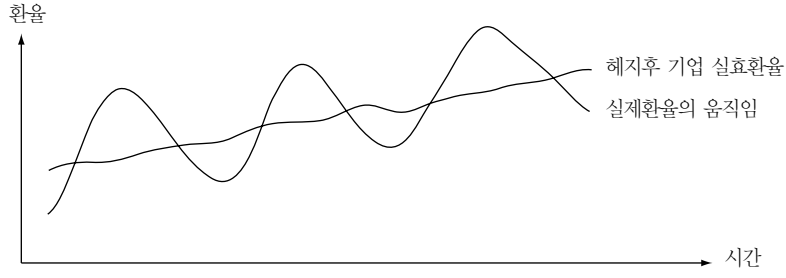
■ 이렇듯 변동환율제도는 외부충격에 대해 환율변화로 대응하므로 금리의 급격한 변동은 피할 수 있으나, 반면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증대

97 국내상장기업 환차손 규모 : 10.5조원

•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에 실제 적용되는 실효환율의 변동폭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

■ 그러나 그동안 외환규제로 인해 우리는 헷지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는 등 외국에 비해 외환시장이 매우 취약하고, 우리의 외환거래규모는 대단히 작은 편이어서 이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과 자율적인 민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99년 4월부터 외환자유화를 시행 · 실시



■ 한편 정부는 이러한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실시함.

- 외환전산망 가동, 조기정부시스템 운영 등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대응할 모니터링체계 구축
- 과도한 투기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과 원화증권발행을 제한하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
- 외환전산망과 국세청 · 관세청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불법 외화밀반출에 대한 체계적 감시체계 구축
- 긴급 유사시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 안전장치(safeguard) 마련

2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1. 외국인 직접 투자의 추이

(1) 세계적 추이

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전략에 따라 세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8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쟁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 및 활발한 국경간 M&A 등에 힘입어 유입액(flow)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6,4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중 M&A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의 63.8%인 4,110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73.9%나 증가하였다.

표 6-7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추세 (flow)

(10억달러)

	1996	1997	1998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359 (9.1%)	464 (29.4%)	644 (38.7%)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380 (5.9%)	475 (25.1%)	649 (36.6%)
국경간 M&A	163 (15.5%)	236 (45.2%)	411 (73.9%)

주 :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1999.

집필자 : 경협총괄과 김광훈 사무관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도 99년 1-10월중 10,24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85.3%나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여, 99년 1~10월중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4,910백만 달러로서 총투자의 47.9%를 차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중 제조업투자는 5,268백만 달러로서 총투자의 51.6%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업(176백만 달러), 통신업등 기타서비스(1,418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전기·전자(2,728백만 달러), 화공(588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EU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99년 1~10월중 EU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5,121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9.5%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네덜란드(2,891백만 달러),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2,038백만 달러, 일본으로 부터의 투자는 1,073백만 달러로 각각 18.1%와 127.3%가 증가하였다.

한편 99년 1-10월중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중은 1,363백만 달러로 총 외국인투자금액의 13.3%를 차지하였다.

표 6-8 우리나라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1~10)
농·광업	0.3	18	55	177	53
제 조 업	884	1,930	2,348	5,735	5,286
서비스업	1,057	1,254	4,568	2,938	4,910
합 계	1,941	3,202	6,971	8,852	10,249

2. 최근 외국인투자 촉진 조치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정부는 외국인투자 제도를 수요자(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되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과 관련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및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감면기간 및 비율도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업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투자유인제도를 확충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이외에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외국인토지 취득 전면 자유화

정부는 98년 7월부터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토지취득절차도 신고제로 전환하여 외국인은 계약 체결후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게 거래 내용을 신고만 하면 되게 하였다.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국내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3~5년내 처분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외국기업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확대

98년 7월 이후 정부는 신용조사업, 원유정제처리업등 8개업종을 전면 개방하였고, 담배제품제조업 등 2개업종을 부분 개방하였으며. 유·무선전신전화업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개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따라 총 1,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이전의 31개업종(미개방 13개업종, 부분개방 18개 업종)에서 21개 업종(미개방 7개업종, 부분개방 14개 업종)으로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9.4%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4) 외국환거래 자유화

98년 7월 정부는 기업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부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자유화하고, 무역신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자유화였다.

99년 4월부터는 통제위주의 종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1년이하 외화차입과 해외증권 발행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로써,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로

운영되던 외환제도는 '원칙자유 · 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되었다.

3. 향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IMF 체제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조치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선진국 및 경쟁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영업활동과 관련된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6-9 한국의 경제규모대비 외국인투자(실제도착기준) 연도별 비교

	1995	1996	1997	1998*
FDI Flow(1997)/ 총고정자본형성	1.1%	1.3%	1.8%	5.5%*
FDI Stock(1997)/GDP	2.3%	2.6%	3.5%	6.7%*

주 : 1998년은 잠정 집계한 수치임.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1999.

Box 17 외자도입과정에서 우리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한다는 비판

■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기업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공기업 사례 : 한국통신>

- 99.5월 국내시세보다 높게 24.85달러 규모의 해외 DR을 성공적으로 발행(약 20.4% 할증발행)
- 동 DR발행에 따른 재무구조 건실화등을 반영하여 국내주가도 최근 급상승 : 55천원(5/24) ⇒ 138천원(12/10)

<일반기업 사례 : 삼성중공업>

- 건설기계 : 지게차부문의 해외매각(98.5)으로 약 276억원의 매각이익 실현
- 매각대금 확보를 통해 모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었고, 금융비용의 감소등으로 순익도 증가

* 부채비율 : 760%(97년말) → 210%(99.9말)
* 순익 : △955억원(97년말) → 1100억원(99.9말)

아직도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규모가 작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

- 우리나라의 GDP대비 FDI누계비율은 98년말 현재 6.7%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미국(8.4%), 중국(23.5%), 싱가폴(81.6%), 말련(38.1%), 영국(21.5%)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사실상 우리기업이라 할 수 있음

–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 및 수익증가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필요

3 국제경제질서 변화에의 능동적 적응*

1. 개 황

99년은 국제금융질서 개편이라는 국제적 추세하에서 한국이 위기극복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교훈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우리의 위기극복 경험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그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제고되었고, 주요 거시경제 및 금융에 관한 주요국가들의 논의의 場인 G-20에 한국이 포함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G-20, G-22, IMF, APEC, 마닐라 프레임웍, ASEAN+3 등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며,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양자간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한·중 및 한·일간 금융협력, 한·미 및 한·일 투자보장협정 추진 등 여러 방면의 협력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필자 : 금융협력과 신경남 사무관

2.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에의 적극 참여

(1) 개 요

태국의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러시아와 남미까지 확산되었으며, 국제경제 역사상 29년 세계대공황 이래에 가장 크고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금융·외환위기의 발생빈도가 훨씬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에 따른 전염효과(spill-over effect)로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파급되는 것도 이번 위기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위기 발생전인 96년, 97년에 각각 7.2%, 4.5%였던 아시아 5개 위기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위기 발생후인 98년도에는 -8%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수요부족으로 인한 1차 산품가격의 하락과 무역규모의 축소로 세계 경제성장율도 97년의 3.2%에서 98년에는 1.8%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다.[1] 또한, 경제위기는 실업과 임금하락을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기반의 약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국제금융질서의 미비점에도 원인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G-7, IMF, APEC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중이며, 우리도 새로이 재편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극복경험에 바탕을 둔 일관성이 있는 논리로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전략을 수립

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1998/99*. 아시아 5개 위기국 (한국, 태국, 인니, 말련, 필리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99년 3월과 4월에 열린 G-33 재무차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담은 한국보고서(Korea Report)를 발간하여 동 개편논의에 있어 신흥시장국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G-7 정상들은 쾰른회담에서 G-7 재무장관들의 "국제금융체제 강화 보고서"를 승인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향후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개편논의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G-7은 G-7 재무장관보고서를 중심으로 G-20를 통하여 주요 신흥시장국들과의 협의하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2) 주요 논의동향 및 우리 입장

국제금융질서 개편논의는 각 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안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의제로는 ① 국제적 기준 개발 및 투명성 제고, ②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스템 강화, ③ 선진국의 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④ 위기예방 및 억제를 위한 민간부문 참여확대, ⑤ 국제환율제도의 개선, ⑥ 국제금융기구의 조직개편 및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투명성 제고 및 IMF의 감시활동 강화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며, 반면에 위기예방 및 해결에 있어 민간분야의 책임확대, 국제환율제도 개편을 비롯하여 자본자유화 및 외환통제, 헷지펀드 등 HLIs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 등 선진국에서의 금융규제 강화 등에 관한 논의는 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는 투명성 제고, 국제기준 및 IMF 감시활동과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우리도 투명성 제고와 국제기준 준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신흥시장국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에 따른 잇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규제 등의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헷지펀드 등 HLIs가 순기능도 있으나 위기의 확산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투기적 공격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HLIs와의 거래상황을 관계당국에게 보고하고 HLIs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도를 높이는 등의 간접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간접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적 규제의 사용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신흥시장국은 일관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며,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HLIs의 투자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각국의 금융당국자들간에 상호교환하는 등 HLIs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G-7 보고서에서 밝힌 위기발생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에 관한 원칙과 수단을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민간부문 참여방안에 관한 논의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도 위기극복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회원국들과 함께 적극 공유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환율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어느 국가에나 적용되는 이상적인 환

율제도는 없을 것이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환율제도를 선택하고 선택된 환율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며,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요국 통화간 환율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진국들간의 정책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정책 기조는 확고한 시장경제의 구축 및 대외개방을 통한 Global Standard의 도입인데, 최근의 외환자유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책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국제화 · 개방화가 진전된 상황에서는 국내경제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안요인의 해소가 안정적 경제운영에 필수적 요건인데, 97년 이후 우리나라 등 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는 안정적 대외경제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3. G-20의 발족과 한국보고서 발표

그 동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G-7과 IMF 등 선진국 위주의 논의가 진행되어 옴에 따라 신흥시장국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구조적으로 중요한 신흥시장국들(systemically important countries)이 포함된 Group-20[2]가 출범하였다. 이는 안정적 국제금융환경 구축에 있어 신흥시장국의 입장이 지속적

2) Group 20에는 G7이외에 아시아(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멕시코, 브라질, 알젠틴), 아프리카 · 중동(남아공, 사우디 아라비아), 유럽 · 오세아니아(러시아, 터키, 호주 및 EU의장국)이 참여하며, 국제기구로는 IMF, 세계은행, 유럽중앙은행이 포함됨. 제1차 G20 재무Deputies회의가 11.16~17 캐나다 뱅쿠버에서,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가 12.15~16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

으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場으로써 국제화와 자유화의 이점을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99.11월 캐나다 뱅쿠버에서 G-20 재무차관회의를 가진 이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G-20의 역할과 목표, 금융부문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국내정책상 대응(환율제도, 대외채무 관리방식의 개선, 금융시스템의 강화, 해외채권자와의 관계 개선 등), 금융부문의 취약성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국제기준 개발 및 투명성의 제고, 원활한 민간자본 이동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우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취약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등 우리의 경험과 교훈들을 국제사회 및 G-20 회원국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G-20 재무장관회의중에 "위기극복과 그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한국보고서를 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위기재발방지를 위해서 신흥시장국의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여 금융·기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장경제원칙의 적용과 투명성 및 국제기준의 이행, 수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그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는 감독체제의 구비,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비한 모니터링 및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예방적 조치의 강화, 대외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조화시키는 적정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영 등을 달성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2차례의 재무차관회의, 1차례의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한국은 G-20 회의가 다양한 경제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회원국들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환위기국 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G-20 회의에 참여하여 논의가 미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논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기여하며, G-20회의를 우리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에 대한 홍보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4. 한·중·일 금융협력 강화

아시아 금융위기 및 유로화 출범등을 계기로 금융안정 및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적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국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99.3월의 ASEAN+3 재무차관회의 등을 통하여 3국 국책연구소간 세미나 개최를 중국과 일본에 제안하였으며, 양국이 이를 수용하므로써 처음으로 한국에서 한·중·일 3국간 금융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재정경제부의 후원하에 99.8.20~2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한·중·일 금융협력을 위한 주요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중국의 국무원산하 발전연구중심 소속의 세계발전연구소와 일본 대장성산하 재정금융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3)]

동 세미나는 한·중·일 3국의 국책연구소와 국제금융관련 당국자가 3국

3) 중국의 세계발전 연구소는 중국정부의 주요 think-tank로서 국무원산하인 "발전연구중심" 산하 4대 연구소중 하나(90.4월 설립)이며, 일본의 재정금융연구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금융정책상의 중요한 이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장성내의 연구기관(85.5월 설립)임.

의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한 최초의 회의로서 3국간 신뢰 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3국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보교환의 채널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협력의 기반을 조성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동 세미나에 참석한 3국 국제금융당국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차 한·중·일 금융협력 회의가 2000.2.25~26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1차 한·중·일 금융협력회의 주요 합의 사항

- 향후 한·중·일 국책연구기관간 세미나는 최소 연1회 개최함
- 다음 세미나는 2000년 봄까지 일본에서 개최함
- 3국의 국책연구소는 향후 3국의 공동 관심사항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함
- 3국은 동북아 역내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단기자본 이동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함

5. 마닐라 프레임웍, ASEAN+3, APEC 등 국제회의에의 적극 참여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에 따른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질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출범한 마닐라 프레

임웍 회의의 5차 회의가 99.8월에 싱가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투명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강화, 위기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등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매년 2차례 개최하는 동 회의는 지역내 정책협조의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8.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측은 ASEAN+3 재무차관회의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안에 원칙적 동의를 표명함에 따라 99.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첫 번째 ASEAN+3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되었고, 두 번째 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99.11월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단기자본이동 규제 및 감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등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관한 논의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내의 금융협력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기존의 아세안국 모임에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동 회의는 역내국들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역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항하여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하며, 경제 및 기술협력을 통한 아·태 공동체를 위한 토대의 마련이라는 기치하에 출범한 APEC 회의에 우리나라는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99.5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된 제6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전, 인프라 개발 등 공동추진과제를 비롯하여, 투명성 제고,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제고 등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금년 9월 APEC 정상회의시 한국은 위기극복의 경험을 역내 국가와 공유하고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나아가 역내 회원국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의 완화를 통하여 APEC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하여"라

는 주제의 "서울포럼"을 개최하기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0.3월말에 개최되는 "서울포럼"에는 APEC 회원국 정부관료, 기업인, 세계각국의 석학,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 폭넓은 인사들의 참여하여 APEC 이념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 촉진방안,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관한 논의, 역내국간 경제적 · 사회적 불균형 완화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6. 한 · 미 및 한 · 일 투자보장협정(BIT)의 추진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과 상호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은 협약체결국간에 상대방국가에서 도입된 외국인투자를 자국기업 수준으로 보호토록 하는 협정으로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양국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과 투자보장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본공여국인 미국 및 일본의 투자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둘째 OECD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의 결렬 및 WTO 투자규범 논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요 국간 투자보장협정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배경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98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원칙에 합의

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2차례에 걸친 비공식 실무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스크린쿼터의 축소여부, 기본통신사업 및 고기도매업의 외국인 투자허용여부에 대한 양 국간 견해차이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2000년 상반기 이후에는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과의 협상은 99년 3월 오부치총리 방한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여 2차례의 예비회의, 1차례의 본회의, 그리고 2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일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투자보장협정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7. IMF/IBRD 쿼타증액 노력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에의 가입자격을 얻고자 55.8월 58번째 가맹국으로 IMF에 가입하였다. 가입당시 우리나라의 쿼타는 12.5백만 SDR로 총쿼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4%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여러 차례의 증액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총쿼타와 투표권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IMF는 98.1월 제11차 일반증자를 결의하여 총쿼타의 45%를 증가시켰는데, 이중에서 아국의 쿼타증액분 834백만 SDR을 99.2월 납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분은 1,633.5백만 SDR로 총쿼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5%에서 0.77%로 증가하였고, 국별순위도 36위에서 28위로 상승하였다.

IBRD의 경우 98.6월 경제력 비중과 지분율과의 격차가 큰 한국 등 5개

국에 대해 특별증자를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국의 증자금액 777.5백달러의 6%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금 46.6백만달러를 99.6월 납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0.6%에서 1.0%로 증가하였고, 국별 순위도 32위에서 22위로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 우리의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투표권을 얻기 위하여 IMF 및 IBRD의 증자에 계속 참여할 예정이다.

7

제7장

2000년대를 대비한 지식기반경제의 구축

1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1)]

1. 지식기반경제의 의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 기업 등 한국경제의 주요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과정에 최근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이 경제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이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를 말한다.

그런데 과거에도 지식의 중요성이나 지식이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항상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식의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식을 원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되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각종 제도와 관행, 경제적 기반, 가치체계 일체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산업경제과 홍두선 사무관

1) 본장의 내용은 1999년12월 발간예정인 재정경제부 · 한국개발연구원 공저 「새천년의 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을 요약 · 정리한 것임

표 7-1 경제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

	17세기~19세기초 (봉건주의)	19세기~20세기후반 (자본주의)	20세기 후반이후 (지식기반경제)
핵심생산요소 (기반기술)	- 토지 (농업기술)	- 산업 자본 (산업기술)	- 인적 자본 (정보통신기술)
부의 일차적 원천과 중심산업	- 토지기반 경제 - 농수산업	- 기계 · 금융기반경제 - 제조업	- 금융 · 지식기반경제 - 서비스업
경쟁 내용	- 비용 경쟁	- 품질 경쟁	- 시간 경쟁
경제활동 공간	- 지방경제 중심	- 국가경제 중심	- 세계경제로 확대
경제운영 체제	- 국가 주도 체제 - 봉건 체제	- 국가와 기업 중심 - 수직적 경영 체제 (대립적 경제 관계)	- 기업 주도 - 제휴 경영 체제 (협조적 경제 관계)

2. 지식기반경제의 형성배경

산업자본주의의 성숙과정에서 기계화 · 자동화의 진전, 지역간 국가간 분업의 심화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이에따라 점점 더 많은 인력들이 단순육체노동에서 해방되어 기획, 연구개발, 관리 경영 등 두뇌자산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근로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혁명, 기술혁신의 가속화,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수요의 고급화 · 다양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혁명

80년대 이후로 계속되어 온 정보통신혁명은 정보의 가공 처리비용을 급격히 하락시켜 개인의 지식생산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제약요인을 해소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 지식의 교환에 드는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 지식을 실시간(real-time)으로 공유 확산 관리함에 따라 경제주체들간의 경제활동도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가용 정보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관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정보 지식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정보 지식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가속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다국적 기업들의 R&D투자 증대 등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현장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적 애로요인이 점차 해소되는 한편 각종 설비의 개선과 새로운 기계의 발명으로 R&D의 범주가 넓어지고 기술혁신 성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3~4년내 환경 · 디지털 · 유전자 · 바이오 등 신기술에 의해 주력상품의 스펙이 바뀌는 대변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80년대 중반이후 관세 비관세 장벽의 축소, 자본시장의 자유화, 운송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

스 교역이 급격히 확장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범세계적인 경쟁구도에서 결정됨에 따라, 불안정한 환경속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개별주체들에 의한 고급지식자원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전세계적으로 고소득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개개인의 취향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양보다는 질, 대량생산방식에 의한 범용제품보다는 서비스적인 요소와 패션의 요소가 가미된 재화들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변화에 부응하여 지식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 지식기반경제 도래의 현실적 의미와 도전

지식자산의 축적면에서 앞서 있고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들에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현재 발전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성격이 강하나, 개도국들의 경우 지식기반경제 시대 도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들이 열위에 있는 유형자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계가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식기반경제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ies)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기반, 인적자본 및 제도적 자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유형자산의 열위를 지식과 같은 고도의 무형자산으로 쉽게 극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선진국과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나, 지식의 축적 정도나 산업의 발전단계 면에서 아직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누적적 학습효과로 인하여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Box 18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는 해외 정책사례

■ OECD :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의 창출 · 확산 · 흡수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지원제도의 정비를 강조

- '지식의 창출' 면에서는 대학기초연구비 지원확대, 고등교육제도 정비,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 '지식의 확산'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확산프로그램 개발, 대학 · 연구기관 · 기업 등의 네트워크 강화, 정보화 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추진
- '지식의 소화 · 흡수' 면에서는 지식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업내 조직변화,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

■ 세계은행 : '지식격차'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지식의 공유 · 전파 · 확대재생산을 국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식은행'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을 천명 (98/99 World Development Report : Knowledge for Action)

- 지식자산이 취약한 개도국에 있어서는 해외지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국내 환경에 맞게 흡수하는 것이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고,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 · 실행을 촉구

■ 캐나다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를 비롯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역량을 재집결하는 범국가적 pilot project를 추진

- 20개 이상의 정부부처/기관 및 민간연구진이 참여한 프로젝트(94년시작)를 통해 100여개의 핵심연구과제를 발굴
- 혁신사회의 구축, 학습문화의 구축, 전국민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체의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 네델란드 : 고임금국가로서 화훼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95년 '지식의 실천(Knowledge in Action)'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분야별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

• 범국가적 차원에서 R&D 예산확충 및 통합적 연구시스템 구축, 지식의 수요·공급의 일치를 위한 연구개발정책의 장단기 목표 정립, 전문인력 교육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

■ 영국 : 경제성장의 속도나 생산성 향상면에서 미국과 유럽 경쟁국에 비해 지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기반 구축에 주력

• 98년 12월 「국가전략 백서(Our Competitive Future)」를 통해 지식주도경제의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을 천명하고 안정된 거시경제여건을 바탕으로 미시적 차원의 혁신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

■ 싱가포르 : 향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의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단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장의 두 엔진으로 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지식기반경제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지식의 생산 및 유통의 세계적 거점지로의 도약을 추구

– 특히 제조업제품에 대한 선진제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수요만이 일국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제조업과 세계적 수준의 기업 육성을 강조

• 세계적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인적·지적자본의 육성, 과학.기술 혁신, 자원운용의 최적화 및 정부지원의 조직화를 강조.

2 지식기반경제실현을 위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1. 지식기반경제실현을 우리의 여건과 잠재력

(1) 지식활용과정상의 비효율성

지식경쟁력을 나타낼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지표는 없으나 통상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생산에도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관련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식의 투입과 성과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를 도출 분석해 봄으로써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파악할 수 있다.

선진국과 대등한 지식투입 수준

지식투입의 측면에서 한국은 <표 7-2>과 같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GDP대비 R&D투자비율은 약 2.79%로 일본(2.83%) 다음으로 높으며, 교육지출비율은 6.2%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높다. 물론 투입액의 절대량에서는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지만, 경제규모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는 22.3명으로

24.3~49.3명인 선진국보다 낮지만, 대졸자 인구비중은 20%로 프랑스보다 높고 영국 및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7-2 지식투입지표 현황 비교 (97)

(%, 명)

	R&D투자 (GDP대비)	교육지출 (GDP대비)	연구원 비중 (인구 만명당)	대졸자 비중 (총인구대비)
미 국	2.55	6.8	36.7	33
일 본	2.83	4.9	49.3	-
독 일	2.40	6.0	28.3	23
프 랑 스	2.26	6.7	26.5	19
영 국	1.90	-	24.3	21
한 국	2.79	6.2	22.3	20
기 타	대 만 1.92 싱가폴 1.49 홍 콩 0.29		대 만 29.8	

주 : 교육지출은 1995년 기준임. 연구원 비중은, 미국은 1993년, 독일은 1995년, 일본, 프랑스, 영국은 1996년, 한국과 대만은 1997년 수치임.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8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9 ; OECD, 「Human Capital Investment」, 1998.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은 지식성과 수준

지식투입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지식성과는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인구 만명당 특허등록(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등록) 건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5.3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6.7~11.7건을 기록하고 있다. 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0~93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해 미국은 42%, 일본은 75%, 대만은 32%가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

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14%만이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고위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선진 5개국이 11.2~15.8%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8.2%에 그치고 있다.

표 7-3 지식성과지표 현황 비교

(건, %)

	특허등록 (만명당 건)	기술의 경제 성장기여도(%) (1970~93년)	고위기술 산업비중	기술료 수령 (GDP대비)
미 국	4.1	42	15.8	0.37
일 본	11.7	75	14.5	0.13
독 일	6.7	-	11.2	0.45
프 랑 스	8.6	-	11.9	0.15
영 국	7.7	-	13.9	0.25
한 국	5.3	14	8.2	0.03
기 타		대 만 32		

주 : 특허등록은 1996년 자국인 자국등록 기준, 고위기술산업은 OECD 분류를 따른 것으로 1995년 기준, 기술료수령은 1997년 기준임.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 활동조사보고」, 1998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관련 주요통계지표 분석결과」, 1999 ; 박익수, 「과학기술 목표관리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1998.

지식경쟁력의 취약

지식에의 투입과 성과에 관한 우리의 종합적인 수준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식투입과 성과에 관한 개별지표 각각에 대해 선진 5개국 평균을 100으로 놓고 우리 나라의 상대지수를 계산해 볼 때, 지식투입지수는 평균 90.2를 기록한 반면 지식성과지수는 평균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수의 값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식활

동을 위한 우리의 투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으나 그 성과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지식자원 활용과정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4 우리나라 지식관련지표의 상대지수

(선진 5개국 평균=100)

투입지수	R&D투자	교육지출	연구원비중	대졸자비중	평 균
	117.2	101.6	65.4	83.3	90.2
성과지수	특허출원	성장기여도	기술산업비중	기술료 수령	평 균
	68.3	23.9	57.0	11.1	32.7

(2)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잠재력

국민 다수가 지식소화 능력을 보유한 인적자원 기반

우리 국민 전체의 평균교육년수는 11년이 넘어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특히, 청장년층의 교육성취도는 세계적 수준이며, 이들의 기초학습능력 또한 세계적이다. 예를 들어, 94년 현재 우리의 초급대학이상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미국에 근접한 31% 수준이며, 그 동안 각종 국제학력평가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들 청장년계층은 세계적인 문해(literacy)능력과 수리(numeracy)능력을 갖추고 있다.

표 7-5 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1인당 GDP (1994기준, 한국=100)	100	450	323	216	313
초급대학이상 진학률 (%)	30.8	-	34.9	23.6	11.6
평균교육 년수 (1994기준,년)	11.16	-	12.7	12.8	13.9
고등교육인구비율 (1995기준,%)	3.41	1.98	3.35	1.27	2.29
학업성과 (수학)	607	605	500		

주 : 학업성과는 제3차 국제학력고사(TMSS)에서 나타난 중학교 2학년생의 수학성적을 나타냄.
자료 :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지식 프로페셔널리즘의 세계로』,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1997.

물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우친 결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의 모든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우리교육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적어도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지적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흡수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지식을 유인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은 향후 10여년내에 미주, 유럽시장을 상회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범세계적 사업재배치를 추진하는 선진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 진출노력이 그 만큼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변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인적기반과 산업여건을 구비한 우리나라는 선진지식을 유인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동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투자환경 때문에 외국인투자

가 부진하였으나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여건이 개선되고 민간과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외환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98년도에 있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역사상 최대치인 약 9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7-6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억달러, %)

	1995	1996	1997	1998
투 자 금 액	19	32	70	89
증 감 률	47.4	65.0	117.6	27.0

주 : 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2.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구패러다임 하에서 후발적 지위에 있던 우리나라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력과 기회요인을 바탕으로 현재의 취약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지식의 창출 활용 확산을 위한 기초여건들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초여건, 전략의 축, 핵심정책과제의 내용 및 이들의 관계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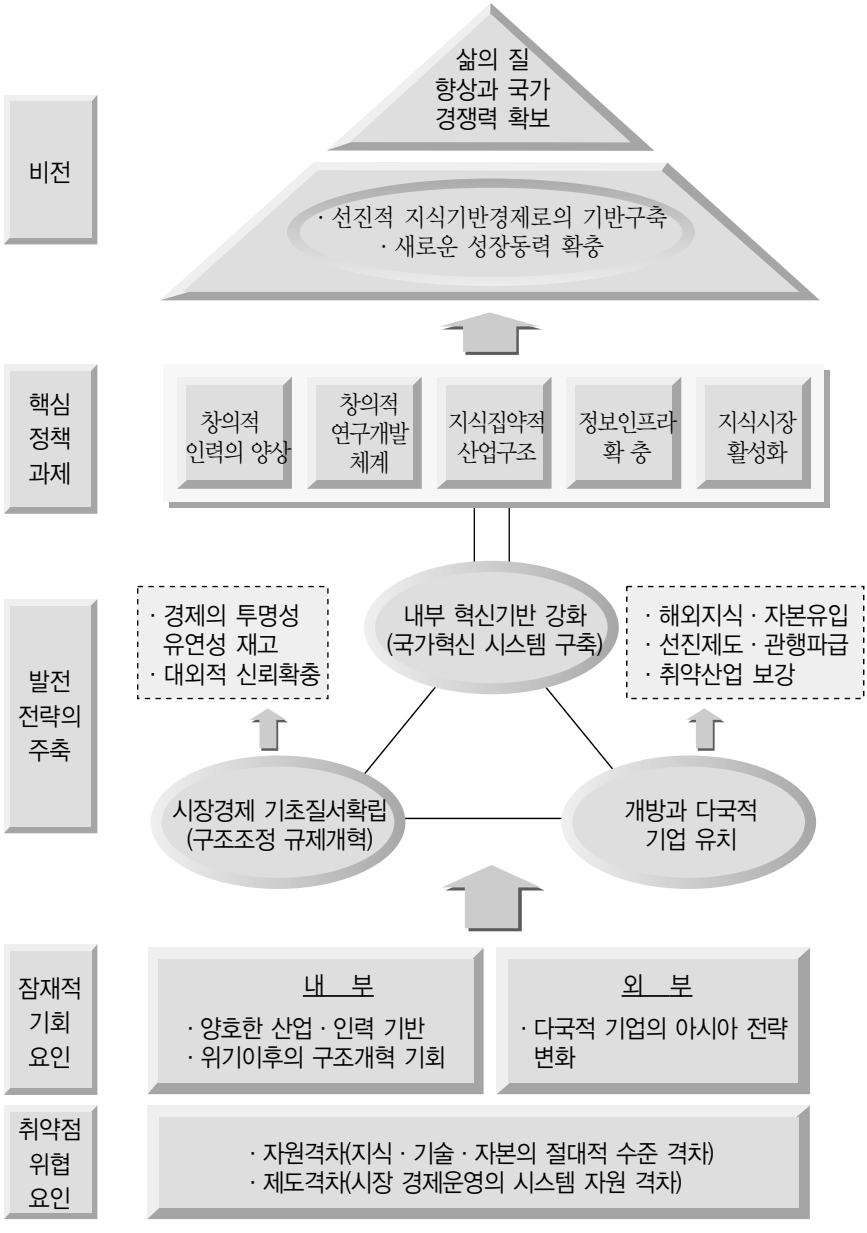
한 이행의 종합적인 구도는 「그림 6-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현 시점에서 우리의 취약점은 ① 지식, 기술, 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절대적인 양과 수준에 있어서의 열위를 의미하는 '자원격차(resources gap)', ② 이들 생산요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시장경제질서 등 각종 시스템자산의 열위를 의미하는 '제도격차(institutional gap)'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기회요인 및 잠재력은 ① 지식집약적 활동의 지역거점으로서 다국적 기업들이 동북아시아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② 이들의 활동을 국내에 유인할 수 있는 종합적 입지우위를 갖고 있으며, 선진 지식 기술을 흡수 소화할 수 있는 학습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③ 그리고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의 주요부문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과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전략의 핵심은 ①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시장경제 기초질서 확립, ② 다국적기업의 유치 등 과감한 개방전략을 통한 세계수준의 유 무형자원의 흡수, ③ 정책환경의 정비를 통한 고도 지식 혁신활동의 기반 조성의 세가지로 정리된다.

그림 7-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종합구도



(1) 지식경제의 정착을 위한 시장질서의 활성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특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시대에 형성되어 고착된 각종 제도나 관행 및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작업은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기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경험이다.

우리의 경우, 다행히 최근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 노동, 정부, 금융 등 우리사회의 주요부문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구조조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쟁정책의 확립, 규제의 최소화, 노동시장 유연화, 개방적 비즈니스환경, 금융중개기능의 선진화 등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조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다.

이들 구조조정 노력은 모두 선진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해당사자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질서는, 우리가 원하는 고급 기업활동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일 뿐 아니라, 정보화투자, 과학기술투자 등 지식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적 노력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2) 해외 지식자산의 적극 유치를 위한 국제화

지식, 기술, 자본 등 핵심생산요소에 있어서 선진국에 대한 '자원격차

(resources gap)'를 우리만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극복할 수는 없다. 지식창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선진국과 달리, 고급지식의 창출능력이 제약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해외지식의 유입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급 지식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진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마케팅, 연구개발관리, 경영혁신 등의 고급지식은 지식이 체화된 인력이나 조직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 공동의 작업체험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은 또한 시장경제질서와 같은 고도의 시스템 자산을 확충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국제수지를 안정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다국적기업 유치를 주축으로 하여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지식 기술 자산 모두를 최대한 국내에 유입 활용하는 개방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다른 개도국과는 달리 국내 기업과 경제주체들의 학습능력이 이미 최소한의 필요수준 이상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선진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가져올 경쟁적인 경제환경은 우리 경제주체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환경의 정비

개방이나 시장경제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이들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이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식 기

술의 창출능력이 절대적으로 빈약하고, 지식의 확산 활용을 위한 산업기반이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 중·고급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유치할수 있는 양호한 인력,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연구개발, 첨단제품의 생산 등으로 앞으로 보다 고급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선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원천연구는 고사하고 응용기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능력이 빈약하며, 기존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도 미비하다.

더우기, 교육 훈련기관들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생산적 지식 기능을 구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 못하여, 기업이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데만 연간 1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물론 다국적화하고 있는 국내선도기업들도 R&D, 핵심제품의 생산 등 고부가 기업활동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산업공동화(hallowing out)의 위협이 현실화 될 수 있다.

3. 지식·혁신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

(1)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개발체제의 구축

지식기반경제는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계발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부닥치는 갖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력을 요

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획일적 통제하에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정규교육 및 기간훈련체제를 경쟁과 소비자선택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신축적이고 다각적인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등교육의 경우 기회의 균등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평준화 정책기조를 탈피하여, 개인의 교육선택권과 공급자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보다 경쟁적인 학교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낙후도가 심한 대학교육의 경우, 대학간 생산적 경쟁과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교육내용의 질과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중등교육 행 재정상의 개혁과 외국대학에 대한 문호개방 등 대학시장에 대한 자율화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중심의 교육제도를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제도로 재편하여 전 생애에 걸친 순환교육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훈련제도의 경우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도 민간기관과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 정립을 통하여 그 기능 및 운영을 제고해 나가고, 성과연계적 훈련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확산의 가장 효과적인 메커니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동」이므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직장이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은 제거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간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2) 과학기술인프라의 정비와 창의적 연구개발체제의 정착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는 그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제도적 정책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제한된 투자재원으로 국내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R&D 투자체계를 효율화하여야 한다. 연구주제 선정과 재원배분에 대한 범국가적 관점에서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부담이나 재정부담이 큰 기초 원천연구보다는 산업수요와 연계된 연구과제가 중심이 되는 체계를 지향하여야 한다.

공공연구개발사업이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사업의 기획, 선정단계부터 산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산업계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사업화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이전 기능을 확대하고, 산업현장과 연구기관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국내 기술개발인력 저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 학 연 전 부문에 있는 전문인력 모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민간 경제활동의 틀이 되는 법령, 제도에 대한 통합된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의 비용과 과실이 어떻게 참여주체들에게 분배될 것인가에 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국내의 지식창출 역량을 보완하고 전세계적으로 재편중인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지식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대외협력 강화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계기업이 국내공공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3) 정보화인프라 구축

정보통신매체가 지식확산과 획득의 핵심적 매체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범국가적 정보확산체제와 정보유통망을 갖추는 일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초미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의 정보화인프라 수준은 우리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나,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뒤쳐져 있다.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등을 추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첨단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내 경제주체간의 경제활동 기반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하드웨어 측면의 정보인프라의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공재적 성격의 D/B를 구축하고 기존 전산망을 통합하는 등, 기존의 국내 지식자원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필요한 정보화 준비작업들이다.

정보화인프라 면에서 우리의 최대 문제점은 부문간 기능간 정보의 단절현상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지식관리체제의 종합적 접근방식하에 공공부문과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자원을 통합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간 전산망과 전자행정업무 일체를 표준화하여 정부내 정보 지식 흐름의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식집약적 산업구조의 정착

단순조립생산 등 저부가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던 우리 산업은 제품기획, 산업디자인, 마케팅 등 고부가영역으로 경쟁우위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인프라

를 구축하고 외주 및 기업간 분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향후 국내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최대의 관건은 국내외 선진기업들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일이다. 혁신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중핵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제휴 또는 기술이전을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제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혁신지향적인 연관기업 다수를 특정지역에 집적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집적지(cluster)형 발전모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추가 정보 교류와 협력이 용이한 지역단위로 이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즉 산업의 지역집적화를 유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혁신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의 혁신능력 배양과 국내 산업전반의 지식집약화를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간재, 지식, 정보 등 생산요소의 유연한 이동과 효율적 결합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외국 유수기업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 유통 물류, 통신, 사업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식기반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지만,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유발되므로 제조업의 지식집약화와 경쟁력 강화는 한 나라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비교우위가 생산기술면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5) 지식시장 활성화

정보 · 지식 · 기술 등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산에 관한 투자 및 거래가 증대하고 새로운 지식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아직 시장 초창기여서 거래의 불확실성과 지식특유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대한 국내의 준비상태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로 관련 법 ·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기구의 신설, 전문인력 양성이나 인력풀 형성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지식자산평가제도, 인적자산회계제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제도와 지식시장의 운행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규범, 표준,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의 수요와 국제논의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국내표준과 규범을 제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시장형성과 지식자산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지식경제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정부 역할의 재정립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경제운영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은 새삼 부언할 필요가 없다. 경제활동에 대한 민간의 자율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난 80년대 이래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민간의 상대적인 역할이 증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불안정 요인이 증폭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막중할 수 있다.

최근 우리가 겪은 혹독한 외환외기는 새로운 세계경제환경과 위협요인에 대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의 시스템 위기에 대한 예방자, 그리고 사후적 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

우리의 기초시장질서나 지식혁신인프라 등 모든 면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낙후된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고안 정착해야 하는 시스템 고안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우리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의 원천으로 지식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지식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잠재적인 경쟁상대의 활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의 경우 서로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식과 같은 공공적인 재화를 자율적으로 공유 활용하는 능력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에 잠재되어 있는 협력관계를 중개, 촉진하고 이를 가로막는 경제주체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선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결속의 촉진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가 개인간 지식격차와 기능격차에 따른 사회의 불평등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은 매우 크며, 이러한 기회의 상실이 그들의 자녀세대까지 연계되면, 지식획득과 정보활용 능력을 선천적으로 상실하는 계층마저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인 사회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해 나감에 있어 종래와 같은 사후적 결과(ex-post outcome)에 대한 소득보전에 초점을 둔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동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지식 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평생교육 훈련제도의 효율화 등 소득원천에의 접근과 지적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사전적(ex-ante) 의미에서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정부패러다임의 변화

그렇다면 이상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OECD는 지식정부(knowledge government)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자기 혁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정부로의 변환은 공무원 수의 감축이나 외형적인 조직축소와 같은 미봉적인 양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조직을 과거 계급중심의 경직된 조직형태에서 부서간

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임무수행에 중점을 두는 슬림화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단순 반복 업무는 정보망을 통한 자동화나 민간에의 이양을 통해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정책집행력 등을 경제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문에 집중토록 하여 행정의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별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정책입안과 집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표 7-7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정부의 기능	- 시장실패부문과 국부의 창출 분배에 직접 참여 -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제에 직접 개입	- 역동적인 시장경쟁체제 지원 역할 - 다양한 사회적 전략적 목표 육성
정책 형성의 독립성	- 사회구성원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대부분의 정부는 거시정책 수행에 상당한 독자성 유지	-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면서, 유동자산과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책의 독립성도 제한됨.
기업과의 관계	- 정부는 기업의 반경쟁적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통제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충관계에 있음.	- 부분적으로는 구 패러다임 유효 (예를 들어 반독점규제법 등) - 그러나 점차적으로 국내기업과 협력하여 경쟁촉진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자
정부조직	- 주로 계급위주 - 부서간 협조 미흡 - 조직의 거시적 정책결정에 개입 (예를 들어 기술, 환경, 무역, 교통, 통신 등의 부문에 관해) - 정책이행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 경향	- 슬림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서 임무수행에 우선권을 두는 조직 -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가 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을 지향

자료: OEC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Knowledge-Based Economy』, 1997.

개방형 인사제도 등 인사 및 조직운용관행의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하다.

OECD에서 제시한 지식기반경제 도래에 따른 정부 역할의 재정립에 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7-7〉과 같다.

(2) 혁신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정비 방향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로 첨단지식산업의 매력이나 교육, 기술개발, 정보화 등 지식 혁신활동의 핵심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재정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압력은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고 지식인프라는 물론 기초적인 SOC에서도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개도국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앞에서 우리의 지식현황을 분석하면서 투입에 비해 성과가 낮으며 지식생산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정부재정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사업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없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혁신능력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정책에 대해 아직 보편적인 최선의 정책안(best policy practice)이 개발된 바는 없으나,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자신의 시행착오 경험을 고려할 때 정부정책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향후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직접지원방식 대신에 기능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기술과 시장경쟁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나감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유망기

업, 유망산업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며, WTO의 출범으로 이들 유망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수단도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범세계적인 산업과 기술의 융합화 추세속에 동일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에 있는 기업들간의 연계와 상호의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식 혁신활동에 필수적이면서도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높은 교육, 과학기술, 정보화인프라 등 공공재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산업 기업이 기초단위가 되는 직접적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인력개발, 연구개발 등 기반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적 원천적 지원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즉, 기업내 지원보다는 기업간 지원, 산업내 지원보다는 산업간 지원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지식기반형 지원체계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자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

인력개발, R&D, 정보화투자, 벤처 등 대부분의 정책프로그램들이 복수의 정부부처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각 부처로 분산된 사업당 투자규모가 작아 사업성과가 낮을 뿐 아니라, 사업의 최종적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구명하기가 어려우며,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책환경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경제 각 부분의 연계가 높아지고 급격한 변화가 상시화되는 환경에서는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유관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추진

지식기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듯이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시에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기획 선정단계부터 민간 실수요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장하여 실질적인 수요자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부문의 한정된 인력만으로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적절한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국내 평가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되, 필요하다면 해외의 전문인력 및 기관, 그리고 국내에 진출한 선진 다국적기업의 능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정부 중심의 분권적 체제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교육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하에 각종 정책적 실험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권적 지원체제로 점차 이행해야 한다.

경제구조가 단순하여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였던 과거 개발년대 동안에는 중앙집중적 정책체계가 국내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성숙되고 복잡화된 현 시점에서 다양하고 유동적인 현장의 수요를 중앙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충족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우기 세계화와 지역화의 물결 속에 중앙정부의 자율성과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추세이며, 혁신에 관한 의사결정과 책임의 기본주체도 정

보의 신속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이 용이한 지역경제단위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분산화하여 지역경제가 의사결정의 책임주체가 되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역단위의 분산된 실험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3 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의 역할과 책임

1. 개인의 역할 : 지식근로자

지식기반경제에서 각 개인은 종전과 같이 전수 받은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처한 여건을 분석하고 필요한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는 창의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필요한 지식을 외부로부터 조달받아 가공하고, 지식창출 능력을 키워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국내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해지면, 조직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혁신이 가속화되어 기존 지식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지적 역량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의 유입을 위해 평생학습을 생활해 나가고, 모든 종류의 지식을 스스로 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지식을 외부에서 조달해 나가야 한다.

2. 기업의 역할 : 지식경영

산업자본시대에 기업의 역할이 자본을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의 결성에 있었다면,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은 조직원들이 갖는 지식을 지식경영 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범위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시장변화에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과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원적 구조로 변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령과 통제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기획부문의 종사자들은 생산현장 정보를 투입하여 제품개발과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현장에서도 경영전략을 이해하고 제품의 개량을 제안하는 등 기획기능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업구성원들간에 지식이 신속히 결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소규모 단위로 의사결정권한을 이양하고 단위조직간에 정보교환이 유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형의 조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지식은 물론 외부에서 창출되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생산활동에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

3. 정부의 역할 : 지식정부

정부는 창조적 지식정부로서 기업과 국민의 지원자 협력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식정부란 국가전체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산업자본시대에는 강력한 자원배분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시장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리더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격차 확대에 따른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층간 타협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식의 효율적인 창출 확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주체에서 스스로 생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거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자신의 조직과 기능도 재편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대비하여 정부가 필요한 정책방향과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정해 가는 학습자로서의 모습이 필요하다.

표 7-8 지식기반경제에 걸맞는 각 경제주체별 역할과 책임

	산업사회		지식기반경제		주체별 책임과 역할
기 업	모방기술 활용 공급자 위주 경영 소품종 대량생산	⇨	자체 기술개발 고객위주 경영 다품종 소량생산	⇨	지식경영: 지식자산의 효율적 관리 · 개발
개 인	평생 직장 암기력 중시 대립적 노사관계	⇨	평생 고용 창의성 중시 협력적 노사관계	⇨	지식근로자 : 지속적 자기 계발
정 부	수직적 중앙집중 시장에 직접개입	⇨	수평적 분권주의 간접적 여건조성	⇨	지식정부: 지식의 효율적 창출 · 유통 ·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정부조직 내에서도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의 부문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다단계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형태의 네트워크 조직구조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8

제8장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1 추진경위*

98년 초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당면한 외환위기의 극복에 진력하는 한편, 한국경제에 내재한 부실을 털어 내고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하여 금융 · 기업 · 노동 · 공공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때 39억불에 불과했던 가용외환보유고가 700억불 수준에 달하는 등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고, 구조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98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99년에는 9%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그간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재벌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새 천년을 앞두고 미래의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과 비전, 그리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에 대한 욕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이후의 21세기의 한국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집필자 : 종합정책과 김철주 서기관

2 작업의 개요

1. 의 의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의 의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천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약 10년 후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IMF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 작업이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향후 3년 동안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위주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작업과정에서 각계 각층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미래에 대한 준비는 국민들의 합의아래 추진되는 것이 최선이며 중장기비전 작업과정이 바로 그러한 합의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그간 각 부문별로는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다. 99년 1월에는 5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고, 21세기 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지식에서 모색하는 지식경제발전기본계획, 향후 20년간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Cyber Korea 21, Ocean Korea 21 등이 수립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부문

적으로는 타당한 논리적 기반하에 수립되었으나, 계획들간의 상호일관성과 유기적 연계, 그리고 보다 상위의 틀에서의 타당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비전은 바로 기 수립된 부문별 계획들간의 상호일관성과 연계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향후 수립되는 계획의 준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의 장래를 모색하는 장기 비전과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는 98년 11월에 미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8가지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 정보화,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대만, 말레이시아 등도 나름대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서는 99년 7월 경제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경제신생을 위한 정책방침을 발표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일본의 대응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도 중장기비전의 마련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이 21세기, 나아가 새 천년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과 관련하여 98년 7월에 만들어 발표했던 「DJnomics-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와의 관련성을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DJnomics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2년의 구조조정기를 대상으로 각 부문별로 포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은 구조조정 이후를 대상으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은 그 대상이 되는 시계를 넓히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DJnomics」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추진체계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은 부문별로 21개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실무작업반은 주무부처의 1급(또는 국장급) 공무원과 주관연구 기관의 부원장이 공동반장이 되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5명내외가 반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실무작업반은 각 부문별로 대내외 여건 전망, 비전제시 및 정책과제 등이 포함되는 실무안 작성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의 작성지침, 각 작업반에서 성안한 부문별 시안간의 일관성 점검 및 최종보고서 작성 등 총괄작업을 위해 총괄작업반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총괄작업반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각 부문별 작업반장이 반원으로 참여하여 중장기비전 작업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각 작업반과 총괄작업반간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작업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KDI에는 총괄작업반을 보좌할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중장기비전 작업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장기비전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심의회는 언론계, 학계 등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 작성지침, 최종 보고서 등 중장기비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결국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안)은 각 부문별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중장기비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3. 작업일정

99년 8월초 경제차관간담회에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계획을 상정하여 확정하고, 8월 중순에는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으로 부문별 작업반 구성을 완료하였다. 각 작업반에서는 8월말까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월 초순에는 각 작업반의 작업준거가 될 작성지침을 성안하여 각 작업반에 시달하였다.

99년 11월말 현재 각 작업반별로 실무안 작성을 마무리짓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중에 있다. 공청회는 국민들의 호응 유도를 위하여 9개 분야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가 종료된 후에는 각 작업반별로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을 마무리짓고 이를 총괄작업반에 제출하게 된다. 총괄작업반에서는 각 작업반의 보고서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총괄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01년 1월중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3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1)]

1. 21세기 여건변화 전망 및 시사점

21세기 대외여건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을 든다면 바로 세계화일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무역장벽의 철폐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상호의존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에의 접근기회가 확대되는 한편으로, 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로와 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체제의 도태가 불가피해 질 것이고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라 대외부문에서의 충격이 국내에 급속히 전파되는 등 개별국가의 경제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보·기술·금융이 실시간 이동하는 사이버(Cyber) 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사이버 경제시대에서는 네트워크화가 진전되어 경제행위가 분권화되고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는 장점도 있으나,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등에 의해 맹목적 추종행위(Herd Behavior)의 피해자가 될 우려도 크다. 또한, 21세기에는 생산요소의 양적투입 증대보다는 창조적인 지식의 축적과 정보의 활용정도에 의해 성장이 결정되는 지식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유통·축적을 신속히 이루어 낼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집적

1) 본장의 내용은 KDI에서 작성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총괄부문」 (중간 보고서)을 요약한 것임.

의 경제 효과가 크고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지식사회의 속성에 따라 경제주체간 및 선후진국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극화의 위험도 존재한다.

국내적으로는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평균수명은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 진전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비중 확대는 사회보장지출 수요 등 사회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자유에 바탕을 둔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직업, 신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원적 사회로 변모하고, 문화·예술,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이다. 다만, 개인 중심의 가치관은 각 계층의 갈등과 대립, 이해관계의 상충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평생직장보다는 평생고용의 개념이 정착되고, 재택근로 등의 근로방식이 확산되는 등 일하는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능력이 부족한 비숙련 근로자의 구조적 실업과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간 경제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관광 등을 통한 상호왕래도 증대되면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2.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이러한 21세기의 여건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주는 의미는 세계속의 선진한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면성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우리경제가 한 차원 높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치기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21세기에는 개개인의 창의적 능력이 핵심적인 경쟁요소이므로 경제사회의 모든 제도가 개개인이 지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국경 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는 국내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도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주체들간에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경제사회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 통합속에서 안정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가치기준하에서 21세기 한국경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비전은 잠정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지식이 성장의 원천이 되는 지식경제사회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첫째의 한국경제비전은 열린 민주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열린 민주시장경제란 대내적으로 책임과 보상이 분명해지고, 모든 측면에서 개방화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규칙속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되는 것을 말하며, 대외적으로 환경, 빈곤 등 지구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의 한국경제비전은 창의적인 지식이 원활히 창출·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지식기반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소외계층이 없이 국민 모두가 지식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확립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사회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일자리 및 취업능력향상 기회의 지속적 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이 달성되며, 쾌적하고 안

락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여가선용기회의 확충 및 문화ㅎ예술의 발전으로 문화생활수준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한국 경제사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에 창의성을 배양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어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인구증가율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라 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 기간에는 5.1%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소투입에 의한 상대적 성장기여도는 감소될 것이며, 향후 성장은 기술혁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5%대의 실질성장세에 힘입어 경상 GDP 규모는 2010년에 11,000억달러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DP는 2000년에 10,000달러 수준으로 회복한 후 2010년에는 21,000달러 수준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경제의 총교역규모(상품 · 서비스 교역)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세 및 무역자유화 추세 확대 등에 따라 99년 3,00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출규모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2010년에는 2,960억달러로 증대되고, 총수입규모도 2010년에는 2,9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2001~2010년 기간 중 평균 2%대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

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유통구조개선 등 우리경제의 구조변화가 이러한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고용면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로 90년대의 1.6%에서 2000년대에는 1.4%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90년대의 연평균 61.2%를 유지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로 2001~2005년 기간 중 61.7%, 2006~2010년에는 6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향후 5%대의 실질성장세가 유지됨에 따라 2001~2005년기간 중 연평균4.5%, 2006~2010년 기간중 4.0%대로 안정될 전망이다.

국내산업은 기술변화의 가속화 및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구조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제조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저부가가치 공정의 해외이전 및 주요 수출상품의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90년의 29.5%에서 2000년 28.4%, 2010년에는 28.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유통, 의료·보건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90년의 60.9%에서 2000년 67.0%, 2010년에는 69.3%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세입은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따른 과세기반의 확대와 5%대의 실질성장률에 힘입어 2000·2010년 기간 중 연평균 9%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며, 조세부담률은 99년 18.6%에서 2010년 21%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는 적극적인 세출억제 및 세입증대에 따라 98년 GDP대비 4%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Box 19 뉴 밀레니엄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중장기비전

■ 미국

- 지난해 7월초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그려보며(Honor the past Imagine the future)」라는 슬로건하에 백악관내 New Millennium Council의 주도로 준비를 착실히 진행중
- 교육혁신 · 경제성장 · 문화창달 · 과학기술발전 등을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비한 중점과제로 설정

■ 일본

- 오부치 총리 의지에 의해 99. 7월 「경제사회가 나가야할 자세와 경제신생의 정책방침」이라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비전을 발표
- 전후~80년대까지 추진해온 '최적공업화 사회'에서 탈피, 2010년에는 '새롭고 다양한 지혜의 사회'를 지향
-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여 종래 효율 · 평등 · 안전의 가치관에 자유를 추가하고, 정부주도가 아닌 독립된 개인을 기반으로 한 자유경제를 철저히 함.

■ EU

- 97. 7월에 향후 10년간(1997~2006) EU통합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Agenda 2000」을 발표하여
- 회원국간 정책의 조화, 고용확대방안 마련, 시장 및 기업의 구조조정,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개혁등을 추진중임.

■ 싱가폴

- 98. 11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싱가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8가지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중

-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성정의 두 엔진으로 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적 지식기반 경제체제의 구축을 통해 싱가폴을 세계적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
- 이러한 국가비전하에서 부문별로 Industry 21(산업정책), IT2000(정보화마스터플랜), Singapore One(정보화 실행계획) 등의 계획을 추진중

■ 기타 OECD ·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지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지식기반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중

- OECD : The Knowledge-Based Economy
- World Bank : Knowledge for Development
- 영국 : Our Competitve future :Building the Knowledge Economy
- 캐나다 : Knowledge-Based Economy / Society Pilot Project

부 록

1. 국내 및 해외 경제일지

2. 주요 경제 통계

국내 및 해외 경제일지

국내편

1998

1월

1.3 한국은행, 총 6조 5천억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인수

1.8 은행감독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은행채무와 재산의 평가기준 제정·시행

1.9 재정경제원, IMF와 제4차 자금인출과 관련한 주요 합의내용 발표

1.9 재정경제원, 수출기업이 해외 외국은행에게 수출환어음을 직접 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

1.9 재정경제원, ADB차관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 확대

1.17 건설교통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착수

1.19 재정경제원, 업무정지 종합금융회사의 일반법인예금 지급 결정

1.23 공정거래위원회, 물가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1.24 통상산업부, LNG도매가 13.6%인상, LPG 소비자가격 7.2%인상

1.26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총한도의 50%는 종전대로 나머지 50%는월중 신규취급실적 기준으로 변경

1.26 한국은행, 여신금지제도 폐지

1.26 은행감독원,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시 계열회사의 과다한 중복보증 요구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제

1.27 재정경제원, 신종적립신탁의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자유화

1.29 재정경제원,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 완화(2월중 시행)

1.29 정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 연장에 대한 기본 합의 타결
1.30 재정경제원,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계약 이전의 결정(1월 31일 시행)
1.30 정부, 제일 · 서울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
1.30 건설교통부, 수도권 민간보유택지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2월

2.2 재정경제원, 특별소비세법 및 관세법 개정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2.3 재정경제원,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2.6 재정경제원, 12.4조원의 98년 추경예산(안) 편성
2.7 통상산업부, EU시장 진출 촉진 대책 발표
2.9 재정경제원, 단기금융시장 개방 계획 발표
2.9 재정경제원, CP, 회사채, 은행대출 활성화 유도 등 기업자금지원 활성화 대책 발표
2.10 중소기업청, 「전문인력취업알선센터」12개에서 51개로 대폭 확대
2.13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과 주거래 계열간「재무구조 개선약정」체결 · 시행
2.17 재정경제원, 신한, 삼삼등 10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처분
2.19 재정경제원, IBRD 구조조정차관 도입 관련 금융부문 제도개선
2.26 재정경제원,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인가취소, 재실사 등 최종 경영평가결과 조치
2.26 중소기업청, 「산 · 학 · 연 공동기술 개발지역컨소시엄사업」98년도 지원계획 발표
2.28 건설교통부, 「98년 주택건설 종합 계획」확정 · 발표

국내편

3월

3.5 중소기업청,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자금 150억원 지원

3.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협동화 사업 확대 추진

3.16 재정경제부, 한솔종합금융회사 인가취소

3.16 건설교통부, 98년도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1800억원 지원 계획 발표

3.20 재정경제부, 제일종합금융회사 업무정지(98.3.23~4.30)명령

3.23 재정경제부, 업무정지, 인가취소된 15개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지급 실시

3.27 IBRD, 한국에 대한 1차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 승인

3.30 은행감독원, 98년도 주거래 계열 선정
(97말 현재 여신잔액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66개)

3.30 재정경제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의 대한 147백만달러의 수출신용 공여 방안에 합의

3.31 재정경제부, 나라·대한종금 업무정지 연장, 대구종금 인가취소 등 명령

3.31 재정경제부, 증권회사 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 마련

3.31 재정경제부, 외국은행 국내 현지법인(자회사) 설립기준 마련

3.31 산업자원부, 석유산업 조기개방 추진

4월

4.1 정부, 대통령직속으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설치

4.1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

4.8 재정경제부, 적대적 M&A허용등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종합 대책 발표

4.8 재정경제부,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40억달러 발행 성공

4.8 재정경제부,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지급보증 실시

4.8 건설교통부, 산업단지내 주택건설 규제 완화

4.8 산업자원부, 공장설립 선승인제도 도입

4.11 산업자원부, 99년도 산업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4.14 한국은행, 재할인 및 대출 담보 대상증권 결정(4.15 시행)

4.14 재정경제부, 삼양종금 4.15일자로 인가 취소

4.21 한국은행, 종전 90일로 되어 있던 총액한도대출 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제한을 폐지(5.1 시행)

4.22 한국은행, 무역금융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자율화(5.1 시행)

4.24 재정경제부, 미국의 대한 수출신용보증(GMS-102)규모 증액(11억달러→15억달러)에 합의

4.24 정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30%로 인상하여 5.2부터 적용

4.28 한국은행, 3억달러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 지원(5.1 시행)

4.30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 대출금 상환유예(5.1 시행)

5월

5.6 재정경제부, 42개 외국인투자제한업종중 20개 업종을 추가 개방

5.7 정부, IMF와 제6차분 자금인출과 관련한 주요 합의 내용 발표
5.7 한국은행, 은행현금보유 인허율을 종전 25%에서 35%로 상향조정(5.23 시행)
5.15 신용관리기금, 새한종금 업무정지(98.5.15~6.30) 명령
5.15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 발표
5.19 재정경제부, 제일종금 인가취소
5.20 재정경제부,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발표
5.25 재정경제부, 일본수출입은행의 대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지원(약 10억달러) 합의
5.25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폭 확대
5.25 증권감독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5.30 건설교통부, 건설업계 지원대책 수립 · 추진

6월

6.1 재정경제부, 고려 · 동서증권증권업허가 취소
6.1 산업자원부, 수출입신고 지원센터설치(한국무역협회 12개소, 상공회의소 14개소)
6.5 재정경제부,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확정(7.1일시행)
6.11 재정경제부,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한 무역신용공여(20억달러)에 합의
6.12 신용관리기금, 한길종금 업무정지명령(6.12~7.31)
6.13 증권감독원, 상장 및 등록법인으로 제한하던 해외증권 발행자격을 폐지

6.17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관련자금 지원확대
6.18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배정을 취급실적의 순증가액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6.18 금융감독위원회, 55개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발표
6.18 건설교통부,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자유화(6.26 일시행)
6.22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자금(외채상환용)지원금리 평균 4%p인하
6.24 재정경제부,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발표
6.24 노동부, 실업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12월말까지 연장실시
6.26 한국은행, 중소기업대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7월 시행)
6.26 건설교통부,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대책마련
6.29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제한 폐지(7.1일 시행)
6.29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구조조정 관련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등 5개 퇴출은행 발표
6.30 산업자원부, 칼라TV, 모터사이클 등 40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
6.30 재정경제원, 외국환관리규정 개정(7.1일 시행)
6.30 은행감독원,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환업무 건전성 감독 강화

7월

7.1 재정경제부, 국내일반은행의 경영 건전성 규제 강화
7.3 증권감독원,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7.13 산업자원부, 자연녹지대내 판매·물류시설 설립규제 완화

7.21 재정경제부, 신축주택의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7.22 재정경제부, 외환매입의 완화
7.24 한국은행,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제한 대폭 완화(8.1일 시행)
7.24 재정경제부, 원자재 수입금융 지원확대
7.24 은행감독원,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제 완화
7.24 신용관리기금, 새한 및 한길종금(주)의 자산과 부채를 한아름종금으로 이전토록 결정
7.25 증권감독원, 장은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연장
7.25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CP 및 사모사채 보유한도제 도입
7.27 증권감독원, 한국산업증권(주)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7.29 정부, IMF와 제 7차분 자금인출과 관련한 주요합의내용 발표

8월

8.3 재정경제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기금」설립
8.4 노동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
8.5 기획예산위원회,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발표
8.6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발표
8.10 한국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원자재수입자금 20억달러 지원
8.10 산업자원부,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계획발표
8.12 금융감독위원회, 20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조치
8.14 금융감독위원회, 한남투자신탁 영업정지

8.18 건설교통부, 중형 임대주택 건설 자금 지원대상 확대
8.19 은행감독원,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변경(99.1.1 시행)
8.20 재정경제부, 수출입금융 활성화 방안발표
8.20 재정경제부,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8.22 재정경제부,신용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8.22 증권감독원, SK증권등 4개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8.25 금융감독위원회, 한남투신의 신탁계약을 국민투신으로 인계명령
8.27 미국상무부, 한국산 TV에 대한 반덤핑 규제 철회
8.28 재정경제부, 기업개선작업(Work-out) 및 기업교환(Big Deal)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 마련
8.31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금리인하(5%→3%) 및 증액(2조원)

9월

9.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종합대책 마련
9.10 은행감독원, 평화 · 강원 · 충북은행의 자본금 감소 인가
9.11 산업자원부, 유휴설비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마련
9.23 재정경제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
9.25 재정경제부, 세계은행과 제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 도입관련 정책 프로그램 협상을 타결
9.25 한국은행, 수출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9.25 증권감독원, 쌍용투자증권 등 4개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조치
9.29 재정경제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6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9.30 중소기업청, 3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연합채권 발행

10월

10.1 한국은행, 융자대상 확대 등 무역금융지원 확대
10.3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 발표
10.8 재정경제부, 일본수출입은행(JEXIM)과 대한30억달러 규모 차관 지원 합의
10.9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경영공시 제도 개선
10.19 은행감독원, 포괄근보증의 취급금지 등금융기관의 보증관행 개선
10.21 한국은행, 중소기업 자금지원 유인 강화 및 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
10.21 금융감독위원회, 채권시가평가제도 단계별 시행
10.27 정부, 저소득실업자 동절기 보호대책 마련
10.28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한도제 실시

11월

11.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비실명장기채권 발행
11.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확정
11.13 9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 400억원 지원계획 발표
11.17 정부, IMF와 제8차 자금인출을 위한 4/4분기주요 정책 협의 내용 발표
11.1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4,000명의 수출전문인력 집중투입 지원계획 발표

11.25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은행별 중소기업자금 지원 실적을 감안한 종합평점제로 변경

11.25 노동부, 99년도 산업인력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발표

11.28 금융감독위원회, 신탁계정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도 개선 및 신탁업무 관련 규제완화

11.28 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요구

12월

12.5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에 산업지원서비스업 추가

12.14 한국은행, 유휴설비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12.17 중소기업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순수운전자금 성격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설하여 지원

12.22 건설교통부,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12.24 금융감독위원회,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채권에 대해서만 신탁재산 편입을 허용하는 등 신용평가제도 개선

12.30 은행감독원, 외화유동성비율 및 단기외화사산 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관리의 제도화(99.1.1 시행)

12.31 산업자원부, 32개 품목의 일본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품목 일부 해제

12.31 금융감독위원회, 미국의 투자기관인 Newbridge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컨소시엄과제일은행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국내편

1999

1월

1.1 산업자원부, 중고품 수입제한제도 폐지

1.13 한국은행, 금융망 운영제도 개선 및 여수신·증권 업무의 대금융기관 업무편의 제고

1.13 한국은행,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1.16 금융감독원, 부산·경남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1.18 WTO, 한국의 소주와 위스키등 증류주의 주세율 체계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 발표

1.19 Fitch IBCA, 한국의 장기 외화채권등급을 투자적격단계인 BBB-로 상향조정

1.19 노동부, 1999년 종합실업대책 발표

1.20 한국은행,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1.21 한국은행, 한국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인하 (45%→35%)

1.22 금융감독위원회, 한빛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 체결

1.25 S&P, 한국의 장기 외화채권등급을 투자적격단계인 BBB-로 상향조정

1.28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7,000억원 출자 의결(납입일자 : 99년 2월중)

1.29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2월

2.1 한국은행, 1999년 통화신용정책운영계획 수립 · 공표
2.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금리를 종전 10%에서 7,5%로 인하
2.2 금융감독위원회, 충북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조치 명령 부과
2.11 금융감독원, 금융부조리 신고센타 설치
2.12 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의 자본금감소 인가
2.13 Moody's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Bal→Baa3)으로 상향조정
2.19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의 충북은행에 대한 출자 요청 및 충북은행의 자본금 감소명령
2.22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2.27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계획 발표

3월

3.1 재정경제부,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정 제정(3.1일 시행)
3.9 재정경제부, 99년도 수출입금융 확대방안 발표
3.10 노동부, 최저임금제도를 99년 9월부터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
3.12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검사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3.12 금융감독원,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관련 채권거래 제도개선

3.12 무역위원회, 일본산 방적사용 복합호제에 대한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개시

3.17 수출입은행, 브라질 국립경제사회 개발은행(BNDES)과 수출신용 상호보증제도(L/C Confirmation Facility)협정 체결

3.17 한국은행, 「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 만기 회수방침 발표

3.17 금융감독원, 투신사의 유동성을 상시점검하는 등 투신사 단기상품 대책 마련

3.18 재정경제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의 제정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출범

3.22 정부,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 강화 방안 발표

3.22 재정경제부, 외채상환지원자금 벌칙금리 인하 (Libor+6%→Libor+4%)

3.23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긴급결제부족 지원자금 금리 인하 발표

3.27 금융감독원,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발표

3.29 재정경제부, 미국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와 GSM-102(General Sales Manager) 10억달러 규모의 자금 활용합의

4월

4.1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시행

4.1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감독규정 제정 및 시행

4.1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가동

4.1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외환시장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주업무로 하는 국제금융센터 출범

4.3 중소기업청, 99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발표

4.9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종합금융(주)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조치9

4.19 한국은행 및 관세청, 관세환급금의 당일지급을 위한 환급절차 개선

4.22 한국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수출환어음매입 지원용 예탁금리 인하 (Libor+4%→Libor+2%)

4.22 금융감독원, 「선물거래업자 감독규정」 제정(4.22일 시행)

4.23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4.27 한국은행,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제도 전면 개편(5.1일시행)

4.29 정부, 99년 5월 6일부터 휘발유 교통세를 리터당 40원씩 인하한다고 발표

5월

5.3 성업공사, 금융기관 부실외화자산 인수용 외화매입 개시 결정

5.10 조흥-강원은행간 합병계약 체결

5.11 정부, 세계은행 제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불중 2차분 10억불 인출

5.13 기획예산위원회,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취진상황 및 계획 발표

5.21 정부, 99년도 2·4분기 지원예정 IMF 자금2.5억불 도입 금융감독위원회,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제도 개정(5.24 시행)

5.24 재정경제부,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 계획 발표

6월

6.1 금융감독원, 청약하도 폐지 및 공모주식의 배정기준 자율화 산업자원부, 대러시아 단기수출보험 이수재개(99.6.1 시행)

6.9 재정경제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6.1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6.16 산업자원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99.9.1 시행)

6.16 건설건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 계획 발표(99. 6. 16 시행)

6.18 정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6.24 Fitch IBCA,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단계 상향조정(Outlook은 부여하지 않음)

6.25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종합금융(주)의 영업인가 취소 정부, 제일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조치

6.29 산업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99.7.1 시행)

6.30 산업자원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폐지

7월

7.2 재정경제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 시행방안 발표

7.22 정부, 국채전문딜러 지정

7.23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13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영업 정지기간 연장, 금융기관설립 등 인허가지침 제정 · 시행

7.29 정부, 국민생명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교환

8월

8.16 대우 · 주요채권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체결

8.2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규정 대폭 정비(시행일자 9.1)

8.25 재계 · 정부 · 금융기관, 대기업구조개혁을 위한 3대 개혁과제 및 7개 실천사항 합의

8.26 한국은행,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공개시장 조작 참가 허용

8.31 정부, 정부와 영구계 은행인 HSBC와의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위한 협상 종료

9월

9.8 한국 · 인도네시아, 구상무역협정 체결

9.23 한국은행, RP매입 대상채권의 담보인정 비율 상향조정

9.17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규정」개정(시행일자 99.12.31)

9.18 정부,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대책」발표

9.21 정부, 부산 등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발표

9.29 정부, 선물거래소에 국채선물 도입

해외편

1998

1월

1.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금융회사합병계획 발표

1.7 러시아 중앙은행, 97년중 316개 은행의 영업면허를 취소하였다고 발표

1.8 영국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7.2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1.8 인도네시아, 루피화 미 1달러당 10,000루피화 돌파

1.9 프랑스 정부, 비상실업기금(10억프랑) 조성계획 발표

1.12 홍콩 페레그린 증권사 청산 발표

1.15 한국은행,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요청 및 자본금 감소명령

1.16 중국 인민은행,은행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부실채권 처리대책 강화 및 4개 국유상업은행의 경영자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안 발표

1.21 인도네시아, 루피화 수하르토 출마선언에 의해 미 달러당 12,000 루피화로 폭락

1.27 인도네시아 정부, 부실은행정리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전담할 은행 재건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발표

2월

2.6 태국중앙은행, 3개 상업은행 국유화

2.10 프랑스 하원,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안 통과

2.16 일본 참의원, 금융시스템 안정화 관련 2개 법안 의결

2.18 영국 정부, 금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E. George 영란은행 총재(임기 5년)를 재임용

2.20 일본 자민당, 긴급경제대책 발표

2.24 태국 정부, 경제대책 발표

2.26 일본 예금보험기구,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기준 결정

3월

3.5 대만정부,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대하여 자국기업이 동남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책 발표

3.10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7선

3.12 일본 예금보험기구, 후 순위대출 또는 우선주 및 후 순위 채 매입을 통해 21개 은행에 대하여 총 1조8,156억엔 규모이 공적자금 지원액 결정

3.16 영국 피치-IBCA사, 인도네시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

- 장기 외환신용등급 : B+⟶B-(2단계 하향)
- 장기 루피아화등급 : BBB⟶BB+(1단계 하향)

3.17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중앙은행증권(Bank Indonesia Certificates) 발행금리를 평균 12.7%포인트 인상

3.22 EU 재무장관이사회, EMU 참가국들의 금년중 재정긴축과 정부 채무 감축을 위한 방안 발표

3.24 중국 인민은행,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9.9%→7.43%로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도 13%→8%로 인하

3.31 일본 정부, 진입규제, 설비규제 및 가격규제를 완화하고 수급조정규제는 폐지하는 규제완화 3개년 계획 결정

3.31 태국 중앙은행,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금융 강화대책 발표

3.31 말레이시아, 금융회사 합병에 관한 세부계획 발표

4월

4.2 독일 하원, 유로화 도입에 따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회계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

4.3 ASEM,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

4.4 인도네시아 정부, 14개 부실은행중 7개은행은 영업정지, 나머지 7개 은행은 은행 재건청(IBRA)이 관리하도록 결정

4.6 일본 정부, 인도네시아에 10억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결정

4.6 인도네시아 정부, 파산은행 자산처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2개 국영회사 설립을 결정

4.8 일본 정부, 일반 회계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0.4% 증가한 77조 6,692 억엔 규모의 98 회계연도 예산 확정

4.9 영국 영란은행, 4월 정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7.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4.15 EU 집행위원회, EMU 출범후 유로화 및 참가국통화가 병용되는 기간(99년 1월~2002년6월)중 민간부문에서의 유로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4.22 이탈리아 중앙은행, 독일 프랑스 등 EMU 핵심국가와의 금리수렴을 위하여 재할인율 (5.5%→5.0%) 및 Lombard rate(7.0%→6.5%)를 각각 0.5%포인트씩 인하

4.22 독일 및 프랑스 의회, EMU 참가동의법안 통과

4.23 인도네시아, 환율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증권(Bank Indonesia Certificates)발행금리를 평균4.1%포인트 인상

4.24 일본 정부, 총 사업비 16조6,500억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5월

5.2 EU 정상회담, 유럽통화통합(EMU) 참가국 11개국을 확정하고 Duisenberg 유럽통화기구(EMI) 총재를 유럽중앙은행(ECB)초대 총재로 선임

5.7 미국 영란은행, 정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7.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5.18 태국 중앙은행, 현행 7개 부실금융회사회사명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하되 중앙은행이 이들 금융회사의 채권자 및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증

5.19 러시아 중앙은행, 루불화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30%→50%)

5.21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퇴진 하비비 대통령 임명

5.25 대만 중앙은행, 파생금융상품 거래규제 강화

5.27 러시아 중앙은행, 루블화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50%→150%)

5.29 일본 정부,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시한을 2005년도로 연기하고 적자국채 신규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재정구조개혁법을 개정

5.29 인도네시아 은행재건청, 예금인 출사태인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BCA(Bank Central Asia)에 8조 루피아(약7.3억달러)를 지원하고 경영권을 인수

6월

6.1 EU, 유럽중앙은행(ECB) 창설

6.4 인도네시아 정부, 외국 채권은행단과 인도네시아의 민간외채(약 800억달러)에 대한 채무조정에 합의

6.4 중국인민은행, 지난 1996년말부터 중단 되었던 공개시장조작을 재개한다고 발표

6.5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인하(150%→60%)

6.5 일본,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22개 관련법안) 을 확정

6.9 S&P's사, 러시아 장기외화채권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하향 조정

6.11 영국 정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의 공공투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경제 및 재정 전략보고서 발표

6.15 미국 투자은행 Goldman Sachs & Co., 기업공개 결정

6.17 일본, 4조 9천억엔 규모의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6.18 영국 정부, 최저임금제도 시행계획 발표

6.22 일본 정부, 금융감독청 발족

6.22 홍콩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임금 동결 등 총 41억미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대책 발표

6.23 러시아 정부, 세수확대, 정부지출의 축소, 투자자의 권익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위기 대처방안 발표

6.24 유럽중앙은행, EMU 참가국 은행감독 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초국가적 은행감독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

6.26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재인상(60%→80%)

6.30 칠레 정부, 하반기중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단기성 해외자본 유입 억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 발표

6.30 EU 소매업자, 소비자단체와 유로화 전환기간(1999년 1월~2002년 6월)중 상품가격의 이중가격표시제 실시에 합의

7월

7.1 멕시코와 니카라과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2 일본 정부·자민당,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금융기관 채권 처리 대책(금융재생 토탈 플랜) 수립

7.3 러시아 하원, 세수 증대를 위해 과세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

7.7 런던 및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단일 증권거래소로 발전시키

기 위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

7.8 룩셈부르크, 통화청을 개편하여 중앙은행을 설립

7.8 멕시코, 금년들어 세번째로 세출예산 삭감

7.9 미국 상원, 국세청(IRS)을 종전의 법집행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개혁법안을 승인

7.9 브라질 재무부, 금융거래세(IOF) 인하

7.9 아시아 개발은행(ADB), 인도네시아에 대해 3억달러의 긴급융자 결정

7.13 러시아, IMF와 세계은행 및 일본 등으로부터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226억달러(신규자금 171억달러, 기 약정액 5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합의

7.15 국제통화기금(IMF), 99년 3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대해 60억달러의 긴급융자 결정

7.23 말레이시아 정부, 경제회복계획 발표

7.24 S&P's와 Moody's, 말레이시아의 장기 외화차입 신용등급 하향조정

7.24 국제통화기금(IMF), 상무이사회의 신규자금지원(총 112억달러) 승인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1차로 48억달러를 지원

7.24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80% → 60%)

7.29 홍콩 금융관리국(HKMA),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 비율 한도(총대출액의 40% 이하) 폐지

7.30 영국 정부,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법제화하기 위한 신 Financial Services Act 초안 공표

7.30 인도네시아, 정부 세계은행이 주최한 인도네시아지원국

(Consultative Group for Indonesia) 회의에서 99년 3월까지 79억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기로 합의

7.31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국가 등 개도국에 대한 신규대출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

8월

8.1 대만 중앙은행, 지급준비율을 0.2~0.5%포인트 인하 조정

8.3 태국 정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8.4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외채조정기구 설립

8.7 중국 정부, 소재 외국은행에 대한 위안화 영업 추가 허용 결정

8.13 S&P's사와 Moody's사, 러시아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 하향 조정

8.14 태국 정부 · 중앙은행, 금융개혁 Package 발표

8.17 러시아 정부, 일부 외채에 대한 자불유예(moratorium) 선언, 루블화의 환율 변동폭 대폭 확대

8.17 S&P's사와 Fitch IBCA사, 러시아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 하향 조정

8.20 대만 정부, 99~2000회계연도중 1,937억대만달러 규모의 사회적 생산기반 예산증액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발표

8.21 Moody's사, 러시아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 B2에서 B3로 1단계 하향 조정

8.21 인도네시아 정부, 11개 부실은행 정리계획발표

8.25 태국 정부, IMF와 제5차 의향서 재정 · 발표

8.25 러시아 정부, 국채만기 구조조정 방안 발표

8.26 Fitch IBCA사, 러시아 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2단계 하향 조정

8.28 중국 정부, 경기부양을 위해 1,000억위안(120억미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 결정

8.30 대만 정부, 국내 증권사 등에 대한 국제투기자본과의 거래중단 지시

8.31 중국인민은행, 기업의 외화대출 조기상환 금지

8.31 러시아, 모스크바 은행간 외환거래소에서의 외환거래 4일째 중단

9월

9.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자본거래 제한조치 실시

9.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고정환율제 도입

9.4 IMF, 우크라이나에 22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승인

9.14 Moody's 및 S&P's사, 말레이시아 장기외화차입 신용등급 하향조정

9.21 IMF, 97년중 아시아지역으로서의 자금유입액은 96년(1,104억달러)에 비해 87.4% 감소한 139억달러였다고 발표

9.25 IMF, 인도네시아에 10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승인

9.25 미 14개 금융기관, Long-Term Credit Management 헷지펀드에 대해 35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9.26 EU,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을 개최하여 ERMⅡ 참가국 확정

9.29 미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페더럴펀드 자산금리를 종전의 5.50%에서5.25%로 0.25%포인트 인하

10월

10.1 독일, IMF의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긴급자금지원에 참가하기로 결정

10.6 중국 인민은행, 부채 상환불능 위기에 처한 광동국제투자신탁회사 폐쇄

10.6 유럽중앙은행(ECB), 은행감독위원회 발족 스페인 중앙은행, RP 금리 0.5%포인트(4.25%→3.75%) 인하

10.8 영란은행, 기준금리 0.25% 포인트(7.50%→7.25%) 인하 덴마크 중앙은행, RP 금리 1.25%포인트(5.00%→4.75%) 인하

10.9 포르투갈 중앙은행, RP 금리 0.5%포인트(4.50%→4.00%) 인하 아일랜드 중앙은행, RP 금리 1.25%포인트(6.19%→4.94%) 인하

10.14 그리스 중앙은행, 재할인금리 0.25%포인트(13.00%→12.75%) 인하

10.16 홍콩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의 prime lending rate를 종전의 10.0%에서 9.75%로 0.25%포인트 인하

10.16 캐나다, 중앙은행 대출금리(bank rate)를 0.25%포인트(5.75%→5.50%)인하

10.21 중국 정부, 기업활동 자유화 추진방안 발표

10.21 EU 집행위원회, 98~2000년중 EU 15개국 경제전망 발표

10.22 덴마크 중앙은행, RP 금리 0.1%포인트(4.75%→4.65%) 인하

10.22 S&P's사, 인도의 장기외화차입등급을 BB+에서 BB로, 장기자국통화차입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

10.23 일본 정부, 일본장기신용은행의 국유화 결정
10.27 이탈리아 중앙은행, 재할인금리 1.0%포인트(5.00%→4.00%) 인하
10.27 중국 인민은행, 금융기관의 미달러화 여수신금리를 각각 0.5% 포인트 인하
10.28 브라질, 재정수지개선계획 발표
10.29 중국 인민은행, 1980년대초부터 외국기업의 외환매매를 위하여 운영해오던 전국의 35개 외환조절센터 폐쇄 결정

11월

11.2 칠레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종전의 12%에서 10% 인하
11.3 유럽중앙은행, 월례 정책이사회를 개최하여 스페인·포르투갈·스웨덴 중앙은행의 RP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
11.5 영란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7.25%→6.75%) 인하 덴마크 중앙은행, RP 금리 0.25%포인트(4.65%→4.40%) 인하
11.6 아일랜드 중앙은행, RP 금리 0.25%포인트(4.94%→3.69%) 인하
11.6 대만, 금융안정 종합대책 발표
11.6 태국, 일본 등으로부터 23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합의
11.11 대만 중앙은행, 재할인율, 담보대출 금리 각각 0.125% 인하
11.13 IMF, 브라질에 대한 415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지원을 결정하고 브라질 정부는 재정긴축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향서 제출
11.16 일본, 23.9조엔(사업비 17.9조엔, 항구 감세 6조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긴급경제대책 발표

11.17 Moody's사, 일본의 외화 및 엔화표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l으로 하향 조정

11.17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5.00%에서4.75%로, 재할인금리를4.7%%에서4.50%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

11.18 캐나다, 중앙은행 대출금리(bank rate)를 종전의 5.50%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하

11.24 IADB(미주개발은행), 베내수엘라에 1억달러 지원 결정

11.24 스웨덴 중앙은행 RP 금리 0.25%포인트(3.85%→3.60%) 인하

11.25 파키스탄, IMF 등으로부터 55억달러 구제금융 차입계획 발표

11.26 덴마크 중앙은행, RP 금리 0.15%포인트(4.40%→4.25%) 인하

11.27 유럽 8개국 증권거래소, 증시통합위원회(Exchange Alliance Committee) 창설을 통해 공동으로 증권시장 통합 추진 발표

12월

12.1 일본, 증권거래법 투자신탁법 은행법 등 24개 금융시스템 개혁법 시행

12.1 유럽중앙은행, 단일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광의의 통화지표를 M3로 결정하고 99년도 M3 목표증가율을 4.5%로 확정

12.2 IMF 상임이사회, 브라질에 대한 180억달러규모의 구제금융 계획 승인

12.3 독일 프랑스 등 10개 EMU 참가국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3.0%로 공동인하, 이탈리아는 재할인율을 4.0%에서 3.5%로 0.5%포인트 인하

12.13 일본, 일본채권신용은행을 일본장기신요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공적관리(일시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

12.16 미주개발은행(IADB), 아르헨티나에 25억달러 긴급구조조정자금 지원 결정, 콜롬비아에 3억5천만달러 지원 결정

12.22 세계은행(World Bank), 멕시코에 4억4천만달러 지원 결정

12.29 브라질 정부, 세계은행(World Bank)과 10억달러 차관 협정 체결

12.29 중국 정부, 증권법 제정을 의결하고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1999

1월

1.4 런던·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공동거래장치를 통해 양 증권거래소의 주요 주식에 대한 공동 거래를 개시

1.6 브라질 Minas Gerais주, 재원부족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대한 180억real의 채무에 대해 90일간의 지불유예를 선언

1.6 중국 재정부, 14개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폐지

1.7 영란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6.25%→6.0%)인하, 덴마크 중앙은행, RP금리 0.2%포인트(3.95%→3.75%)

1.10 중국, 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 파산 공식 선언

1.13 브라질 중앙은행, real화의 환율변동 범위를 종전의 미달러당 1.12~1.22real에서 1.20~1.32real로 변경

1.13 그리스 중앙은행, 정책금리 0.25%포인트(12.25%→12.0%) 인하

1.14 S&P사, 브라질의 장기외화차입금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 조정

1.14 IMF, 파키스탄에 156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승인

1.16 아시아·유럽회의(ASEM), 제2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 지역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1.18 브라질 중앙은행, 환율제도를 종전의 crawling peg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함을 공식 발표

1.19 브라질 상원, 금융거래세법안 의결

1.20 브라질 하원, 공무원 연금개혁법안 의결

1.22 유럽중앙은행, 종전3.25% 및 2.75%이었던 초단기 여신금리 및 수신금리를 각각 4.5% 및 2.0%로 변경

2월

2.4 브라질 정부, IMF와 경제개혁 프로그램 수정 합의
2.4 영란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6.0%→5.5%)인하
2.4 덴마크 중앙은행, RP 금리 0.25%포인트(3.75%→3.5%) 인하
2.4 말레이시아 정부, 자본규제 완화조치 발표
2.5 일본, 인도네시아에 24억달러 규모의 자금지원 결정
2.17 스웨덴 중앙은행, RP 금리 0.25%포인트(3.4%→3.15%) 인하
2.20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Tietmeyer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제안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설치안을 공식 채택
2.23 영국, 유로화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소요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National Change over Plan」을 발표

3월

3.9 에콰도르, 국가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선언
3.17 미국, 철강법안(steel bill)하원 통과
3.18 브라질, 금융거래세(CPMF)법안 의회 통과
3.23 에콰도르, 국내 제2위 규모인 Banco del Progreso은행 폐쇄 결정
3.24 베트남,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환경개선 대책 발표

3.25 대만 행정원, 금년말에 만료되는 산업고도화촉진 조례를 2009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3.25 브라질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익일물 금리인 Selic금리를 종전의 45%에서 42%로 인하

3.28 IMF 및 ADB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16억 7천만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 결정

3.31 IMF, 브라질에 대한 49억달러 추가 지원 승인

3.31 캐나다, 중앙은행 대출금리(bank rate)0.25%포인트(5.25%→5.0%) 인하

3.31 스웨덴 중앙은행, RP 금리 0.25%포인트(3.15%→2.9%) 인하

4월

4.1 일본 대장성, 조폐국과 인쇄국을 2001년 1월부터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키로 결정

4.1 베트남, Haiphong시 소재 약 30개 국유기업에 대한 경매처분방침 발표

4.1 영국, 최저임금제도 시행

4.8 영란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5.5%→5.25%)인하

4.9 덴마크 중앙은행 RP 금리 0.5%포인트(3.4%→2.9%) 인하

4.13 일본 금융감독청, 금융기관 점포설치 규제완화

4.14 일본 정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사채 발행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 허용

4.16 스페인, 물가안정대책 발표

4.16 일본 정부,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은행을 단일화하는

국제협력은행법 개정

4.21 IMF, 루마니아에 대해 대기성차관 5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

4.28 IMF, 러시아에 대해 4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

4.29 브라질 중앙은행, Selic금리를 34%에서 32%로 인하

4.30 캄보디아, ASEAN에 정식 가입

4.30 IMF, 에콰도르에 대하여 9억달러 지원결정

5월

5.4 유럽 8개국 증권거래소, 범유럽 단일증권시장 창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5.7 영국 정부, 보유중인 금중 절반 이상인 415톤 정도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

5.11 독일 정부, Welteke Hessen주 중앙은행 총재를 8월말 퇴임예정인 Tietmeyer 독일연방은행 총재 후임으로 임명

5.12 B. Cliton 미 대통령, R. Rubin 재무장관후임으로 L. Summers 재무부 부장관을 지명

5.14 인도네시아,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은행 출자규제를 폐지하도록 은행법 개정(종전 최대 49%→최대 95%)

5.16 미야자와 일본 대 상, 말레이시아 랑카위(langkawi)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 경제회생대책 제언

5.16 필리핀 증권거래소, 채권유통시장 설립 결정

5.16 L. Summers 미 재무장관 내정자, 미 달러화 강세정책을 지지한다고 발언

5.17 싱가포르, 금융개방화 조치 발표

5.18 미 연준, 긴축정책으로서의 선회 발표

6월

6.4 EU 정상회담, 「안정 및 성장 협정」준수 결의

6.10 일본 금융재생위, 공적자금에 의한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6.10 R.Rubin 미 재무장관, 달러화 강세정책 유지 재확인

6.10 영란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6.11 일본, 긴급고용 · 산업경쟁력강화 대책 발표

6.14 베트남 정부, 외국인 주식투자가의 주식소유 상한율 20%로 결정

6.17 A. Greenspan 미 연준의장, 금리인상 시사

6.18 싱가포르 정부, 외국 변호사의 활동에 관련한 규제 완화

6.21 몽골 정부, 은행·보험·통신 등의 7개 주요 국유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6.22 미 상무부, 수입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협의 조사 착수

6.22 미국 정부, 중국과 WTO 가입 관련 대화를 재개하여 1999년말

6.28 콜롬비아 중앙은행, 페소화 평가절하 승인

6.28 프랑스 정부, 9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법정 최저 수준인 1.24%로 결정

6.30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0.25% 포인트 인상

해외편

7월

7.5 중국 정부, 금년 가을 이후 국유기업 직원의 기본급을 종전 대비 30~50% 인상할 방침

7.6 L. Summers 미 재무장관, 유럽 및 일본에 경기부양 촉구

7.7 IMF, 멕시코에 41억달러 융자 승인

7.17 대만 정부, 공적자금의 주식투자비율 상한을 50%로 인상

7.20 미 연준, 2000년 문제에 대비한 특별자금지원제도 마련

7.22 S&P사,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7.22 A. Greenspan 미 연준의장, 의회에 통화정책방향 보고

7.26 중국 인민은행 · 재정부, 상업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 할 수 있도록 허용

7.28 프랑스 정부, 근로시간 단축 법안 확정

8월

8.5 미 재무부, 재정흑자 지속에 따라 국채중도환매를 검토중이라고 발표

8.9 IMF, 보유금 매각에 대한 입장 발표

8.11 영란은행, 「인플레이션보고서」발표

8.12 EU, 미국의 철강산업 강화방안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8.13 IMF, 일본 경제에 관한 심사보고서 발표

8.17 베트남 정부,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정부패를 최저임금을 1.5배 인상하기로 하는 한편「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8.18 브라질,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발표

8.20 태국 정부,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비하기 위해 통화의 유출규제 강화

8.24 미 연준, 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

8.25 중국 정부, 가계의 주택구입이 저조함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은행 설립 계획 발표

8.25 독일 정부, 재정지출 및 연금제도 개혁안 확정

8.30 중국, 국가세입 증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8.30 중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600억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

9월

9.1 캄보디아 정부, IMF로부터 8천만달러 규모의 확대구조조정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발표

9.8 IMF, 「국제자본시장보고서」(International Capital Market Report) 발표

9.14 일본 금융감독청, 신탁대출금에 대한 리스크자산 산입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탁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변경

9.17 홍콩 금융관리국, 외국은행의 홍콩내 지점 증설 허용

9.21 말레이시아 정부,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해외 송금과세율을 10%로 인하

9.22 베트남 정부, 주 5일 근무제 및 주 40시간 근무제를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9.23 L.Summers 미 재무장관, 최근의 달러화 약세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9.26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 14개국 중앙은행, 보유금 매각 관련 방침 발표

9.27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최근의 엔화 강세가 일본 및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 동감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 발표

9.28 IMF/IBRD 연차총회 개최(9.28~9.30)

주요 경제통계

1.用縍泵楳蜧定

	GDP(蝻翌)		GNI(蝻翌)		1인당GNI(蝻翌)		蝻濟髽長膿[1](%)		GDP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천원	달러	GDP	GNI	지수	상승률
1993	2,774,965	3,457	2,771,075	3,452	6,270	7,811	5.5	5.7	86.7	7.0
1994	3,234,071	4,024	3,228,115	4,017	7,231	8,998	8.3	8.4	93.3	7.6
1995	3,773,498	4,894	3,763,164	4,881	8,345	10,823	8.9	8.1	100.0	7.2
1996	4,184,790	5,200	4,171,084	5,183	9,158	11,380	6.8	4.8	103.9	3.9
1997	4,532,764	4,766	4,508,533	4,740	9,803	10,307	5.0	2.1	107.2	3.2
1998p	4,495,088	3,213	4,431,270	3,168	9,544	6,823	△5.8	△7.9	112.9	5.3
1996. Ⅱ	1,021,692		1,016,866				6.8	6.0	103.3	4.4
Ⅲ	1,048,704		1,047,003				6.5	4.0	104.3	2.9
Ⅳ	1,169,066		1,164,438				6.7	3.5	104.5	2.8
상반기	1,967,020		1,959,643				6.9	5.9	103.3	5.2
하반기	2,217,770		2,211,441				6.6	3.7	104.4	2.8
1997. Ⅰ	1,010,608		1,007,013				4.9	1.2	105.2	1.8
Ⅱ	1,103,367		1,095,703				6.2	2.7	105.0	1.6
Ⅲ	1,132,269		1,126,956				5.5	3.1	106.8	2.4
Ⅳ	128,652		1,278,861				3.6	1.6	111.0	6.2
상반기	2,113,975		2,102,716				5.6	2.0	105.1	1.7
하반기	2,418,789		2,405,817				4.5	2.3	109.0	4.4
1998. Ⅰp	1,090,452		1,079,104				△3.6	△6.8	117.7	11.9
Ⅱp	1,092,060		1,075,167				△7.2	△9.7	112.0	6.7
Ⅲp	1,093,468		1,079,572				△7.1	△8.6	111.0	3.9
Ⅳp	1,219,107		1,197,426				△5.3	△6.6	111.1	0.1
상반기p	2,182,512		2,154,271				△5.5	△8.3	114.8	9.2
하반기p	2,312,575		2,276,998				△6.2	△7.5	111.1	1.9
1999. Ⅰp	1,067,751		1,056,430				4.5	4.7	110.2	△6.4
Ⅱp	1,154,481		1,135,453				9.8	7.7	107.8	△3.8
Ⅲp							12.3	–	–	–
상반기p	2,222,232		2,191,883				7.3	6.3	109.0	△5.1

주 : 1) 1995년 불변가격 기준

(1995년 불변가격 기준, %)

	蝙濟活牝鱉 髦長妓					支出項袈鱉 增炷妓					甫凜總投資贖	總貯蓄贖
	獚 緁	狯咧緁	製造緁	서비스緁	猎 徠 簸 緁	最終 佘玾	縍 佘玾	鶖定資 煲形髦	郵髦投資	掣郵投資		
1993	6.1	5.3	5.4	7.2	△4.5	5.4	5.6	6.3	0.3	9.7	35.4	36.2
1994	8.7	10.8	10.8	10.3	0.2	7.1	8.2	10.7	23.9	3.7	36.5	35.5
1995	9.9	11.1	11.3	9.6	6.6	8.2	9.6	11.9	18.1	8.0	37.3	35.5
1996	7.0	6.7	6.8	7.8	3.3	7.2	7.1	7.3	9.1	6.1	38.1	33.8
1997	5.8	6.5	6.6	5.4	4.6	3.2	3.5	△2.2	△8.7	2.3	34.4	33.4
1998p	△5.3	△7.4	△7.2	△5.4	△6.3	△8.2	△9.6	△21.1	△38.5	△10.2	20.9	33.2
1996.Ⅱ	7.2	6.8	7.1	7.8	1.2	7.6	7.7	5.5	6.6	4.7	-	-
Ⅲ	6.6	5.8	5.8	8.3	1.8	6.2	6.0	9.3	12.9	7.0	-	-
Ⅳ	6.7	6.7	6.8	8.5	4.7	7.7	7.1	8.2	14.3	4.7	-	-
상반기	7.3	7.1	7.3	7.2	2.4	7.6	7.7	5.7	4.6	6.6	-	-
하반기	6.7	6.3	6.3	8.4	3.6	6.9	6.5	8.8	13.6	5.8	-	-
1997.Ⅰ	5.6	5.6	5.6	6.6	5.3	4.1	4.5	0.8	4.2	△1.9	33.8	28.4
Ⅱ	6.9	7.7	7.8	7.2	4.0	4.1	4.4	2.2	1.3	2.9	35.5	33.2
Ⅲ	6.4	7.7	7.9	5.7	3.8	4.9	5.3	△3.6	△12.6	2.7	32.9	31.9
Ⅳ	4.6	4.8	4.9	2.2	5.2	△0.1	△0.1	△7.2	△25.9	4.5	35.1	38.9
상반기	6.3	6.7	6.8	6.9	4.3	4.1	4.5	1.6	2.6	0.7	34.7	30.9
하반기	5.5	6.2	6.4	3.9	4.7	2.3	2.6	△5.5	△19.3	3.7	34.1	35.6
1998.Ⅰp	△2.7	△4.8	△4.6	△4.5	6.2	△8.4	△9.9	△20.6	△38.3	△5.9	17.0	33.8
Ⅱp	△6.8	△10.5	△10.4	△7.4	△3.5	△9.7	△11.2	△23.7	△46.1	△7.8	20.6	33.7
Ⅲp	△6.6	△9.3	△9.1	△6.2	△7.0	△8.9	△10.4	△22.2	△39.3	△12.0	19.5	30.5
Ⅳp	△5.0	△4.9	△4.7	△3.4	△9.0	△5.8	△6.9	△17.9	△27.4	△13.7	26.2	34.5
상반기p	△4.8	△7.8	△7.6	△6.0	△0.7	△9.0	△10.6	△22.3	△42.4	△6.9	18.8	33.7
하반기p	△5.7	△7.1	△6.8	△4.8	△8.3	△7.4	△8.7	△20.0	△33.8	△12.9	23.0	32.6
1999.Ⅰp	4.6	10.1	10.3	6.5	△7.4	5.0	6.2	△4.3	12.9	△13.7	21.3	28.2
Ⅱp	10.5	20.3	20.4	10.4	5.3	7.3	9.1	4.9	37.2	△8.5	26.8	32.8
Ⅲp	12.6	26.7	26.8	12.4	4.2	8.4	10.3	6.9	48.0	△10.0	-	-
상반기	7.6	15.2	15.4	8.5	1.5	6.2	7.7	0.6	24.8	△10.8	24.2	30.6

2.崑呢蛹濟 가. 啤獭과 出荷

(嵁指薜 1995=100, 專前踫瘧藤.埲驧)

	獺綀啤獺	增炵膿(%)	出 荷	增炵姣(%)	在 叻[1]	增炵姣(%)	製造綀平鐳 增炵姣(%)
1983	30.1	15.8	28.9	17.0	27.0	1.1	-
1984	34.7	15.3	32.6	12.8	31.4	16.3	-
1985	36.2	4.3	34.1	4.6	33.1	5.4	74.8
1986	43.8	21.0	41.2	20.8	36.9	11.5	77.9
1987	52.2	19.2	49.1	19.2	40.2	8.9	80.4
1988	59.1	13.2	55.6	13.2	50.3	25.1	79.2
1989	61.0	3.2	58.0	4.3	59.4	18.1	76.3
1990	66.4	8.9	64.6	11.4	65.6	10.4	78.3
1991	72.8	9.6	70.8	9.6	78.2	19.2	79.5
1992	77.1	5.9	75.1	6.1	84.0	7.4	78.3
1993	80.5	4.4	79.4	5.7	86.3	2.7	77.9
1994	89.3	10.9	88.8	11.8	92.1	6.7	81.3
1995	100.0	12.0	100.0	12.6	103.7	12.6	81.0
1996	108.7	8.7	108.9	8.9	121.1	16.8	80.8
1997	114.5	5.3	116.3	6.8	127.4	5.2	79.0
1998	106.1	△7.3	108.1	△7.1	105.4	△17.3	68.1
1997. Ⅱ	117.2	6.2	119.4	8.8	131.5	10.4	80.1
Ⅲ	113.5	7.2	116.4	10.2	125.8	3.9	80.1
Ⅳ	119.3	3.6	121.7	5.2	127.4	5.2	77.4
1998. Ⅰ	101.4	△6.2	103.0	△4.5	125.4	△4.6	68.8
Ⅱ	102.9	△12.2	105.3	△11.8	121.0	△8.0	67.0
Ⅲ	102.7	△9.5	105.2	△9.6	112.1	△10.9	66.7
Ⅳ	117.4	△1.6	119.0	△2.2	105.4	△17.3	69.9
1999. Ⅰ	114.1	12.5	117.5	14.1	102.2	△18.5	71.3
Ⅱ	126.3	22.7	131.0	24.4	100.8	△16.7	76.8
Ⅲ	130.2	26.8	134.3	27.7	101.1	△9.8	79.5
1998. 2	101.0	0.4	101.3	0.0	128.3	△0.1	69.6
3	105.6	△9.1	108.3	△8.0	125.4	△4.6	67.1
4	105.5	△11.4	108.3	△10.3	123.5	△7.1	67.5
5	103.4	△11.1	105.1	△11.8	121.4	△8.3	67.3
6	99.9	△14.0	102.4	△13.3	121.0	△8.0	66.3
7	98.2	△14.0	100.8	△13.0	119.0	△8.7	64.6
8	97.5	△12.8	100.0	△14.3	116.6	△6.9	65.1
9	112.5	△1.7	114.9	△1.5	112.1	△10.9	70.5
10	111.2	△9.3	113.9	△9.1	108.4	△14.7	69.1
11	118.5	0.3	119.4	△0.4	107.5	△16.8	69.6
12	122.6	4.8	123.7	3.2	105.4	△17.3	71.1
1999. 1	111.9	14.8	112.8	13.6	106.5	△16.9	69.6
2	104.9	3.9	108.1	6.7	105.1	△18.1	69.7
3	125.4	18.8	131.5	21.4	102.2	△18.5	74.7
4	123.5	17.1	129.4	19.5	99.6	△19.4	74.1
5	125.8	21.7	129.7	23.4	99.5	△18.0	76.5
6	129.6	29.7	133.8	30.7	100.8	△16.7	79.7
7	130.8	33.3	134.1	33.0	100.9	△15.2	80.8
8	126.5	29.7	130.9	30.9	100.5	△31.8	78.6
9p	133.1	18.3	137.8	19.9	100.1	△9.8	79.0
10p	145.2	30.6	151.7	33.2	102.2	△5.7	78.6

주 : 1) 在庫는 期末基準

나. 投 資

(專前踫疵藤.埠驪, 增悠效, %)

	掣 築 許 炯 猼 積			甪 凜 掣 郵 碴 注			甪凜劉豔碴注	郵鬣投資推蝯
		住瓏騷	咧練騷		鄴 鏈	縍 (製造練)	(製造練)[1]	
1983	33.2	30.4	47.9	20.4	10.4	38.9(90.2)	19.1(74.0)	-
1984	△0.3	△5.3	39.1	9.6	10.4	9.5(25.9)	20.1(19.2)	-
1985	△3.4	0.3	△12.8	3.9	11.4	△10.2(3.6)	6.7(0.2)	-
1986	13.9	9.3	43.3	11.0	△12.0	55.1(96.9)	25.4(38.8)	-
1987	10.2	△3.9	34.8	21.2	25.8	16.3(19.5)	37.4(31.8)	-
1988	26.7	39.4	17.7	0.6	△22.0	28.3(24.3)	25.3(28.0)	-
1989	45.8	57.5	△4.0	84.5	98.7	76.7(24.1)	24.8(9.6)	-
1990	31.4	49.3	17.0	55.8	44.9	65.1(34.8)	38.8(31.8)	-
1991	△9.7	△16.7	6.7	13.9	25.9	5.6(△18.4)	2.2(3.7)	-
1992	△10.0	△7.4	△12.4	6.4	13.5	0.6(0.5)	△5.2(△3.4)	-
1993	24.5	26.7	15.2	19.3	△5.3	42.3(2.4)	12.1(27.5)	-
1994	△1.3	△8.5	16.8	18.5	17.0	19.4(59.6)	26.9(24.0)	-
1995	1.0	△1.2	3.3	24.4	14.2	29.7(94.6)	15.8(20.8)	-
1996	△3.0	△2.5	△13.2	21.4	44.7	9.1(△9.4)	16.5(13.7)	12.9
1997	△0.4	2.6	△26.2	5.4	7.6	△5.9(△26.0)	3.3(0.7)	△6.8
1998	△55.0	△50.3	△68.2	△42.5	△21.4	△57.6(△76.7)	△30.5(△28.1)	△38.7
1997. Ⅱ	3.6	2.5	△20.8	30.3	10.5	19.7(△21.1)	10.4(6.0)	6.9
Ⅲ	△15.1	△8.4	△37.7	△3.6	△6.7	△11.2(△37.2)	11.3(3.2)	△7.4
Ⅳ	12.1	19.2	△31.0	△17.2	△3.2	△36.9(△58.1)	△15.2(△9.4)	△21.7
1998. Ⅰ	△22.9	△3.0	△67.8	△23.4	△11.0	△41.0(△80.6)	△38.9(△29.9)	△31.3
Ⅱ	△59.6	△56.7	△72.9	△53.4	△13.8	△64.7(△76.6)	△43.8(△37.4)	△48.6
Ⅲ	△63.8	△63.2	△69.4	△44.8	△8.4	△65.7(△72.6)	△22.2(△25.7)	△43.2
Ⅳ	△66.1	△63.7	△60.9	△44.9	△36.7	△56.5(△74.1)	△10.9(△16.9)	△28.7
1999. Ⅰ	△45.8	△55.0	24.2	△45.3	△53.8	△30.7(△10.3)	16.9(12.5)	10.9
Ⅱ	22.4	16.0	177.0	27.5	△12.4	66.2(55.2)	38.5(29.2)	42.4
Ⅲ	76.6	82.7	242.6	13.4	△34.8	93.5(11.0)	22.1(31.7)	53.2
1998. 2	△7.3	9.8	△62.9	△17.5	△4.5	△27.3(△91.9)	△27.7(△22.6)	△25.4
3	△38.6	△24.0	△71.6	△28.7	△13.0	△59.1(△73.9)	△50.1(△34.5)	△34.8
4	△58.1	△52.6	△69.5	△58.6	△63.9	△52.3(△83.7)	△46.7(△39.2)	△48.7
5	△65.2	△65.3	△77.2	△61.6	△21.0	△78.6(△68.9)	△40.6(△39.0)	△47.1
6	△54.3	△50.0	△73.1	△43.9	66.5	△66.0(△74.4)	△43.6(△33.9)	△49.8
7	△63.5	△61.8	△72.0	△41.0	14.1	△66.8(△85.9)	△26.6(△35.7)	△47.8
8	△70.1	△68.7	△73.2	△41.3	△16.6	△54.1(△50.5)	△25.3(△38.3)	△46.9
9	△57.6	△59.6	△61.9	△50.4	△18.0	△73.0(△78.6)	△14.6(△0.5)	△34.2
10	△79.9	△81.3	△74.2	△52.2	△12.1	△79.9(△74.2)	△25.4(△23.9)	△37.1
11	△57.7	△47.8	△50.5	△35.7	△29.4	△51.2(△85.3)	△5.1(△12.1)	△28.2
12	△61.6	△61.2	△51.0	△45.2	△49.1	△18.7(△63.1)	0.9(△13.6)	△19.1
1999. 1	△56.4	△67.1	2.2	△20.5	△11.7	△28.2(△74.4)	39.6(47.1)	6.4
2	△50.5	△57.6	30.0	△52.0	△51.5	△52.5(103.6)	△1.0(0.5)	△0.7
3	△29.6	△37.9	36.2	△51.1	△70.2	△4.2(△2.8)	15.8(△1.5)	26.0
4	4.1	△4.0	64.5	39.3	82.7	7.0(△41.5)	23.6(17.3)	29.5
5	46.5	49.5	299.4	89.6	29.3	201.2(78.0)	40.5(31.4)	43.3
6	16.8	5.6	272.3	△6.2	△61.5	80.1(103.3)	51.1(38.4)	54.6
7	49.0	39.6	243.7	0.1	△42.4	78.1(181.0)	29.4(53.5)	58.2
8	109.3	114.3	288.4	1.2	△27.8	41.5(△44.7)	29.1(47.3)	61.8
9p	81.6	111.5	204.5	36.5	△33.0	168.9(19.2)	9.2(5.5)	41.8
10p	277.7	358.8	355.2	33.9	△49.9	287.6(83.9)	24.2(32.3)	51.2

주 : 1) 선박제외

다. 佘　琋

(專前踫疵藤.埣驟, 增炵效, %)

	鏝冰錙販錙			濛 蒴 騪		
		鏝　錙	冰　錙	佘琋財出荷	倰　楞　財	虜倰楞財
1988	7.6	10.8	4.5	20.9	33.3	16.2
1989	9.6	8.8	11.6	19.0	34.3	12.7
1990	13.1	15.3	9.5	15.3	15.9	15.0
1991	8.9	10.4	8.0	11.3	12.6	10.7
1992	5.5	6.5	5.5	5.3	4.9	5.4
1993	8.5	8.9	8.5	3.9	7.2	2.4
1994	8.7	10.7	5.5	9.3	12.4	7.6
1995	8.0	7.5	8.9	7.4	10.6	5.7
1996	7.0	4.3	10.4	5.8	5.1	6.1
1997	3.2	3.2	4.5	△1.8	4.3	△4.5
1998	△12.7	△8.3	△11.1	△21.4	△28.5	△17.9
1997. Ⅱ	4.6	3.6	6.5	△1.1	10.0	△6.0
Ⅲ	5.7	4.2	5.6	2.4	15.7	△3.2
Ⅳ	△0.1	1.9	0.3	△4.4	△3.4	△4.9
1998. Ⅰ	△11.2	△5.3	△9.4	△19.1	△25.0	△16.6
Ⅱ	△16.0	△12.6	△12.1	△25.4	△33.7	△21.2
Ⅲ	△15.1	△10.1	△13.9	△22.3	△32.8	△17.2
Ⅳ	△8.3	△4.6	△9.2	△18.4	△21.5	△16.9
1999. Ⅰ	6.0	3.9	3.9	13.1	39.3	3.2
Ⅱ	10.8	10.2	8.1	17.1	32.3	10.4
Ⅲ	16.8	14.7	12.9	23.8	60.7	8.7
1998. 1	△9.4	△4.0	△8.4	△17.7	△22.5	△16.1
2	△12.8	△4.9	△10.4	△18.4	△25.4	△15.3
3	△11.6	△7.1	△9.6	△21.0	△26.7	△18.2
4	△15.5	△11.7	△13.0	△23.2	△30.5	△19.5
5	△16.5	△13.1	△11.5	△27.6	△36.0	△23.5
6	△15.9	△12.8	△11.9	△25.6	△34.6	△20.4
7	△17.5	△13.3	△15.3	△22.8	△32.0	△18.4
8	△16.3	△11.5	△11.3	△28.4	△41.8	△21.6
9	△11.6	△5.7	△14.9	△15.9	△24.6	△11.6
10	△13.2	△10.2	△12.7	△24.5	△27.3	△23.0
11	△8.1	△4.1	△8.6	△18.8	△26.8	△14.6
12	△3.6	0.6	△6.1	△11.4	△8.1	△12.8
1999. 1	2.6	△0.5	0.3	7.8	32.6	△0.2
2	7.4	3.7	6.3	11.8	37.5	2.0
3	8.3	8.5	5.3	19.5	46.2	7.9
4	9.0	9.7	6.5	13.6	25.6	8.2
5	9.4	7.4	8.0	17.8	36.9	9.9
6	14.2	13.7	10.1	20.3	34.8	13.3
7	18.6	17.8	13.2	23.3	56.3	9.8
8	18.3	16.4	11.6	30.9	79.5	12.5
9p	13.9	10.5	14.0	18.2	50.2	4.5
10p	15.7	13.1	11.9	26.2	54.8	12.9

3. 惱滌灤媔 가. 甬際蓀支(總妗)

(豔釀달러)

		蛹	翌	蓀	支		
		氟	品 蓀 支		서비스	泵楳蓀支	蛹 翌
			鷺 出	鷺 入	蓀 支		移轉蓀支
1984	△1,293	△1,089	26,486	27,575	373	△1,264	686
1985	△795	△20	26,633	26,653	459	△2,086	852
1986	4,709	4,299	34,128	29,829	1,352	△2,310	1,369
1987	10,058	7,529	46,560	39,031	2,277	△1,587	1,839
1988	14,505	11,283	59,973	48,690	2,257	△1,328	2,293
1989	5,360	4,361	61,832	57,471	444	△578	1,132
1990	△2,003	△2,450	63,659	66,109	△615	△88	1,150
1991	△8,317	△6,803	70,541	77,344	△2,153	△164	803
1992	△3,943	△1,755	76,199	77,954	△2,884	△396	1,091
1993	990	2,319	82,089	79,771	△2,126	△391	1,188
1994	△3,867	△2,860	94,964	97,824	△1,801	△487	1,280
1995	△8,508	△4,444	124,632	129,076	△2,979	△1,303	218
1996	△23,005	△14,965	129,968	144,933	△6,179	△1,815	△46
1997	△8,167	△3,179	138,619	141,798	△3,200	△2,454	667
1998	40,558	41,627	132,122	90,495	628	△5,049	3,352
1997. Ⅲ	△2,053	△27	34,864	34,891	△1,375	△565	△85
Ⅳ	3,962	3,056	36,739	33,683	683	△676	899
1998. Ⅰ	10,919	9,717	32,675	22,958	622	△706	1,285
Ⅱ	11,122	11,457	34,406	22,948	167	△1,262	760
Ⅲ	9,825	10,596	31,428	20,832	△186	△1,112	527
Ⅳ	8,692	9,856	33,613	23,757	25	△1,969	780
1999. Ⅰ	6,193	6,779	31,477	24,698	△121	△1,019	554
Ⅱ	6,327	8,102	35,230	27,627	△540	△1,679	443
Ⅲ	6,638	7,189	36,459	29,270	△288	△726	463
1998. 5	4,086	4,191	11,652	7,461	246	△544	193
6	3,390	3,449	10,957	7,509	12	△334	262
7	3,840	3,884	10,737	6,853	△73	△136	164
8	2,119	2,784	9,730	6,947	△304	△522	161
9	3,867	3,928	10,960	7,032	191	△455	203
10	2,750	3,231	10,598	7,367	162	△927	283
11	2,865	3,237	11,312	8,075	△0	△572	200
12	3,077	3,387	11,703	8,315	△137	△470	297
1999. 1	2,202	1,754	10,089	8,335	342	△77	183
2	1,821	2,199	9,566	7,367	△197	△383	202
3	2,170	2,827	11,823	8,996	△267	△559	169
4	1,642	2,614	11,330	8,715	△156	△890	74
5	2,287	2,618	11,680	9,062	△109	△450	229
6	2,398	2,870	12,720	9,850	△274	△339	141
7	2,795	2,947	12,751	9,805	△93	△256	198
8p	1,413	1,621	11,355	9,733	△138	△230	160
9p	2,430	2,621	12,354	9,732	△56	△240	105
10p	2,099	2,711	13,676	10,965	△39	△638	65

(覃醣달러)

踶 勝 中		資 投	煲 資 直接投資	蘇 蘇 證哱投資	支 支 斸他投資	斸他資煲 蘇支	準髦資積 增(△)瓮	唰差 및 篱 蛨
1987	△10,369	△10,160	101	△297	△9,965	△209	△886	1,197
1988	△5,067	△4,714	371	△1,081	△4,005	△353	△8,857	△581
1989	△2,886	△2,567	520	△711	△2,377	△318	△3,190	716
1990	2,564	2,896	△263	84	3,075	△331	1,186	△1,747
1991	6,412	6,741	△309	3,055	3,995	△329	1,143	762
1992	6,587	6,994	△433	5,802	1,625	△407	△3,708	1,064
1993	2,741	3,216	△752	10,014	△6,047	△475	△3,008	△722
1994	10,295	10,732	△1,652	6,120	6,264	△436	△4,646	△1,782
1995	16,786	17,273	△1,776	11,591	7,459	△488	△7,045	△1,233
1996	23,327	23,924	△2,345	15,185	11,084	△598	△1,389	1,066
1997	1,314	1,922	△1,605	14,295	△10,768	△608	11,922	△5,069
1998	△3,253	△3,424	616	△1,878	△2,162	171	△30,975	△6,330
1997. Ⅳ	△9,913	△9,783	△212	428	△9,999	△130	9,980	△4,029
1998. Ⅰ	△1,710	△1,660	△335	3,806	△5,131	△49	△9,357	175
Ⅱ	2,366	2,016	346	568	1,102	349	△11,262	△2,226
Ⅲ	△3,013	△2,948	491	△3,877	438	△65	△5,544	△1,268
Ⅳ	△896	△832	114	△2,374	1,428	△64	△4,812	△2,984
1999. Ⅰ	1,007	1,092	619	953	△480	△85	△6,310	△890
Ⅱ	△267	△194	885	4,707	△5,786	△74	△4,961	△1,099
Ⅲ	△4,472	△4,427	1,918	△1,478	△4,867	△45	△2,663	497
1998. 4	2,843	2,752	△73	3,668	△842	91	△5,767	△723
5	45	△234	331	△1,200	635	278	△3,288	△843
6	△522	△502	88	△1,900	1,309	△20	△2,207	△660
7	△663	△628	826	△668	△786	△35	△2,100	△1,076
8	△163	△152	91	△1,384	1,141	△11	△1,955	△1
9	△2,187	△2,168	△426	△1,825	83	△19	△1,489	△191
10	△658	△637	273	△690	△220	△20	△1,519	△573
11	51	66	△11	△358	435	△15	△1,651	△1,264
12	△289	△260	△148	△1,326	1,214	△29	△1,642	△1,146
1999. 1	△389	△358	327	1,085	△1,770	△31	△1,807	△5
2	1,059	1,085	53	313	719	△26	△2,248	△632
3	337	365	239	△445	571	△28	△2,255	△253
4	181	218	340	2,449	△2,571	△37	△1,857	34
5	1,081	1,088	179	2,050	△1,141	△7	△2,401	△967
6	△1,529	△1,500	367	207	△2,074	△30	△703	△165
7	△292	△283	562	△95	△750	△9	△2,230	△273
8p	△1,694	△1,671	1,490	△1,807	△1,354	△24	△156	△438
9p	△2,486	△2,473	△134	424	△2,763	△12	△277	333
10p	△654	△635	△339	949	△1,246	△19	△679	△765

나. 鶯出入(通鱗)

(覽醲달러, %)

	鶯 出(FOB)		L / C		鶯 入(CIF)		鶯 入 L/C[1]		鶯出入差
	髂 螯	增烚效	髂 螯	增烚效	髂 螯	增烚效	髂 螯	增烚效	髂 螯
1988	60,696	28.4	42,787	23.0	51,811	26.3	48,200	26.7	8,885
1989	62,377	2.8	45,534	6.4	61,465	18.6	56,479	17.2	912
1990	65,016	4.2	47,520	4.4	69,844	13.6	68,781	21.8	△4,828
1991	71,870	10.5	50,005	5.2	81,525	16.7	75,257	9.4	△9,655
1992	76,632	6.6	52,352	4.7	81,775	0.3	67,525	△10.3	△5,144
1993	82,236	7.3	55,595	6.2	83,800	2.5	73,274	8.5	△1,564
1994	96,013	16.8	64,314	15.7	102,348	22.1	102,835	40.3	△6,335
1995	125,058	30.3	72,926	13.4	135,119	32.0	136,906	33.1	△10,061
1996	129,715	3.7	69,733	△4.4	150,339	11.3	149,216	9.0	△20,624
1997	136,164	5.0	67,615	△3.0	144,616	△3.8	123,249	△2.6	△8,452
1998	132,313	△2.8	57,456	△15.0	93,282	△35.5	62,110	49.6	39,031
1997. Ⅱ	35,532	7.1	17,747	△0.3	37,362	0.8	32,949	-	△1,830
Ⅲ	34,182	15.6	17,022	0.5	35,688	△3.8	32,165	-	△1,506
Ⅳ	36,727	3.6	16,033	△4.8	34,517	△14.8	25,929	-	2,210
1998. Ⅰ	32,231	8.4	15,102	△10.5	23,655	△36.1	15,217	△51.2	8,576
Ⅱ	34,878	△1.8	15,419	△13.1	23,541	△37.0	15,590	△52.7	11,337
Ⅲ	30,481	△10.8	13,769	△19.1	21,462	△39.9	14,619	△54.5	9,019
Ⅳ	34,723	△5.5	13,791	△14.0	24,624	△28.7	16,194	△37.5	10,099
1999. Ⅰ	30,255	△6.1	12,950	△11.8	25,573	8.1	15,786	0.3	4,682
Ⅱ	35,779	2.6	14,690	△3.8	28,736	22.1	17,988	15.6	7,043
Ⅲ	35,145	15.3	14,741	7.6	29,714	38.4	18,782	28.5	5,431
1998. 5	11,308	△3.7	5,134	△13.6	7,586	△38.2	5,294	△50.9	3,722
6	11,509	△7.1	4,555	△22.6	7,746	△37.0	4,898	△57.0	3,763
7	10,024	△15.1	4,572	△22.8	7,091	△43.9	4,948	△56.5	2,932
8	9,709	△12.1	4,651	△15.9	7,118	△38.1	4,682	△53.7	2,591
9	10,748	△5.2	4,475	△19.6	7,253	△37.2	4,989	△53.1	3,496
10	10,634	△14.7	4,472	△23.7	7,648	△39.3	5,181	△52.5	2,986
11	11,670	△1.4	4,059	△15.0	8,327	△28.9	5,350	△44.1	3,343
12	12,419	△0.1	5,259	△1.2	8,649	△15.3	5,663	4.7	3,770
1999. 1	9,259	2.9	3,986	△11.3	8,630	15.3	5,033	13.5	629
2	9,337	△16.8	3,786	△15.4	7,636	△3.2	4,706	△11.5	1,701
3	11,659	△2.9	5,186	△9.2	9,307	12.3	6,047	1.0	2,352
4	11,500	△4.6	5,265	△5.7	9,089	10.7	5,743	6.4	2,411
5	11,429	1.1	4,740	△7.6	9,454	24.6	5,875	11.0	1,975
6	12,850	11.7	4,685	2.8	10,193	31.6	6,370	30.9	2,657
7	11,767	17.4	5,156	12.7	9,765	37.7	6,066	22.7	2,002
8	11,386	17.3	4,414	△5.0	9,836	38.2	5,896	25.9	1,550
9p	11,992	11.6	5,771	15.5	10,113	39.4	6,819	36.6	1,879
10p	13,437	26.4	5,323	19.0	11,348	48.4	7,337	42.1	2,089
11p	14,261	22.2	-	-	11,743	41.0	-	-	2.518

주 : 1) 1997년 이전은 I/L 수치임

다. 地嘯蹩 鷥出入差

(通鱶櫟準, 鱔달러, %)

	惱		旌			惱		日		
	鷥	出	鷥	入	鷥出	鷥	出	鷥	入	鷥出
	髎螯	增炵姣	髎 螯	增炵姣	入差	髎 螯	增炵姣	髎 螯	增炵姣	入差
1984	104.8	27.1	68.8	9.6	36.0	46.0	35.2	76.4	22.5	△30.4
1985	107.5	2.6	64.9	△5.6	42.7	45.4	△1.3	75.6	△1.0	△30.2
1986	138.8	29.1	65.5	0.9	73.4	54.3	19.4	108.7	43.8	△54.4
1987	183.1	31.9	87.6	33.8	95.5	84.4	55.5	136.6	25.6	△52.2
1988	214.0	16.9	127.6	45.7	86.5	120.0	42.3	159.3	17.0	△39.7
1989	206.4	△3.6	159.1	24.7	47.3	134.6	12.1	174.5	9.6	△39.9
1990	193.6	△6.2	169.4	6.5	24.2	126.4	△6.1	185.7	6.4	△59.4
1991	185.6	△4.1	188.9	11.5	△3.4	123.6	△2.2	211.2	13.7	△87.6
1992	180.9	△2.5	182.9	△3.2	△2.0	116.0	△6.1	194.6	△7.9	△78.6
1993	181.4	0.3	179.3	△2.0	4.1	115.6	△0.3	200.2	2.9	△84.5
1994	205.5	13.3	215.8	20.4	△10.3	135.2	16.9	253.9	26.9	△118.7
1995	241.3	17.4	304.2	41.0	△62.9	170.5	26.1	326.2	28.5	△155.7
1996	216.7	△10.2	333.1	9.5	△116.4	157.7	△7.5	314.5	△3.6	△156.8
1997	216.3	△0.2	301.2	△9.6	△84.9	147.7	△6.3	279.1	△11.3	△131.4
1998	228.1	5.5	204.0	△32.3	24.0	122.4	△17.2	168.4	△39.7	△46.0
1998. 3	20.0	15.3	18.2	△38.2	1.8	10.6	△23.5	15.7	△36.4	△5.1
4	19.8	8.6	18.0	△39.7	1.8	11.7	△1.7	15.6	△39.9	△3.9
5	19.4	8.6	16.8	△38.9	2.6	9.7	△22.8	13.6	△43.5	△4.0
6	18.5	△7.2	18.3	△30.9	0.3	9.4	△28.2	13.3	△46.5	△3.9
7	19.4	△1.5	15.7	△43.6	3.7	9.3	△29.2	13.0	△47.1	△3.7
8	18.2	1.7	15.9	△31.9	2.3	8.4	△30.4	12.0	△44.7	△3.6
9	19.6	1.0	17.4	△24.5	2.2	9.6	△16.5	13.4	△39.1	△3.8
10	19.9	4.6	17.3	△31.3	2.5	11.3	△11.6	14.6	△42.8	△3.2
11	19.4	5.0	17.1	△23.6	2.3	11.3	△5.8	14.7	△32.8	△3.4
12	21.7	7.1	19.2	△0.9	2.5	11.0	△11.3	16.2	△14.1	△5.2
1999. 1	18.3	18.8	19.4	33.9	△1.2	9.7	3.6	14.6	21.9	△5.0
2	18.1	8.5	17.6	12.5	0.5	10.3	△3.7	15.0	4.6	△4.6
3	22.0	10.2	21.4	17.6	0.7	12.4	16.8	19.2	22.2	△6.8
4	23.0	15.8	19.6	9.1	3.4	12.1	3.0	18.9	21.4	6.9
5	23.6	21.3	21.7	28.7	1.9	11.6	20.1	17.4	27.7	△5.8
6	26.4	42.5	21.8	19.4	4.6	12.0	27.7	19.9	49.7	△7.9
7	24.8	27.4	20.5	30.2	4.3	12.2	31.6	19.5	49.7	△7.3
8	23.7	30.3	20.6	29.9	3.1	11.9	42.7	19.4	62.4	△7.5
9	25.2	28.4	20.0	15.0	5.4	13.8	43.3	21.1	57.1	△7.3
10	27.5	38.6	21.6	24.8	5.9	17.2	51.9	24.7	69.6	△7.5

라. 滯債·滯甬人投資·嶍諟瘼入

(鰭달러)

	總滯債[1]	惱滯債權	滯換寙躉螯[2]	鏟 滯 債	滯甬人投資[3] (백만달러)	嶍 諟 瘼 入	
						瘼入鴃(豔釅BBL)	瘼入藕運(달러/BBL)
1983	404	95	-	309	269	193.0	29.89
1984	431	101	-	329	422	199.7	29.04
1985	468	112	-	355	532	198.3	27.73
1986	445	120	-	325	355	230.1	15.26
1987	356	132	-	224	1,063	216.2	17.73
1988	312	239	-	72	1,284	260.2	14.71
1989	294	264	-	30	1,090	292.6	16.62
1990	317	253	-	64	803	308.4	20.95
1991	391	272	-	119	1,396	387.2	19.42
1992	428	317	-	111	895	509.0	18.55
1993	439	360	183.0	79	1,044	560.6	16.57
1994	974	729	224.1	245	1,317	573.7	15.55
1995	1,275	919	293.9	355	1,941	624.9	17.32
1996	1,635	1,097	294.2	538	3,203	721.9	20.11
1997	1,592	1,052	88.7	541	6,971	873.4	20.34
1998	1,487	1,285	485.1	202	8,852	819.1	13.72
1998. 1	1,559	1,070	123.6	490	130	74.7	17.86
2	1,547	1,102	185.4	445	199	67.3	14.94
3	1,544	1,134	241.5	410	243	70.3	13.50
4	1,584	1,194	307.6	391	567	70.2	12.83
5	1,582	1,226	343.5	356	659	65.1	13.19
6	1,552	1,254	370.4	298	663	70.1	13.34
7	1,540	1,272	392.6	268	1,235	58.9	13.01
8	1,530	1,262	413.5	268	407	68.2	12.88
9	1,519	1,286	433.7	233	534	57.9	13.08
10p	1,525	1,310	452.7	215	894	71.9	13.78
11p	1,496	1,307	464.7	189	1,378	69.4	13.54
12p	1,487	1,285	485.1	202	1,943	75.0	12.28
1999. 1	1,466	1,297	500.9	170	967	87.8	11.02
2	1,452	1,285	519.6	167	310	70.4	11.43
3	1,455	1,328	544.5	128	727	75.4	11.12
4	1,427	1,341	563.8	86	811	73.4	13.50
5	1,428	1,377	587.3	51	660	60.0	15.42
6	1,414	1,378	604.3	36	988	74.2	15.87
7	1,436	1,412	639.8	25	2,079	68.6	16.59
8	1,426	1,415	647.8	11	1,231	63.7	18.69
9p	1,409	1,413	654.8	△4	692	69.8	20.06
10p	-	-	662.1	-	1,783	72.7	22.66
11p	-	-	696.8	-	-	-	-

주 : 1) IMF 기준 총대외지불부담 (93년 이전은 IBRD 기준 총외채)
2)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3) 신고기준

4.通貨·髂躔

(10鐺원, 騶 平鐳, %)

	煲 嵎 通 貨			總 通 貨			MCT[1]		
	麕殘	麕殘 增炵膻	平殘 增炵膻	麕殘	麕殘 增炵膻	平殘 增炵膻	麕殘	麕殘 增炵膻	平殘 增炵膻
1983	4,095	7.1	20.8	22,938	15.2	19.5	-	-	-
1984	4,248	3.7	5.6	24,706	7.7	10.7	-	-	-
1985	4,319	1.7	3.1	28,565	15.6	11.8	-	-	-
1986	5,017	16.2	9.2	33,833	18.4	16.8	40,205	19.8	-
1987	7,469	48.9	19.2	40,280	19.1	18.8	50,639	26.0	-
1988	9,728	30.2	41.0	48,939	21.5	18.8	63,837	26.1	24.6
1989	12,819	31.8	36.9	58,638	19.8	18.4	81,295	27.3	25.7
1990	13,811	7.7	24.7	68,708	17.2	21.2	102,257	25.8	27.6
1991	16,322	18.2	17.4	83,746	21.9	18.6	126,153	23.4	24.5
1992	18,107	10.9	11.2	96,259	14.9	18.4	154,157	22.2	24.7
1993	23,080	27.5	20.8	112,219	16.6	18.6	188,628	22.4	22.9
1994	25,204	9.2	16.2	133,179	18.7	15.6	234,573	24.4	23.5
1995	29,305	16.3	13.4	153,945	15.6	15.5	288,484	23.0	21.6
1996	25,722	△12.2	2.1	178,312	15.8	16.2	338,662	17.4	21.7
1997	22,519	△12.5	△15.0	203,532	14.1	19.2	377,499	11.5	15.3
1998	20,703	△8.1	△7.2	258,538	27.0	19.0	394,390	4.5	7.5
1998. 2	19,890	△7.8	△13.4	209,266	14.6	13.8	378,287	10.1	10.4
3	22,035	7.7	△4.7	204,162	12.1	13.7	372,989	8.6	9.5
4	18,649	△9.3	△5.6	207,584	12.9	13.1	375,126	8.6	9.1
5	17,962	△9.4	△8.4	217,214	18.3	14.8	380,833	9.3	8.4
6	20,799	0.3	△7.5	218,342	16.3	18.1	379,326	6.8	8.2
7	19,792	△1.9	△7.3	228,838	20.9	20.0	383,203	7.0	7.5
8	18,179	△10.3	△7.8	236,139	20.7	20.8	386,420	5.8	6.7
9	22,026	△1.1	△13.2	246,498	24.8	21.0	386,493	5.6	5.4
10	20,260	△2.8	△0.9	250,268	25.2	26.4	389,071	5.2	6.1
11	19,766	△10.5	△5.7	254,777	24.6	26.1	391,252	4.1	5.2
12	20,703	△8.1	△6.6	258,538	27.0	21.5	394,390	4.5	2.6
1999. 1	20,547	△13.5	△8.7	261,808	28.1	26.3	392,022	3.7	3.1
2	21,025	5.7	4.4	273,131	30.7	29.9	399,779	5.7	4.9
3	22,412	1.7	7.2	278,262	36.3	33.6	400,641	7.4	6.9
4	22,067	18.3	10.9	276,879	33.4	34.6	401,200	7.0	6.9
5	20,983	16.8	12.0	276,159	27.1	30.6	401,305	5.4	6.3
6	21,434	3.1	13.3	275,966	26.4	27.1	401,960	6.0	5.9
7	20,743	4.8	15.4	283,031	23.7	24.2	409,245	6.8	6.1
8p	22,090	21.5	16.2	295,621	25.2	25.0	418,441	8.3	7.8
9p	24,839	12.8	22.3	306,144	24.2	26.9	426,598	10.4	10.3
10p	23,350	15.3	12.2	313,099	25.1	24.1	430,020	10.5	10.0

주 : 1) MCT=M2(총통화)+CD+금전신탁

(10鰐원, 驪 平鐳, %)

	M3[1]		會桍債	CD	[2]	어음墀湾驢(鬱螯曇準)[3]		株	晌
	麛 殘	麛 殘 增炵驢	豉通蓀益驢 (3夌)	豉通蓀益驢 (91嚏)	콜금리 (1日)	서 울	全 甬	平 鐳 指 薜	濼煩銥 (日平鐳釀株)
1983	38,032	-	-	-	-	-	-	121.7	933
1984	45,726	-	-	-	-	-	-	131.9	1,485
1985	55,450	-	-	-	-	0.05	-	138.9	1,893
1986	71,594	-	-	-	-	0.07	-	227.8	3,176
1987	93,638	29.8	12.62	-	-	0.06	0.09	417.6	2,035
1988	120,359	29.1	14.18	-	-	0.03	0.04	693.2	1,037
1989	153,927	26.6	15.17	-	-	0.02	0.04	918.4	1,176
1990	198,124	29.9	16.48	-	-	0.02	0.04	747.0	1,087
1991	244,837	25.7	18.89	-	-	0.04	0.06	657.1	1,402
1992	298,277	22.2	16.21	16.41	-	0.07	0.12	587.2	2,403
1993	354,933	21.6	12.63	12.96	-	0.07	0.13	728.2	3,513
1994	442,663	22.0	12.92	13.29	-	0.10	0.17	965.7	3,686
1995	527,017	19.9	13.79	14.05	-	0.12	0.20	934.9	2,613
1996	614,961	19.0	11.87	12.63	-	0.10	0.17	833.4	2,657
1997	700,285	16.3	13.39	13.39	13.61	0.46	0.52	652.9	4,461
1998	787,627	13.9	15.10	15.22	14.96	0.41	0.52	408.6	10,219
1998. 2	722,722	15.1	19.78	22.46	25.37	0.69	0.83	525.2	7,979
3	725,497	14.5	18.94	22.60	23.48	0.49	0.62	523.0	7,043
4	739,106	14.4	18.10	20.27	20.66	0.38	0.57	444.2	4,850
5	744,417	14.1	17.89	18.28	17.41	0.49	0.62	356.3	5,330
6	743,938	14.2	16.64	16.93	15.71	0.47	0.58	313.3	6,825
7	763,115	14.0	13.69	13.95	12.18	0.60	0.69	327.8	8,155
8	771,299	14.0	12.38	11.19	9.27	0.48	0.55	312.8	7,402
9	771,571	13.3	12.51	10.37	8.21	0.35	0.42	312.2	6,962
10	783,242	13.5	10.00	8.08	7.02	0.18	0.28	358.8	10,679
11	789,649	13.1	9.59	7.70	7.04	0.20	0.26	429.2	19,768
12	787,627	12.4	8.30	7.70	6.72	0.13	0.17	524.7	27,471
1999. 1	812,208	13.1	7.89	7.00	6.23	0.13	0.16	597.6	25,097
2	823,066	13.8	8.56	6.70	5.55	0.11	0.14	533.0	14,039
3	820,772	14.1	8.55	6.92	4.98	0.10	0.14	586.2	18,717
4	829,268	13.9	7.54	6.16	4.78	0.25	0.26	721.1	31,799
5	834,532	13.3	8.32	6.17	4.75	0.12	0.13	745.4	25,181
6	832,840	12.7	8.06	6.28	4.76	0.05	0.07	841.4	23,962
7	847,681	11.5	8.58	6.75	4.75	0.11	0.11	971.4	37,897
8	843,950	10.4	9.88	7.19	4.69	1.58	1.49	933.1	30,069
9	-	-	10.41	7.54	4.67	1.75	1.58	926.9	27,035
10	-	-	9.12	7.29	4.67	0.88	0.82	828.6	28,175
11	-	-	9.53	6.91	4.67	0.59	-	950.1	39,260

주 : 1) 86年 以後는 新系列, 但 89年 11月부터 金融機關 표지어음 賣出包含
2) 투신사 거래제외
3) 電子 결제 조정전

5.啾湩 및 鶯出入 黟湩

(指薜:1995踠=100, 岅卅驄, %)

	啤殱者啾湩			佘玾者啾湩			鶯出啾湩		鶯入啾湩		鶯出黟湩[1]		鶯入黟湩[1]	
	指薜	疵驟尃	前踊躔尃	指薜	疵驟尃	前踊躔尃	指薜	疵驟尃	指薜	疵驟尃	指薜	疵驟尃	指薜	疵驟尃
1983	78.4	0.1	△0.8	54.3	3.4	1.9	-	-	-	-	100.4	△3.8	103.1	△4.7
1984	79.0	0.8	1.5	55.5	2.2	2.4	-	-	-	-	103.9	3.5	104.4	1.3
1985	79.6	0.9	0.5	56.8	2.3	3.1	78.3	83.6	83.6	-	100.0	△3.8	100.0	△4.2
1986	78.5	△1.4	△2.0	58.4	2.8	1.4	80.4	2.7	80.0	△4.3	102.1	2.1	93.8	△6.2
1987	78.8	0.4	2.6	60.2	3.1	6.0	83.9	4.4	85.8	6.9	112.4	10.1	100.8	7.5
1988	81.0	2.7	2.3	64.5	7.1	7.3	87.5	4.3	90.8	6.2	94.1	-	90.9	-
1989	82.2	1.5	1.2	68.2	5.7	5.0	85.9	△1.8	87.5	△3.6	96.0	2.0	95.0	4.5
1990	85.6	4.2	7.2	74.0	8.5	9.4	87.9	2.3	86.6	△1.0	94.2	△1.9	96.4	1.5
1991	89.7	4.7	1.9	80.9	9.3	9.2	91.2	3.8	86.6	0.0	94.7	0.5	96.4	0.0
1992	91.6	2.2	1.6	86.0	6.3	4.6	93.7	2.7	87.9	1.5	93.2	△1.6	94.9	△1.5
1993	93.0	1.5	2.0	90.1	4.8	5.8	96.0	2.5	91.0	3.5	93.6	0.4	91.3	△3.8
1994	95.5	2.8	3.9	95.7	6.2	5.6	98.7	2.8	94.6	4.0	95.2	1.8	91.8	0.5
1995	100.0	4.7	3.4	100.0	4.5	4.7	100.0	1.3	100.0	5.7	100.0	5.0	100.0	9.0
1996	103.2	3.2	3.7	104.9	4.9	4.9	95.8	△4.2	100.7	0.7	86.6	△13.4	98.8	△1.2
1997	107.2	3.9	9.6	109.6	4.5	6.6	102.1	6.6	110.3	9.5	72.8	△15.9	93.6	△5.3
1998	120.3	12.2	3.6	117.8	7.5	4.0	134.1	31.3	141.4	28.2	60.5	△16.9	76.4	△18.4
1997. 8	106.7	2.8	2.2	110.1	4.0	3.4	98.0	3.8	106.1	4.7	71.9	△15.5	94.3	△2.3
9	107.1	3.0	2.6	110.6	4.2	3.8	98.5	4.1	106.9	3.9	70.9	△13.4	93.8	△3.6
10	106.9	2.7	2.4	110.6	4.2	3.8	99.1	3.9	108.7	4.8	69.4	△14.6	88.1	△9.7
11	107.4	3.2	2.9	110.7	4.3	3.9	103.6	8.7	113.8	9.5	66.8	△15.0	89.0	△10.5
12	114.4	9.6	9.6	113.5	6.6	6.6	136.2	42.6	142.5	35.3	63.5	△18.1	88.6	△12.0
1998. 1	119.3	13.0	4.3	116.2	8.3	2.4	167.8	75.3	167.8	57.7	63.7	△16.3	86.6	△12.7
2	122.3	15.3	6.9	118.2	9.5	4.1	161.4	65.5	164.1	53.9	64.0	△18.1	84.8	△14.8
3	122.0	15.1	6.6	118.0	9.0	4.0	154.2	57.2	157.6	49.1	63.5	△19.7	81.2	△16.4
4	122.1	14.9	6.7	118.4	8.8	4.3	136.2	35.7	143.2	34.3	63.6	△18.0	77.5	△18.0
5	120.8	13.5	5.6	117.8	8.2	3.8	132.8	32.7	140.9	31.9	62.0	△18.5	76.9	△17.3
6	120.7	13.3	5.5	117.3	7.5	3.3	131.8	32.1	139.5	30.1	60.4	△19.5	76.8	△17.8
7	120.1	12.8	5.0	117.3	7.3	3.3	125.2	27.1	133.8	26.5	59.3	△20.2	74.9	△20.2
8	119.3	11.8	4.3	117.7	6.9	3.7	118.1	20.5	127.6	20.3	57.8	△19.6	72.9	△22.7
9	119.3	11.4	4.3	118.2	6.9	4.1	123.3	25.2	132.6	24.0	58.9	△16.9	74.0	△21.1
10	119.4	11.7	4.4	118.6	7.2	4.5	125.7	26.8	136.5	25.6	58.2	△16.1	74.7	△15.2
11	119.2	11.0	4.2	118.2	6.8	4.1	120.6	16.4	131.2	15.3	58.2	△12.9	75.0	△15.7
12	118.5	3.6	3.6	118.0	4.0	4.0	111.9	△17.8	121.9	△14.5	57.7	△9.1	72.1	△18.6
1999.1	117.2	△1.8	△1.1	117.9	1.5	△0.1	108.0	△35.6	117.9	△29.7	-	△10.2	-	△14.9
2	117.0	△4.3	△1.3	118.4	0.2	0.3	106.3	△34.1	115.1	△29.9	-	△11.0	-	△12.4
3	116.8	△4.3	△1.4	118.6	0.5	0.5	110.1	△28.6	118.8	△24.6	-	△10.7	-	△9.7
4	117.1	△4.1	△1.2	118.9	0.4	0.8	110.0	△19.2	121.2	△15.4	△10.1	△7.0		
5	117.6	△2.6	△0.8	118.7	0.8	0.6	107.8	△18.8	121.2	△14.0	-	△8.8	-	△4.1
6	116.8	△3.2	△1.4	118.0	0.6	0.0	105.7	△19.8	119.5	△14.3	-	△8.6	-	△4.7
7	116.6	△2.9	△1.6	117.6	0.3	△0.3	120.6	△16.1	120.6	△9.9	-	△7.2	-	△3.3
8	117.4	△1.6	△0.9	118.8	0.9	0.7	109.4	△7.4	127.4	△0.2	-	△5.0	-	1.7
9	118.0	△1.1	△0.4	111.9	0.8	0.9	110.0	△10.8	130.2	△1.8	-	△4.7	-	5.6
10	119.2	△0.2	0.6	120.0	1.2	1.7	113.6	△9.6	134.5	△1.5	-	-	-	-
11	119.9	0.6	1.2	119.8	1.4	1.5	111.9	△7.2	133.6	1.8	-	-	-	-

주 : 1) 1988이전 수출입단가 지수는 1985=100 기준

6. 雇 佣[1]

(천명)

	15邵以岐人 玆	蠕濟活牝人玆	就綟者	鶫綟者	鶫 綟 妓 (涔節調整)	賃 髂 全 殰 綟 髂螯(천원)	賃 髂 全 殰 綟 增炵妓[2](%)	賃 髂 製 造 綟 髂螯(천원)	賃 髂 製 造 綟 增炵妓[2](%)
1983	26,212	15,118(57.7)	14,505	613	4.1	273.1	11.0	226.8	12.2
1984	26,861	14,997(55.8)	14,429	568	3.8	296.9	8.7	245.3	8.1
1985	27,553	15,592(56.6)	14,970	622	4.0	324.3	9.2	269.7	9.9
1986	28,225	16,116(57.1)	15,505	611	3.8	351.0	8.2	294.5	9.2
1987	28,955	16,873(58.3)	16,354	519	3.1	386.5	10.1	328.7	11.6
1988	29,602	17,305(58.5)	16,869	435	2.5	446.4	15.5	393.1	19.6
1989	30,265	18,023(59.6)	17,560	463	2.6	540.6	21.1	491.6	25.1
1990	30,887	18,539(60.0)	18,085	454	2.4	642.3	18.8	590.8	20.1
1991	31,539	19,115(60.6)	18,677	438	2.3	754.7	17.5	690.3	16.9
1992	32,023	19,499(60.9)	19,033	466	2.4	869.3	15.2	798.5	15.7
1993	32,528	19,879(61.1)	19,328	551	2.8	975.1	12.2	1,324.1	10.9
1994	33,056	20,396(61.7)	19,905	490	2.4	1,099.0	12.7	1,424.9	15.5
1995	33,664	20,853(61.9)	20,432	420	2.0	1,222.1	11.2	1,123.9	9.9
1996	34,285	21,243(62.0)	20,817	426	2.0	1,367.5	11.9	1,261.2	12.2
1997	34,842	21,662(62.2)	21,106	556	2.6	1,463.3	7.0	1,326.2	5.2
1998	35,362	21,456(60.7)	19,994	1,461	6.8	1,426.8	△2.5	1,284.0	△3.1
1997. Ⅲ	34,913	21,872(62.6)	21,402	470	2.1(2.4)	1,543.1	6.8	1,405.2	5.4
Ⅳ	35,049	21,692(61.9)	21,132	561	2.6(2.8)	1,480.3	0.9	1,319.3	△2.9
1998. Ⅰ	35,184	20,940(59.5)	19,762	1,179	5.6(5.1)	1,431.5	0.1	1,253.8	△2.6
Ⅱ	35,304	21,725(61.5)	20,244	1,481	6.8(6.9)	1,385.0	△1.2	1,244.0	△3.9
Ⅲ	35,423	21,646(61.1)	20,049	1,597	7.4(7.5)	1,417.4	△8.1	1,262.9	△10.1
Ⅳ	35,537	21,511(60.5)	19,924	1,587	7.4(7.6)	1,474.9	△0.4	1,383.0	4.8
1999. Ⅰ	35,616	20,854(58.6)	19,105	1,749	8.4(7.8)	1,511.2	5.6	1,366.4	9.0
Ⅱ	35,715	21,797(61.0)	20,362	1,435	6.6(6.6)	1,532.2	10.6	1,416.3	13.9
Ⅲ	35,820	21,914(61.2)	20,695	1,220	5.6(5.8)	–	–	–	–
1997.12	35,091	21,388(61.0)	20,731	657	3.1(3.1)	1,745.2	△5.7	1,486.0	△12.6
1998. 1	35,143	20,686(58.9)	19,753	933	4.5(4.2)	1,540.9	11.0	1,357.6	7.8
2	35,186	20,808(59.1)	19,576	1,232	5.9(5.2)	1,345.4	△10.6	1,220.1	△13.7
3	35,222	21,328(60.6)	19,955	1,372	6.4(5.9)	1,406.0	0.7	1,180.3	△0.7
4	35,261	21,620(61.3)	20,188	1,432	6.6(6.5)	1,365.8	2.1	1,225.6	△4.7
5	35,304	21,776(61.7)	20,289	1,487	6.8(6.9)	1,284.8	1.3	1,136.4	△1.3
6	35,346	21,779(61.6)	20,253	1,525	7.0(7.2)	1,505.6	△5.9	1,371.7	△5.2
7	35,387	21,724(61.4)	20,079	1,646	7.6(7.4)	1,403.6	△5.9	1,233.4	△9.1
8	35,423	21,517(60.7)	19,943	1,574	7.3(7.6)	1,365.9	△6.0	1,235.9	△10.6
9	35,461	21,696(61.2)	20,124	1,572	7.2(7.6)	1,482.9	△12.0	1,320.2	△10.6
10	35,499	21,785(61.4)	20,248	1,537	7.1(7.5)	1,384.1	△1.4	1,315.4	△0.8
11	35,537	21,490(60.5)	19,933	1,557	7.2(7.6)	1,273.4	△1.5	1,136.5	△1.0
12	35,576	21,259(59.8)	19,591	1,669	7.9(7.8)	1,768.5	1.3	1,697.7	14.2
1999. 1	35,583	20,728(58.3)	18,967	1,761	8.5(8.0)	1,404.0	△8.9	1,201.6	△11.5
2	35,615	20,623(57.9)	18,842	1,781	8.6(7.8)	1,618.2	20.3	1,562.3	28.0
3	35,648	21,210(59.5)	19,507	1,703	8.0(7.5)	1,511.7	7.5	1,335.4	13.1
4	35,679	21,635(60.6)	20,089	1,546	7.1(7.0)	1,473.2	7.9	1,379.9	12.6
5	35,715	21,795(61.0)	20,393	1,402	6.4(6.5)	1,410.6	9.8	1,294.0	13.9
6	35,750	21,960(61.4)	20,604	1,356	6.2(6.4)	1,172.2	13.7	1,574.5	14.8
7	35,789	21,907(61.2)	20,558	1,349	6.2(6.4)	1,572.6	12.0	1,408.4	14.2
8	35,821	21,767(60.8)	20,527	1,241	5.7(5.9)	1,522.3	11.4	1,449.1	17.2
9	35,851	22,069(61.6)	21,000	1,069	4.8(5.2)	1,821.5	22.8	1,661.6	25.9
10	35,882	22,176(61.8)	21,155	1,021	4.6(5.0)	–	–	–	–

주 : 1) 1999. 6월 시계열 보정결과 반영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기관 및 인사

기획 · 편집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
권오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정책심의관)
한성택 (재정경제부 홍보기획단장)
박재하 (재정경제부 자문관)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연구소장)

이희수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
유광열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나주범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이용재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강환덕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김동곤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이철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이호철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최종구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김춘선 (재정경제부 조정1과장)
장건상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주형환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이재현 (재정경제부 조세총괄과장)
이가복 (재정경제부 홍보기획과장)
임영록 (재정경제부 국고과장)
최중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문재우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장)
정병태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

집필자

강종석 (재정경제부 조정1과)
김성욱 (재정경제부 조정2과)
고경모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김우찬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김광훈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김정운 (재정경제부 국고과)
김병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김철주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나주범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남봉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민경설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
신경남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변영한 (재정경제부 조정2과)
유광열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이승원 (재정경제부 조정1과)
최영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유복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
윤성호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이용재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차영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구윤철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김용진 (기획예산처 개혁기획팀)
윤 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김윤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왕윤종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거시경제실장)

권순찬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권영중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김철웅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홍 길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 경제백서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전화 : (02)503-9055, 503-9056

· 경제백서는 한국경제서적(737-7498) 및 경제자료안내실(502-2312) 등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999년판 **경제백서**

1999년 12월 일 인쇄
1999년 12월 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재정경제부

편집디자인
인쇄제작 일지사(503-6971)

1999

경제백서